

2019 공동학술대회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2019. **11. 20.**(수) 13:30~

영광예술의전당 1층 소공연장

주최  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재단 한국학호남진흥원 韓國古文書學會  영광군

2019. 11. 20.(수) 13:30~
영광예술의전당 1층 소공연장

2019 공동학술대회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13:30~13:50
개회인사 이종범(한국학호남진흥원)
환영사 김준성(영광군수)
축사 입학성(한국고문서학회 회장) 김범무(영광문화원장)

13:50~14:20 영광지역 고문헌 자료 기탁식

14:20~15:00
기조강연
영광지역 기록유산과 지역 네트워크의 연계 활용
이해준(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15:00~17:00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행정과 업무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영광 영월신씨 소장 기해·경자년 『痘兒』·『未痘兒』 성책 분석
김영철(한국학중앙연구원)

광복 이후 영광지역 정치 주역들의 활동과 갈등
정택근(영광문화원지역사연구소)

17:00~18:30
종합토론
좌장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문숙자(서울대학교)
김영준(한국학호남진흥원)
박 경(연세대학교)
임선화(전남대학교)

18:30~ 폐회

2019 공동학술대회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목 차

■ 기조강연 ■

영광지역 기록유산과 지역 네트워크의 연계 활용 7
이 해 준(공주대)

■ 주제발표 1 ■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25
조 미 은(한국학호남진흥원)

■ 주제발표 2 ■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행정과 업무 147
노 인 환(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제발표 3 ■

영광 영월신씨 소장 己亥·庚子년
『痘兒』·『未痘兒』 성책 분석 173
김 영 철(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제발표 4 ■

광복 이후 영광지역 정치 주역들의 활동과 갈등 193
정 택 근(영광문화원)

Ⅰ 기초강연 Ⅰ

영광지역 기록유산과

지역 네트워크의 연계 활용

이 해 준(공주대)

영광지역 기록유산과 지역 네트워크의 연계 활용

이 해 준(공주대학교)*

<목 차>

1. 역사 속의 지역사와 지역문화
2. 영광지역 기록유산의 조사
3. 지역 기록자료 체계와 연관성
4. '쓰여 지지 않은' 지역자료들

영광은 예전부터 '玉堂골'이라 불리며 '지방 수령을 지내려면 남으로는 전라도 영광, 북으로는 황해도 안악'이라는 말이 있었을 만큼 이름난 곳이었다. 동남으로는 노령의 지맥이 감싸여서 그 산세가 아름답고, 서쪽으로는 황금의 어장 칠산 바다와 비옥하고 광활한 곡창지대의 평야를 끼고 있어 예부터 천혜의 자원이 풍부한 '魚·鹽·柴·草'가 겸비된 고장으로 일컬어진다.

그리하여 흥선대원군이 「湖南八不如(人不如南原, 地不如順天, 結不如羅州, 穀不如光州, 文不如長城, 錢不如高興, 戶不如靈光, 女不如濟州)」를 말하면서 영광을 '戶不如靈光'으로 표현할 정도였다. 그런가하면 영광은 불교와도 관련이 깊은 곳으로 백제불교의 시원을 이룩한 마라난타가 來到하였다는 법성포와 불갑사가 있고, 후대이지만 원불교의 성지도 영광에 있다. 그런가하면 법성포는 해로교통의 요지로 고려 12조창의 하나로 영광 법성포에 부용창이 있었고,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의 2대 조창으로 가장 번성한 포구이자 문물의 집산지였다. 조선 중종 9년(1514)에 영산창이 폐쇄된 후에는 전라남도 전 지역의 세미를 관할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창이 되었다. 이 조창에는 수군 만호가 배치되고 숙종 34년(1708)에는 法聖鎭으로 승격, 수군첨절제사가 주둔하게 됨에 따라 바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다의 자원과 稅米를 받아들이는 곳이자 수군기지로서, 또 전라도 최대의 포구로서 번영을 누렸다. 또 『看羊錄』으로 유명한 睡隱 姜杭(1567~1618)의 출신지로 內山書院이 있고 내산서원 장서각에는 『강감회요』 목판과 『수은집』, 『간양록』 등의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어 주목된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영광지역에 전승되는 고문헌 자료의 기탁식을 겸하여 한국고문서학회와 영광지역 고문서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靈光 靈城丁氏 丁好南後孫家 소장 古文獻(52점), 靈光 晉州姜氏 睡隱公(姜沆)宗家 소장 古文獻(90점), 靈光 廣州李氏 退菴公(李天奇)後孫家 소장 古文獻(60점), 靈光 東萊鄭氏 竹窓公(鄭弘衍) 後孫家 소장 古文獻(199점), 靈光 雲堂里 濟州梁氏家 소장 古文獻(114점) 등 5가문의 500여 점의 고문서와 전적이 기탁되고, 이에 대한 기본 정리와 심층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많은 현지조사의 과정에 함께 했던 기억이 새롭기만 하다. 당시 여러 조사의 경험을 가진 발제자로서 그때에 밝혀 내지 못했던 기록문서들이 이렇게 새롭게 알려지고 연구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부러운 마음이 든다.

특히 근자에는 영광지역의 조사와 연구에 함께 하지 못하여 이 글에서 자료 정리에 다소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그럼에도 함께 귀한 자리에서 영광지역 기록유산의 성격과 조사 연구성과를 살피고, 향후 지역 연계 자료로서 활용에 대하여 작은 의견을 피력하는 발제를 하게 되어 영광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한편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은 여러 지적을 받아 재정리하고자 한다.

1. 역사 속의 지역사와 지역문화

우리가 배운, 아는 역사는 대부분 국가사, 중앙사의 측면이 강했다. 예컨대 관찬의 역사서들에서 보이는 지역에 대한 평가들은 중앙의 평가와 시각을 위주로 하는 일방적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지역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객체, 상대적 관점의 ‘지역 평가’이고, 지역에 대한 중앙관리나 지식인의 평가는 매우 편향적이고 주관적임을 보게 된다. 그런가하면 관찬 사서에 수록되는 지역의 역사 기록들은 [특정 시기], [특정 인물], [특정 사건]으로, 중앙의 지배세력과 상관되어 그 성격이 규정된다. 그리고 그 내용도 지역민 주체의 역사 문화 이해나 배려는 전혀 없이 부정적인 단편 사례로 취급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역사를 ‘勝者의 기록물’이라고도 한다. 실제 우리가 역사연구에 흔히 이용하는 官撰의 연대기나 法典, 총집류들의 대부분은 지배층 혹은 중앙중심적인 내용으로 이에

따라 지역사, 지역문화, 지역세력, 지역 민중의 생활사 기록은 대부분 소외되거나 축소, 굴절되었고, 지역문화들은 중심보다는 ‘주변’, 원형보다는 ‘변형’, 주류보다는 ‘아류’, 보편보다는 ‘특수’로 읽혀져 왔다고 할 수 있다¹⁾.

그런 점에서 ‘지역’,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평가되고 그 가치와 의미가 보완 및 재정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와 지역문화를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중앙중심적인 평가, 기록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傳承資料들을 충분히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이 같은 기초자료들의 지속적 확보과정이나 확보량이 해당 지역사 연구의 학문적 질을 결정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한 지역의 문화성격을 규정할 만한 기초자료와 소재들이 과연 양적으로 얼마만큼 축적되어 있는지, 또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정리되었느냐와 그렇지 못했느냐가 지역사 연구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 이들 기초자료들의 광범한 수집이 선행된 뒤에 그 자료 중 어느 것이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어느 것이 보편성을 지닌 자료인가를 구분해 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기초자료의 확보과정이나 확보량은 지역학 연구와 그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2. 영광지역 기록유산의 조사

중앙중심적인 관찬 역사기록에서 지역사 자료는 매우 부족했고, 내용상 한계가 많았던 탓으로 과거 지역문화 연구는 주로 문헌자료가 검출되지 않아도 가능한 고고·미술사 관련 유적·유물의 확인과 민속이나 구전·민담에 집중되어왔고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문서 자료, 금석문 자료, 문집자료, 촌락생활사자료 등 생생한 지역 기록자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인식과 자료수집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동향과 관련지어 영광지역의 지역사, 향토사 자료 모음 작업은 가히 선도적이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곳이었다. 영광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앞선 1980년대에 많은 자료 발굴과 정리가 이루어 낸 지역이었던 것이다.

당시 영광향토문화연구회와 영광문화원이 그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특히 이기태 영광향토문화연구회장은 『영광향토사료』 총서를 20여 집이나 발간할 정도로 정열이 남달라 다른 지역의 향토사가들이 모두 칭탄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발제자도 80년대 중후반과 90년대 전반기 10여 년 동안 영광지역의 지역사 연구와 자료조사

1) 이해준,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 인문석학강좌, 세창출판사, 2015.

에 함께 하면서 이기태 선생의 정열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다.

영광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들게 영광지역의 역사기록 자료들을 찾고 이를 편찬·간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광향토문화연구회에 의하여 지리지·읍지류 작업, 시문집, 사료모음 등으로 靈光鄕土史料 총서를 20여 종이나 발간되었다(회지 『향맥』도 6집을 발간).²⁾

지리지·읍지류와 備邊司謄錄,各司謄錄,民狀置簿冊 등과 같은 관찬 기록자료들에서 영광 관련 자료들을 발췌, 소개한 이들 자료집은 영광지역사 연구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한편 靈光 壬亂史料集과 韓末 靈光義兵史料集과 같은 지역 의병관련 인물자료들을 집약 정리하기도 하였고, 영광문화원에서도 많은 자료 정리 작업을 하였다. 발제자는 1988~1990년에 전남지역의 향교와 서원 사우를 전수 조사하였는데 그때 영광지역에서 자료조사를 하게 되었고, 한편 이 시기 영광문화원에서도 지역의 역사문화자료 정리에 노력을 하였고, 필자는 이러한 영광지역 기록자료 정리 작업에 적지만 인연을 가지고 동참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런가하면 鄭尙驥의 『農圃問答』(靈光鄕土史料 18집, 1989)과 『靈光 南極齋 四百年』(1992) 발간과 자료 정리, 영광 『민장치부책』의 번역과 해제(1994), 영광김씨 중앙종친회에서 기획한 『金審言과 靈光金氏』 학술회의와 책자 발간(1994), 수은 강항과 내산서원 관련 연구, 그리고 영광의 노래와 글모음 작업(靈光鄕土史料 21집, 1992), 영월신씨 고문서 조사 등등이 특히 기억이 남는다.

이러한 작업 중 지금도 가장 기억에 생생한 조사·정리 작업은 영광 남극재의 문서 정리와 영광 『민장치부책』의 번역과 해제 작업이다.

『영광 남극재 4백년』(영광남극재노인회, 1992)은 남극재에 소장된 1602~1872년의 영광 射契(18건)과 1796~1929년의 영광 老人契(8건) 등의 자료를 해제와 함께 영인, 번역한 자료집이다. 靈光 南極齋는 임진왜란 이전인 1587년(宣祖 20년)에 창설된 영광지방 관리들의 상부상조 조직이었던 射契(社契)의 전통을 계승하여, 1796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태동되는 老人契(老契, 혹은 老所契), 그리고 1920년의 毓英契, 1933년의 武靈詩社, 1934년의 崇老契, 1951년의 春秋契, 1954년에 조직되는 正風會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직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수록 자료로는 1602년의 『사계좌목』에서 1872년의 射契案에 이르기까지 射契 자료 18종, 1796년의 『老契舊案』에서 1929년의 『영광 노인계안』에

2) 제1집 『영광향토지』(1985), 제2집 『초정유고집』(1985), 제3집 『영광의 설화와 민요』(1986), 제4집 『영광 한시선집』(1987), 제6집 『영광향교지』(1988), 제7집 『영광의병실기』(1988), 제9집 『농포문답』(1989), 제11집 『미천당유고』(1990), 제12집 『영광 한시선집』(1990), 제13집 『영광 임란사료집』(1991), 제15집 『영광의 노래와 글』 1호(1991), 제16집 『영광읍지』(1991), 제17집 『영광의 루정』(1992), 제19집 『영광의 노래와 글 모음』 2호(1992), 제21집 『영광 남극재 400년』(1992), 제22집 『비변사등록』-영광자료-(1992), 제23집 『각사등록』-영광자료-(1993), 제24집 『영광의 노래와 글 모음』 3호(1993), 제25집 『영광 민장치부책』(1994), 제26집 『한말 영광 의병사료집』(1995) 등.

이르는 老人契 자료 8종, 기타 노인회 활동자료로 『毓英契案』(1920) 등 7종 등 모두 33종의 자료와 제영문 자료 30종을 수록하고 있다.³⁾

『영광 民狀置簿冊』은 1870년, 1871년, 1872년과 1897년의 4년분, 모두 26책의 자료가 남아 있어 영광지역의 19세기 말 사회 실상과 민중의 생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전통적인 사회체제 말기에 모습을 엿보게 되는데, 민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부세 행정과 관련된 民願事項, 민중의 갈등으로 노비, 토지, 상속, 부채, 묘지, 토호의 침탈문제 등과 신분 문란 등이다. 그리고 공동부세의 운영문제나 부역의 부담과 관련된 사항도 많으며, 社首, 面任, 齋任, 有司, 公員, 色吏 등과 같은 중간관리인들인 중간 침탈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고, 묘지나 임야, 채무문제, 작인과의 관계 등등도 있다. 특히 1897년의 민장치부책에서는 향약에서 올린 소장이 무려 17건에 달하여 흥미롭다.⁴⁾

그리고 안승준 선생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영광 영월신씨 신응망 종가 고문서의 조사도 잊혀지지 않는다. 영광읍 입석리 소재 영월신씨가 고문서는 1994년에 조사되었는데, 당시 영광지역에서는 영월신씨뿐만 아니라 군남면의 延安金氏 및 南平文氏 고문서를 함께 조사했다. 영월신씨 소장 고문서는 타지방 고문서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예컨대 分財記, 土地賣買文書, 戶籍, 18,9세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의 農業經營關係文書, 冠婚喪祭文書 등은 자료의 집중도 면에서, 그리고 타 문서들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이다. 이들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여 『영광 영월신씨 신응망 종가 고문서』(고문서집성 107,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로 간행, 학계에 배포하였다.

1994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월신씨와 함께 군남면의 延安金氏家 고문서가 2013년에 『영광 연안김씨 고문서 I·II』(한국학중앙연구원, 2013)로 발간, 배포되었고, 이들 문서의 성격에 대하여는 허원영의 「영광 외간 연안김씨종가의 가계와 고문서」에서 상세한 성격과 의의가 정리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학 호남문화진흥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사 발굴하여 정리 중이며, 바로 그 내용을 오늘 학술대회에서 조미은은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것이고, 세부 자료를 분석한 노인환, 김영철, 정택근의 연구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자는 이러한 괄목할 조사와 연구의 진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찬사를 보낸다.

3) 이해준, 「영광 남극재의 연혁과 자료의 성격(해제)」, 『영광 남극재 4백년』, 영광 남극재노인회, 1992

4) 이해준, 「19세기 후반 영광지역의 민중생활사 자료(해제)」, 『靈光 民狀置簿冊』, 영광향토문화연구회, 1994

3. 지역 기록자료 체계와 연관성

1) 소장처별 지역 기록유산

대부분 지역 기록유산의 조사는 소장처별 조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대별 조사나 분야(주제)별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것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재확인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만약 기존의 광역적인 기초자료조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같은 계획의 수립은 무모하다고 보여진다.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사 자료들이 보존되거나 전승되는 과정은 대개 자료의 작성한 주체(개인이나 집단, 조직, 기구)에 의해 보존된 것과 자료가 주로 활용되던 관련 기구, 그리고 이들 자료와 관련하여 가장 참여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 개인에 의해 보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는

- 鄕校·書院·祠宇
- 樓亭(洞閣)·旌閭
- 宗家와 齋室
- 寺刹
- 개인소장자료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추적하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자료의 보존연유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련 유적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자료를 추적하면 관련 자료의 집중적인 수집을 기약할 수 있고, 한 조사대상(유적·조직·집단)의 계기적인 변화나 관련 자료의 범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⁵⁾

(1) **향교·서원(사우)** : 향촌사회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는 소장처가 바로 향교와 서원(사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지방사회는 공통적으로 사족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향교나 서원(사우)는 바로 사족들의 집합소이자 향권의 주된 진원지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향교에 소장된 자료들은 크게 향교와 직접관련 된 자료들과 향교가 향권 내지는 사족들의 집합소로서 기능함에 따라 소장되게 된 자료로 나누어진다. 전자에 해당되는 자료들로는 모든 향교에 거의 공통되는 성격으로 ① 유생안(교생안)·집사안·선생안, 각종 절목·완의·규약 등의 조직운영에 관련된 자료, ② 전답안·노비안 등 경제관련 자료, ③ 향교지와 기문·금석문류로 향교 연혁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5) 이해준, 「지방사연구에 있어서 고문서자료의 활용」 『정신문화연구』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이해준·김인걸 외,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후자에 속하는 자료들은 각 향교마다 해당 지역에서의 위상과 관련되어 차이가 있으나 대개의 경우 공통적으로 조사되는 자료로는 ① 향안·향약·향규, ② 선생안, ③ 사마재·양사재 자료, ④ 관안·리안, ⑤ 호적·읍지 등이 있고, ⑥ 서원(사우) 훼손이후 해당지역의 서원(사우) 관련 자료가 이관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소장되는 지역인물의 문집류 자료가 적지 않게 소장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시대 지방의 사회사적 위상을 밝혀주는 자료가 서원(사우)에 의외로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개는 배향인물에 관련된 자료들이 중심을 이루지만 이들 서원(사우)에 소장된 자료들을 좀 더 세분하여 유형화한다면 ① 배향인물에 관한 자료, ② 서원 연혁에 관련된 자료, ③ 서원의 조직(절목·완의·규약)과 경제기반(노비·전답)에 관련된 자료와 같이 서원(사우)에 직접 관계된 부류와, 직접적으로 서원(사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향촌사회 내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다른 사회조직과 교류된 자료들로 ④ 향교·향회·문중, 다른 서원들과 교류된 통문류 자료가 있다.

이들 서원(사우)자료들은 단순하게 보면 사족들의 권위기구로 그 성격이 규정되지만 이곳에 소장된 관련 자료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향촌사회구조의 변모와 이들 자료가 활용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배향인물에 관한 자료도 문중기반의 사회적인 성장과정과 관계되어 배향과정, 추배의 시기, 인물의 성격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서원(사우)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향촌사회구조의 시대별 변화상과 연결되게 되어 있다. 또 창건과정, 이건 및 중건과정, 사액활동 등은 그 지방사회에의 서원이 지닌 상대적인 위상을 점검하는 토대로서 주목된다. 한편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노비안·전답안 등 경제사 자료와 서원조직운영의 모습이 표현되는 완의·절목류, 그리고 타 사회조직과의 유대와 관계를 보여주는 통문·소지·명문 등의 고문서자료, 서원(사우)의 부설기구로 긴밀히 연관된 학계나 문계·족계류 조직문서들, 유안이나 선생안, 시도기 등도 그 같은 종합적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2) 樓亭(洞閣)·旌閭 : 누정과 정려·동각의 경우는 앞의 향교나 서원(사우) 경우처럼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지 않고, 또 자료의 비중에 있어서도 그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목되지 않는 소장처이다. 그러나 루정의 경우는 그 성격의 다양함으로 향촌사회의 여러 조직과 활동양상을 점검할 중요 유적이며, 정려의 경우는 마을단위 혹은 성씨단위로 축소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적이고, 동각은 촌락공동체 관련자료를 소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목될 대상이다.

누각과 정자는 거의 사족들의 집회소로 활용된 유적으로 조직의 성원과 조직목적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吟風弄月的 시회소로, 향약의 집회소로, 특정사회세력의 분파적 집회소 등으로 그 기능이 세분될 수 있고 구성원의 이해와 결집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유적이다. 이곳에 소장된 자료는 ① 연혁에 관한 자료, ②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료, ③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자료로 구분될 수 있다.

樓亭誌가 있는 경우 ①의 자료는 개괄적인 정리가 되어 있으나 그렇다해도 고문서나 정책문서, 그리고 현판·기문·금석문의 형태로 원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②와 관련된 규약·완의·절목·좌목 등과 ③에 해당할 전답안이나 치부책류의 관련문기도 보관된 경우가 있다.

동각은 크게 보아 누정과 같은 유적이지만, 누정의 건립주체와 관련인물들이 군현단위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범위로 구성되는데 비해 동각의 경우는 몇 개의 지연적·혈연적인 기반을 지닌 촌락(洞·里)단위로 건립,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로 이 동각에 동약·동계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구성원의 명단인 좌목(동안)과 운영과 조직에 대한 문서인 규약(입의·절목·동헌), 그리고 관리문서로 치부책과 전답문기, 물목기 등이 다양하게 검색되기도 한다.

충·효·열의 인물에 대한 포장의 형태로 정려문·정려각, 혹은 기념비의 형태가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인데 관련자료는 위의 유적과 다르게 관리자나 후손(종가)들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서원(사우)나 종가·재실에서 함께 발굴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적을 표적으로 하여 관리자나 문중을 탐문하여보면 所志나 通文, 薦狀, 復戶(혹은 면역)문서, 정려의 건립자료 등이 확보된다. 이들 정려자료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지방사회에서 유력성씨로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가 많아 주목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 宗家와 齋室 : 조선 후기의 문중자료들이 제일 많이 소장된 곳이 종가와 재실이라 할 수 있다. 족적인 기반의 변천이나 문중조직의 운영체계를 살필 수 있는 이들 문중자료는 서원이나 사우에서도 발굴되나 서원(사우)가 향권이나 사족간의 관계문서류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비해, 종가와 재실의 문서들은 문중내부적인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입양문제나 묘소의 수호, 문중조직과 재산운영의 기록, 족보나 문중기구에 관한 주로 사족집단의 친족적인 구조에 관한 자료를 이들 소장처에서 발견하게 된다.

종가와 재실(서재·서사·강사·정사)에 소장된 자료는 주로 문중관련 자료들로서 크게는 ① 문중조직에 관한 자료, ② 문중 제 기구의 연혁과 운영에 관한 자료, ③ 문중의 경제 기반과 그 관리에 관한 자료, ④ 기타 문중간의 교환 문서류들로 나눌 수가 있다.

문중조직문서로는 족계류(종계·종약·화수계·목족계)가 그 대표적이며 족보의 간행과 관련된 문서들이 부수된다. 이들 족계류 문서에는 규약과 좌목이 첨부되며 이를 통해 문중조직의 계기적인 변화상과 시대별 관심사항이 추출될 수 있다. 한편 계파별 분파의

내용을 전해주는 문서나 입양관련자료, 생활의절이나 규범에 관한 자료, 묘소와 제각(묘각) 관련 자료도 주목된다. 문중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문서로는 각 성씨별로 많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족보소·양로소·접빈소 같은 편의시설자료, 학계나 사초계·상부계류의 조직, 그리고 문중권위의 상징으로 보이는 정자나 서재·영당·정려 등의 연혁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특히 이들 자료의 경우 경제기반과 물질 토대를 치부책의 형태로 남겨둔 문중도 많으므로 이의 수집은 매우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종가의 경우는 이들 문중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자료가 많으므로 집중적인 검색이 필요한데 소장된 문집자료를 포함하여, 분재기나 호적자료(준호구·호구단자), 명문류 자료, 추수기 등의 경제적 기반에 관련된 자료들이 추적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관가의 완문이나 절목류 자료도 종가나 재실에서 많이 발견되며, 토지와 임야에 대한 분쟁문기로 소지류 자료도 많으며, 통문이나 품목 등의 사족간 교류자료도 볼 수 있다.

(4) 寺刹 : 사찰자료는 이제까지 향촌사회사자료라는 관점보다는 불교사상이나 불교사의 관점에서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사찰은 향촌사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간의 종교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구실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공물과 공역의 담당처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사찰의 자료는 비단 불교사의 자료로서만 주목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찰소장의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그 하나는 순수한 사찰관련자료(불교사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 내지 관청 혹은 지방의 유력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남겨진 자료이다.

먼저 순수한 사찰관련 자료로는 ① 사찰지나 기문·금석문 자료로 사찰의 연혁과 변천을 알려주는 것, ② 불교결사적인 조직의 자료, ③ 傳與文記의 형태로 남아 전하는 사찰재산문서, ④ 승려의 문집 등 문집자료가 있다. 다음의 국가나 지방관 혹은 지방사족과 관련된 자료로 紙役이나 刻板 등의 공역과 관련된 절목류자료, 승군·승병조직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다.

(5) 개인소장 자료 : 종가의 경우는 앞에서 별도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 외의 개인소장자를 소장자료를 논의하기로 한다. 물론 앞에서 종가를 거론하였지만, 종가와 지주가가 일치될 경우도 있고 지주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소장된 경우는 많다. 학자집안이나 향리집안의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개인 소장자료는 가계의 연원과 계통에 관한 자료, 특정 인물관련 자료, 경제적인 기반과 그 운영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가계와 관련된 자료로는 문집과 족보류가 있고, 인물사 자료로는 교지·교첩·분재기·호구기록 등의 고문서자료와 문

집·저술 등이 있다. 특히 문집 중의 상소문이나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상소문이나 잡저류 기록, 그리고 일기·연보·가훈(정훈·유서) 등은 사회사자료로 매우 중요시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경제관계 자료는 일반적으로 추수기나 전답기 등이 드러난 자료이지만 이를 연대와 분야별로 기록한 치부책이나 일력 등도 함께 주목할 자료이다. 특히 분재기나 호구기록, 명문, 소지류 고문서의 분석은 특정지역의 특정시대, 특정신분의 경제적인 기반을 점검할 유일의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2) 유형별·성격별 지역 기록유산

여러 분야의 역사자료가 비슷하듯이 고문서도 (1) 유형별, (2) 작성의 주체별, (3) 자료의 대상범위별, (4) 내용과 성격별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물론 분류의 문제는 자칫 자료의 성격을 어느 한 부면으로 축소시킨다거나 단편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구조를 전제하여 각 자료들이 그 같은 구조 속의 어느 부분에, 그리고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위상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기존에 고문서자료집을 간행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각 대학의 경우는 유형별 분류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장처별 자료모음이라 그런 것일 것이고, 만약 전통적인 군현을 단위로 하는 고문서수집과 정리를 할 경우는 분류체계가 약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해준·김인걸 외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작성 주체별)

100 국가의 지방통치 자료

110 통치기구 120 부세와 재정운영 130 對民지배와 民의 동향

140 행정실무계층(집단)

200 사족의 조직과 대민지배자료

210 향안·향규 220 향약·동약 230 서원·향교·기타 교육기관

240 문중조직 250 地主經營 및 奴婢

300 民의 조직과 생활자료

310 촌계·동계·두레 320 각종 契 330 생활사자료

400 기타자료

410 지리지·지도자료 420 寺刹자료 430 개인자료

두 번째로 참조할 수 있는 분류체계는 한국고문서학회의 『조선시대 생활사』의 분류,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의 『생활문화와 옛문서』가 시도한 분류이다.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 가정생활 : 친족과 혼인/상례와 제례/재산상속/여성생활
- 공동체생활 : 촌락생활/어촌생활/신앙과 놀이
- 신분별 생활상 : 관료생활/중인생활/향리생활/평민생활/노비생활
- 제도와 생활 : 교육제도/과거제도/법률생활/호적제도
- 경제생활 : 농업경제/서울 상업/지방상업

◇ 국립민속박물관, 『생활문화와 옛문서』

- 생업 경제 : 농업 / 거래관행과 상공업 / 어염
- 의 식 주 : 의생활 / 식생활 / 주거, 건축
- 평생 의례 : 출산의례 / 관례 / 혼례 / 회갑 및 회혼례 / 상례 / 제례
- 신앙 의례 : 무속 / 동제 / 불교
- 교 육 : 조직과 운영자료 / 연혁 및 경제자료 / 교과서, 가정교육 / 교육의례
- 신분 사회 : 호적 / 신분 / 과거 / 관리임용 / 명령 및 보고 / 민원 소송 / 부세
- 가족 친족 : 족보류 / 문중자료 / 상속자료
- 촌 락 : 촌락조직 / 농업관련 노동조직 / 계조직
- 개인 생활 : 문집 / 연보 / 전기 / 행장 / 일기 / 유서 / 간찰 / 평생사주 / 백수문
- 기 타 : 가사 / 악보 / 승경보 / 남승도 / 윤도 / 천문도 / 경혈도 / 읍지 / 면지 / 지도 / 진법도 / 노정기 / 여행기 / 답산가 / 단방기 / 병록

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립민속박물관의 분류는 시·군단위로 향토사연구자들이 유전되는 고문서 자료를 정리, 전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분류체제 별로 시기별 배열을 한다면 그대로 지역사 자료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류방식도 유형보다 내용별 분류를 한 것이어서 주제나 소장처가 분리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예] 유교 문화 자료

- 유적별 : 鄉校, 書院.祠宇, 不祧廟.祠堂.影堂, 旌閭, 樓亭, 宗家.齋室, 書堂.精舍.書社, 墓所.墓碑.神道碑, 事蹟.功績.記績碑, 生家.遺墟址, 記念物, 其他
- 형태별 : 遺蹟, 思想·行績·著述, 古文書·典籍(文集), 金石記文, 民俗(儀禮, 衣食住), 人物, 마을(同族村落)
- 주제별 : 人物(학행, 사상, 충절, 저술, 학맥), 教育(향교 서원 서당), 組織(향약 동약 동계 족계), 儀禮(향교, 사우, 종가, 재실), 著名姓氏(종가, 마을), 追崇活動(신원, 명정, 증직, 시호, 추증)

[예] 촌락조직, 촌락생활 기록자료

- 촌락의 편제 자료 : 戶籍資料(호구단자, 준호구, 호적대장), 家座臺帳, 五家作統記
- 촌락조직 자료 : 洞契·洞約(立議, 完議), 立議 立案, 洞契案, 座目, 上下合契(上契案과 下契案), 洞契置簿冊. 村契와 두레(동제나 당산제 자료, 결산서, 치부책 전여기, 수조록, 두레 進賞冊), 기타 村落組織(農契·蒙利契·農具契·牛契·東床契, 書堂契, 松契, 喪輿契와 喪契, 喪布契, 爲親契 등)
- 촌락의 사회경제 자료 : 量案 田畝案, 奴婢案, 保奴案, 明文과 分財記, 完議·節目, 山訟 立案, 洞契收租錄, 각종 契(雇馬契·軍布契·戶布契), 農家日記, 秋收記(禾穀記·糧米記·秋監記·打租記·用精記)
- 친족 및 개인자료 : 族契(종계·종약·화수계), 宗契日記, 門中置簿冊類, 각종 기구(養士齋, 講學所 등 義分庫, 接賓所, 養老所, 營建所·碑廳), 人物 表彰記錄

4. ‘쓰여지지 않은’ 지역자료들

1) 지역정체성 지닌 「민중생활문화」 자료조사

‘쓰여진 역사’와 ‘역사’의 문제

‘기록되지 않은 자료’인 민중문화 = 역사학과 민속학의 만남

과거의 국가사, 역사기록들이 배려하지 않았지만 민중생활문화와 그 변천사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고 형태와 색깔이 다르다. 그런가하면 지배층 중심의 관찬 기록물들에서 보여지는 생활사의 모습들은 보편적인 모습이기보다는 예외적이고 돌연변이적인 것일 경우가 많다. 중앙지배층의 시각에서 왜곡·편향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민중의 생활사를 뒷받침할 민중들 ‘자신의 기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쓰여지지 않은 자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적 특색을 간직한 생활문화의 실체로 다양한 자료의 발굴과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역사민속학회가 처음 창립될 때 기본 화두는 ‘민속학의 몰 역사성’과 ‘역사학의 민중문화 방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성과 대안으로, 역사 속에서 민중의 존재와 그들의 생활문화가 중심 화두로 등장하게 되고, 연구분야별로 다각적인 민중생활사 연구방법론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접학문(자료)과의 학제적 연구, 종합적 문화해석의 과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그 기대를 관련 연구자들은 역사민속학회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였었다.

이들 ‘기록되지 않은 자료’인 민중생활문화들은 지역성을 생생하게 반영하며 전승된 자료들이다. 기존에 정리 조사되었던 민속문화를 포함하여 지리나 환경, 생태 등의 문제도 함께 정리가 필요하다. 이들은 한 지역의 문화가 성장·발전해온 배경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의 연구는 단순한 산, 강, 하천, 도로 등의 이름과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천과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물의 변화, 교통과 도로의 변천, 행정구획의 변천, 하천·관개시설의 변화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민속놀이나 의례에서도 우리가 관심만 기울이면 모든 두레의 범위라든가, 기우제·결굿의 범위, 상여·무당·서당·시장권을 통해 생활문화권의 특징과 변화를 밝힐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변화 발전해온 생활문화들이 5일장과 옛길, 통혼권과 문중조직, 촌락운영질서와 생활양식, 토속음식과 특산물, 일 년의 민속의례와 놀이문화, 생활도구와 토속어 등등 그 소재는 너무도 다양하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거의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자료에 대한 본격적, 적극적인 조사 정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들의 조사와 정리에 역사학자만이 아니라, 지리학·민속학·사회학·인류학·생태학 같은 인접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 전통마을의 생활문화들

- 환경과 생태, 지리 : 취락입지와 농지
산, 하천, 도로, 기타 주요 지명
지명, 풍수, 설화
- 민속과 생활 문화 : 신앙, 의례, 세시풍속
지명, 설화, 생활사
놀이, 음식과 언어
- 생활공동체 조직 : 혈연, 친족조직 : 족계, 화수계, 문중계
이념, 지배조직 : 동계, 동약, 향약
생활공동체조직 : 대동계, 촌계(당제, 동린, 농약, 기우제),
두레, 초군(樵軍), 상여계, 서당계, 송계,
마을조직 및 기록
- 생활문화 공간 : 장승과 선돌, 당산나무, 산제단, 마을 숲, 서낭당
상여집, 그네 터, 빨래터, 물레방앗간, 골목길, 우물
모정, 정자, 서당,

2) 근·현대사 자료와 구술사(생애사)

개항기의 시장이나 갑오동학농민전쟁, 한말의병, 3·1운동, 농민운동, 학교 및 지역단위 기관발달사 등등 일제-해방 이후의 사실들은 지역사로서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들이다. 물론 전문연구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전 국가적인 구도에서 많이 진행되었으나 지방자료의 발굴에는 인적·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관심이 적고, 또 각 지역의 사회구조적인 성향과 기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연구자의 편향적인 시각이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이런 근·현대사 자료를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학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구술사, 생애사] 같은 자료 동원 방법이 가미되면서 좀 진전이 이루어지지만, 전국적인 조사이어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근·현대 지방사자료는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작성하였는가에 따라 유형과 내용, 그리고 역사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지방사의 전체적 구조 속에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남겨진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또 각각의 자료들이 어떠한 자료의 체계 속에 위치하느냐는 사료의 가치를 점검하는데 우선적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생산되었으며, 어떤 성격(내용)의 내용이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근·현대 지방사료 중에서 공공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소장처별, 유형별, 분야별로 구분되기도 할 것이고, 소장처는 아주 다양하여 행정, 사법,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언론, 문예, 체육 등등이 서로 다르다. 또 자료의 유형도 기록자료(문서·도면·대장), 구술사자료(채록·녹음), 사진·영상 자료, 유물·유적 자료, 기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편 공공기록물의 경우도 문제이지만, 사기록의 경우에는 자료 정리의 시급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사실 근·현대사 사료는 지방에 산재한 경우가 많고, 관변자료 보다 지방의 민간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 공공기록은 대개 '선택된 결과'만을 자료로써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미건조한 자료일 경우가 많다.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의 자료들'이 추가·보완되어야 하며, 그 자료들은 대부분 사기록이나 개인 소장 자료로 남아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기록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게 하는 자료가 사기록물일 수 있으며, 공기록이 알려주지 않는 그 이면의 살아있는 숨소리를 사 기록물은 말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시급한 발굴과 조사, 수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구술사나 개인생활사 부면의 자료 정리문제이다. 근·현대시기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살아왔던 삶과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우리의 생활문화는 과거 수백 년보다도 최근의 100년 사이에 더욱 커다란 변천을 거듭하여 왔고, 당장 오늘도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개인생활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한 인물을 우선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상인물의 선정기준은 부면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① 50~60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토박이,

②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 ③ 객관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는 사람, ④ 생활사의 정리를 위해서는 생업과 직결된 생산층이나 여인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활사의 정리에 있어서 시골장터의 토박이 장사꾼이나 몇 대를 계속하여 家業을 이어나가는 경우, 나루터 뱃사공, 농악대의 상쇠, 대서소주인, 노랫꾼 등등 대상 인물은 수없이 많으며 이를 통해 생생한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해준 발제관련 논저]

- 1991, 『생활문화와 옛문서』(국립민속박물관, 책임편저),
 1993,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민족문화사)
 1999, 『역사속의 전라도』(다지리)
 1999,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저)
 2001, 『지역사와 지역문화론』(문화닷컴)
 2002, 『지역사연구의 이론과 실제』(국사편찬위원회, 책임연구)
 2003, 『근 현대사窓 열기』(국사편찬위원회, 책임연구)
 2006, 『전통사회와 생활문화』(방통대출판부, 공저)
 2014, 『지역문화유산의 조사』(공주대학교출판부)
 2015,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인문석학강좌, 한국연구재단, 세창출판사)
 2018, 『산꼭대기에서 낚시질하기』(공감투데이)
- 1990, 「조선후기 동계·동약과 촌락공동체조직의 성격」, 『조선후기향약연구』, 민음사.
 1993,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 2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5, 「역사기록과 생활문화자료」, 『향토사의 길잡이』,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수서원.
 1997, 「지역박물관과 지역사자료 정리」 『박물관학연구』 2, 대전보건대.
 2001, 「생활사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근 현대 지방사료 수집의 방향과 과제」 『웅진문화』 14,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1, 「지역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호서사학』 30, 호서사학회.
 2003,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 한국역사연구회
 2003, 『근·현대사窓 열기』, 국사편찬위원회(책임연구)
 2006, 「농촌 전통지식자원으로서 구전자료의 가치」 『향토사연구』 18,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6, 「조선후기 촌락문서의 생산과 관리」 『고문서연구』 28, 한국고문서학회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2015, 「역사민속학과 기록자료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1992, 「영광 남극재의 연혁과 자료의 성격(해제)」, 『영광 남극재 4백년』, 영광 남극재노인회

1994, 「19세기 후반 영광지역 민중생활사 자료(해제)」 『靈光 民狀置簿冊』, 영광향토문화연구회

1994, 「조선시기 영광지역의 土姓勢力과 靈光金氏」, 『金審言과 靈光金氏』, 영광김씨 중앙종친회

2010, 「수은 강항과 내산서원의 문화콘텐츠 활용」, 『도서문화』 35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 주제발표 1 ▣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조 미 은(한국학호남진흥원)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헌의 현황과 특성

조미은(한국학호남진흥원)

<목 차>

1. 머리말
2. 소장처별 고문헌 현황과 특성
 - 1)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 2) 영광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종가
 - 3)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후손가
 - 4)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
 - 5)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3.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전통마을의 해체 위기, 기성세대의 부재 등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빠른 속도로 멸실되어 가고 있다. 또한 자료의 소장 내력이라든가 문종과 지역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계승에 대한 인식조차 사라져 가고 있다. 호남지역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곧 자료 관리의 고충으로 이어졌고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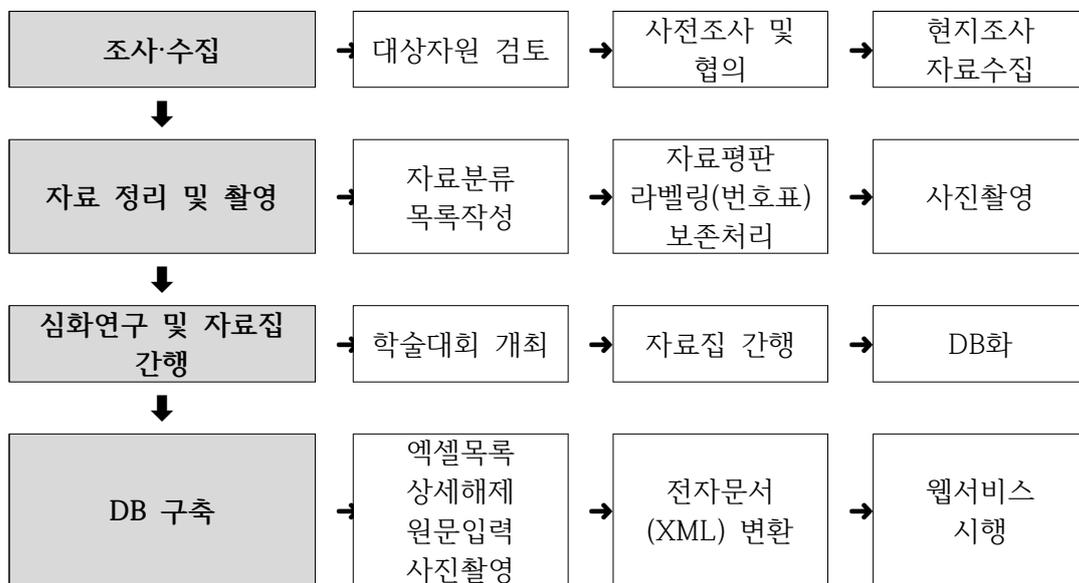
2017년 9월에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법인설립을 승인받았고 2018년 4월에 개원하였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호남지역에 산재한 기록유산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을 진행하였다. 2019년 10월까지 조사 18,557점, 수집 12,805점으로 이 가운데 11,460점을 기탁받았다. 현재 수장고에 약 1만 천여 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자료 심의를 거친 후 기탁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광지역의 기록유산 자료는 총 545점이다. 불갑면에 영성정씨 정호남후손

가와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종가, 묘랑면에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와 운당리 제주양씨가, 백수면에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후손가, 군남면에 전주이씨 지평공(이종열)후손가 등 7개 소장처 자료이다. 자료 유형별로 보면 고문서 369점, 고서 167점, 유물 9점으로 낱장 형태의 고문서와 전적 형태의 고서 그리고 생활 유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부 자료는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자료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이후 문화재청과 영광군의 지원을 받아 자료의 보존처리 및 도난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위 자료들은 조사·수집, 정리·보존, 심화연구 및 자료집 간행, DB 구축 등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정리·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정리·보존 체계



먼저,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전에 대상자원을 검토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사전협의를 거친다.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의 전래 경위, 자료 유형 및 수량, 보관 방법 및 보존 상태, 주변 지역 관련 유적·유물 등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일지를 기록한다. 아울러 자료 소장자 또는 관계자 면담 및 족보 자료 파악을 통한 문중의 가계, 역사, 주요 인물 등 기초조사 진행하여 기초자료를 최대한 확보한다. 예를 들면, 현대에 간행한 족보 자료, 문중 잡지 및 간행 자료집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현지 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자료의 전래 경위와 가계, 인물 등 기본정보를 검토한다. 가급적 가계도와 인물 정보는 미리 작성해 둔다. 유형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보존 상태가 불량할 경우 그에 알맞은 보존처리(건·습식평판)

를 진행한다. 목록작성은 유형별 분류에 따라 엑셀 형식으로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번호표를 부착한다. 그리고 고해상도 컬러이미지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 이는 원본 자료의 열람을 최소화하여 원본 자료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활용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기초 자료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자료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자료집을 간행하고, 전문연구자 및 학술 단체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집적한 기초데이터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웹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자료를 집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여 활용 확산을 유도하고자 한다.

영광지역 조사·수집 자료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료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고 향후 자료집을 간행하고 DB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소장처 별로 정리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소장처별 고문헌 현황과 특성

1)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1) 조사 및 수집 경위

2018년 9월 초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선생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자료 소장자(정광석, 69세)께 연락을 취하여 출장 일정을 조율하였다. 9월 14일 금요일 조사·수집 팀원(고정서, 김명화, 박미향, 박선미)들과 함께 소장처를 방문하여 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생곡리 재각, 집터, 사패지 등 관련 유적지 또한 소장자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성정씨 고문서의 존재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2018년에 개최한 테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되었다. 당시 정조대 무신으로 발탁되어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한 정호남 관련 임명문서 30여 점을 조사하였고 전시 도록에는 정호남 관련 전령 3점과 고신 1점을 수록하였다.¹⁾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사료 조사 차원에서 해당 자료를 조사하고 사진 촬영을 한 바 있다. 이후 자료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한 소장자가 문화재 자료로서 가치 평가 및 보존관리를 위해 영광군에 자료조사를 문의하였고, 영광군에서는 김희태선생님을 통해 한국학호남진흥원에 자료조사 및 위탁관리 부문을 협의하였다.

소장 자료는 임명장, 과거합격증서, 청원서, 족보, 윤음, 계안 등 정호남 및 그의 후손대에 생산된 것이었다. 현대에 작성된 축문 및 족보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수집한 자료

1) 수원화성박물관, 『무향 수원 상무 전통을 잇다』, 2018, 80-83쪽. 이 전시는 수원화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18년 5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개최되었다.

량은 52점이다. 이 자료는 원래 큰집에서 보전하던 자료였으나 큰 형님이 사망한 이후 차차 계열인 소장자에게 이관되어 관리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 이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전승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소장자는 훈련공파 종회장(장단공 종회 회장 겸임)으로서 종중의 제사, 제각, 선영, 소장 고문헌 자료 등 문중 대소사를 도맡아 관리하고 있다.

자료의 보존 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이 가운데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전시 관련 자료 30여 점의 경우, 평판작업 및 사진 촬영까지 진행되었고 중성지 보관함을 별도로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어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그림 2>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현지 조사



자료조사 및 소장자 면담

보관 자료 확인

자료조사 모습 및 자료 보관상태

2) 어릴 적부터 큰집에 선조의 문서가 있다고 구두로 전해 들은 바가 있었으나 그 실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조카에게 문서를 찾아보라고 하였고 현재 이 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후 큰집이 이사 가면서 두고 간 장단공 관련 자료, 광사재 관련 성책고문서를 직접 수습하여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소장자 정광석씨는 정호남과 관련된 자료를 일괄 모으고 있다. 당시 정호남이 재직했던 지역들을 모두 돌아다니며 조사하고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진해의 읍성, 수원의 화성, 파주, 태안, 전주, 진주, 창원 등을 답사했고 장단은 북한지역이라 가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차후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였다.



楔案

생곡리 齋室 우측 先山

廣思齋

생곡리 舊 齋室

(2) 가계와 입향 배경

영광에 세거하고 있는 영성정씨는 압해정씨에서 분파된 성씨 가운데 하나로 始祖는 丁德盛이고 中始祖는 丁晉이다. 派祖인 訓練公 丁克勤은 靈城君 丁贊의 직계 종손이며, 압해정씨의 직계 종가이기도 하다. 영성정씨는 훈련공 이전인 영성군 정찬부터 영광에 세거하고 있었으며 시제는 매년 양력으로 4월 15일에 모신다. 6세 정극근이 세종대에 좌리원종공신으로 영광 불갑면 생곡리 및 응봉리 토지 일부를 하사받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선영은 생곡리에 있으며 훈련공 정극근부터 그 이하 후손들이 모여져 있다.

<표 1>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 가계도³⁾

始祖	德盛	
中始祖	晉	
1세		
2세	時胤	
3세	贊	영광 입향조
4세	光起	
5세	寅	
6세	克勤	좌리원종공신, 사패지(생곡리 등)

3) 靈光(靈城)丁氏族譜編纂會, 『靈光(靈城)丁氏族譜』, 回想社, 1995 참고.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7세		淑	
8세	2子	碩弼	
9세		世光	
10세		琦	
11세	3子	希說	
12세		鎭	
13세	2子	名遠	
14세		穗	
15세		會一(1663~1696)	
16세		致亨(1693~1760)	
17세	2子	好南(1736~1812)	불갑면 응봉리 居
18세		海源(1769~1815)	
19세		起和(1796~1865)	
20세		本鉉(1818~1884)	
21세		永燮(1850~1933)	
22세		仲秀(1896~1952)	
23세	2子	炳南(1922~2012)	
24세	2子	廣奭(1949~2019, 자료 소장자)	

훈련공 정극근은 丁寅의 큰아들이며 1389년 2월 15일 영광에서 출생하셨다. 과거에 급제하여 오위도총부 도총과에 올랐다. 세종대에 좌리원종공신으로 영광 불갑면 생곡리, 응봉리 일대의 전답 15결을 사패로 받았다. 1437년 10월 11일에 사망하였으며 묘소는 전남 영광군 불갑면 생곡리 물가정에 있다. 아들 丁淑은 곡성현감을 지내셨으며, 묘소 또한 勿柯亭에 있다. 마을 이름은 정숙의 호를 따라 물가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영광 불갑면 생곡리 선영은 훈련공 이후 자손들이 모셔져 있다. 정인, 정극근, 정숙 3분은 생곡리에 있는 재각인 廣思齋에 위패를 모시고 있다. 광사재는 역사가 깊은 재실로 1999년 10월에 새 건물로 복원하였는데 그 뒤편에 아직 舊 재각이 그대로 남아있다. 재각 뒤편에 있는 산이 훈련공 정극근이 세종대에 하사받은 곳이다.⁴⁾

정호남(1736~1812)은 훈련공의 11대손으로 자는 聖懿, 호는 晩就軒이다. 1769년(영조 45) 무과에 급제한 후 어영청의 哨官, 鎭海縣監, 晉州營將 등을 역임하였다. 수원 화성 성역 당시 監董으로 임명되어 453일을 일한 공로로 長湍都護府使를 지냈다. 이후 정호남은 수원으로 와서 창룡문을 중심으로 수원화성의 동쪽을 방어하는 부대를 이끄는 東城將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수원 화성 동용성 축조에 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華城城役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묘소는 영광군 묘량면 월암리에 있다. 밋자리가 좋다

4) 몇 년 전에 종회 토지 3,400여 평이 타인 명의로 넘어가 근거당이 설정되어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일이 있었다. 이때 훈련공 종회장 정광석께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없이 1년 6개월 만에 승소하여 문중 재산을 되찾았다고 하였다.

고 하여 정호남의 묘소만 묘랑면 월암리에 있었는데 이후 혼자 모셔져 외롭다고 하여 증손자 丁本鉉이 묘랑 선산으로 이장하여 모셨다고 한다.

(3)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내용

소장 자료는 총 50종 52점이다.⁵⁾ 주로 정호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임명장, 과거합격증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정호남 후대에 생산된 청원서, 계안, 윤음 등이 있다.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령류 27종 27점, 소차계장류 6종 6점, 첩관통보류 6종 6점, 증빙류 1종 1점, 서간통고류 1종 2점, 치부기록류 7종 7점 등 고문서 50종 49점과 고서 1종 1점, 근현대문서 1종 2점으로 확인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장 자료는 대개 큰집으로부터 전래 받은 것이며 이 가운데 치부기록류 및 근현대문서 9점은 소장자가 부친(정병남)으로부터 전해 받은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소장 자료 현황⁶⁾

자료유형	자료명	종수	점수	비고	소장경위		
고문서	교령류	紅牌	1	1	丁好南	큰집 전래	
		告身	22	22	丁好南		
		差帖	1	1	丁氣和		
		恩賜狀	2	2	丁好南		
		綸音	1	1	丁好南		
	소차계장류	所志	6	6	丁彝鉉, 丁仁和, 丁玉鉉		
	첩관통보류	帖	1	1	丁好南		
		傳令	5	5	丁好南		
	증빙류	準戶口	1	1	丁範鉉		
	서간통고류	簡札	1	2	鄭休泰		
	치부기록류	靈城丁氏家乘	1	1	靈城丁氏		부친 전래
		廣思齋門中會議錄	1	1	靈城丁氏		부친 전래
		廣思齋喜捨芳名錄	1	1	靈城丁氏		부친 전래
		用下記	2	2	靈城丁氏		부친 전래
		契案	2	2	靈城丁氏		부친 전래
고서	字恤典則	1	1	內賜本 (1783년 11월 12일)	큰집 전래		
근현대문서	土地賣買契約書	1	2	丁炳南	부친 전래		
합계		50	52				

5) 현대에 작성된 축문 및 족보 자료는 제외하였다.

6)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소장 고문헌 목록' 참조.

교령류는 주로 정호남의 무과 합격증서 및 임명 관련 문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769년(영조 45)에 한량의 신분으로 무과 병과 제96인으로 급제하면서 발급받은 흥패와 급제 이후 정조대에 여러 군직에 임명되면서 발급받은 고신 사례이다. 또 정조가 영조의 존호 가상을 기념하면서 수문장 정호남에게 음식을 하사하면서 함께 내려준 은사장이 있다. 1797년(정조 21) 정조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내린 윤음 사례가 남아 있는데, 이 자료는 윤음의 내용을 정호남이 직접 쓴 것으로 신미년 12월에 5세손 丁蘭秀가 着墨한 사례이다.

소차계장류는 정호남의 후손 대에 즉 철종~고종대에 정호남의 묘지기 탈역과 관련하여 영광군수에게 역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소지 사례이다.

첩관통보류는 장용영 대장이 정호남을 수원 화성 축조 관련 東城將 등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임명 전령과 영광군수가 현릉원 동지 제향시 都預差로 임명되었으니 致齋하라는 내용으로 발급한 첩 사례이다.

증빙류는 1876년 丁範鉉의 준호구 사례로 정범현(59세)은 정호남의 증손이다.⁷⁾ 당시 영광군 불갑면 봉암리에 거주하였고 부인 파평윤씨(56세), 아들 丁永周(27세)⁸⁾, 며느리 금성정씨(24세)와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서간통고류는 기○년 4월에 鄭休泰가 丁永燮에게 보낸 간찰이다. 정영섭은 정호남의 고손(高孫)으로 손자인 정병규(丁炳奎, 1917~1979)와 정휴태의 손녀와의 혼례가 잘 성사되어 기쁘다는 마음을 전한 내용이다.

치부기록류는 영성정씨 가승, 광사재 관련 문중회의록 및 회사방명록, 용하기, 계안 등 문중 사무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자료가 주를 이룬다. 「영성정씨가승」은 시조 丁德盛부터 23세 丁炳圭까지 영광의 영성정씨 가문의 계보를 기록해 둔 필사본이다. 「광사재문중회의록」과 「회사방명록」은 불갑면 생곡리 선영에 있는 광사재를 운영하고 선산을 관리하면서 작성해 둔 기록이다. 그리고 「용하기」는 해방 이후(1952)부터 최근(2000)까지 광사재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기록한 회계장부이다. 계안의 경우, 「長湍公稟案」과 「典翰公契案」으로 장단공 정호남(1736~1812)과 전한공 丁世光(1476~1546) 관련 계안 자료이다. 일제강점기(1922)부터 최근(2001)까지의 모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근현대문서는 1993년에 정병남이 불갑면 응봉리에 있는 논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 거래계약서이다. 이 자료는 「廣思齋門中會議錄」에 첨부되어 있던 자료이다.

고서는 1783년 정조가 반포한 『字恤典則』으로 흉년을 당해 결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이다. 정조가 1783년 11월 12일에 수문장 정호남에게 하사한 內賜本이다.

7) 족보상에는 丁本鉉으로 수록되어 있다(『靈光(靈城)·昌原(後昌原)丁氏族譜』, 1995, 67쪽).

8) 족보상에는 丁永燮으로 기재되어 있다(『靈光(靈城)·昌原(後昌原)丁氏族譜』, 1995, 307쪽).

이상과 같이,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소장 자료는 영광군 불갑면에 정착하여 세거한 영성정씨 문중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영조대 무과에 급제하여 정조대에 수원 화성 축조 및 장용외영 관련 관원으로 활동한 정호남 관련 문서들이 주목된다. 일년을 넘게 수원 화성 성역에 감동으로 참여하였고, 그 공로로 장단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또 수원으로 발령받아 수원 화성의 동쪽을 방어하는 지휘관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화성성역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여러 관찬 사료에도 수록되어 있다. 현릉원 동지 제향시 정호남을 도예차(都預差)⁹⁾로 임명하는 경우는 관찬사료 등에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 문서 사례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 또 다른 문중에도 은사장의 실례가 있지만 정호남의 경우와 같이, 당시 어떤 배경에서 은사장과 함께 물품을 내려주었는지에 대해 추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정호남 관련 문서 사례는 정조의 인재 등용과 실재, 수원 화성 축조, 수원에 자리 잡은 장용외영 관원의 임명과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적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영광에 세거했던 정호남과 같은 인물이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하였고, 관직 활동 과정과 함께 무반으로 수령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과 정황 등에 대한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이다. 또 영성정씨 문중이 정호남과 같은 인물이 배출된 이후 지역에서의 문중의 위상 변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서 사례이기도 하다.

(4) 영광 영성정씨 정호남후손가 소장 고문헌 목록

ID	문서명	문서번호	발급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	紅牌	1	1769	英祖	丁好南	1769년에 丁好南이 武科 丙科 第 96인에 급제.	1	90.0	63.5
1	紅牌 (籤紙)	1-1	1769	英祖	丁好南	홍패 뒷면 왼쪽 상단에 붙어 있던籤紙. "閑良 丁好南 武科 丙 第九十六人" 이라고 기재되어있음.	0	51.5	4.0
2	告身	1	1778	兵曹	丁好南	1778년에 丁好南을 効力副尉 南道 參軍으로 임명함.	1	57.0	77.8
3	告身	2	1782	正祖	丁好南	1782년에 丁好南을 禦侮將軍 行 忠武衛副司果로 임명함. *右傍書: 仍資	1	49.6	30.3
4	告身	3	1783	兵曹	丁好南	1783년에 丁好南을 秉節校尉 忠武衛副司勇에 임명함. *右傍書: 守門將仍資	1	48.0	29.1

9) 제관 결원시 보충하는 역이며 별제 축문을 읽음.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5	告身	4	1783	正祖	丁好南	1783년에 丁好南을 宣略將軍 守門將으로 임명함. *背面: 兵吏金璉	1	56.9	80.9
6	告身	5	1783	正祖	丁好南	1783년에 丁好南을 宣略將軍 行忠武衛副司勇으로 임명함. *右傍書: 守門將仍資	1	51.7	30.4
7	告身	6	1784	正祖	丁好南	1784년에 丁好南을 宣略將軍 行甲山鎮管鎮東兵馬萬戶로 임명함. *背面: 兵吏金璉	1	57.1	82.4
8	告身	7	1787	正祖	丁好南	1787년에 丁好南을 宣略將軍 行訓練院主簿로 임명함.	1	57.4	77.6
9	告身	8	1788	正祖	丁好南	1788년에 丁好南을 宣略將軍 行訓練院主簿로 임명함.	1	58.2	81.0
10	告身	9	1788	正祖	丁好南	1788년에 丁好南을 禦侮將軍 行訓練院判官로 임명함. *背面: 兵吏金璉	1	52.8	70.3
11	告身	10	1789	正祖	丁好南	1789년에 丁好南을 通訓大夫 行鎮海縣監으로 임명함. *背面: 史吏朴聖浹	1	56.8	77.6
12	告身	11	1791	正祖	丁好南	1791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兼 晉州營將으로 임명함.	1	57.1	87.0
13	告身	12	1792	正祖	丁好南	1792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訓練院判官로 임명함.	1	58.8	85.8
14	告身	13	1793	正祖	丁好南	1793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忠壯衛將으로 임명함. *背面: 兵政吏金瑛	1	54.6	79.0
15	告身	14	1796	正祖	丁好南	1796년에 丁好南을 通政大夫 行長湍都護府使로 임명함. *背面: 史吏朴聖浹	1	53.8	73.1
16	告身	15	1796	正祖	丁好南	1796년에 丁好南을 兼 長湍鎮兵馬僉節制使로 임명함. *背面: 兵政吏金瑛	1	54.1	73.0
17	告身	16	1797	正祖	丁好南	1797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으로 임명함. *背面: 兵政吏金瑛	1	51.0	73.7
18	告身	17	1798	正祖	丁好南	1798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壯勇外營親軍衛將으로 임명함. *背面: 兵政吏金鏞[瑛]	1	54.1	72.3
19	告身	18	1798	正祖	金氏	1798년에 丁好南의 부인 金氏에게 淑夫人의 품계를 내림. *左傍書: 折衝將軍僉知中樞副使丁好男妻依法典從夫職	1	54.9	73.6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0	告身	19	1799	正祖	丁好南	1799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 兼 羽林衛將으로 임명함. *背面:兵政吏金瑛	1	54.3	75.5
21	告身	20	1803	純祖	丁好南	1803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 龍驤衛副護軍 兼 全州鎮中營將 討捕使로 임명함.	1	53.8	74.3
22	告身	21	1804	純祖	丁好南	1804년에 丁好南을 折衝將軍 行 安興梁鎮水軍僉節制使 兼 守城將 管餉將으로 임명함.	1	58.3	84.0
23	告身	22	1806	吏曹	丁海源	1806년에 丁海源을 通德郎으로 임명함. *左傍書:父折衝將軍安興鎮僉使丁好南前任長湍府使時巳十一別代加	1	55.7	64.6
24	差帖	1	1857	茂長縣監	丁氣和	1857년에茂長縣監이 丁氣和를 釋奠祭獻官으로 임명함. *左傍書:差定	1	51.0	43.6
25	恩賜文	1	1784	正祖	丁好南	1784년 3월 초6일에 正祖가 丁好南에게 蘇魚鹽[밴댕이젓] 二級을 하사함.	1	35.5	30.6
26	恩賜文	2	1784	正祖	丁好南	1784년 3월 초6일에 正祖가 丁好南에게 蘇魚[밴댕이] 一級을 하사함. *문서 하단에 갇진 7월에 英祖의 尊號를 加上한 일과 王世자의 책봉례를 거행한 경사스런 해임을 밝힌 추기가 있음.	1	35.6	30.7
27	綸音	1	1797	正祖	丁好南	1797년 1월에 正祖가 풍속 교화를 위해 내린 綸音. 각 지방의 수령들이 고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각자 판각하여 여러 판본이 있음. 이 문서는 정호남이 새로 글씨를 쓰고 판각한 다음 탁본하여 엮은책. *추기: 辛未十二月日五世孫蘭秀着墨 / *辛未: 1931년 *형태: 帖裝本(1帖8面)	1	35.3	24.0
28	所志類	1	[1854]	丁彝鉉	靈光郡守	갑인년 7월에 佛甲에 사는丁彝鉉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증조부 前行長湍府使公 單墓直의 減役을 요청함. 동월 14일 倉籍色에게 면제해 주라고 지시함. *족보상에는 丁本鉉으로 기재되어 있음. *추기: 佛甲瓦村朴春班 *상태: 배접.	1	71.2	37.7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9	所志類	2	[1874]	丁仁和	靈光郡 守	갑술년 3월에 佛甲에 사는 丁仁和 가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조부 前行長湍府使公 墓直의 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함. 동월 28일 마땅히 찾아서 처리하라고 지시함.	1	62.3	33.2
30	所志類	3	[1875]	丁仁和	靈光郡 守	을해년 3월에 佛甲에 사는 丁仁和 가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조부 前行長湍府使公 墓直의 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함. 동월 초4일 전례를 살펴 면제해 주라고 면임과 창적색에게 지시함.	1	65.3	32.5
31	所志類	4	[1884]	丁仁和	靈光郡 守	갑신년 10월에 佛甲에 사는 丁仁和 가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조부 前行長湍府使公 墓直의 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함. 동월 11일 전 례대로 처리하라고 향약소에 지시함. 課 文達鉉이 대리심을 한 사례임.	1	64.4	33.8
32	所志類	5	[1887]	丁仁和	靈光郡 守	정해년 9월에 佛甲에 사는 丁仁和 가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조부 前行長湍府使公墓 墓直의 역 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함. 동월 초4 일 연례대로 시행하라고 창적색에게 지시함.	1	66.7	36.3
33	所志類	6			丁玉鉉	경인년 12월에 佛甲에 사는 丁玉鉉 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증조부 前行長湍府使公墓 墓直의 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함. 동월 11 일 연례대로 시행하라고 창적색에게 지시함.	1	61.6	38.4
34	帖	1	1797	水原留 守	丁好南	1797년에 水原留守가 丁好南에게 내린 帖. 11월 초4일에 顯隆園冬至祭享 때 都預差로 선정하였으니 기한 전에 致齋하라고 지시함.	1	44.0	46.0
35	傳令	1	1797	壯勇營 大將	丁好南	1797년에 壯勇營大將이 前府使 丁 好南에게 보낸 전령. 정호남을 東城將에 임명하니 전령 이 도착하는 즉시 來現하라고 함.	1	51.6	61.0
36	傳令	2	1797	壯勇營 大將	丁好南	1797년에 壯勇營大將이 前府使 丁 好南에게 보낸 전령. 정호남을 壯勇外營左司把摠에 임명 하니 즉시 來現하라고 함.	1	61.3	76.9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7	傳令	3	1798	壯勇營 大將	丁好南	1798년에 壯勇營大將이 前府使 丁好南에게 보낸 전령. 정호남을 壯勇外營親軍衛左列將에 임명하니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來現하라고 함.	1	57.2	79.2
38	傳令	4	1799	壯勇營 別將	丁好南	1799년에 壯勇營別將이 一番將 丁好南에게 보낸 전령. 親軍衛의 春等 都試를 3월 15일에 설행하려고 하니 친군위 등처에 지시하여 모두 참여하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명함.	1	33.2	56.1
39	傳令	5	1803	壯勇營 大將	丁好南	1803년에 壯勇營大將이 前府使 丁好南에게 보낸 전령. 정호남을 總理營別驍士左列將으로 임명하니 맡은 바 임무를 다하라는 명령.	1	42.5	57.3
40	戶籍	1	1876	丁範鉉	靈光郡 守	1876년에 丁範鉉(59세)이 靈光郡에 제출한 戶口單子. 정범현은 정호남의 증손으로 부인 파평윤씨(56세), 아들 정영주(27세), 며느리 금성정씨(24세)와 함께 거주함. 사내종 興立(丙午生) 있음. *족보상에는 丁本鉉으로 기재되어 있음. *주소: 靈光佛甲面鳳巖里第一統第四戶 *상태: 배접.	1	32.5	56.0
41	簡札	1		鄭休泰	丁永燮	기○년 4월에 鄭休泰가 丁永燮에게 보낸 간찰. 정영섭은 정호남의 고손(高孫)으로 손자인 정병규(丁炳奎, 1917~1979)를 정휴태의 손녀에게 장가둠. 혼인 날짜가 길하고 절기도 좋아 근례(齋禮)를 잘 이뤄매우 기쁘다는 말을 전함. 새신랑과 정이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간다고하여 아쉽다는 말을 남김. *상태: 피봉 1건.	1	21.4	42.0
42	簡札皮 封	1-1		鄭休泰	丁永燮	기○년 4월에 鄭休泰가 丁永燮에게 보낸 간찰의 피봉.	1	25.4	5.7
43	靈城丁 氏家乘	1	[20세기]	靈城丁 氏		시조 丁德盛부터 23세 丁炳圭까지 영광의 영성정씨 가문의 계보를 필사해 놓은 가승첩. *상태: 1첩(38면).	1	8.0	6.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44	廣思齋 門中會議錄	1	[1959]	靈城丁氏		기해년 4월부터 경자년 10월까지 廣思齋 門中の 총회 회의록. *상태: 1책(20장). 6장까지 필사되 어 있음. *특징: 1993년에 작성된 토지거래 계약서가 끼워져있음.	1	20.4	19.0
45	廣思齋 喜捨芳 名錄	1	1959	靈城丁氏		1959년(단기 4292, 기해)에 廣思齋 수리 및 莎草를 위한 의연금 등을 희사한 사람들의 명단과 금액을 적 은 문서. *상태: 1책(7장).	1	19.6	18.0
46	[廣思 齋]用 下記	1	[1952]	靈城丁氏		임진년(1952) 11월부터 경술년 (1970) 3월까지 수입과 지출의 항목 을 기록한 회계장부. *내용: 收入秩, 用下秩, 放債秩, 支 出部 등 *상태: 1책(53장).	1	22.0	20.7
47	[廣思 齋]用 下記	2	[1970]	靈城丁氏		경술년(1970) 12월부터 경진년(2000) 6월까지 廣思齋와 관련된 수입과 지 출의 항목을 기록한 회계장부. *내용: 수입부, 지출부 등 *상태: 1책(71장).	1	23.6	28.0
48	五代祖 長湍公 稷案	1	[1931]	靈城丁氏		5대조 長湍公稷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 *重修記: 歲之辛未十二月日不肖五 世孫蘭秀謹記 *내용: 重修記, 凡例, 先尺記, 捧入 秩, 收入部, 放債, 用下記 등. *시기: 임술년 11월~1976년 3월 *상태: 1책(93장).	1	22.0	20.3
49	典翰公 契案	2	[1975]	靈城丁氏		典翰公契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문서. *시기: 乙卯 2月 21日~辛巳年 秋講 信時 *상태: 1책(46장).	1	30.7	29.0
50	토지매 매계약 서	1	1993	丁炳南	金成泰	1993년에 정병남이 김성태에게 토 지를 판매하면서 작성한 토지거래계 약서. *거래토지: 영광군 불갑문 응봉리답 66-2번지. *거래면적: 약411평(1,359㎡). *대금: 사백만 원. *중개업자: 김양호. *상태: 피봉 1건. *특징: 광사재문중회의록 속에 끼워 져 있음.	1	26.6	18.0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51	토지매 매계약 서피봉	1-1	1993	丁炳南	金成泰	1993년에 정병남이 김성태에게 토지를 판매하면서 작성한 토지거래계약서의 피봉. *원문: 應峰里六六의二畝 / 廣思齋汶中賣渡封 / 廣思濟門中水通畝을 ?同金成泰의개 賣數契約封 應峰里六六의二畝地畝	1	21.4	9.5
52	字恤典 則	1	1783	正祖		조선시대 흉년을 당해 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규정한 법령집. *판사항: 金屬活字本(丁酉字) *서지사항: 1책(15장), 四周單邊半郭 25.0×17.0cm, 10行18字, 上二葉花紋魚尾; 32.7×21.3cm *인장: 奎章之寶 *간기: 癸卯活人中外藏板 *주기: 한문, 언해수록	1	32.2	21.0

2) 영광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종가

(1) 조사 및 수집 경위

2018년 9월 19일(수) 오후에 팀원들과 함께 자료조사를 위해 광주 남구로 출발하였다. 오후 5시에 故 강진성 종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에 도착하였고,¹⁰⁾ 제보자이신 김희태 선생님과 강대의 사무국장님(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도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 영광내산서원보존회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등이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원 조사팀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와서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강항 종가 자료는 원래 영광 본가에 대대로 가전되다가 부모님 사후에 종손이 광주로 옮겨 보관해 왔다고 하였다. 종손은 집안 문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교직 생활을 계기로 집안 자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13대조 수은 강항과 관련된 신문기사, 연구논문, 일본 자료 등을 스크랩을 하거나 복사한 자료들이 고문헌 자료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소장 자료 가운데 일부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일본 측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압수당하여 불살라 없어진 것도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 이후 종가에서는 자료를

10) 당시 소장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56번길(남구 월산동 1034-2)이다. 고정서, 박미향, 박선미, 김명화 팀원이 함께 참여하였다.

11)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간양록』을 금서로 지정하여 불태운 사건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양록』에는 일본 장수, 다이묘 등에 대한 인물평은 물론 일본의 역학구도, 풍속, 가치관, 일본에 대한 방비책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존하기 위해 항아리에 넣어 감추거나 일부 자료는 다른 문중에 위탁 보관토록 하여 자료의 유실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수은 종가 자료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김덕진 교수 등 일부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케 적이 있었지만 일부 자료에 한해서 공개하였고, 자료 전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¹²⁾

종손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상자와 원통(도면통)에 담겨진 자료를 1층으로 옮겨 실사를 진행하였다. 낱장 문서는 플라스틱 원통함에 보관되어 있었고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는 각각 한지로 감싼 후 별도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감회요』 목판 2장 또한 별도 상자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외에 수은 강항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자료, 일본 자료(복사본) 등이 여행용 가방 안에 한가득 들어 있었다.

일부 결락된 자료를 제외하고 대체로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크게 낱장 고문서 자료와 고서 및 성책 자료로 분류하여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였다. 조사 및 사진촬영을 마친 후 종손과 자료 기탁을 협의하고 조사를 마쳤다.

10월 10일(수) 내산서원과 소장 목판 자료를 실견하기 위해 영광내산서원보존회 강재원 회장님, 강대의 사무국장님 등과 다시 영광을 찾았다. 강재원 회장님의 안내로 강감회요 목판 264점을 열람하고 유물전시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강항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¹³⁾ 그리고 내사서원 좌측 산기슭에 위치한 수은 강항의 묘소를 찾아가 보았다. 강항과 그의 부인 진주김씨와 별실 함풍이씨가 잠들어 있었고, 그 앞에 송시열의 5대손 性潭 宋煥箕(1728~1807)이 찬한 묘비와 근래 새로 건립한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수은강항선생섭란사적비(1991년)’¹⁴⁾와 ‘수은강항선생맹자정기념비(2011년)’¹⁵⁾가 세워진 곳을 찾았다. 이어서 운제 마을에 위치한 수은 종가, 유봉리에 위치한 강항 탄생지 및 영광 입향조 재실인 酉峯齋,¹⁶⁾ 驪興書院¹⁷⁾을 답사

12) 사실 수은 강항과 『간양록』에 대해서는 1980년 MBC 드라마 ‘간양록’을 통해 알려진 바 있었다. 더구나 조용필이 ‘강항의 노래’라는 주제곡을 불러 한층 더 인기몰이를 하였다.

13) 주요 자료는 복사 또는 복제하여 전시 중이었다.

14) 현재 영광 염산면 상계리로 옛 지명은 논잡포에 속한다. 강항이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합류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족과 떠난 장소이며 이때 일본의 포로가 된 곳이다. 근처에 舊碑가 있었으나 유실되고 1991년 수은강항선생유적보존회에서 건립하였다.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후손 강정희가 직접 비문과 글씨를 썼고 영광내산서원보존회 강대직 이사장이 중심이 되어 비석을 세웠다.

15) 영광 불갑면 안맹리에 소재한다. 강항이 7살 때 맹자 7권 1질을 하룻밤에 통달하자 책장수가 신동이 라하여 책을 주었는데 사양하자 이를 정자나무에 매달아 놓고 갔다하여 이곳을 맹자정이라고 하였다.

16) 수은 강항의 탄생지 및 진주강씨 영광 입향조 재실인 酉峯齋는 영광 불갑면 금계리 유봉마을이다. 강항이 앉아서 책을 읽었던 고인들이 2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훼손되어 조각나 있다.

17) 조선 후기에 재실 이흥재(모현당)를 건립하여 매년 제향을 해 오고 있다. 1918년에는 이흥재 소슬문을 건립했고 1933년 이흥재(모현당)를 증축하였다. 이흥재에서는 1940년 초부터 이흥학원이 개설되어 1951년까지 운영하였는데 뒤에 영광동중학교로 계승되었다. 1958년 이흥재를 중수하였다. 1989년에는 사당을 세워 이흥사라 하였다. 1990년 사평공 강학손을 봉사하였고 1992년에는 대민공 강석덕(戴愍公 姜碩德), 인재공 강희안(仁齋公 姜希顔), 문랑공 강희안(文良公 姜希孟), 숙헌공 강귀손(肅憲公 姜龜孫), 사평공 강학손(司評公 姜鶴孫) 5위를 봉향하였고 2007년에는 이흥서원으로 승원 개칭하였다.(김희태,

하였다. 이흥서원 곁에 있는 이흥산에 올라 영광 입학조인 강학손의 묘소와 1524년에 세워진 ‘掌隸院司評姜公之墓[宜人申氏祔葬于左’ 비석도 함께 조사하였다.¹⁸⁾

문중에서 자료 기탁 여부가 결정되어 10월 23일(화) 다시 종손을 찾아뵈었다.¹⁹⁾ 대여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2008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자료 5종 10책을 포함하여²⁰⁾ 총 90점을 수집하였다. 이전 조사 때에는 80점으로 조사하였으나 족보 자료 일부가 추가되었으나 『강감회요』 목판 2점은 제외되었다.

<그림 3> 영광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종가 현지 조사



자료조사 및 소장자 면담

고서 및 문화재 자료 보관 상태

「영광 이흥재 사평공 강학손 묘갈」 참조)

18) 선산에는 강학손부터 이하 후손들이 모셔져 있다. 현재 사평공파의 종손과 후손은 전남 순창에 거주한다고 하였다.

19) 당시 내산서원보존회 강재원 회장, 김희태선생님, 강대의 사무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종손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향후 자료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일체 권한을 영광내산서원보존회와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 강대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였고 얼마 후 소천하셨다.

20) 2008년 4월 11일자로 『巾車錄[看羊錄]』 1책, 『綱鑑會要』 3책, 『雲堤錄』 3책, 『文選註』 2책, 『雜誌』 1책 등 5종 10책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시대 영광 출신의 성리학자 수은 강항(1567~1618)의 저술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체험 기록, 강항의 학문활동과 교유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문화재 지정 자료의 경우, 전시 대여 및 위탁 관리 등 특별한 사유로 원 소장처를 벗어날 경우 문화재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영광군에 문화재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자료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2) 가계와 입향 배경²¹⁾

수은 강항의 字는 太初, 本貫은 晉州이며, 私淑齋 姜希孟(1424~1483)²²⁾의 5세손이다. 수은 강항은 夢梧齋 姜克儉(1529~1615)과 永同金氏의 4男으로,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유봉마을에서 태어났다. 진주강씨가 전라도 영광에 입향하게 된 것은 수은의 高祖인 司評公 姜學孫(1480~1523) 때이다.²³⁾ 사평공은 연산군 4년(1498)에 발생한 무오사화 때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파직되어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진주강씨 영광 세거가 시작된 것이다. 진주강씨 영광 입향조와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21) 김경옥, 「수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 활동」, 『도서문화』 35, 도서문화연구원, 2010, 10~14쪽.
 22) 강희맹은 조선 초기 세종·서종대 문신이다. 字는 景醇, 號는 私淑齋. 無爲子., 諡號는 文良公이다. 세종 29년(1447)에 별시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당종 1년(1453)에 예조정랑에 임명되었다. 세조 1년(1455)에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고, 예조참의와 이조참의를 거쳐 진헌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세조 14년(1468)에 晉山君에 봉해져고, 이후 병조판서, 판중추부사, 이조참판, 판돈녕부사, 우찬성, 좌찬성에 이르렀다.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 『예종실록』을 편찬하였고, 조부와 부친, 형(姜希顔)의 시집인 『晉山世稿』를 엮었다. 또 세조 때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성종 때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국조오례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또 농업에 관한 저서로 『衿陽雜錄』이 있고, 서거정이 편찬한 유고집 『사숙재집』이 있다(『晉州姜氏睡隱公派譜』, 壬申譜).
 23) 사평공 강학손을 배향하고 있는 驪興祠가 영광읍 학정리에 위치한다. 배향인물은 玩易齋 姜碩德, 仁齋 姜希顔, 文良公 姜希孟, 肅憲公 姜龜孫, 司評公 姜學孫 등이다. 1988년 영광유림이 사평공 강학손의 덕행을 1111 위해 건립하였다. 이흥사는 정면 3칸, 측면 2.5칸, 맞배지붕이다.

<표 3> 진주강씨 영광 입향조와 세계도

始祖 姜以式 兵馬都元帥	
5세 ④姜君寶(1324-1380)	고려 충숙왕 때 封(鳳山君), 墓 星州
6세 ①姜蓍(1315-1400)	고려 공민왕 때 等第, 諡號 恭穆公
7세 ①姜淮伯(1357-1402)	고려 공민왕 때 東北面巡撫使, 墓 連川
8세 ④姜碩德(1395-1459)	조선 세종 때 學行, 配 青松沈氏(영의정 沈溫의 딸), 墓 連川
9세 ②姜希孟(1424-1483)	號 私淑齋, 예종 때 功臣, 封(晉山君), 姨母夫(世宗), 세조의 총애(世子賓客), 신숙주와 함께 실록 편찬, 墓 경기도(시흥), 「神道碑」(1488년, 徐居正 撰)
10세 ②姜鶴孫(1455-1523)	掌隸院 司評, 무오사화 때 전라도 영광 유배, 配 高靈申氏(申叔舟 孫女, 外祖 武靈丁氏), 墓 영광 학정리(驪興山), 墓碣(梁應鼎 撰) → 영광 서면 남죽리 남동 입향조
11세 ②姜亨壽(1476-1503)	別提公, 書狀官으로 귀국 중 경기도(외가)에서 사망, 墓 경기도, 配 淸州韓氏
12세 ①姜五福(1503-1564)	號 西峯居士, 西峯齋閣 → 영광 불갑면 금계리 유봉 입향조
13세 ①姜克溫(생졸미상)	忠佐衛 副司果, 墓 유봉 → 영암(시종)
②姜克良(1525-?)	號 安泰軒, 墓 유봉 → 함평
③姜克恭(1526-?)	墓 驪興山, → 無
④姜克儉(1529-1615)	號 夢梧齋, 墓 유봉 → 영광(불갑)
⑤姜克讓(1531-1596)	墓 영광 黃良 → 영광(묘량)
⑥姜克忠(1533-1605)	號 月星軒, 墓 유봉 → 고창(용두)
⑦姜克孝(1535-1612)	壬辰倡義, 靈光守城 → 영광(불갑, 백수) 子 姜泗(靈光守城), 姜洛(倡義, 守城, 『湖南節義錄』)
14세 ①姜濬(1554-1591)	號 齟齬堂, 栗谷 문인, 辛卯被禍, 配 靈光丁氏
②姜濬(1563-1638)	號 晦隱, 牛溪 문인, 丁酉被擄, 『湖南節義錄』, 配 海州崔氏
③姜煥(1565-1638)	號 退隱, 栗谷 문인, 丁酉被擄, 『湖南節義錄』, 配 光山金氏
④姜沆(1567-1618)	號 睡隱, 牛溪 문인, 配 晉州金氏, 「獎節碑」(구례) 配 咸平李氏(竹谷 李長榮의 딸), 丁酉被擄, 仁祖 命旌閣(雲堤村前)
⑤姜泳(1574-1621)	號 是是堂, 墓 武長
15세 ①姜時萬(1603-1673)	尹舜舉, 林담, 愼天翊, 梁曼容, 吳希道 등과 교류, 丙子倡義, 行狀(奇宇萬 撰)
16세 ①姜翊周(1624-1662)	學行, 一門八才 중 으뜸, 配 錦城羅氏, 墓 금계리 회산
17세 ①姜公著(1643-1680)	配 密陽朴氏
18세 ①姜亨久(1659-1696)	配 順天朴氏
19세 ①姜啓東(1693-1727)	配 興德張氏, 墓 금계리 회산
20세 ①姜赫朝(1717-1757)	配 順天朴氏, 墓 방마리 박산
21세 ①姜載潤(1741-1781)	壬辰 先賢 祀孫, 通訓大夫 義禁府都事, 墓 雲堤
22세 ①姜榮會(?-1857)	號 松隱, 墓 금계리 유봉
23세 ①姜永萬(1824-1891)	號 竹史, 墓 동산
24세 ①姜燦秀(1851-1911)	號 竹谷, 墓 회복촌
25세 ①姜大珍(1890-1970)	25세 ②姜大欽(1897-1949) 墓 금계리 회산
26세 ①姜点遠(1929년생)	26세 ①姜鍾遠(1935년생) 제보자
27세 ①姜榛聲(1952~2018)	소장자(중손) ²⁴⁾

위의 <표 3>에 제시되어있는 바와 같이, 진주강씨 문중은 고려 공민왕 때 東北面巡撫使를 역임한 姜淮伯, 조선 세종 때 학행으로 널리 알려진 姜碩德, 화가 姜希顔,²⁵⁾ 영의정 沈澗의 사위이자, 世子賓客이었던 姜希孟, 무오사화 때 영광으로 유배된 姜學孫, 文士로 書狀官에 특차된 姜亨壽, 임진왜란 때 靈光守城에 참여했던 姜克孝과 그의 아들 姜泗·姜洛 형제, 정유재란 때 의병활동을 하였던 姜沆에 이르기까지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진주강씨 문중이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에 정착한 것은 姜五福(1503~1564) 때이다. 강오복은 별제공 강형수(?~1503)의 유복자로 태어났다. 강형수는 尙衣院 別提를 역임한 까닭에 ‘별제공’이라 칭하는데, 연산군 9년(1503)에 중국 사신으로 파견된 文景公 申用漑를 따라 燕京에 다녀오던 길에 병을 얻어 경기도(외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바로 강형수가 사망하던 해에 강오복이 태어난 것이다. 부친 없이 태어난 외손자를 가여워 했던 외조부 韓碩鼎이 ‘福이라도 많이 받고 성장하라’는 기원을 담아 공의 이름을 ‘五福’이라 작명해주었다.²⁶⁾ 강오복은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금계리에 터를 잡고 무려 7명의 아들을 낳았다. 소위 ‘七克’이라 부르는데, 克濶·克良·克恭·克儉·克讓·克忠·克孝 등 칠형제이다. 이후 ‘七克’은 영광을 비롯한 인근지역으로 분파하였다. 즉 극온은 영암(시종), 극량은 함평, 극공은 絶孫되었고, 극검은 영광(불갑), 극양은 영광(묘량), 극충은 고창(용두), 극효는 영광(불갑·백수)에 각각 정착하였다. 이 가운데 姜克儉이 수은 강항의 부친이다.

酉峯處士 강오복의 텃자리인 금계리는 불갑저수지를 남쪽으로 바라보고, 전촌·유봉·회산 등 3개의 자연촌이 입지하고 있다. 풍수설에 의하면, 금계리 중앙에 위치한 진주강씨 문중 재각인 酉峯齋의 형국이 ‘金鷄抱卵形’에 속하여 지명을 ‘금계리’라 칭하였다고 한다.²⁷⁾ 바로 강오복이 ‘금계포란’ 형국에 터를 잡고 정착하여 진주강씨 영광문중을 번성하게 만든 것이다.

24) 김경옥, 앞의 논문, <표 3>에 소장자 정보를 추가하였다.

25) 강희안(1419-1464)의 자는 景愚, 호는 仁齋, 서예가, 화가, 시인이다. 세종 23년(1441)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세종이 옥새의 글씨를 맡길 만큼 글씨와 그림에 능했다. 세종 때 사육신 사건에 연좌되어 고문을 당하였는데, 성삼문의 변호로 목숨을 건졌다. 신숙주·성삼문·정인지 등과 함께 훈민정음 작업에 참여하였다(『晉州姜氏睡隱公派譜』, 壬申譜).

26) 제보자: 강종원(내산서원보존위원회장). 이런 까닭에 일반인들은 집을 지어 상량을 올릴 때 대들보에 ‘五福’이라 쓰는데, 진주강씨문중 사람들은 유봉거사의 함자와 동일하여 ‘百福’이라 써서 상량을 올린다고 한다.

27) 『佛甲面마을사』, 영광문화원, 2002, 248-276쪽. 금계리는 봉황이 오동나무에서 깃들고, 대나무 竹實을 먹고 사는 형국이라고 한다. 예컨대 전촌마을 당산나무 근처가 봉황이 깃든 곳이라 하며, 전촌마을에서 방마산을 바라보면 서남쪽으로 봉의 형국, 학의 형국, 용의 형국에 묘역을 조성하거나 집을 지으면 천자를 보좌하는 왕비가 나올 형국이라 전해온다. 풍수학에 의하면 금계리는 나무가 많아 마을이 번창한다고 전해온다. 예컨대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많이 심어 새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가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터가 봉황터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나무로 가볍게 지어 꾸미는 것이 좋다고 전해온다.

다음 <그림 4>은 불갑면 금계리 일대의 공간을 그린 것이다.²⁸⁾



<그림 4> 불갑면 금계리 일대의 공간과 역사문화자원 분포

(A:姜沆紀蹟碑와 孟子亭址, B:內山書院, C:姜沆神道碑·咸平李氏烈女閣, D:不祧廟 舊址)

금계리 일원은 예로부터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유봉마을에서 불갑저수지로 가는 도로변에 선사시대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계리의 입지공간은 약 176ha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논 31ha, 밭 4ha, 임야 105ha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업은 논농사다. 이런 까닭에 금계리 주민들의 정월 대보름날의 민속의례가 매우 다양한 편이다. 예컨대 전촌과 유봉마을의 ‘불 싸움’과 ‘물 따먹기 놀이’, 그리고 ‘당산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입지한 금계리에서 수은 강항이 명종 22년(1567)에 태어났다. 수은은 어린 시절 晦隱 姜濬(1563~1638)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²⁹⁾ 수은은 어려서

28) 유봉마을은 수은의 태자리이고, 회산마을은 수은과 그의 부인 함평이씨의 묘역이 조성되었던 곳이다. 내산은 수은의 위패가 봉안된 내산서원(구 용계사)이 위치하고, 조선 영조 때 회산에 있던 수은의 묘를 내산으로 이장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운제는 수은이 문인과 제자를 강학하던 곳이며, 맹자마을은 수은이 맹자 한 질을 암송하였다는 구전이 전해온다(제보: 강종원, 내산서원보존위원회).

29) 晦隱 姜濬은 牛溪 成渾(1535-1598)의 문하생으로, 유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낙향하였다. 율곡 이이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퇴계 이황의 ‘理氣至發說’을 옹호하였다. 그의 학문은 뛰어났으나, 우계의 낙향과 함께 박학을 펴지 못하였다(장준길, 「강항」,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3월의 문화인물 E-Book, 2001).

부터 문장에 뛰어났는데, 5세 때 전라감사 辛應時(1532~1585)가 ‘脚(다리)’字를 韻으로 띄우자, ‘脚到萬里心教脚’이라 하여 ‘다리가 萬里를 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시킨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 7세 때 불갑 안맹리로 책장수가 찾아왔는데, 서당에 가던 수은이 『맹자』를 보고 즉시 암송하였다. 이를 지켜본 책장수가 공을 천재라 칭하며 『맹자』를 선물로 주었으나, 수은이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책장수가 『맹자』 한 질을 마을 정자나무에 걸어놓고 떠났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그래서 마을의 명칭이 ‘맹자마을’이고, 정자는 ‘맹자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³⁰⁾ 수은의 文才에 대해 童土 尹舜舉(1596~1668)가 지은 「睡隱姜公行狀」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공의 문재는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 사람이 文字를 구하면, 이내 선 자리에서 작성하고 다시 고치지 않았으며, 長篇巨作도 미리 草稿를 만들어 놓을 듯 막힘이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³¹⁾

수은은 선조 16년(1583) 鄉試에 입격하고, 선조 22년(1588) 봄, 進士에 합격하였다. 수은의 나이 22세 때이다. 동년 가을에 진주김씨 金瑋의 따님과 혼인하였다. 선조 27년(1593)에 전주로 피난 왔던 세자가 別試를 행하였는데, 이 때 수은은 丙科에 급제하여 校書館 正字에 임명되었다. 또 선조 27년(1594)에 承政院 假注書로 임명되고, 선조 28년(1595)에 博士로 승진하였으며,³²⁾ 선조 29년(1596)에 成均館 典籍, 工曹佐郎, 刑曹佐郎 등에 임명되었다.³³⁾

(3)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내용

소장 자료는 총 90점으로 고문서 62점, 고서 28점이다. 고문서의 경우 교령류 12점, 소자계장류 12점, 칩관통보류 1점, 증빙류 19점, 명문문기류 3점, 서간통고류 10점, 치부기록류 3점, 시문류 2점이다. 고서의 경우 경부 사서류 1책, 사부 계보류 14책, 편년류 3책, 집부 별집류 6책, 총집류 4책이다. 고서 가운데 2008년 『巾車錄[看羊錄]』 1책, 『綱鑑會要』 3책, 『雲堤錄』 3책, 『文選註』 2책, 『雜誌』 1책 등 5종 10책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2008년 4월 11일) 지정되었다.

30) 『佛甲面마을사』, 영광문화원, 2002, 159-198쪽. 안맹리는 불갑면 소재지이다. 자연마을로 맹자, 안정, 오사 3개 마을이 있다. 풍수설에 의하면 안정마을이 뒷산이 기러기와 같은 형세라고 하여 안정이라 불렀고, 맹자는 수은 강항의 일화와 관련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 2개 마을의 이름을 따서 안맹리라 칭하였다. 현재 맹자마을에 맹자정은 현전하지 않는다. 약 500년 된 느티나무가 고사되어 구전만 전해온다.

31) 『睡隱集』附錄「行狀」.

32) 『宣祖實錄』 선조 28년 8월 24일 갑자.

33) 『宣祖實錄』 선조 29년 12월 22일 갑신 ; 『宣祖實錄』 선조 32년 4월 15일 갑자.

<표 4> 영광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증가 소장 자료 현황

자료유형	자료명	종수	점수	비고	
고문서	교령류	告身	7	7	姜載潤
		追贈教旨	2	2	姜沆, 姜沆 妻 金氏
		差帖(草)	1	1	辛慶雲
		空名帖	1	1	資憲大夫 吏曹判書
		祿牌	1	1	姜載潤
	소차계장류	上疏(草)	1	1	輔德 權, 龍溪書院 사액요청
		筭子(抄)	1	1	李淮 등
		所志類	10	10	姜赫祖, 姜禮會, 姜鎬永, 姜文會 등
	첩관통보류	帖	1	1	姜載潤
	증빙류	立案	4	4	姜啓東, 姜以建, 姜以翊
		戶口單子	14	14	姜赫祖, 李氏, 姜載浩, 姜榮會, 姜永滿, 姜燦秀, 姜永滿
		手票	1	1	姜鎬永
	명문문기류	分財記	3	3	金氏, 5남매, 朴氏, 姜晋興
	서간통고류	通文	9	9	湖中 儒會所, 嶺南 儒會所, 晉州姜氏 僉宗, 靈光鄉校
		婚書	1	1	姜榮會, 李彭運
	치부기록류	閭侍錄	1	1	姜台煥
		歷史記錄	2	2	姜載潤
	시문류	墓文	2	2	宋煥箕
	고서	경부	四書類	1	1
사부		系譜類	6	14	晉山姜氏世譜 등
		編年類	1	3	綱鑑會要
집부		別集類	4	6	看羊錄, 雲堤錄, 雜志
		總集類	3	4	文選, 晉山世稿 등
합계		77	90		

교령류는 12종 12점으로 고신, 추증교지, 차첩(초), 공명첩, 녹패 등이다. 주로 강항의 7세손 姜載潤(1741~1781)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 발급받은 임명장과 월급명세서 등이다. 강재운의 자는 聖潤이고 호는 雲堂이다. 1772년 7월 宣陵 參奉, 1774년 司饗院 奉事, 1775년 禮賓寺 直長, 1776년 通訓大夫 義禁府都事, 1777년 寧陵 令 등을 역임하였다. 고신 뒷면 왼쪽 하단에 ‘吏吏 李之綱’이라고 하여 당시 임명장 발급을 담당하던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1776년 예빈시 직장에 재임하고 있을 때 삼 개월 분 녹봉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가 있다.

추증교지는 1882년(고종 19)에 충절이 뛰어난 강항을 正卿(정2품)으로 추증하고, 從夫職에 따라 그의 처 김씨 또한 정부인으로 추증한다는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전

라도 유생 및 충청도 유생 등이 강항의 충절을 포장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서가 함께 남아 있다.

차첩은 1777년에 驪州牧使가 忠義 辛慶雲을 寧陵 元定假官으로 차정한다는 내용으로 관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본으로 확인된다. 공명첩은 1887년에 아무개에게 자헌대부 이조판서로 추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례이다.

소자계장류는 13종 13점으로 상소(초) 1점, 차자(초) 1점, 소지 10점이다. 상소(초)는 1709년에 輔德 權 아무개가 지은 것으로 수은 강항과 그의 문인 尹宣擧을 모신 龍溪書院의 사액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승정원일기』 1710년(숙종 36) 5월 2일 기사에 따르면, 전라도 유생 進士 蘇斗元 등이 국왕에게 올린 상소로 확인된다.

차자(초)는 1776년에 대사헌 李淮 등 4명이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한 이후 대신들이 和緩翁主의 양자 鄭厚謙을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정조에게 올린 차자와 상소를 베껴 놓은 사례이다. 1776년(정조 즉위년) 3월 25일 대사헌 이연이 정조에게 올린 차자, 1776년 3월 26일 獻納 李杵이 정조에게 올린 차자, 1776년 3월 27일 副司直 金漢耆가 정조에게 올린 상소, 1776년 4월 1일 判府事 金致仁이 정조에게 올린 차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소지류 10점은 묘지 소송 3점, 묘지기 탈역 1점, 강항의 충절 포장 요청 관련 사례 6점이다. 묘지 소송은 강항의 6세손 姜赫朝(1717~1757)가 宗山과 宗岱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라도관찰사에게 올린 의송과 영광군수에게 올린 단자 사례이다. ① 1734년 喪人 姜晉興(=강혁조)이 조모를 入葬한 집 뒤의 산을 禁養하고자 산의 龍尾 위쪽에 살던 洞內 中人 黃正源 등과 柴場을 田庫와 錢租로 相換하였는데, 지금 황정원이 자신의 시장이라고 주장하며 刈柴하니, 황정원 등을 엄하게 다스려 사부가의 산소를 禁護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전라감사는 ‘入葬한 산은 取柴할 수 없으니 원하는 대로 相換하라.’고 영광군수에게 처결을 내렸다. ② 1740년에 유학 강혁조가 전라도관찰사에게 종산 아래 맹자정 부근에 偷標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올린 의송 사례이다. 博山은 세장산이고 雲提는 세거지로 수은 강항이 터를 잡은 곳이며 산 아래에 孟子亭은 강항이 직접 지은 정자이다. 을묘년(1735, 영조 11)에 누군가 밤을 틈타 맹자정 위에 偷標하였으니, 기한을 정해 掘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7월 4일 전라감사는 ‘과연 이는 대대로 지켜온 터인데 몰래 표를 묻었으니 즉시 掘去할 일이다.’라고 영광군수에게 지시하였다. ③ 연이어 같은 내용으로 영광군수에게 요청하자 ‘투표인이 누구인지 찾은 후에 추문하여 처치할 일이다.’라고 처결하였다.

묘소 수호와 관련한 사례는 1857년에 儒生 姜禮會 등이 암행어사에게 수은 강항 묘소를 수호하고 있는 산지기의 연호잡역 면제를 요청하면서 暗行御史에게 올린 상서이다. 이에 대해 ‘單墓直을 잡역으로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은 法典에도 실려 있으니 요청

한 대로 시행할 일이다.’라고 영광군수에게 지시하였다.

강항의 총절을 포장하기 위해 1882년 4월 전라도 유생과 5월 충청도 유생들이 의정부에 상서를 올렸고, 의정부에서는 고종에게 보고하여 추증하기로 결정되었다. 연이어 1882년 6월에 전라도 구례에 사는 유학 姜鎬永 등이 이조와 흥선대원군에게 수은 강항의 추증교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 6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영의정 洪淳穆이 강항의 추증과 관련된 일을 보고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곧바로 강항과 그의 처 김씨의 추증교지를 발급하였고, 현재 당시 발급받은 추증교지 2점이 함께 남아 있다.

추증 받은 후 1882년 10월에 化民 姜文會 등이 靈光郡守에게 강항 후손가의 연호잡역을 면제하라는 의정부의 처결과 예조의 입안에 따라 이 사실을 공증해 달라고 소지를 올려 요청하였다. 이에 동월 19일 ‘영구히 면제해 주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라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1883년 2월 수은 강항 후손가에 연호잡역이 잘못 부과되어 예전과 같이 면제해 달라고 상서를 올려 요청하였다. 이에 동월 14일 영광군수는 ‘賢儒의 祀孫이 雜役に 徵出되었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邑例가 있고 또한 面例가 있으니 이미 있는 例에 따라 시행할 일이다.’라고 面任과 洞首에게 처분을 내렸다.

첩관통보류는 1종 1점으로 1772년 10월 3일에 예조가 宣陵과 靖陵 官員에게 보낸 사례이다. 예조에서 능소에 이식하여 심을 상수리나무 열매 5斗式을 실어 보내라는 내용이다. 1772년 7월에 宣陵 參奉에 임명된 姜載潤에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빙류 19종 19점으로 立案 4점, 戶口單子 14점, 手票 1점이다. 입안의 경우 노비를 매매한 사실을 공증받기 위해 발급받은 사례 2점이 있다. 1714년에 유학 姜健宗이 白熙彩의 소유 계집종 2口를 매득하였고 이 사실을 영광군에서 공증해 주었다. 노비 주인 백희빈과 증인의 진술서 2점이 입안과 함께 점련되어 있다. 또 1729년에 姜啓東이 姜以健의 소유 계집종 1口(화회시 분재받은 노비)를 매득하면서 이 사실을 영광군으로부터 공증받은 입안 사례가 있다. 노비 주인이자 자필한 강이건과 증인으로 참여한 姜以翊의 진술서 2점이 입안과 함께 점련되어 있다. 이외에 1882년 강항의 총절을 포장하여 정2품으로 추증하면서 후손가의 연호 및 환자 등 제반 잡역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예조입안의 초본이 남아 있다.

호구단자 14점은 강항의 6세손 姜赫朝(1717~1757) 2점, 7대손 姜載浩(=姜載潤) 6점, 8세손 姜榮會(1792~1857) 2점, 9세손 姜永萬(1824~1877) 1점, 10세손 姜燦秀(1851~1911) 2점, 姜載潤의 처 星州李氏 1점으로 확인된다. 거주지의 경우 모두 불갑면 운제리로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강혁조의 경우 31세 때인 1747년에는 불갑면 송정리로 확인되다가 1756년 40세 때 올린 호구단자에서는 운제리로 기재되어 있다. 호구단자를 시기순으로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영광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증가 호구단자 현황

순번	작성시기	호주	나이	거주지	통호수
1	1747. 4.	姜赫祖	31세	불갑면 송정리	제1통 제4호
2	1756. 10.	姜赫朝	40세	불갑면 운제리	제2통 제2호
3	1783. 1.	李氏	47세		제1통 제3호
4	1789. 1.	姜載浩	40세		제2통 제4호
5	1795. 1.	姜載浩	46세		제2통 제6호
6	1798. 1.	姜載浩	49세		제3통 제2호
7	1801. 1.	姜載浩	52세		제2통 제4호
8	1804. 1.	姜載浩	55세		제1통 제5호
9	1807. 1.	姜載浩	58세		제2통 제4호
10	1843	姜榮會	52세		제1통 제1호
11	1851	姜榮會	60세		제1통 제4호
12	1870. 2.	姜永滿	57세		제1통 제1호
13	1882	姜燦秀	32세		제1통 제1호
14	1885	姜燦秀	35세		-

수표 1점은 1883년 2월 28일에 求禮 幼學 姜鎬永가 작성한 사례이다. 9대조 수은 강항의 충절 포장과 추증교지 발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1,800냥 가운데 484냥(469냥+15냥)은 문중에서 推去하고, 나머지 1,315냥은 자기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말미에 教旨 2장, 立案 1장, 三道儒狀 2장, 四長官通章 2장을 宗家에 납부한다고 추기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 일과 관련하여 전라도 유생, 충청도 유생이 의정부에 올린 상서와 강영호 등이 이조와 흥선대원군에게 추증교지 발급을 요청하면서 올린 상서, 예조입안(초) 등이 남아 있다.

명문문기류는 3종 3점으로 허여명문 1점, 화회문기 1점, 별급명문 1점이 있다. 허여문기는 1657년에 재주인 어머니 金氏(강항 처 진주김씨)가 5남매와 庶子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재기이다. 필집으로 남편의 三寸姪 姜時億이 필집으로 분재기를 작성하였고, 남편의 三寸姪 生員 姜時說이 증인으로 남편의 三寸姪 幼學 姜時奭이 증보로 참여하였다. 뒷면에는 당시 분재 받은 노비 가운데 婢 玉芝의 2소생 婢 千金과 천금의 1소생 奴 山伊, 2소생 奴 傑伊 등 3口를 병술년에 盧宗世에게 방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을 기재해 두었다. 다음으로 1675년에 5남매(강항의 손자 손녀)가 부모 사후에 재산을 분재하면서 화회문기 사례가 있다. 부모의 상을 마치고 5남매가 토지와 노비를 고르게 분재하였다. 5남매의 아버지는 姜時萬(1603~1673)이고 어머니는 平澤林氏이다. 재산 항목은 祭位條, 첫째 아들, 첫째 딸, 둘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의 제위조, 庶母, 賤庶母의 몫으로 구분하여 분재하였다. 말미에 長子(강익주, 1624~1662) 妻 羅氏, 長女婿 鄭以周, 次子 姜翹周, 次女婿 李翹, 第三女婿 羅應翼 등

5남매가 각각 인장을 찍거나 서명하였고, 외손 鄭思道가 필집으로 참여하여 분재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다. 별급명문은 1717년에 財主 할머니 朴氏가 아들이 죽은 후에 홀로 남은 장손 姜晋興에게 별도로 재산을 분재하면서 작성한 사례이다. 박씨는 姜亨久(1659~1696)의 처 순천박씨이고, 강진흥은 강혁조(1717~1757)이다. 뒷면에 1763년 12월에 노비 4구를 방매하고 이 사실을 영광군으로부터 공증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간통고류 10종 10점으로 통문 9점, 혼서 1점이다. 통문의 경우, 강항의 충절 포장과 관련하여 1882년 3월에 호남 유희소와 영남 유희소 유림들에게 보낸 통문과 1882년 10월 16일에 추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하기 위해 진주강씨 종인들에게 납부를 요청하면서 보낸 통문 등 3점이 있다. 그리고 1884년 3월에 추증된 강항 후손가의 제반 잡역을 조정에서 면제하라고 조치하였으니 영광 유림은 영광군수에게 면제 요청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전라도 유림에게 널리 알려 달라고 발급한 통문 사례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통문은 1915년에 나주향교 羅亮集과 氷月堂 鄭公源 등 유림들이 영광향교 유림들에게 보낸 사례이다. 영광 불갑면 龍山里에 사는 鄭氏가 龍溪祠의 터를 강학소로 이용하다가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며 수은 강항의 본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일로 나주향교 유림 등이 이 사실을 공론화하여 용계사의 땅을 강항 본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외에 1917년 4월에 褒忠祠 曷基重 등이 각郡의 儒林에게 보낸 통문으로 영광 龍溪祠가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는데 이번 4월에 다시 복설되어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으니 각도의 유림은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또 龍溪祠에서 여러 읍의 유림에게 龍山祠宇 重創祭禮에 참여를 독려하는 통문 초본도 있다. 통문 뒷면에는 '龍山祠宇開基祭土神文(용산사우에 터를 닦을 때 토지신에게 올린 제문)'이 기재되어 있다.

혼서는 1종 1점으로 1843년 4월 16일에 淸山姜氏 姜榮會(1792~1857)가 아들 姜永萬(1824~1877)의 婚事를 위해 咸豐李氏 李彭運에게 보낸 사례이다. 강영만의 처는 함평 이씨이다.

치부기록류 3종 3점으로 閭侍錄 1점, 역사기록 2점이다. 은시록은 1824년 강항의 6세손 姜台煥이 강항의 유집에서 초록한 것으로 강항의 제자 沈光世, 尹勛舉, 林潭, 尹舜舉 등 69명의 명단을 정리해 놓은 강항의 문인록이다. 속지에 '睡隱先祖門生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기록 관련 사례는 1772년 7월 5일에 강항의 7세손 姜載潤(1741~1781)이 영조를 만나 宣陵 參奉을 제수받았을 때의 入侍 내용을 기록한 것과 '錫孝'라는 사람이 강항의 행적을 모함하자 이를 변무하는 내용을 필사한 내용이다.

시문류 2종 2점으로 모두 강항의 묘갈명 내용을 필사한 묘문이다. 1798년에 宋煥箕

(1728~1807)가 작성한 강항의 묘갈명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묘갈명 내용 가운데 수정한 흔적이 여러 군데 확인된다.

고서는 총 28책으로 이 가운데 문화재 지정 자료 『건거록(간양록)』 등 5종 10책이 포함되어 있다.³⁴⁾ 모두 수는 강항의 저술로 강항은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는데, 일본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건거록(간양록)』이다. 강항은 왜군에 포로로 잡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서명을 『巾車錄』이라 하였는데, 제자들에 의해 1656년(효종 7)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 『간양록』으로 개칭하였다. 책의 내용 구성은 적지에서 임금께 올린 「賊中封疏」, 당시 일본 각지의 특징을 밝힌 「賊中見聞錄」, 귀국 뒤에 올린 「詣承政院啓辭」, 적국에서의 환란생활의 시말을 기록한 「涉亂事跡」, 포로들에게 준 「告俘人檄」으로 되어있다. 이 기록들은 적국에서 당한 포로들의 참상과 그곳에서 보고 들은 실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란에 대비해야 할 국내정책에까지 언급하고 있어 당시 일본의 정보에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문헌이다. 『건거록(간양록)』의 「賊中封疏」와 「涉亂事跡」은 강항의 친필로 보이며 그 밖의 것은 다른 사람의 서체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강항의 친필 여부를 떠나 당시 일본의 지리와 풍속 등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헌이다.

『雲堤錄』(3책)은 수은이 평시에 주고받은 쓴 시문을 적은 것을 모아둔 것으로 시문(詩) 54편, 輓詞·祭文類 21편, 官文類: (箋文, 公狀 等) 20편, 書·啓 10편, 기문 5편, 상량문 2편 등 112편의 글이 실려있다. 운제(雲堤)는 영광에 거주한 진주강씨 일가의 별거(別居)가 있었던 곳으로 수은이 퇴임후 자제와 문인들을 가르쳤던 곳이었다.

『綱鑑會要』(3책)는 수은 강항이 중국의 역사서인 『資治通鑑』과 『通鑑綱目』 등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주희의 『綱目』에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少微江氏의 『通鑑節要』와 劉友益의 『綱目書法』과 尹起莘의 『綱目發明』 등을 종합하고, 그중에서 주요한 요점만을 뽑아내어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간행되기 이전에 편찬된 원고본을 필사한 것으로, 목판본의 분량 및 편차로 볼 때 현재는 그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필사본은 이 책이 유일하다.

『文選註』(2책)는 중국 梁나라의 昭明太子 蕭統이 秦·漢 이후 齊·梁대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30권으로 편찬한 『문선』에 수은 강항이 주해를 부친 것이다. 본래 상·중·하 3책으로 精選하여 註解하였으나, 현재는 중·하 2책만이 있다. 그리고 『雜誌』(1책)가 있다.

이 필사본은 임진과 정유의 양난을 몸소 체험한 수은 강항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巾車錄(看羊錄)』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수은 강

34) 문화재 지정 자료에 대한 설명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다.

항이 친히 짓고 쓴 필사본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필사본 가운데 『강감회요』, 『운제록』, 『건거록(간양록)』 3종은 편찬 이후 문인과 후손들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이들 사이에 문헌전승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사와 출판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 강항의 직계만 별도로 필사하여 정리해 놓은 「家乘帖」을 비롯하여 『晉山姜氏世譜』, 『晉山世稿』, 『晉山世稿續集』 등이 있다.

(4) 영광 진주강씨 수은공(강항)종가 소장 고문헌 목록

① 고문서

ID	문서명	문서번호	발급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	告身	1	1772	吏曹	姜載潤	1772년에 姜載潤을 將仕郎 宣陵參奉으로 임명하는 문서. *상태: 문서의 상단과 가운데 훼손	1	53.0	57.0
2	告身	2	1773	英祖	姜載潤	1773년에 姜載潤을 朝奉大夫 行宣陵參奉으로 임명하는 문서. *右傍書: 癸正別加 *背面: 吏吏李之綱 *상태: 문서 우측 상하단 일부 훼손.	1	56.4	75.3
3	告身	3	1774	英祖	姜載潤	1774년에 姜載潤을 朝散大夫 行司饗院奉事로 임명하는 문서. *背面: 吏吏李之綱 *상태: 문서 우측 상단 일부 훼손	1	55.2	73.5
4	告身	4	1775	英祖	姜載潤	1775년에 姜載潤을 通訓大夫 行司饗院奉事로 임명하는 문서. *右傍書: 乙九別加 *背面: 吏吏李之綱 *상태: 문서 우측 상단 일부 훼손	1	56.5	74.5
5	告身	5	1775	英祖	姜載潤	1775년에 姜載潤을 通訓大夫 行禮賓寺直長으로 임명하는 문서. *背面: 吏吏李之綱 *상태: 문서 우측 상단 일부 훼손	1	58.0	81.0
6	告身	6	1776	英祖	姜載潤	1776년에 姜載潤을 通訓大夫 行義禁府都事로 임명하는 문서. *背面: 吏吏李之綱 *상태: 문서 우측 하단 일부 훼손	1	57.3	81.0
7	告身	7	1777	正祖	姜載潤	1777년에 姜載潤을 通訓大夫 行寧陵令으로 임명하는 문서. *背面: 吏吏李之綱 *상태: 문서 우측 상, 하단 일부 훼손	1	59.0	87.8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8	追贈教 旨	1	1882	高宗	姜沆	1882년에 姜沆을 資憲大夫 吏曹判書兼 知經筵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五衛都摠府都摠管 侍講院左賓容으로 추증하는 문서. *右傍書: 忠節卓異超贈正卿事承傳 *상태: 문서 우측 일부 오염	1	66.7	100.0
9	追贈教 旨	2	1882	高宗	姜沆 妻 金氏	1882년에 高宗이 贈 淑夫人 金氏를 貞夫人으로 추증하는 문서. *右傍書: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侍講院左賓客行通訓大夫刑曹佐郎 姜沆妻依法典從夫職 *상태: 문서 우측 일부 오염	1	66.7	100.0
10	差帖	1	1777	驪州牧 使	辛慶雲	1777년에 驪州牧使가 忠義 辛慶雲을 寧陵 元定 假官으로 차정하는 差帖 草本.	1	52.7	55.0
11	空名帖	1	1887	高宗		1887년에 晋州姜氏家의 아무개에게 資憲大夫 吏曹判書로 추증하며 발급한 空名帖.	1	52.0	54.9
12	祿牌	1	1776		姜載潤	1776년에 通訓大夫 行 禮賓寺直長 姜載潤이 받은 녹봉지급확인서. *夏三朔: 丙申三月廿九日, 丙申四月廿七, 丙申五月廿九일에 4, 5, 6월에 해당하는 쌀(米) 13斗, 콩(太) 3斗 받음 *상태: 녹패 없음. 문서 일부 훼손	1	59.0	36.3
13	上疏	1	1709			1709년에 輔德 權 아무개가 지은 上疏 草本. 睡隱姜沆과그의門人尹宣舉을모신龍溪書院의賜額을요청함. *『승정원일기』 1710년(숙종 36) 5월 2일 기사에 全羅道儒生進士 蘇斗元 등이 올린 국왕에게 올린 上疏	1	23.0	73.0
14	筭子	1	1776	李滄		1776년에 大司憲 李滄등이 正祖에게 올린 筭子和 上疏 抄本. 1776년(정조즉위년) 3월 25일 大司憲 李滄가 正祖에게 올린 筭子, 1776년 3월 26일 獻納 李杵이 정조에게 올린 筭子, 1776년 3월 27일 副司直 金漢耆가 정조에게 올린 上疏, 1776년 4월 1일 判府事 金致仁이 정조에게 올린 筭子를 등서함. 1776년 3월 英祖 승하 이후 대신들이 和緩翁主의 양자 鄭厚謙을 처벌하길 요청하는 내용.	1	22.8	121.8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5	所志類	1	1734	姜晉興	全羅道 觀察使	<p>1734년에 喪人 姜晉興(姜赫祖)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議送.</p> <p>이번에 祖母가 入葬한 집 뒤의 산을 禁養하고 자산의 龍尾 이상에 살던 洞內中人 黃正源 등과 柴場을 田庫와 錢租로 相換하였는데, 지금 황정원이 자신의 시장이라고 주장하며 柴柴하니, 황정원 등을 엄하게 다스려 士夫家의 산소를 禁護 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함.</p> <p>*題辭(19일, 本官): 入葬한 산은 取柴 할 수 없으니 원하는대로 相換하라고 靈光郡에 명함.</p>	1	104.5	59.3
16	所志類	2	1740	姜赫祖	全羅道 觀察使	<p>1740년에 幼學 姜赫祖가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議送.</p> <p>靈光博山은 世葬한 산이며 雲提는 世居한 터로 睡隱 姜沆이 터을 잡았고, 산 아래에 孟子亭은 수은 강항이 직접 만든 정자인데, 乙卯年(1735, 영조 11)에 누군가 밤을 틈타 맹자정 위에 偷標하였으니, 설치된 偷標를 靈光郡에서 기한을 정해 掘去하도록 특별히 嚴題를 내려주길 요청함</p> <p>*題辭(4일, 本官): 과연 이는 대대로 지켜온 터인데 몰래 標를 설치하였으니 즉시 掘去하라고 靈光郡에명함</p>	1	95.0	51.8
17	所志類	3	1740	姜赫祖	靈光郡 守	<p>1740년에 化民 姜赫祖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單子.</p> <p>靈光博山과 雲提는 先山 宗岱로 박산의 西麓은 姑母의 산소와 睡隱 姜沆의 別室墓가 있는데, 乙卯年(1735, 영조 11)에 누군가 밤을 틈타 亭子 위에 偷標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呈訴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法庭에 설수 없어 지금 다시 정소하니 偷標를 掘移해 주길 요청함.</p> <p>*題辭(24일): 偷標人이 누구인지 찾은 후에 推問하여 處置하라고 명함.</p>	1	89.3	58.8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8	所志類	4	1857	姜禮會 等	暗行御 史	1857년에 儒生 姜禮會 등이 暗行御史에게 올린 上書. 靈光拂甲博山에 睡隱 姜沆 묘소의 墓道를 수호하는 山直의 煙戶雜役을 頗下해 주길 요청함. *題辭(18일, 本官): 單墓直을 雜役으로 침해하지 말 것은 法典에 실려있으니 요청한대로 시행하라고 本官에게 명함.	1	90.0	56.5
19	所志類	5	1882	奇東教 等 3人	議政府 堂上	1882년에 全羅道 儒生 進士 奇東教 등이 議政府堂上에게 올린 上書. 睡隱 姜沆의 行적과 역대 국왕의 褒賞 및 沙溪 金長生, 尤菴 宋時烈 등 선현의 表章을 나열하며, 강항의 저술인 『綱鑑會要』 및 『文選纂柱』, 『左氏精華』 등도 남아있다고 특별히 국왕에게 啓聞하여 天恩을 입을수 있도록 요청함 *題辭(6월7일): 이미 筵稟하여 褒贈 하였다고 명함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 6월 5일 기사에 領議政 洪淳穆이 贈都承旨 姜沆을 吏曹判書로 追贈함	1	122.0	73.0
20	所志類	6	1882	李轅善 等 3人	議政府 堂上	1882년에 忠淸道 儒生 進士 李轅善 등이 議政府堂上에게 올린 上書. 忠淸道儒生들이 湖南儒生이 보낸 通文에서 睡隱 姜沆의 行적을 읽고서 강항에 대한 沙溪 金長生, 尤菴 宋時烈 등 선현의 表章을 나열하며, 국왕에게 奏聞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요청함 *題辭(6월7일): 이미 筵稟하여 褒贈 하였다고 명함 *『承政院日記』 1882년(고종 19) 6월 5일 기사에 領議政 洪淳穆이 贈都承旨 姜沆을 吏曹判書로 追贈함	1	87.0	56.0
21	所志類	7	1882	姜鎬永	吏曹	1882년에 全羅道 求禮 幼學 姜鎬永 등이 吏曹에 올린 上書 草本. 睡隱 姜沆을 正卿으로 追贈하는 국왕의 傳教를 받았으나 아직 職帖을 받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며칠 내에 직첩을 작성하여 내려주길 요청함.	1	39.5	71.0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2	所志類	8	1882	姜鎬永	興宣大 院君	1882년에 全羅道 求禮 幼學 姜鎬永 등이 興宣大院君에게 올린 上書 草本. 睡隱 姜沆을 正卿으로 追贈하는 국왕의 傳敎를 받았으나 아직 職帖을 받지 못하였으니, 특별히 해당 아문에 分付하여 며칠 내에 職帖을 작성하여 내려주길 요청함.	1	38.7	70.5
23	所志類	9	1882	姜文會 等 3人	靈光郡 守	1882년에 化民 姜文會 등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上書. 지난 6월 睡隱 姜沆이 吏曹判書에 追贈된 뒤에 그 後孫家의 烟還 등 諸般雜役을 蠲除하라는 뜻의 議政府의 分부와 禮曹의 立案이 있으니 立旨를 성급해주길 요청함. *題辭(19일): 만약 先儒의 후예가 煙役に 渾雜하였다면 이미 矜悶한데 하물며 의정부의 部分가 昭著하니, 영원히 頒給하고 다시 침해하지 않도록 명함	1	91.2	53.5
24	所志類	10	1883	姜文會 等 5人	靈光郡 守	1883년에 化民 姜文會 등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上書. 이전에 睡隱 姜沆後孫家의 烟還雜役을 蠲除하였는데, 이번에 面內에서 減役을 삭감할 때에 후손가가 減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지금 禮曹立案과 이전에 올린 소장을 올리니 상세히 살펴보고 分간해 주길 요청함. *題辭(14일, 兩面杜首, 面任, 洞首): 賢儒의 祀孫이 雜役に 徵出되었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面例가 있고 또한 面例가 있으니 이미 있는 예에 따라 시행하도록 명함.	1	81.6	52.0
25	下帖	1	1772	禮曹	宣陵靖 陵官員	1772년에 禮曹가 宣陵靖陵官員에게 보낸 下帖. 禮曹에서 陵所에 移植할 樹木인 椽實(상수리나무열매) 5斗式을 수납하도록 宣陵靖陵官員에게 명함. *宣陵靖陵官員은 1772년 7월에 宣陵參奉에 임명된 姜載潤임.	1	25.5	118.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6	立案	1	1714	靈光郡 守	姜健宗	1714년에 靈光郡守가 幼學 姜健宗 에게 발급한 奴婢賣買賜給立案. 영광군이 婢主 白熙彩가 許與明文으 로 나누었던 노비 중 2口를 姜健宗 에게 매대한 거래사실을 공증해주며 강건종에게 발급함.	1	42.0	110.0
26	立案	1-1	1714	白熙彩	靈光郡 守	1714년에 婢主 및 白筆 幼學 白熙 彩가 靈光郡守에게 올린 사실 확인 진술서.	0		
26	立案	1-2	1714	□□重	靈光郡 守	1714년 證人 幼學 □□重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사실 확인 진술서.	0		
27	立案	2	1729	靈光郡 守	姜啓東	1729년에 靈光郡守가 姜啓東에게 발급한 奴婢賣買賜給立案. 영광군이 婢主 姜以健이 和會明文으 로 나누었던 노비 중에 1口를 姜啓 東에게 매대한 거래 사실을 공증해 주며 강계동에게 발급함.	1	36.5	90.5
27	立案	2-1	1729	姜以建	靈光郡 守	1729년에 婢主 및 白筆 姜以健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사실 확인 진술 서.	0		
27	立案	2-2	1729	姜以翊	靈光郡 守	1729년에 證人 幼學 姜以翊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사실 확인 진술서.	0		
28	立案	3	1882	禮曹		1882년에 작성한 禮曹의 立案을 베 낀 문서. 예조가 睡隱 姜沆의 吏曹判書追贈과함 께그後孫家의 煙戶, 還子 등諸般雜役을 蠲減할것을공증하는내용.	1	60.5	39.0
29	立案	4		靈光郡	姜舉元	靈光郡이 吳氏와의 田民相訟과 관련 해 原告였던 姜氏 측의 손을 들어주 며 발급한 決訟立案. 原告 姜舉元和 被告 吳時高, 吳時伯 등이 羅氏집안의 재산을 가지고 분 쟁하였고, 결국 元財主가 강씨집안에 分給한 祭位條를 출급하라는 내용. *상태: 앞부분 결락	1	43.0	926.3
30	戶口單 子	1	1747	姜赫祖	靈光郡 守	1747년에 幼學 姜赫祖가 靈光郡守 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甲面 松亭里 第一統 第四 戶	1	41.0	59.5
31	戶口單 子	2	1756	姜赫朝	靈光縣 監	1756년에 幼學 姜赫朝가 靈光縣監 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二統 第二 戶	1	42.0	61.0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2	戶口單子	3	1783	李氏	靈光郡守	1783년에 寡婦 李氏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一統 第三戶	1	36.0	55.3
33	戶口單子	4	1789	姜載浩	靈光郡守	1789년에 幼學 姜載浩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二統 第四戶	1	36.7	59.5
34	戶口單子	5	1795	姜載浩	靈光郡守	1795년에 幼學 姜載浩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二統 第六戶	1	34.4	64.7
35	戶口單子	6	1798	姜載浩	靈光郡守	1798년에 幼學 姜載浩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三統 第二戶	1	35.8	59.5
36	戶口單子	7	1801	姜載浩	靈光郡守	1801년에 幼學 姜載浩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二統 第四戶	1	36.6	54.4
37	戶口單子	8	1804	姜載浩	靈光郡守	1804년에 幼學 鰥夫 姜載浩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一統 第五戶	1	46.3	57.5
38	戶口單子	9	1807	姜載浩	靈光郡守	1807년에 幼學 鰥夫 姜載浩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二統 第四戶	1	37.3	58.0
39	戶口單子	10	1843	姜榮會	靈光郡守	1843년에 幼學 姜榮會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 雲堤里 第一統 第一戶	1	40.0	51.0
40	戶口單子	11	1851	姜榮會	靈光郡守	1851년에 幼學 姜榮會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一統 第四戶	1	33.0	56.0
41	戶口單子	12	1870	姜永滿	靈光郡守	1870년에 幼學 姜永滿이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一統 第一戶	1	44.0	52.7
42	戶口單子	13	1882	姜燦秀	靈光郡守	1882년에 幼學 姜燦秀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第一統 第一戶	1	44.0	50.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43	戶口單子	14	1885	姜燦秀	靈光郡守	1885년에 幼學 姜燦秀가 靈光郡守에게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佛甲面 雲堤里	1	39.5	41.5
44	手標	1	1883	姜鎬永		1883년에 求禮 幼學 姜鎬永이 발급한 手標. 계미년에 구례에 사는 姜鎬永이 9대 조 睡隱 姜沆의 褒贈를 위해 지출한 돈 중 일부는 문중에서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하였음을 증명함. *追記: 教旨 2장, 立案 1장, 三道儒狀 2장, 四長官通章 2장을 宗家에 납부한다고함.	1	40.5	45.0
45	分財記	1	1657	金氏	子女	1657년에 財主 어머니 金氏가 5남매와 庶子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分財記. *筆執: 家翁三寸姪童蒙教官秉節校尉前行忠武衛副司果姜時億 *證人: 家翁三寸姪生員姜時說 *證保: 家翁三寸姪幼學姜時爽 *背面: 婢玉芝二所生婢千金果同婢一所生奴山伊二所生奴傑伊三口丙戌年盧宗世前放賣的實事	1	88.8	158.0
46	分財記	2	1675	五男妹	五男妹	1675년에 5남매가 재산을 나누며 작성한 和會文記. 부모의 상을 마치고 5남매가 田民을 平均分執하는데, 재산은 祭位條, 첫째 아들, 첫째 딸, 둘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의 제위조, 庶母, 賤庶母의 몫으로 나누었음 *참여자: 長子妻羅氏, 長女婿鄭以周, 次子姜翹周, 次女婿李翹, 第三女婿 羅應翼 *筆執: 外孫鄭思道	1	46.5	108.0
47	分財記	3	1717	朴氏	姜晉興	1717년에 財主 할머니 朴氏가 아들의 죽음 이후 홀로 남은 長孫 姜晉興에게 따로 재산을 주기 위해 작성한 別給文記. *背面: 1763년(건륭28) 12월에 노비 4구의 매매를 증빙하는 靈光郡守의 背頰斜給立案이 있음	1	45.0	42.5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48	통문	1	1882	奇東教 等 14人	湖中 儒會所	1882년 3월 일에 光州 進士 奇東教 등 14명이 湖南 儒會所의 儒林들에 게 보낸 通文. 올해 봄에 全羅道 士林이 姜沆을 表 彰하는 문제로 備邊司에 呈狀을 올 려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湖南 儒林들도 의론을 함께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1	114.3	73.6
49	통문	2	1882	奇東教 等 12人	嶺南 儒會所	1882년 3월 일에 光州 進士 奇東教 등 12명이 嶺南 儒會所의 儒林들에 게 보낸 通文. 올해 봄에 全羅道 士林이 姜沆을 表 彰하는 문제로 備邊司에 呈狀을 올 려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湖南 儒林들도 의론을 함께 모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1	114.3	73.6
50	통문	3	1882	姜文會 等 5人	晉州姜 氏 僉宗	1882년 10월 16일에 門長 姜文會 등 5명이 晉州姜氏 여러 문중 어른 들께 보낸 通文. 姜沆의 품계를 올려주는 ‘追贈教旨’ 를 받는 문제로 1881년 6월 5일에 조정 의 허락을 받았는데, 그간에 든 경비가 셀 수 없고 남은 돈도 거의 없으니 各道의 晉州姜氏宗人께서는 門中에 비용을 납부해달라고요청하 는내용	1	79.2	50.3
51	통문	4	1884	光州鄉 校 閔致賢 等 4人	靈光鄉 校	1884년 3월 일에 光州鄉校의 閔致 賢 등 4명이 靈光鄉校 儒林에게 보 낸 通文. 睡隱 姜沆후손들의 제반 烟役雜役을 이미 조정에서 감하도록 하였으니 영광유림은 靈光郡守에게 연역을 감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全羅道儒林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요 청하는내용	1	80.8	47.8
52	통문	5	1915	羅州鄉 校 羅亮集 等 25명	靈光鄉 校	1915년 1월 일에 羅州鄉校의 羅亮 集 등 25명이 靈光鄉校 儒林에게 보낸 通文. 靈光 佛甲面 龍山리에 사는 鄭氏가 龍溪祠의 터를 강학소로 이용하다가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며 睡隱 姜 沆 본손들에게 돌려주지않자 羅州鄉 校의 儒林이 靈光鄉校의 유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영광 유림이 정	1	95.2	66.9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씨 문중에 전해 용계사의 땅을 본손에게 돌려주길 요청하는 내용 *참여자: 羅亮集 등 25명 가운데 개인도장을 찍은 사람이 16명, 지장을 찍은사람이 9명			
53	通文	6	1915	氷月堂 鄭公源 등 20명	靈光鄉 校	1915년 1월 일에 氷月堂 鄭公源 등 20명이 靈光鄉校 儒林에게 보낸 通文. 靈光 佛甲面 龍山리에 사는 鄭氏가 龍溪祠의 터를 강학소로 이용하다가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며 睡隱姜沆 본손들에게 돌려주지않자 月峯書院의 유림이 靈光鄉校의 儒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영광 유림이 정씨 문중에 전해 용계사의 땅을 본손에게 돌려주길 요청하는 내용	1	72.5	40.6
54	通文	7	1915	羅州鄉 校 朴鼎陽 等 19人	靈光鄉 校	1915년에 羅州鄉校 朴鼎陽 等 19인이 靈光鄉校 儒林에게 보낸 通文. 鄭氏가 龍溪祠 터를 돌려 주지 않고, 유림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전후에 보낸 여러 유림의 通文을 정씨가문에 보여주어, 다시는 멸시하지 말 것과 本孫에게 터를 돌려주게 하라는 내용	1	68.7	34.0
55	通文	8	1917	褒忠祠 曹基重 等 21人	各郡僉 章甫	1917년 4월 일에 褒忠祠 曹基重 등이 各郡의 儒林에게 보낸 通文. 靈光龍溪祠가 1871년(고종8)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는데 이번 4월에 다시 복설되어 강당을 건립하게 되었으니 각도의 유림은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는 내용	1	32.0	23.8
56	通文	9		龍山祠 宇	列邑儒 林	龍溪祠에서 여러 읍의 유림에게 龍山祠宇 重創祭禮에 참여를 독려하는 通文 草本. 통문 뒤에는 '龍山祠宇開基祭土神文(용산사우에 터를 닦을 때 토지신에게 올린 제문)'이 실려 있음	1	86.0	23.9
57	婚書	1	1843	姜榮會	李彭運	1843년 4월 16일에 晉山姜氏 姜榮會(1792~1857)가 아들 姜永滿(1824~1877)의 婚事로 咸豐李氏 李彭運에게 보낸 婚書.	1	54.6	64.0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58	閻侍錄	1	1824	姜台煥		강항의 제자 沈光世, 尹勛舉, 林潭, 尹舜舉 등 69명의 명단을 적은 문인록. 강항의 6대손 台煥이 강항의 遺集에서 초록하여 1824년경에 작성한 것이며 속지에 '睡隱先祖門生案'이라고 기록됨 *상태: 필사/가철	1	21.2	18.5
59	歷史記錄	1				1772년 7월 5일에 강항의 7대손 姜載潤(1741~1781)이 영조를 밍고 宣陵參奉을 제수받았을 때의 入侍 내용을 적은 기록.	1	39.5	28.0
60	歷史記錄	2				錫孝'라는 사람이 강항의 행적을 모함하자 이를 변무하는 내용의 기록.	1	44.5	45.0
61	墓文	1	1798	宋煥箕		1798년에 宋煥箕(1728~1807)가 작성한 강항의 묘갈명을 책으로 엮은 墓文. 묘갈명 사이사이에 수정한 흔적이 보임 *상태: 가철	1	35.3	23.8
62	墓文	2	1798			1798년에 宋煥箕(1728~1807)가 작성한 강항의 묘갈명을 책으로 엮은 墓文. 묘갈명 사이사이에 수정한 흔적이 보임 *상태: 필사본	1	43.9	27.2

② 고서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	경부	孟子蘇抄	1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3卷1冊;四 周單邊; 34.4×19.2	*庚戌十一月二十九日. *원문: '道性善說...'	線裝
2	사부	綱鑑會要	1	姜沆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3卷3冊; 25.0×27.0	강항이 중국의 역사서인 『資治通鑑』과 『通鑑綱目』 등을 보완 정리한 책. *목판본으로 간	假綴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행되기 이전에 편찬된 원고본을 필사한 것으로, 목판본의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임. *도지정문화재	
3	사부	綱鑑會要	1-1						線裝
4	사부	綱鑑會要	1-2						假綴
5	사부	[晉州姜氏家乘譜]	2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帖(22折44面); 14.7×211.2	진주강씨 세계를 필사한 절첩. *姜파에서 시작 하여 직계종손만 기록한 진산강씨 보첩	절첩
6	사부	晉山姜氏世譜	3	[編著者未詳]	木活字本		4卷4冊; 36.0×24.2	진산강씨 족보. *序: 송정4경인 상원강원회서 (1830)	線裝
7	사부	晉山姜氏世譜	3-1						線裝
8	사부	晉山姜氏世譜	3-2						線裝
9	사부	晉山姜氏世譜	3-3						線裝
10	사부	晉州姜氏世譜	4	[編著者未詳]	목활자본		5卷5冊; 33.8×22.7	晉州姜氏世譜. *序: 개국518년 기유永寅	線裝
11	사부	晉州姜氏世譜	4-1						線裝
12	사부	晉州姜氏世譜	4-2						線裝
13	사부	晉州姜氏世譜	4-3						線裝
14	사부	晉州姜氏世譜	4-4						線裝
15	사부	晉州姜氏世譜	5	[編著者未詳]	석인본		2卷2冊; 27.8×19.7	晉州姜氏世譜. 권지2, 권지3	線裝
16	사부	晉州姜氏世譜	5-1						線裝
17	사부	晉州姜氏世譜	6	[編著者未詳]	연활자본		1卷1冊; 28.6×19.0	晉州姜氏睡隱公 派譜. 晉州姜氏睡隱公 派譜卷之二	線裝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8	사부	晉州姜氏世譜	7	[編著者未詳]	석인본		1卷1冊; 28.5×19.3	晉州姜氏睡隱公派譜. 晉州姜氏睡隱公派譜卷之三 *책내용은 ID17과 이어지고 있으나 판종이 달라 같은 帙로 분류하지 않았음.	線裝
19	집부	文選	1	姜沆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卷2冊; 29.5×27.3	강항이 『文選』에 주해를 부친 책. *도지정문화재	線裝
20	집부	文選	1-1						線裝
21	집부	晉山世稿	2		木版本		4卷1冊; 四周單邊; 26.0×18.5	고려말 조선초 진산강씨 강희백의 通亭集, 강석덕의 玩易齋集, 강희안의 仁齋集 3대의 문집을 합집한 책. *1476년 강희백의 손자 강희맹이 할아버지 강희백과 아버지 강석덕, 큰형 강희안의 문집을 편집하여 간행함	線裝
22	집부	晉山世稿續集	3	강유후	木版本		4卷1冊; 四周單邊; 26.0×18.2	조선전기 진산강씨 강극성의 醉竹公集, 강종경의 梅墅公集, 강진휘의 壺溪公集 3대의 문집을 합집한 책. *1658년 강희맹의 7대손 강유후가 편집하여 감행함	線裝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23	집부	看羊錄	4	姜沆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行字數不定; ; 23.1×21.7	강항이 정유재한 때 일본군에 포로가 되어 일본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 *원문: '萬曆二十七年四月十日宣務郎前守刑曹佐郎臣姜沆齋沐百拜西向慟哭謹上言于正倫立極盛德弘烈大王主上展下伏以小臣上年丁酉以分戶曹參判李光庭…' *도지정문화재	線裝

3) 영광 동래정씨 족창공(정홍연)후손가

(1) 조사 및 수집 경위

2018년 12월 4일(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영광군 운상근 팀장님의 제보로 정진기 소장자와 유선상으로 사전 면담을 나누었고 곧바로 날을 정하여 팀원들과 함께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芝山祠를 방문하였다.

지산사 입구에 도착하니 최근에 복원한 蓮亭이 먼저 눈에 띄었다. 곧이어 정찬모, 정기권, 정진동 등 문중 관계자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셨고 함께 지산사 강당으로 향했다.

소장 자료는 원래 지산사 내에 전래되어 보관하고 있었으나 도난을 염려하여 주요 자료는 모두 정진기 소장자가 자택으로 이관하여 보관하고 있었다.³⁵⁾ 강당 왼쪽에 딸린 작은 방에 비치되어있는 벽면 서고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을 만한 자료를 문중 관계자분들과 함께 선별하여 꺼내 놓았다.

날장 고문서 자료는 지통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고 족보 자료를 비롯한 근현대 문집 자료 등과 지산사 운영 관련 치부기록 자료가 보자기에 싸여 있거나 벽면 안쪽 서가에 배가되어 있었다. 그리고 연적, 벼루 등과 출토 유물들이 별도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임명장의 경우, 예전에 자료 상태가 불량하여 문중에서 배접처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배접과정에서 종이가 매우 얇아졌고 그 상태로 배접이 되어 있어 오히려 원본 자료가 훼손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때 조사한 수량은 총 128점으로 고문서 76점,

35) 예전에 정홍연의 관련 유물로 추정되는 벼루, 연적 등이 진품명품 TV프로그램 방영 후 지산에 도둑이 들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자료들은 사가에 보관하고 있어서 도난 위험을 면하였다고 하였다.

고서 52책이었다.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수량을 파악하고 족보 자료를 펼쳐 동래정씨의 입향 선조와 이후 가계 파악 등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략 조사를 마치고 자료 기탁 안내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 추후 문중 협의를 통해 기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관계자 분들의 뜻에 따라 1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정진기 소장자를 통해 문중에서 자료를 기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전화로 접하였다. 마침내 6월 18일(화)에 팀원들과 함께 다시 지산사를 찾았고 다시 한번 더 수집 대상 자료를 확인한 후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근현대 문집 자료가 추가되어 총 174점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5>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후손가 현지 조사



자료 보관 상태

자료 열람 및 조사

문중 관계자 면담

고문서 자료조사

고서 자료조사

유물 자료조사



(2) 가계와 입향 배경

동래정씨는 신라 안일호장 鄭繪文을 시조로, 고려 보운호장 鄭之遠을 起世祖로 하고 그의 세거지인 동래를 본관으로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정지원의 아들 鄭文道도 안일호장이었으며, 손자 鄭穆은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상서, 좌복사 섭태부경을 지냈고, 정목의 네 아들 鄭濟, 鄭漸, 鄭澤, 鄭沆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정항은 숙종 때 우사간을 거쳐 양광도와 충청도의 안찰사를 역임한 후 인종 때 지추밀원사, 예부상서, 한림학사 등을 지냈다. 그리고 정항의 아들 鄭叙는 鄭瓜亭曲을 지어 국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동래정씨는 교서랑공파, 첨사공파, 호장공파가 있다. “검손하고…남과 적을 삼지 않는다”는 가통을 이어 오면서 명문의 지위를 굳혀, 조선조에 17명의 相臣, 대제학 2명, 공신 6명, 청백리 9명, 판서 이상 26명 등 198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³⁶⁾

동래정씨가 영광으로 들어와 정착한 시기는 16세기 말로 執義公 鄭蘭孫(1424~1500)의 현손인 죽창 정홍연(1565~1639)이 현재의 영광 백수면 가지리 가지마을에 정착했다고 전한다. 『靈光鄉案』(1975)의 「영광성씨 입향 선조 사적실기」에 따르면, 동래정씨는 정홍연이 서울에서 영광으로 입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영광의 주요 성씨별 입향조와 입향 내력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영광성씨 입향 선조 사적실기」에 정홍연의 외가(양성이씨)와 진외가(안동권씨) 성씨는 없고, 그의 처가인 평산신씨와 자손들의 처가성씨들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정홍연은 고향인 상주에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처향인 영광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문집 『죽창집』에 의하면, 정홍연이 선조가 서울로 환궁(1593년 10월)한 후에 자신은 영광으로 용퇴하였고, 1596.1597년 왜란 때 우국의 정성을 다하였다고 한 데서 이때에 입향한 것을 알 수 있고, 인조반정 후에 조정이 바로 잡혀 흑 출사를 권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은 이미 낙남하였으니 다만 자손들에게 편안함을 끼치고자 할 뿐이라고

36) 『靈光郡誌』,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02, 163쪽.

하였다.³⁷⁾

그는 姜沆 등과 교류하였으며 학문과 詩律을 거루고 화답하다가 1611년(광해군 3) 46세의 늦은 나이에 蔭仕로 선공감에 임명된 후 통예원인의, 상의원주부, 사복시주부 등을 거쳐 1616년(광해군 8) 통훈대부로 제용감판관을 지내고, 거창, 양천, 동복, 익산군수 등을 지냈다.³⁸⁾ 그는 인조반정 후 정치가 혼란하자 관직을 사임하고 예전에 살던 백수면 지산리 가지산아래 가지마을로 낙향하여 詩律을 즐기면서³⁹⁾ 후손을 지도하였다. 1637년(인조 15) 통정대부로 당상관에 올라 절충장군 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된 후 1639년(인조 17)에 졸하였다.⁴⁰⁾

정홍연 이후 후손들 대부분이 가지 마을을 중심으로 대대로 세거하였고, 둘째 아들 광신의 장자 時和(1604~?)가 靈城丁氏 丁希孟(1536~1596)의 손녀와 혼인하여 처가의 인연으로 현재 불갑면 용산리로 분가하여 자리를 잡았다.⁴¹⁾

<표 6> 영광 동래정씨 족창 정홍연 가계도⁴²⁾

鄭繪文	始祖
1세-鄭之遠	
2세-鄭文道	
3세-鄭穆	
4세-③鄭澤	
5세-鄭子家	
6세-②鄭弼	
7세-③鄭椿老	
8세-⑤鄭崇	
9세-鄭之衡	
10세-鄭承源	
11세-鄭諧	
12세-鄭龜齡	

37) “癸亥反正後，朝著肅清，或勸之仕曰吾既落南土，但欲遺子孫安耳。”(『竹窓集』 권4 「附錄」 <芝山講堂重修記>) ; “丙丁倭亂，憂國殫誠，而車駕回蹕之後，勇退於本郡別野，爲棲息之所，乃西海上芝山下也。”(『竹窓集』 권4 「附錄」 <郡境名賢錄臚草>).

38) 정홍연의 관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임명문서 10점이 남아 있다.

39) “... 琴書自娛平生素，詩酒無端奄忽忙，... 右幼學鄭穉.”(『竹窓集』 권4 「附錄」 <葬時挽>) ; “詩酒平生高興足，絃歌當日德聖長，八旬行樂人間事，垂燭冥途夢裏忙，... 右幼學李大混.”(『竹窓集』 권4 「附錄」 <葬時挽>).

40) 『靈光郡誌』,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02, 163~164쪽.

41) 동래정씨는 현재 백수읍 지산리, 불갑면 용산리 등지에 126가구 369명(200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靈光郡誌』,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02, 164쪽).

42) 『東萊鄭氏執義公派譜』, 1991, 東萊鄭氏執義公派譜編纂委員會.

13세-③鄭賜	
14세-鄭蘭孫(1424-1500)	자: 伯春, 배: 光州盧氏, 묘: 尙州郡 化東面 以所里 [執義公派]
15세-④鄭光廷(1466-1543)	자: 彦匡, 배: 坡平尹氏, 묘: 尙州郡 化西面 齋宮洞 [副正公派]
16세-③鄭忠耆(?-?)	자: 國卿, 배: 安東權氏, 묘: 靈光郡 白岫面 藥水里 長頭山
17세-③鄭好善(?-?)	자: 虞中, 배: 陽城李氏, 묘: 靈光郡 白岫面 藥水里 長頭山
18세-②鄭弘衍(1565-1639)	자: 德遠, 호: 竹窓, 배: 平山申氏, 묘: 靈光郡 白岫面 藥水里 長頭山 [입향조]
19세-②鄭廣紳(1580-1661)	자: 夢賚, 배: 坡平尹氏, 묘: 靈光郡 白岫面 藥水里 長頭山
20세-鄭建和(1601-1673)	자: 立之, 호: 歌芝, 배: 全州李氏, 묘: 靈光郡 白岫面 藥水里 長頭山
19세-③鄭廣胤(1585-1656)	자: 夢碩, 배: 全州李氏, 묘: 靈光郡 鹽山面 上論岑里 左麓
20세-鄭元和(?-?)	자: 春卿, 호: 鳳山, 배: 興德張氏, 묘: 靈光郡 白岫面 藥水里 長頭山
21세-③鄭載瑛(1656-1709)	자: 長叟, 배: 濟州梁氏, 묘: 靈光郡 白岫邑 論山里 案山
22세-④鄭學先(1690-1732)	자: 士則, 배: 新平宋氏, 묘: 靈光郡 白岫邑 鳴馬烏道峙
23세-鄭錫祖(1721-1771)	자: 宗伯, 배: 全州李氏, 묘: 靈光郡 白岫邑 論山里 後麓
24세-②鄭泰淳(1745-?)	자: 潤仲, 배: 善山金氏, 묘: 靈光郡 白岫面 長頭山 靑龍嶺
25세-鄭東式(1771-?)	자: 汝瞻, 배: 昌寧成氏, 묘: 靈光郡 白岫面 長頭山 靑龍嶺
26세-德容(1801~1843)	자: 重華, 배: 稷山趙氏/光山金氏(靈光郡 白岫面 論山里 村后), 묘: 靈光郡 白岫面 長頭山
27세-基玉(1826~1909)	호: 松溪, 배: 金海金氏, 묘: 靈光郡 佛甲面 馬山村 白虎嶺
28세-②燻朝(1854~1933)	자: 晦中, 호: 野隱, 배: 綿城朴氏, 묘: 靈光郡 郡西面 香潭山
29세-②寅九(1883~1950)	자: 龍峴, 배: 綿城羅氏/廣州李氏(海南), 묘: 龍山 後麓
30세-④炳謨(1920~1975)	자: 芝雲, 배: 靈城丁氏, 묘: 長頭山
31세-②鎭基(1956~)	제보자

(3)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내용

소장 자료는 총 146종 199점으로 고문서 117점, 고서 75점, 유물 7점이다. 고문서의 경우 교령류 13점, 소자계장류 45점, 첩관통보류 9점, 증빙류 13점, 서간통고류 5점, 치부기록류 32점이다. 고서의 경우 경부 예류 4책, 사부 편년류 6책, 전기류 1책, 계보류 38책, 지리류 3책, 총집류 14책, 별집류 9책이다. 유물은 정홍연 관련 유물과 묘 이장 출토 유물로 구성되어 있다. 갓끈 장식구슬 1점(원형 해체 날개 20여 개), 사발 1점, 청동거울 1점, 벼루 1점, 연적 1점, 쇠못 1점(날개 17개), 사진 1점이다.

<표 7>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후손가 소장 자료 현황

자료유형	자료명	종수	점수	비고		
고문서	교령류	告身	13	13	鄭弘衍, 鄭廣紳, 鄭載誠, 鄭始振	
	소차계장류	所志	39	39	鄭始益, 鄭始斌, 鄭匡宇, 鄭錫亮, 鄭國斌, 鄭胤儉, 鄭必儉, 鄭忠儉, 靈光郡守, 尙州牧使 등	
		山圖	6	6	面任, 禮吏, 尙州牧使, 靈光郡守 등	
	첩관통보류	帖	1	1	奉山面都正, 靈光郡守	
		傳令	1	1	尙州牧使, 化西 風憲, 鳳亭 尊位	
		牒呈	1	1	風憲, 尙州牧使	
		報狀	1	1	風憲, 靈光郡守	
		書目	2	2	風憲, 靈光郡守	
		稟目	3	3	李潤壽, 李尙秀, 姜在吾, 靈光郡守	
	증빙류	完文	2	2	尙州牧使, 靈光郡守	
		俵音	1	1	成在文, 尙州牧使	
		手記	2	2	嚴順甲, 嚴同山, 成在文	
		領收證	8	8	浦川金融組合, 谷城郡農會長 등	
	서간통고류	通文	3	3	靈光宗侍僉宅, 靈光宗中僉位	
		皮封	2	2	全羅南道長城郡 東化面	
	치부기록류	用下記	23	23	芝山祠 및 東萊鄭氏門中	
		收錢名錄	1	1	鄭匡稷 等, 東萊鄭氏門中	
		世系記錄	1	1	東萊鄭氏門中	
		門中記錄	4	4	芝山祠, 東萊鄭氏門中	
		時到記	2	2	芝山祠	
		參祀錄	1	1	芝山祠	
	고서	사부	編年類	2	6	東鑑綱目, 東鑑綱目前編
			系譜類	7	38	東萊鄭氏世譜, 東萊鄭氏族譜 등
政書類			4	4	戊辰孟春日 墓前笏記, 芝山祠笏記 등	
地理類			2	4	靈光靑襟案, 靈光續修輿地勝覽	
집부		總集類	2	14	文獻寶鑑, 靈光文獻錄	
		別集類		5	9	九溪遺稿, 一齋先生集, 竹窓集 등
유물		갓끈 장식구슬	1	1	20여 개	
		사발	1	1		
		銅鏡	1	1		
		벼루	1	1		
		연적	1	1	거북모양	
		쇠못	1	1	대못 17개	
		사진	1	1		
합계			199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교령류는 13종 13점으로 정홍연에게 발급된 고신 10점, 鄭廣紳, 鄭載誠, 鄭始振 등에게 발급된 고신 3점이다. 임명장의 경우, 1616년 사복시 주부, 제용감판관, 거창현감 거쳐 1618년 양천현령, 1620년 동복현감, 1622년 익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29년 통정대부 정3품에 올랐다. 1622년 정홍연이 거창현감 재임 시에 별대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정광신을 선교랑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고신도 있다. 1681년 처부 변우익이 별대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위 정재성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고신, 1713년 처부 조사원종공신 이여식이 별대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의 사위 정시진을 통덕랑에 임명하는 사례가 있다.

소차계장류는 45종 45점으로 소지 39점, 산도 6점이다. 소지와 산도는 주로 묘지 소송과 관련된 산송 사례, 위토와 묘지기 관련 사례, 실전 묘 찾기 사례, 지산사 운영 관련 등 동래정씨 문중 입향과 분산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묘지 산송의 경우, 동래정씨 종산인 장두산에 있는 죽창공 선산 주변에 투장한 사례와 상주에 있는 부정공 정광정 산소 가까이 투장한 사례이다. 시기적으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산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8> 동래정씨 산송 및 투장 현황

구분	소송시기	투장자		투장처	관련 문서	
		거주지	성명			
1	1772.11~12.	(결락)	(결락)	죽창공 산소	영광 분산 (장두산)	2점
2	1774.11.	奉山面 鹽所	金貴男	죽창공 산소		1점
3	1781.11.~1782.5.	奉山面 下鹽所	金興才	죽창공 산소		4점
4	1800.12.~1802.7.	奉山面 下鹽所	嚴同叱山 嚴順甲	죽창공 산소		10점
5	1806.10.~11.	奉山面 下鹽所	李斗德金	죽창공 산소		3점
6	1865.5.	奉山面	面任 池斗九	죽창공 산소		1점
7	[1753.8.]		外孫 盧姓人	판서부군 산소	상주 분산	2점
8	1859.2~1883.4.	化西面 鳳亭	幼學 成在文	부정공 산소 化西面 齋宮洞		10점

투장자의 거주지 또는 직역을 살펴보면 대개 분산이 소재한 인근 마을에 살고있는 사족층 또는 양인층, 이서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투장자를 기준으로 산송을 구분해 보면 총 8번의 투장으로 인한 묘지 소송이 있었다. 소지와 산도를 비롯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첩정, 서목, 문보, 전령, 수기, 고음 등이 함께 남아 있어 구체적인 소송 내용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표 9> 동래정씨 위토와 묘지기 분쟁 현황

구분	자료명	소송시기	대상	지역
1	所志	1836.12.	장두산 墓田	영광
2	所志	1892. 2.23.	장두산 죽창공 墓直	
2-1	帖	1892. 2.24.		
2-2	所志(草)	1894. 2.		
3	所志	1845. 3. 2.	부정공 분묘 位土	상주
3-1	牒呈	1845. 3. 9.		
3-2	所志	1845. 3.12.		
4	所志	1859. 2. 2.	판서공(정난손), 11대조 판서공 (정광국) 부정공 등 세 곳 墓直	
5	完文	1785. 3.		
5-1	所志	1859. 8. 2.		

동래정씨는 영광 장두산에 분산을 형성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묘전과 묘직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지 7점이 남아 있고 이와 관련된 첩, 첩정, 완문 등 관련 문서 또한 남아 있다.

첩관통보류는 9종 9점으로 첩 1점, 전령 1점, 첩정 1점, 보장 1점, 서목 2점, 품목 3점이다. 품목은 지산사 운영과 관련하여 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제향 때 소용되는 일정 물품의 마련을 요청하면서 지역 유림들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사례이다. 이외에 첩, 전령, 서목 등은 묘지 소송이나 위토 및 묘지기 수호, 지산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과정에서 생산된 사례이다.

증빙류는 13종 13점으로 완문 2점, 고음 1점, 수기 2점, 영수증 8점이다. 완문, 다짐, 수기 등은 산송 및 여타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사례이다. 영수증은 용하기 또는 고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딸림자료로 근현대에 생산된 영수증 사례이다.

서간통고류는 5종 5점으로 통문 3점, 피봉 2점이다. 1868년 동래정씨 첨종에게 보내는 통문으로 실전한 선조의 묘소를 찾게 되었으니,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문중에서 유사를 정해 힘닿는대로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말미에 ‘이 통문을 차례대로 돌려 보고 지체하지 않도록 하고, 거둔 物子는 每 負下 5錢씩 정식으로 하며, 각 문중에서 有司를 정하여 속히 墓所에 전달하도록 바란다.’라는 내용이 추기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위토와 산판소유권에 대한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상주행 일정을 협의하고 아울러 派譜에 관한 일도 조율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통문이다.

치부기록류는 32종 32점으로 용하기 23점, 수전명록 1점, 세계기록 1점, 문중기록 1점, 시도기 2점, 참사록(제관록) 1점이다. 용하기는 동래정씨 문중과 지산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중 재정 상황을 때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둔 회계장부이다. 모두 필사본으로 지승으로 가철한 성책 형태이다. 동래정씨의 경제기반 및 재정운영을 구체적

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수전명록은 동래정씨 문중 사우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자손된 도리로서 조금씩 수합할 뜻으로 분배하니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收錢有司 3명이 각자 지역을 담당하여 돈을 걷고, 그 명단과 금액을 기록하였고 돈을 낸 사람은 돈을 낸 사람은 鄭錫良 등 49명으로 확인된다. 세계기록은 鄭弘衍, 鄭元和, 鄭胄先, 鄭彦先, 鄭始泰의 간단한 약력을 기록해 놓은 자료이다.

문중기록 4점으로 영광 동래정씨 문중사우안과 동래정씨문안이다. 주로 동래정씨 문중 사람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 성명과 함께 자와 생년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정유년 사례의 경우, 지산 또는 용산 등 마을별로 명단을 작성하였고 뒷부분에는 大門中書冊目錄과 用下記가 수록되어 있다.

시도기는 2점으로 1920년 2월 29일부터 1933년 2월 17일까지 14년간 芝山祠 春享祭 참가자 명단을 기록한 자료이다. 방문자의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거주기를 기록하다가 계해년부터는 본관과 거주지만을 기록하고 있다. 제관록 1점은 1920년 2월28일부터 1959년까지 芝山祠 제관 명단을 적은 자료이다.

고서는 22종 75책으로 편년류 2종 6책, 계보류 7종 38책, 정서류 4종 4책, 지리류 2종 4책, 총집류 2종 14책, 별집류 5종 9책이다. 주로 족보 및 문집 자료 등이 남아 있어 가계 또는 인물 정보, 통혼관계 및 사회적 교류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유물은 7종 7점으로 죽창 정홍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벼루와 연적, 30여 년 전에 부정공 정광정 묘소를 이장할 때 출토된 청동거울, 사발, 쇠못 등이다.

(4)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후손가 소장 고문헌 목록

① 고문서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	告身	1	1616	光海君	鄭弘衍	1616년에 鄭弘衍을 奉列大夫 行司僕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 *상태:배접	1	46.2	66.9
2	告身	2	1616	光海君	鄭弘衍	1616년에 鄭弘衍을 奉正大夫 行司僕寺主簿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丙五別加 *상태:배접	1	47.8	58.0
3	告身	3	1616	光海君	鄭弘衍	1616년에 鄭弘衍을 中直大夫 行濟用監判官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丙八別加 *상태:배접	1	40.2	54.3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4	告身	4	1616	光海君	鄭弘衍	1616년에 鄭弘衍을 通訓大夫 行濟用監判官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丙九別加 *상태:배접	1	45.3	64.3
5	告身	5	1616	光海君	鄭弘衍	1616년에 鄭弘衍을 通訓大夫 行居昌縣監에 임명하는 문서. *상태:배접	1	47.8	57.9
6	告身	6	1620	光海君	鄭弘衍	1620년에 鄭弘衍을 通訓大夫 行陽川縣守에 임명하는 문서. *상태:배접. 우측 상단 훼손됨	1	46.7	59.6
7	告身	7	1620	光海君	鄭弘衍	1620년에 鄭弘衍을 通訓大夫 行同福縣監에 임명하는 문서. *상태:배접	1	49.9	65.6
8	告身	8	1622	光海君	鄭弘衍	1622년에 鄭弘衍을 通訓大夫 行益山郡守에 임명하는 문서. *상태:배접	1	51.4	72.6
9	告身	9	1637	仁祖	鄭弘衍	1637년에 前行郡守 鄭弘衍을 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下老職加資事判 *상태:배접	1	51.2	67.9
10	告身	10	1638	仁祖	鄭弘衍	1638년에 鄭弘衍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에 임명하는 문서. *상태:배접	1	43.8	59.7
11	告身	11	1622	吏曹	鄭廣紳	1622년에 鄭廣紳을 宣敎郎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父同福縣監鄭弘衍居昌縣監時丙五丙八別代加并超 *상태:배접	1	48.3	58.7
12	告身	12	1681	吏曹	鄭載誠	1681년에 鄭載誠을 通德郎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妻父邊友益司道示注簿時辛十辛十二別代加并超 *상태:배접	1	54.0	66.8
13	告身	13	1713	吏曹	鄭始振	1713년에 鄭始振을 通德郎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妻父保社原從功臣李汝植蔭別代加 *상태:배접	1	46.7	65.2
14	所志	1	1748	鄭始益		1748년에 鄭始益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 鄭錫福 등이 차일피일 일을 미루고 있으므로 기우제 행차에서 돌아오신 후 자신들의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 (初五日): 잠깐 나타났다 피	1	78.9	44.6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므로 面任과 함께 가서 잡아오고, 또 隱避拒逆하면 찾아서 관에 알리고 官에서 捕捉하라고 명함			
15	所志	2	1748	鄭始益	靈光郡 守	1748년에 鄭始益이 兼城主에게 올린 所志. 官의 뜻을 받들고자 錫祖等과 舍契의 뜻을 논하였고, 저희가 판 전답분의 경우 저희 高祖 제수로 다 쓴 후에 합계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화합하여 先事를 이루고 宗誼가 완전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初二日):骨肉은 하나이며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義理相 책임이 있으므로 처분한 것이 있으니 다시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명함 *상태: 뒷면 제사 필사	1	70.5	42.4
16	所志	3	1748	鄭始益	靈光郡 守	1748년에 鄭始益이 兼城主에게 올린 所志. 門族인 錫祖, 錫福 錫祖이 先事를 방해하여, 一門이 列名으로 呈訴하여 題辭를 받았으나, 끝내 이 題辭 다르지 않으니 錫福 等에게 發牌하여 잡아들이고, 掌錢을 沒數徵捧하며, 山所에 一年草를 放賣하는 것을 방해한 일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初一日):風約에게 배면에傳令으로 명하라고 함 *배면:傳令	1	79.7	44.7
16	所志	3-	1748	靈光郡 守	風憲, 約正, 公員	1748년(영조 24) 윤7월 1일에 鏡관이 崩山면 풍헌·약정·공원에게 내린 傳令. 鄭時益의 소장에 의거 鄭錫祖와 鄭錫福 등 양반이 관령을 거역하려고 도모한 것은 극히 놀라우니 推文으로 엄히 처결하고자 가서 급히 잡아올 것이며, 만일 관을 거역하면 달려와서 형리에게 알려 엄히 처리하라고 명하는 내용 *연관문서:ID16소지	0	79.7	44.7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7	所志	4	1748	鄭始益 等 20人	靈光郡 守	1748년에 鄭始益 等 20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等狀. 宗人 鄭錫福, 鄭錫祖 等이 分契 일 을 봄사이에 落訟하였으나 아직도 말 긴 錢을 내지않고 있으니 그들을 잡 아다 忘先의 죄를 다스리고 말고 있 는 錢을 받아 큰일을 완료할 수 있도 록 처분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五):鄭錫祖는 죄를 다스리고 推給하고자 빨리 잡아오고 門長 鄭錫 壕 또한 같이 와서 기다리라고 명함 *상태:배면 제사 기록	1	102.3	56.7
18	所志	5	1748	鄭匡宇 等 2人	靈光郡 守	1748년에 鄭匡宇, 鄭國斌 等이 올 린 等狀. 昨日 鄭錫祖 等を 捉致하라는 牌子 를 發하였으나, 鄭錫祖 等이 頑拒 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빠른 시 일내에 그를 잡아다 엄히 다스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錢을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十七,風憲):鄭錫祖를 面任과 함께 급히 가서 잡아오라고 명함 * 상태 : 문서일부 훼손	1	80.1	43.9
19	所志	6	1748	鄭始斌 , 鄭匡宇	靈光郡 守	1748년 鄭始斌 鄭匡宇等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等狀. 鄭錫祖 等이 先祖를 잇은 悖倫은 모두 알고 있고, 鄭錫祖 等과 마음 이 같지 않아 契를 합하지 않는 것 이 좋을 것 같으니 만약 分契가 공 정하지 않다는 원통함을 들어 말한 다면 서로의 文券을 거두어 閣下께 서 公正處決할 일인 것이고, 厥錢 十五兩七錢은 門中에 납부하지 않 고 혼자 가지고 있으니, 조속히 零 錢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十七日):일찍이 捧錢 후에합 계할 생각이었는데 官前에 納招함 에 이르렀다. 지금 봉전뒤에 도리어 다른 뜻이 생겨 합계를 내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소행을 추구하니 이같이 이미 놀랍다. 이미 합계를 하고자하지 않는다면 本錢의 나머 지를 속히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명함	1	74.0	43.5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0	所志	7	1772	[鄭錫亮等]	靈光郡守	1772년에 靈光郡守에게 올린 所志. 先山에 偷葬한 무덤을 掘去하도록 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累代先塋에 다른 사람이 偷葬하는 것은 불가한 일로 今月內에 掘移하라고 명함 *상태:문서 결락 심함	1	95.8	41.7
21	所志	8	1772	鄭錫亮等 6人	靈光郡守	1772년에 鄭錫亮等 6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5대조 竹窓公 山所에 偷葬한 자에게 관에서 빨리 掘移를 하도록 처분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九日,刑):투장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니 매우 痛惡하다면서 風約과 의논하여 명을 내리라고 명함	1	76.2	40.7
22	所志	9	1774	鄭錫良等 13人	靈光郡守	1774년 鄭錫良等 13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지난 10월에 本面 塩所에 사는 金貴南이 자신들의 先山에 妻와 父를 偷葬한 일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 *판결(十二日,風憲):公員과 함께 가서 捉送해 오라고 명함.	1	71.2	39.0
23	所志	10	1781	鄭國斌等 11人	靈光郡守	1781년에 鄭國斌等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지금 자신들 先祖 竹窓公 山所 등과 가까운 곳에 偷葬한 이가 있으니, 偷葬한 자가 누구인지 적발하여 엄히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기한을 정하여 무덤을 파가도록 해 달라고 요청함. *판결(廿六日,面任):투장한 사람을 철저히 찾아내어 잡아오라고 명함.	1	74.7	42.0
24	所志	11	1782	鄭錫亮等 5人	靈光郡守	1782년에 鄭錫亮等 5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지금 비로소 자신들의 先山에 투장한 자를 찾았으니 同面 下塩所에 사는 金興才라는 놈이므로 이 놈을 잡아와 죄를 무겁게 다스린 후 掘去하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十一,主人):金興才를 붙잡아 오라고 명함	1	73.0	37.2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5	所志	12	1782	鄭錫亮 等 9人	靈光郡 守	1782년에 鄭錫亮 等 9인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等狀. 竹窓公 산소와 가까운 곳에 투장한 本面에 사는 金興才가 落訟하여 4 월 15일까지 掘移할 뜻으로 관에 傍音을 제출하였으나, 도피하고서 끝내 나타나지 않자 다시 정소하였 고, 면임으로 하여금 굴이하게 하라 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여러 날이 지 나도록 面任이 거행하지 않고 있으 니, 별도로 官差를 보내 기한을 정 하여 掘去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初九,面任):면임이 임의로 掘 塚할 수 없으니 興才를 잡아오거나 그렇지않으면 흥재의 妻子, 至親 중 掘去의 증인으로 현장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함 *상태:문서 하단 일부 훼손	1	69.3	39.6
26	所志	13	1800	鄭胤儉 等 14人	靈光郡 守	1800년에 鄭胤儉 等 14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等狀. 嚴同山 등의 偷葬事에 대해 면임에 게 분부하여 圖形 尺量을 하고, 투 장이 확실하므로 圖形 가운데 決給 하고, 掘去하라고 제음이 내려졌음 에도 끝내 완강하게 거역하고있으 니, 이들은 잡아다 투장의 죄를 중 죄로 다스린 후 즉각 掘移할 수 있 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五):督掘하기 위해 잡아오 라고 명함	1	65.0	37.7
27	所志	14	1800	鄭胤儉 等 11人	靈光郡 守	1800년에 鄭胤儉 等 11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等狀. 죽창공 산소와 멀지 않은 곳에 투 장한 자인 본면 上塩所에 사는 엄 동산과 엄순갑을 법정에 잡아다 투 장의 죄를 무겁게 다스린 후 투장 한 것을 즉각 掘移하도록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十五日,面任):양측 모두 조성 한 산 아래를 圖形하도록 명함	1	68.0	37.6
28	所志	15	1801	鄭胤儉 等 10人	靈光郡 守	1801년에 鄭胤儉 等 10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等狀. 嚴同山, 嚴順甲이 자신들의 先山 부근에 투장을 하여 지난해 12월 모訴를 하여 면임이 圖形尺量을 하	1	66.7	40.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고, 투장자 嚴同山이 2월 15일 파서 옮길 뜻으로 수기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도 堀去하지 않으므로 다시 嚴同山, 嚴順甲을 잡아 들여 명을 거역한 죄를 무겁게 다스린후 堀去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二日):決給을 한지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堀去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통탄스러우니 엄히 다스리고자 붙자야 오라고 명함. *상태:우측 하단 성명 기재 부분 일부 훼손. 배면까지 제사가이어짐			
29	所志	16	1801	鄭胤儉 等 10人	靈光郡 守	1801년에 鄭胤儉 等 10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선산과 가까운 본면 上自 卍加里에 사는 엄동산 엄순갑이 투장한 일에 대해 掘移하라고 決案을 받았음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관에서 별도로 엄격한 관리를 보내 법정에 잡아들여 관령을 거역한 죄를 중히 다스린 후 즉시 掘移하도록 처분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五日):落訟한지 數三日에 불과하니 그 사이엔 어찌 掘居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산지의 정함을 물어 기한을 늦추어 줌이 마땅하다고 명함 *상태:배면까지 제사가 이어짐	1	63.9	37.4
30	所志	17	1802	鄭瑩儉 等 13人	靈光郡 守	1802년에 鄭瑩儉 等 9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 제작년에 嚴同山, 嚴順甲이 竹窓公山所와 멀지 않은 곳에 밤에 몰래 투장한 것에 대해 數月內 堀去하기로 약속한 手記를 받았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 새로 부임한 성주에게 이 자를 잡아다 명령을 어긴 죄를 무겁게 다스린 후 즉시 堀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日, 奉山主人):嚴同叱山을 잡아와서 督堀하게 하라고 명함	1	70.5	42.4
31	所志	18	1802	鄭瑩儉 等 9人	靈光郡 守	1802년에 鄭瑩儉 等 9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 제작년에 嚴同山, 嚴順甲이 竹窓公山所와 멀지 않은 곳에 밤에 몰래	1	65.0	40.0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p>투장을 하여 移掘하라는 명령에 4월 그믐까지 掘移하겠다고 俵音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掘去하지 않자, 전에 올린 所志, 圖形, 手記를 첨부하여 다시 정소하니 엄동산과 엄순갑을 잡아다가 전후로 관의 처분을 거역한 죄를 엄치 다스린 후에 즉시 掘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p> <p>*판결(廿一日,面任):嚴同山, 嚴順甲이 아직도 굴거하지 않아 몹시 놀라우니 즉시 잡아 오도록 명함</p> <p>*상태: 뒷면 제사 이어짐</p>			
32	所志	19	1806	鄭必儉	靈光郡守	<p>1806년에 鄭忠儉 등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p> <p>자신들의 先山에 몰래 투장한 李斗德金이 掘去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掘去하지 않고 있으니 관에서 猛差를 보내어 이 자를 잡아와서 그 죄를 엄중히 다스리고 掘去하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p> <p>*판결(廿五日, 禮吏):도형을 摘奸한 후 斗德金을 잡아오라고 명함</p> <p>*상태: 문서 우측 상단 훼손</p>	1	68.5	41.8
33	所志	20	1806	鄭忠儉等	靈光郡守	<p>1806년에 鄭忠儉 등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p> <p>자신들의 先山에 몰래 투장한 일을 지난달 25일에 정소하여 '도형을 적간한 후에 이두덕쇠를 잡아오라.'고 처분하여 禮吏가 즉시 圖形을 작성하여 투장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두덕쇠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도피하여 城底에서 찾아 관정에 잡아다가 투장하고 도피한 죄를 엄히 다스렸으나 끝내 처분을 거역하고 掘移하지 않고 있으므로 猛差를 보내 이두덕쇠를 잡아다가 투장하고 관령을 거역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즉시 掘移토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p> <p>*판결(初三日,主人): 엄히 다스리고 굴거하기 위해 잡아오라고 명함.</p> <p>*상태:우측 상단 문서 훼손</p>	1	68.4	40.9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4	所志	21	1836	鄭履東 等	靈光郡 守	1836년에 鄭履東 等이 靈光郡守에 게 올린 等狀. 죽창공 묘소가 있는 장두산에 墓田 과 墓直을 두고 금양수호한 지가 백 여 년인데 금년 查陳時 量案을 살펴보니 장두산 後坪 疲字田 1斗 落只, 疲字畓 2斗落只가 저희 묘지 기 명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 고 墓畓을 마음대로 出給한 本面 猪岩洞에 사는 許名位, 吳成貴 두 놈을 잡아다가 推給해 주기를 바라 는 내용 *판결:조사를 위해 잡아 오라고 명함 *상태:훼손 심함	1	63.0	32.0
35	所志	22	1845	鄭東佐 , 鄭鎮容	尙州牧 使	1845년에 鄭東佐, 鄭鎮容이 尙州牧 使에게 올린 等狀. 지난번에 先墓 位土를 本價 12兩으 로 還退事를 呈訴하여 本價로 還退 하도록 하는 題辭를 받았으나, 辛益 彬이 10여 년을 갈아 먹었음에도 조금도 환퇴할 뜻이 없다는 昨日 面任의 報狀의 내용으로 다른 방법 을 찾을 수 없으니 관에 공정한 처 결을 바란다는 내용. *판결(十二日):당초 매매가 30兩이 라고 하니 30兩으로 還退하라고 명 함.	1	78.0	53.0
36	所志	23	1845	鄭東佐 , 鄭鎮容	尙州牧 使	1845년에 鄭東佐, 鄭鎮容이 尙州牧 使에게 올린 等狀. 자신들의 10세 副正公의 묘소가 化 西面 鳳凰山에 있는데 금번에 省掃 차 방문하였더니 산 아래에 거주하 는 傍孫이 10여 년 전에 獄事로 인 해 家莊이 蕩敗되어 先墓 位土를 偷賣하였다고 하여 매매한 자를 탐 문하였으나 마지막 매수자인 辛益 彬이 還退의 뜻이 없다고 하므로 洪正鉉과 辛益彬을 함께 잡아다 嚴 明決處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 *판결(初二日,面任):位土는 다른 것 과 다르니 本價로 還退하도록 申飭 하라고 명함	1	95.0	60.5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7	所志	24	1845	鄭東明 等 18人	靈光郡 守	1845년 鄭東吸 等 18인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等狀. 지난봄 嶺南 10代祖 墓所 位土 推 尋事로 인해 財力을 쓴 것이 적지 않아 先山 아래 柴草와 稚松을 팔 계획이었는데 산 아래 마을에 사는 金達先, 金哲伊가 先山 右邊麓에 있는 무덤이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하며 그 무덤 위에 있는 柴草와 稚 松을 벨 수 없다고 幇방을 놓고, 또 姜卜萬의 할아버지 산소가 先山 局 內에 있어 그 무덤 위쪽은 서로 경 계가 이어져 있어 자신들의 山地를 姜卜萬이 그의 山地라고 하며 빼앗 으려고 하니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 는 내용 *판결(初三日,主人):엄히 다스리고자 두놈을 잡아 오라고 명함 *상태:배면까지 題辭가 이어짐	1	98.2	57.5
38	所志	25	1847	金鉦 等 29人	靈光郡 守	1847년에 金鉦 等 29인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上書. 靈光郡 奉山面에 소재하는 芝山祠 의 役을 減해 주는 完文을 내려주 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一日):여러 선비들의 공론 이 이와 같아 특별히 이 院만 完문 을 내리니 이와 같은 일이 이어진 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명함	1	97.8	56.1
39	所志	26	1852	鄭東佑 等 10人	靈光郡 守	1852년에 鄭東佑 等 10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上書. 자신들의 6대조 묘소가 奉山面 長 頭山에 있는데 漢輩가 書堂이라고 칭하는 초가 數間을 묘 아래 가까 운 땅에 지어 이곳에 雜技者가 모 이거나 使酒者가 屯聚하여 여러 번 床石에 辱을 보이니, 그 무뢰배들을 잡아다 처벌하고, 그 집을 毀撤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十六日):조사하여 처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對卜하라고 명함	1	84.0	58.8
40	所志	27	1856	鄭鎭容 等 3人	靈光郡 守	1856년 鄭鎭容 等 3인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等狀. 芝山祠의 春秋 享祀 奉供 接人으로 10戶를 頃給받았는데 지난 甲寅年	1	88.8	58.5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p>査戶時에 5戶가 삭감되기에 이르러 다시 10戶의 煙役 戶役을 頗給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p> <p>*판결(初八日,籍色):특별히 2戶를 추가로 감역해 주라고 명함</p>			
41	所志	28	1857	鄭基圭 等 8人	靈光郡 守	<p>1857년에 鄭基圭 等 8人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p> <p>芝山祠의 戶頗은 6戶, 結頗은 5結에 불과하니 戶와 結을 他院例에 따라 頗下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p> <p>*판결(廿日,倉籍色都吏):戶와 結의 수를 어지럽힐 수 없으니 2戶, 2結을 특별히 加頗하라고 명함</p>	1	90.1	58.3
42	所志	29	1859	鄭鎭容 等 14人	尙州牧 使	<p>1859년 鄭鎭容 等 14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等狀.</p> <p>12대조 판서공 蘭孫(化東面), 11대조 판서공 光國, 부정공 光廷 형제(화서면 池山倉里)등 先山 묘소 세 곳의 墓直 煙戶雜役을 傳來로 부과하지 않았는데, 近年에 墓奴의 雜役을 면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前例에 의거하여 頗下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p> <p>*판결(初二日,該尊位,頭民):朝士의 묘는 선비의 묘와 다르니 訴에 따라 부과하지 말라고 명함</p>	1	84.3	56.5
43	所志	30	1859	鄭鎭容 等 13人	尙州牧 使	<p>1859년에 鄭鎭容 等 13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等狀.</p> <p>작년에 本面 사는 成在文이 자신들의 先山에 偷葬한 일을 呈訴하여 7월 晦일 전에 掘移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6~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掘去를 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p> <p>*판결(初五日,狀民):다짐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督掘次 成在文을 잡아오라고 명함</p>	1	88.4	57.4
44	所志	31	1859	鄭鎭容	尙州牧 使	<p>1859년에 鄭鎭容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所志.</p> <p>成在文이 偷埋한 무덤을 끝내 파가지 않아 지난번에 呈訴하여 다짐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독굴하기 위해 성재문을 착대하라고 저희(狀民)에게 분부하신 제사를 받았으나 저희가 담당하기가 어려우니 관에서</p>	1	54.2	35.0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猛差를 보내 잡아와서 처벌하고 무덤은 즉시 掘去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 *판결(初五日,狀民):成民이 日前에 스스로 와서 呈上하였으니 捉待를 기다리라고 명함			
45	所志	32	1859	鄭基聖 等 7人	尙州牧 使	1859년에 鄭基聖 等 7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等狀. 池山里에 墓位를 두고 산지기를 두어 수호하고 있었는데 근래 인심이 예전 같이 않아 雜役을 侵漁하는 폐단이 있어 금년 봄에 各處에 宗人들의 소리를 모아 呈訴하여 題辭를 받았으나 잘 이행되지 않아 다시 50년 전의 完文을 찾아 올리니 該色과 面任에게 엄히 타일러 폐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初二):많은 산지기를 어찌 한꺼번에 均역을 면제해 줄 수 있겠는가.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명함	1	88.4	55.0
46	所志	33	1860	鄭基圭 等 19人	尙州牧 使	1860년에 鄭基圭 等 19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等狀. 산아래 사는 成在文이 자신들의 先祖 先山에 偷葬을 하여 지난해 2월 쯤 呈訴를 하여 7월 晦日內에 掘移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3월에 다시 山下에 와보니 成재문이 먼곳에 살면서 자주와 보지 못하는 상황을 엿보고서도 피하여 나타나지 않고 끝내 掘移할 뜻이 없어 보이니 이에 사력으로 捉待시킬수 없어 前題와 俵音을 첨부하여 호소하니, 猛差를 보내 官의 처분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고 엄히 가두고 독굴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판결(卅,主人):成在文을 督掘차 잡아 오라고 명함	1	90.8	55.7
47	所志	34	1860	鄭基圭	尙州牧 使	1860년에 鄭基圭가 尙州牧使에게 올린 上書. 간사한 成在文을 잡아 가두었으나 전혀 掘去할 뜻이 없고, 시간만 끌며 客民이 돌아가기를 기다릴뿐이	1	57.9	36.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p>므로 성재민의 간사한 계획은 관에 서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니 기한을 정하여 督掘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p> <p>*판결(初二日):잡아 가둔 것으로도 족한데 어찌 형벌을 더하겠으며 관에서 파는 것은 법이 없으니 동정을 지켜보라고 명함</p>			
48	所志	35	1860	鄭基圭	尙州牧使	<p>1860년에 鄭基圭가 尙州牧使에게 올린 所志.</p> <p>成在文이 偷埋한 일과 관련하여 成在文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가까이에서 그의 동정을 살펴보니, 비로소 掘移할 뜻이 생겨 이번달 보름 간에 破封하고 4월 초10일에 옮길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혹 간악한 성재문이 誣訴로 둘러대고 앞서 말한 기한 전에 放出된다면 도리어 관에서 掘移하는 것만 못할 것이니, 엄히 다스리고 掘移하도록 재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p> <p>*판결(十二日):지금은 갇혀 있으니 4월 10일 이후에 다시 訴하라고 명함</p>	1	37.2	59.3
49	所志	36	1865	鄭振容 等 4人	靈光郡 守	<p>1865년에 鄭振容 等 4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等狀</p> <p>竹窓公 祠宇가 있는 지산에 偷葬한 자가 있어 관에 정소하여 제사를 받았으나 죽인 중 한 사람이 犯葬에 대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파보니 虛棺虛葬이었음, 구 면임 金啓哲과 面有司 金俱吉이 옆에서 보고 모두 간여하였는데 유독 당시 面任 池斗九만 겁을 먹고 달아나고 또 文報를 올리지 않는 것은 필시 虛葬한 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니 지두구를 잡아다가 엄히 조사하여 뒷날의 폐단을 막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p> <p>*판결(二十二日,主人):虛棺偷葬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니 엄히 다스리고자하니 영에 보고차 池斗九를 잡아오라고 명함</p> <p>* 상태 : 배면까지 제사 이어짐</p>	1	66.3	36.4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50	所志	37	1883	鄭義朝 等 11人	尙州牧 使	1883년에 鄭義朝 等 11인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上書 자신들의 先山에 成在文이 아버지를 偷葬하고 掘移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나 결국 성재문은 죽고 그 조카 成錫瓚이 삼촌의 掘移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또 무덤을 偷埋하였음. 이에 전후 판결문과 도형, 納俵, 手記 등을 점련하여 올리니 성석찬을 관정에 잡아다가 엄히 다스리고 투매한 2층은 즉시 掘移하도록 요청하는 내용 *판결(初五日,將校尹光七,告李東秀):圖形을 그려 오라고 명함	1	91.2	55.3
51	所志	38	1892	鄭圭容 等 12人	靈光郡 守	1892년에 鄭圭容 等 12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上書 墓直 戶役이 蠲減이 數百年 規例에 의한 것인데 금년 봄에 本面 朝陽村 公員이 戶役을 侵責하여 墓直이 出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전례에 의거하여 다시 墓直 戶役을 蠲減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三日,倉都色都正):戶役을 減해주라고 명함	1	92.3	59.2
52	所志	39	1894	鄭基玉 等 7人	靈光郡 守	1894년에 鄭基玉 等 7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上書 草本 선조 죽창공 묘각이 장두산 아래에 있어 묘지기의 호역이 還減面減되었으나 작년 가을 본면 戶有司가 二合하여 버려 해당 都正에게 명하여 蠲減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1	95.4	63.1
53	山圖	1		[面任]	靈光郡 守	鄭始逸 산송 관련 山圖. 狀 鄭始逸 집안 선대 무덤 위치와 隻 金興才가 偷葬한 무덤 위치를 그린 圖形과 거리를 기록함	1	72.7	39.0
54	山圖	2		面任	靈光郡 守	鄭權容 산송관련 山圖. 狀 鄭權容 집안 선대 무덤 위치와 隻 嚴同山 嚴順甲이 偷葬한 무덤 위치를 그린 圖形과 거리를 기록함 *판결(十七日):도형을 보니 전후좌우가 정가의 族山이니 비록 보수가 멀지 않더라 다른 사람이 入葬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天理人情이니 속히 掘去하여 被罪之地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명함	1	63.2	36.9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55	山圖	3	1806	[禮吏]	靈光郡 守	鄭燦容 산송관련 山圖. 奉山面 長頭山에 위치한 鄭燦容 先 代の 무덤 위치와 李斗德金가 새로 쓴 무덤의 위치를 그린 圖形과 鄭 燦容 曾祖의 무덤과 李斗德金의 新 塚은 70步이며, 앞으나 서나 보인 다고 기록. *판결(二十六日):기한을 정해서 堀 移하라는 뜻을 分付하라고 명함	1	69.3	42.9
56	山圖	4	1859	金載河	尙州牧 使	산송관련 山圖. 송사자 정용진의 선대 무덤의 위치 와 성재문이 투장한 무덤의 위치를 그린 圖形과 두 무덤 사이의 보수 를 기록 *판결(己未二月初四日):정씨 일가가 入葬하는 곳으로 타성의 무덤이 한 곳도 없는 곳이므로 성재문이 패소 하였으니 다시 곧바로 사건과 관계 없는 지역의 비어있는 땅으로 이장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함	1	56.7	36.0
57	山圖	5		朴龍碩	尙州牧 使	산송관련 山圖. 化東面元通山에있는 訟 鄭雲翊 집 안과 隻 盧潤浩 측 선대 무덤 위치 를 그린 圖形과 거리, 摘奸내용을 기록 *판결(初八日九日):도형을 보니 盧 載斗 며느리의 새로운 장사처는 양 쪽 모두 장사를 금하는 지역에 있 으므로 盧씨 쪽에서 이번 20일 내 에 파 가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알리라고 명함 *상태:오염, 문서 하단 훼손, 결락 있음	1	57.2	49.7
58	山圖	6				산의 형세만 그려진 山圖 草本.	1	66.0	37.5
59	下帖	1	1892	靈光郡 守	奉山面 都正	1892년에 靈光郡守가 奉山面都正 에게 내린 下帖. 減役 중 鄭竹窓公墓直은 다른 것과 다른데 烟役을 갑자기 侵責하였다 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나면서 烟 役은 즉시 減給해 주고, 일의 전말 을 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함	1	35.5	38.5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60	傳令	1	1860	尙州牧使	化西風憲, 鳳亭尊位	1860년 尙州牧使가 化西 風憲, 鳳亭 尊位에게 내린 傳令. 本面 鳳亭에 사는 幼學 成在文이 전라도 영광에 사는 幼學 鄭基圭 선영 壓逼之地에 투쟁하고 기한이 넘도록 파내지 않음. 지난달에 鄭基圭가 정소하여 성재문을 잡아가두었으나 拷音を 납부하고 풀려났는데, 지금 또 기한이 넘도록 파 옮기지 않으니, 즉시 掘移하도록 한 후에 일의 전말을 보고하되, 만약 또 다시 성재문이 거역한다면 곧바로 杖囚하여 督掘하라고 지시함	1	41.2	37.6
61	牒呈	1	1845	風憲李	尙州牧使	1845년에 化西面 風憲 李가 尙州牧使에게 올린 牒呈. 靈光 鄭班位土還退事로 呈訴한 일을 자세히 조사해보니, 과연 傍孫이 獄事로 인해 洪班에게 偷賣하고, 그 사이 洪班은 姜班에게, 또 洪班은 辛班에게 팔아 辛班에게 제사에 서명한 本價還退의 뜻을 申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면임의 사력으로는 시행할 수 없으니 洪班과 姜班, 辛班 모두 對卞한 후에 宿處로 돌아가겠다고 보고함 *판결:이 미관의 題辭가 있었으니 어찌 거역할 수 있냐고 하며 다시 嚴飭하라고 명함	1	61.5	30.0
62	報狀	1	1800	風憲金	靈光郡守	1800년에 風憲 金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文報. 奉山面 鄭哥兩班 선산의 투쟁 사건에 대해 '양척 모두 산하 도형을 가져오라.'고 처결하여 즉시 산 곳곳을 적간해보니 夜葬한 것이 틀림없기에 양척에게 확인(着名)받은 山圖를 보고함 *판결(十七日):偷葬이 확실하므로 圖形에 決給하라고 명함	1	32.0	37.0
63	書目	1	1800	風憲金	靈光郡守	1800년에 風憲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書目. 奉山面 風憲이 명령하신 本面 鄭哥兩班 先산에 투쟁한 일에 대하여 圖形을 파악하고 양척의 확인을 받고 완료하였음을 보고하는 내용 *판결(十七日):투쟁이 확실하므로 도형에 決給하라고 명함	1	32.7	37.5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64	書目	2	1845	風憲 姜	靈光郡 守	1845년에 奉山面 風憲이 靈光郡守 에게 올린 書目. 本面 金達先이 水營에 議送을 올려 서 到付狀이 도착하여 그 題辭에 의거하여 鄭班斫松處를 摘奸해보 니, 소나무가 무더기로 자라 크기를 헤아릴 수 없다고 보고함 *판결(十二日):이미 무더기로 자란 수십주는 예초하다가 잘못 벤 것인 데 김달선으로써 영에서 정소한 것 은 지극히 無嚴한 것이니 嚴治차 잡아오라고 명함	1	32.0	32.7
65	稟目	1	1844	李潤壽 等 4人	靈光郡 守	1844년에 李潤壽 等 4인이 靈光郡 守에게 올린 稟目. 6월에 지산사의 執綱들이 院邸 10 戶가 還役되어 전례에 의거하여 蠲 頗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 *판결(廿四日,籍色,倉色):이미 畧例에 있으니 詳考하여 頗給하라고 명함	1	102.4	54.6
66	稟目	2	1847	李尙秀 等 27人	靈光郡 守	1847년에 李尙秀 等 27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稟目. 芝山祠의 春秋享祀시에 香燭諸品은 관에서 해마다 마련하고 있으나 犧 牲, 幣帛, 脯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 니, 특별히 牲幣脯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함 *판결(初十,禮吏):牲幣만 빠진다면 欠典이니 여러 선비들의 품고에 따 라 특별히 시행하고 臚錄에 올려두 라고 명함	1	86.4	49.5
67	稟目	3	1859	姜在吾	靈光郡 守	1859년에 芝山祠 執綱 4인이 靈光 郡守에게 올린 稟目. 芝山祠의 春秋享祀奉供接人으로 10戶 를 頗給받았는데 3戶가 減削되고, 또 작년에 5호가 見削되어 다만 2 戶만이 남아 春秋享祀 奉供의 道를 할 수 없으니 例에 의거하여 다시 복원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 *판결(廿四,倉籍色):春例에 따라 頗 戶해 주라고 명함	1	100.8	57.3
68	完文	1	1809	尙州牧	東萊鄭 氏宗中	1809년에 尙州牧에서 발급한 完文. 鄭副正公 산소 아래 본고을 化西面 齊宮洞에 있는 山直 2명의 煙戶雜 役을 부과하지 말라[勿侵]는 내용 *연관문서:ID45소지	1	49.0	53.7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69	完文	2	1847	靈光郡 守	芝山祠	1847년에 靈光郡守가 芝山祠에 내 린 完文. 金鉦 等 29인이 올린 상서에 대한 완문으로 芝山祠의 院下 最近村 東 奉山 五戶에 面役을 침범하지 말 고, 후록한 대로 主人役價, 面任紙 價, 諸般運役, 諸般面徵을 永永 減 給해 준다는 내용 *연관문서:ID4538	1	50.2	109.8
70	倭音	1	1859	成在文	尙州牧 使	1859년 成在文이 官에 제출한 倭音. 成在文이 亡父를 鄭鎭容先山에 偷 葬한 일로 송사에서 패하여 7월 晦 日 내에 掘移하겠다는 뜻으로 倭音 을 납부하오니,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엄수하여 督掘하겠다는 내용 으로 다짐함	1	18.0	40.2
71	手記	1	1800	嚴順甲 , 嚴同山	鄭生員	1800년에 嚴順甲 등이 鄭生員에게 작성해준 手記. 風憲 金寬兌를 필집으로 하여 嚴順 甲 등이 투장한 무덤을 내년 봄 2 월 15일까지 파 옮기겠다는 뜻을 약속한다는 내용 *상태:문서 우측일자 부분 일부 훼손	1	16.2	35.5
72	手記	2	1860	成在文	鄭基圭	1860년에 成在文이 작성해 준 手 記. 마땅히 곧바로 掘移해야 하지만 지 금 3월이라 이미 무덤을 옮기는 것 이 불가함. 비록 鄭氏측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금년 10월에 移葬하겠다 는 내용	1	32.3	33.6
73	領收證	1	1925	大一宣	鄭龍朝	鄭龍朝가 地稅 등 壹圓78錢을 영광 군 백수면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7.1	9.4
74	領收證	2	1933	浦川金 融組合	鄭寅佑	鄭寅佑가 浦川金融組合에 빌린 대 금과 이자 일부인 26圓18錢을 납부 하고 받은 영수증.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1.7	15.4
75	領收證	3	1933	浦川金 融組合	鄭寅佑	鄭寅佑가 浦川金融組合에 빌린 대 금과 이자 일부인 109圓 34錢을 납 부하고 받은 영수증.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1.7	15.4
76	領收證	4	1934	浦川金 融組合	鄭寅佑	鄭寅佑가 浦川金融組合에 빌린 대 금과 이자 일부인 34圓 86錢을 납 부하고 받은 영수증.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1.7	15.4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77	領收證	5	1944	張本甲 富		林野 사용료를 영광군백수면에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상태:문서인쇄가 불량하여 내용 파악이 어려움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2.6	9.0
78	領收證	6	1944	張本甲 富	鄭贊中 外	영광군백수면에 鄭贊中 外 7인이 一四圓 三錢을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상태:문서인쇄가 불량하여 내용 파악이 어려움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2.6	9.0
79	領收證	7	1945	柏谷泰 松	鄭贊中 外	백수수립조합에 鄭贊中 外 7인이 1944년도 通常組合費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6.9	11.3
80	領收證	8		谷城郡 農會長	鄭寅佐 鄭興朝	매도대금 지불통지서.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2.8	10.8
81	通文	1	1753	鄭彦臣 等 9人	靈光宗 侍僉宅	계유년에 鄭彦臣 등이 靈光宗侍僉宅에 보내는 通文. 尙州 化寧 先祖 判書府君 山所 산소가 세대가 멀리 내려오면서 제전 지속 후예는 알리는 것이 여력이 없고, 묘하의 제손 또한 여력이 없으며 外孫 盧姓人 偷葬으로 여러 해 동안 송사를 치르느라 모은 재력을 다 써먹음, 올해 祭田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산아래 근처 땅값이 많이 올라 백여금이나 되니 置田을 마련하고자 하면 僉尊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先祖 子孫은 兩派 뿐이니 함께 대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사를 정해서 겨울 전까지 반백의 재력을 거두어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추신: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서 재력을 모아주기를 바라며, 종중의 재택을 자세히 알지 못해 열서하지 못하니 통문을 차례대로 전해서 보고 지체되고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첨기하고 있음	1	75.0	58.3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82	통문	2	1868	鄭東運 等 17人	僉宗	1868년 東萊鄭氏 僉宗에게 보내는 通文. 시조이하부터 23대조 僕射公 에 이르기까지 묘소를 失傳하였는 데, 금년 9월 25일에 충청 좌도 고산 남면에서 표석을 발견하여 다시 僕射公의 묘소를 찾게되었으 니 歲前에 각 문중에서 유사를 정 해서 힘에 따라 묘소로 물자를 보 내주어 이 땅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 *추신: 이 통문을 차례대로 돌려보 고 지체하지 않도록 하고, 거둔 物 子は 每負下 5窠씩 정식으로 하며, 각 문중에서 有司를 정하여 속히 墓所에 전달하도록 바람.	1	72.0	45.5
83	통문	3		鄭芝秀	靈光宗 中僉位	1986년 東萊鄭氏執義公派譜所內 鄭芝秀가 靈光宗中 僉位에게 보내 는 通文. 금년 10월 12일 예천군 直提學公先 祖時享에 참여차 내려가 돌아오는 길에 상주군 화동면에 있는 義公派 先祖山下事를 살펴봄. 이곳의 位土 와 山坂의 名義를 당초 토지조사시 에 해당 산아래 부근에 사는 善默 씨 개인명의로 등록하였는데 지금 선목씨의 나이가 70여 세로 일정한 주소가 없이 중복 보은 등지에 현 재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장차 位 土와 山坂所有權이 어떻게될지 모 르는 상황임. 시급히 명의이전을 해 야하므로 이에대한 비용과 상주로 가는 것을 협의하고 동시에 波譜事 도 協定하고자 먼저 알려드린다는 내용 *[春捧入秩](고문서ID000) 딸림자료	1	27.5	38.5
84	피봉	1		全羅南 道長城 郡 東化面	鄭寅錫	봉투. *상태:봉투상단훼손 *[春捧入秩](고문서ID86) 딸림자료	1	18.9	8.2
85	피봉	2				봉투. 門中地稅領收證入 *[春捧入秩](고문서ID86)딸림자료	1	15.6	7.4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86	用下記	1	1865~ 1944	[東萊 鄭氏門 中]		*을축(1865)년부터 갑신(1944)년까지 祭享物種記, 用下記 등이 기록됨 *제목은 문서 첫머리에서 가져옴 *형태:성책문서, 468면	1	23.8	19.2
87	用下記	2	1912-1913	[東萊 鄭氏門 中]		임자(1912)년 12월부터 用下記. 앞부분에 保關者 유의사항으로 차용인의 주소성명 등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등을 적고, 각 시기별 貰金금액과 사용처를 각각 기록 *첨부:뒤에 戊辰年村中稷追錄이 있음 *형태:성책문서, 총90면(앞52면, 뒤38면)	1	23.0	20.7
88	用下記	3		[東萊 鄭氏門 中]		을유년부터 신축까지 세입, 세출, 用下記 등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 *형태:성책문서, 총144면	1	21.1	20.5
89	用下記	4		[東萊 鄭氏門 中]		지난해인 병신년 문중재산의 세입, 세출, 미수내역 기록한 문서. 세입은 모두 소작료이며, 소작료, 소작면적, 소작자 등을 기록하였음 *형태:성책문서, 총7면	1	19.5	18.0
90	用下記	5		[東萊 鄭氏門 中]		무술년 세입내역과 未收내역을 기록한 문서. 세입은 모두 소작료임. 소작료, 소작면적, 소작자 등을 기록하였음. *형태:성책문서, 총10면	1	19.4	18.0
91	用下記	6		[東萊 鄭氏門 中]		기해년 12월 문서 수정시에 작성한 收入支出문서. 지난해인 무술년 정산액, 기해년 쯤에 사용한 지출액과 지출내역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단위에서 추정 *형태:성책문서, 총9면	1	19.8	18.0
92	用下記	7		[東萊 鄭氏門 中]		庚子年收入記. 수입내역, 수입근거, 수입처를 기록. 수입내역은 모두 소작료임 *문서명은 문서 첫머리에서 가져옴 *형태:성책문서, 총12면	1	19.5	17.5
93	用下記	8		[東萊 鄭氏門 中]		신축년 12월에 문서를 수정하면서 작성한 지출금액, 품목을 쓴 지출내역과 미수내역이 기록된 문서. *형태:성책문서, 총4면	1	20.4	17.2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94	用下記	9		[東萊 鄭氏門 中]		임인년부터 신해년까지 작성한 收入支出正理簿. 마지막면에 임자년 新有司 鄭一謨 에게 이월하였음을 표기 *형태:성책문서, 총151면	1	23.9	19.8
95	用下記	10		[東萊 鄭氏門 中]		임인년 11월 문서를 수정한 내용으 로 지난해 신축년 실제 문중 수입 내역부터 시작하여, 임인년 미수내 역까지 를 기록한 문서. *형태:성책문서, 총9면	1	21.1	17.4
96	用下記	11		[東萊 鄭氏門 中]		임인년 12월 문서 수정시 작성한 私草記. 지난해인 신축년도 실제 수입 합계, 봄에 사용한 用下記, 세입, 세출내역 등 기록. *형태:성책문서, 총17면	1	20.2	17.4
97	用下記	12		[東萊 鄭氏門 中]		계묘년에 작성한 大門中收入支出 記. 계묘년 사용한 지출액과 지출내역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단위에서 추정 *형태:성책문서, 총15면	1	18.0	20.2
98	用下記	13		[東萊 鄭氏門 中]		갑진년에 작성한 大門中收入支出 記. 갑진년에 사용한 지출액과 지출내역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 단위에서 추 정 *형태:성책문서, 총23면	1	19.7	17.4
99	用下記	14		[東萊 鄭氏門 中]		을사년에 작성한 大門中收入支出 記. 봄에 쓴 용하기, 세입내역, 미수내 역 등이 기록. *형태:성책문서, 총17면	1	19.5	17.5
100	用下記	15		[東萊 鄭氏門 中]		병오년 12월 18일 한해 동안의 세 입세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未收내역 문서. 미수액과 미수자 성명이 적혀있음. *형태:성책문서, 총3면	1	20.7	17.6
101	用下記	16		[東萊 鄭氏門 中]		병오년 12월 16일 문서수정시 작 성한 문서. 봄에 사용한 用下記, 세입, 세출내 역, 時祀物種記 등 기록. *형태:성책문서, 총17면	1	20.2	18.1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02	用下記	17		[東萊 鄭氏門 中]		정미년 봄에 작성한 收入支出簿. 지난해인 병오년 정산액, 遺墟碑 조 성시수입금액과 내용, 정미년 봄 지 출금액, 지출내역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 단위에서 추 정 *형태:성책문서, 총20면	1	20.4	16.7
103	用下記	18		[東萊 鄭氏門 中]		무신년에 작성한 大門中收入支出 記. 지난해 정미년 정산내용과 무신년에 사용한 지출액과 지출내역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 단위에서 추 정 *형태:성책문서, 총20면	1	20.0	16.7
104	用下記	19		[東萊 鄭氏門 中]		경술년에 작성한 大門中收入支出 記. 경술년에 사용한 지출액과 지출내역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 단위에서 추 정. *형태:성책문서, 총13면	1	21.4	18.3
105	用下記	20		[東萊 鄭氏門 中]		신해년에 작성한 大門中收入支出 記. 봄에 사용한 用下記, 세입, 세출내 역 등 문중재산의 수입지출을 기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단위에서 추정 *형태:성책문서, 총17면	1	21.4	19.0
106	用下記	21		[東萊 鄭氏門 中]		기유년 봄에 사용한 用下記. 세입, 세출내역 등 문중재산의 수입 지출을 기록. 마지막에는 경술년 정월 초10일에 기유년도 未收記를 기록 *형태:성책문서, 총16면	1	20.6	16.3
107	用下記	22		[東萊 鄭氏門 中]		임신년 歲入歲出을 기록한 문서 *문서명은 문서내용에서 차용함 *형태:성책문서, 총4면	1	21.0	19.6
108	用下記	23		[東萊 鄭氏門 中]		門中時祀物種記. 대추, 밤, 배 등 문중時祀 때 사용 한 제수의 종류와 수량, 지출금액을 기록. 맨마지막에 소작자 이름, 소작료 내 역을 적은 門中小作料收入 기록 *형태:성책문서, 총5면	1	21.1	18.7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09	收錢名錄	1	1782	鄭匡稷 等		收錢名錄. 祠宇의 春秋祭享에 소용되는 물력이 없고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지 오래되고, 수년 전의 흉년 및 宿債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位畚을 斥賣할 수도 없고 달리 변통할 길이 없기에 자손된 도리로서 조금씩 수합할 뜻으로 이와 같이 분배하니 각별히 척념하라는 내용. 收錢有司 3명이 각자 지역을 담당하여 돈을 걷고, 그 명단과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收錢有司는 芝山 鄭匡稷, 德山 鄭必儉, 奉山 鄭東弼이며, 돈을 낸 사람은 鄭錫良 등 49人임 *收錢定日至月初十日	1	25.2	58.0
110	世系記錄	1		[東萊 鄭氏門中]		鄭弘衍, 鄭元和, 鄭胄先, 鄭彥先, 鄭始泰의 간단한 약력을 기록한 世系記錄.	1	34.2	46.3
111	門中記錄	1		芝山祠		門中記錄. 영광 동래정씨 문중사우 안으로 鄭始益 등 49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壬申년 奉安시 수정하였음. 案의 명단에서 故人的 경우 이름 위에 '仙'자를 썼는데 거의 대부분 仙자가 쓰여있음. *형태:성책문서, 총9면	1	37.2	23.7
112	門中記錄	2		東萊 鄭氏門中		門中記錄. 계묘년에작성된東萊鄭氏門案으로 鄭東興등55명의성명과자와생년이기록되어있으며,故人的경우이름위에仙자가쓰여있음 *형태:성책문서,총10면	1	34.1	28.1
113	門中記錄	3		東萊 鄭氏門中		門中記錄. 임오년에 작성된 東萊鄭氏門案으로 鄭東烈 등 43명의 성명과 자와 생년이 기록되어 있으며, 故人的 경우 이름 위에 仙자가 쓰여 있음 *형태:성책문서, 총9면	1	31.9	29.6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14	門中記 錄	4		東萊鄭 氏門中		門中記錄. 정유년 4월에 작성한 문중명단. 芝 山, 龍山 등 마을별로 성명, 자, 생 년을 기록 *뒷부분에 大門中書冊目錄과 用下 記 수록 *연도는 기록된 화폐 단위에서 추 정. *형태:성책문서, 총19면	1	22.8	18.0
115	時到記	1		芝山祠		임신년부터 임술년까지 사우를 방문 한 98명의 명단을 기록한 尋祠錄. 성명, 방문이유, 방문날짜 등이 기 록되어 있으며, 新恩인사자의 이름 에는 점을 찍어 표시를 함. *형태:성책문서, 총14면	1	38.7	23.7
116	時到記	2		芝山祠		1920(庚申)년 2월 29일부터 1933 (癸酉)년 2월 17일까지 14년간 芝 山祠 春享祭 참가자 명단을 기록한 時到記. 성명, 자, 호, 본관, 생년, 거주기를 기록하다가 계해년부터 본관과 거주 지만 기록. *형태:성책문서, 총32면	1	26.0	30.7
117	祭官錄	1		芝山祠		1920(庚申)년 2월28일부터 1959(己 亥)년까지 芝山祠 제관 명단을 적은 祭官錄. *형태:성책문서, 총46면	1	25.6	30.5

② 고서

ID	四分 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	사부	東鑑綱目	1	宋秉璿(朝鮮) 撰	新鉛活字 本	南原; 南原鄉校; 檀紀 4303[1970]	27卷5冊; 四周雙邊, 23.1×14.9; 16行30字; 上下向2葉 花紋魚尾; 28.5×19.6	*말미에 발간임 원록 수록	線裝
2	사부	東鑑綱目	1-1						
3	사부	東鑑綱目	1-2						
4	사부	東鑑綱目	1-3						
5	사부	東鑑綱目	1-4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6	사부	東鑑綱目前編	2	金在洪編	新鉛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4卷1冊; 四周雙邊, 22.8×16.1; 16行30字;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28.7×19.7	*書名: 表題에 의함	線裝
7	사부	東萊鄭氏世譜	3		筆寫本, 木板本		2卷2冊; 四周單邊, 25.2×18.7; 有界; 世別6段; 無魚尾, 內向2葉花 紋魚尾; 33.9×22.5	*書名: 表題에 의함 *墨書: 西紀一六 五五年乙未譜上 卷孝宗六年(앞표 지) *판본은 다르나 필사기에 의거하 여 같은 秩로 판단	線裝
8	사부	東萊鄭氏世譜	3-1					*墨書: 乙未譜 下卷(앞표지), 明治四十四年大 韓 隆 熙 五 年 (1911)辛亥正月 初五日大門中有 司 鄭 庚 璟 字 允 珉(뒷표지 이면) *상태: 오염이 심함	
9	사부	東萊鄭氏族譜	4	鄭萬朝編	新鉛活字本	京城; [刊寫者未詳]; 己未(1919)	44卷16冊; 四周雙邊, 25.5×17.0; 世別9段;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32.5×21.0		線裝
10	사부	東萊鄭氏族譜	4-1						
11	사부	東萊鄭氏族譜	4-2						
12	사부	東萊鄭氏族譜	4-3						
13	사부	東萊鄭氏族譜	4-4						
14	사부	東萊鄭氏族譜	4-5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15	사부	東萊鄭氏族譜	4-6						
16	사부	東萊鄭氏族譜	4-7						
17	사부	東萊鄭氏族譜	4-8						
18	사부	東萊鄭氏族譜	4-9						
19	사부	東萊鄭氏族譜	4-10						
20	사부	東萊鄭氏族譜	4-11						
21	사부	東萊鄭氏族譜	4-12						
22	사부	東萊鄭氏族譜	4-13						
23	사부	東萊鄭氏族譜	4-14						
24	사부	東萊鄭氏族譜	4-15						
25	사부	東萊鄭氏族譜	5		木板本	慶州府; 丙申(1716)	6卷6冊; 四周雙邊, 23.8×20.1; 有界; 世別7段; 上下內向2 葉花紋魚尾; 34.5×23.7	*書名: 表題에 의함 *墨書: 西紀一七 一六年丙申譜肅 宗四二年(앞 표 지)	線裝
26	사부	東萊鄭氏族譜	5-1						
27	사부	東萊鄭氏族譜	5-2						
28	사부	東萊鄭氏族譜	5-3						
29	사부	東萊鄭氏族譜	5-4						
30	사부	東萊鄭氏族譜	5-5						
31	사부	東萊鄭氏執 義公派譜	6	鄭英秀 編	新鉛活字 本	서울; 東萊鄭氏執 義公派譜編 纂委員會; 1991	10卷10冊; 四周雙邊 23.7×16.2; 世別7段; 行字數不定 小字雙行 上2葉花紋魚 尾 28.8×19.7	1991년에 간행 된 東萊鄭氏執 義公派譜.	線裝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32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1						
33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2						
34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3						
35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4						
36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5						
37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6						
38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7						
39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8						
40	사부	東萊鄭氏執義公派譜	6-9						
41	사부	東萊鄭氏派譜	7		木活字本		4卷4冊; 四周單邊, 27.6×19.5; 有界; 世別6段; 上3葉花紋 魚尾; 34.7×23.3	*내용: 首編: 直學公一子執義公蘭孫派, 壬編: 翼惠公一子昌原公光輔派, 申編: 翼惠公二子文翼公光弼派, 巳編: 執義公四子星州公光廷派	線裝
42	사부	東萊鄭氏派譜	7-1						
43	사부	東萊鄭氏派譜	7-2						
44	사부	東萊鄭氏派譜	7-3						
45	사부	戊辰孟春日墓前笏記	8		筆寫本	[筆寫者未詳]; 戊辰孟春日	不分卷1帖(4折10面); 四周單邊, 31.1×11.0; 有界; 8行20字內 外; 86.9×34.2	*書名: 表題에 의함. *볼펜으로 한글 음을 기록하였음.	折帖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46	사부	祭物記 陳設圖	9		筆寫本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不分卷1帖(3折8面); 四周單邊, 33.9×12.5; 行字數不定; 無魚尾; 100.2×37.1	*書名: 表題에 의함. *내용: 祭物單子記, --執事分定記, --陳設圖	折帖
47	사부	芝山祠笏記	10		筆寫本	[筆寫者未詳]; 庚申二月	不分卷1帖(3折8面); 有界; 10行20字內外; 無魚尾; 95.6×37.2	*書名: 表題에 의함. *볼펜으로 광곽 선을 그음. *표지 우측 하단에 茂午四月日復築着工, 己未三月日復築竣工, 庚申二月二十八日禮成이라고 芝山祠 증건관련 내용 기록.	折帖
48	사부	笏記	11		筆寫本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不分卷1帖(4折10面); 四周單邊, 33.8×12.2; 有界; 無魚尾; 99.0×37.0	*書名: 表題에 의함	折帖
49	사부	靈光靑襟案	12	丁碩柱編	石板本	靈光; 雙樂齋; 昭和7(1932)	不分卷1冊(29張); 四周雙邊, ×22.3 16.2; 10行24字; 上2葉花紋魚尾; 29.7×19.3		線裝
50	사부	靈光續修輿地勝覽	13	姜永寬	木活字本	昭和6(1931)	3卷3冊; 四周單邊, 25.3×17.4; 上2葉花紋魚尾; 30.5×20.5	*書名: 版心題에 의함 *卷1에 지도(채색) 2장 2면. *맨 뒤에 任員錄 수록.	線裝
51	사부	靈光續修輿地勝覽	13-1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52	사부	靈光續修輿地勝覽	13-2						
53	집부	文獻寶鑑	1	李起澤編	石版本	長城; 萬仙齋; 昭和13(1938)	12卷12冊; 四周雙邊, 23.9×15.4; 有界; 14行30字; 上下向黑魚尾; 30.5×19.0		線裝
54	집부	文獻寶鑑	1-1						
55	집부	文獻寶鑑	1-2						
56	집부	文獻寶鑑	1-3						
57	집부	文獻寶鑑	1-4						
58	집부	文獻寶鑑	1-5						
59	집부	文獻寶鑑	1-6						
60	집부	文獻寶鑑	1-7						
61	집부	文獻寶鑑	1-8						
62	집부	文獻寶鑑	1-9						
63	집부	文獻寶鑑	1-10						
64	집부	文獻寶鑑	1-11						
65	집부	靈光文獻錄	2	李文彩編	石板本	靈光; 文獻錄發刊所; 1971	2卷2冊; 四周雙邊, 22.8×16.0; 有界; 13行35字; 上下向二葉花紋魚尾; 28.7×10.0	영광지역의 선비들이 쓴 문헌을 모아놓은 책. *내용: 冊1, 神道11. --墓碣銘94. --碑31. --墓59. 冊2, 疏2. 行狀71. --行錄21. --家狀13. --上樑文6. --序17. --記57. --傳13. --薦狀33. --隨錄16	線裝
66	집부	靈光文獻錄	2-1						
67	집부	九溪遺稿	3	朴敏淳著		九溪精舍; 1980	2卷1冊; 四周雙邊, 22.4×13.8; 12行26字; 上2葉花紋魚尾; 27.3×18.6		線裝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68	집부	一齋先生集	4	李恒 著	木板本		2卷1冊; 四周雙邊, 20.0×16.0; 有界; 10行20字; 上下內向2 葉花紋黑魚 尾; 30.2×19.6		線裝
69	집부	竹窓集	5	鄭弘衍 著	筆寫本		5卷2冊; 四周單邊, 26.8×20.0; 有界; 無魚尾; 36.6×23.6	조선 중기의 문 신 정홍연(鄭弘 衍)의 시문집.	線裝
70	집부	竹窓集	5-1						
71	집부	竹窓集	6	鄭弘衍 著	石板本		4卷1冊; 四周雙邊; 有界; 11行字數不 定; 上下向2葉 花紋黑魚尾	*내용: 권1·2에 시 284수, 表 1, 권3 書 1, 序 2, 記 2, 錄·疏·祝 文 각 1, 권4 부 록 만사 36, 上 樑文 1, 기 2, 祝 1, 跋	線裝
72	집부	湖陰先生 文集	7	鄭士龍	石板本	醴泉; 知保齋; 檀紀四二九 五(1962)年	8卷4冊; 四周雙邊, 24.2×15.7; 有界; 12行28字; 上下向一葉 花紋魚尾; 31.0×17.8	1962년에 발간 한 湖陰 鄭士龍 의 문집. *내용: 卷1-6, 詩. 卷7, 教. -- 狀. --議. --筭. --箋. --表. -- 書. --序. --記. --跋. --箴. -- 祭文. 卷8, 碑碣	線裝
73	집부	湖陰先生 文集	7-1						
74	집부	湖陰先生 文集	7-2						
75	집부	湖陰先生 文集	7-3						

③ 유물

ID	유형 분류	자료명	자료 번호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	유물	갓끈 장식구슬	1	갓끈에 장식했던 장신 구슬로 끊어져 날개로 28개가 남아있음.	1		
2	유물	사발	1	금속 재질의 사발 *지름:13.5cm	1		
3	유물	銅鏡	1	청동거울 *지름:25.1cm	1		
4	유물	벼루	1	벼루 *높이:1.4cm	1	11.8	21.1
5	유물	연적	1	거북모양의 연적 *재질:청동	1	6.0	5.0
6	유물	쇠못	1	쇠못으로 용도를 알 수 없으며, 날개로 23개가 있다. *재질:철	1	17.5	1.1
7	유물	사진	1	1980년 2월 29일 지산사 복설기념 컬러사진	1	20.2	25.2

4)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

(1) 조사 및 수집 경위

2018년 9월에 이근호 소장자께서 목포대학교박물관 측에 기탁 의사를 밝혔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정영희 관장께서 본원으로 기탁을 유도하여 자료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근호 소장자와 사전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11월 13일(화)에 이근호 소장자가 거주하고 계신 영광 묘량면에 위치한 자택을 방문하였다. 소장자께서 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광군을 통해 본원으로 자료조사를 의뢰하였다.⁴³⁾ 팀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소장자께서 꺼내 주신 자료를 조사하였다. 「廣州李氏門案」 및 족보 자료 등 총 27점을 확인하였다. 족보 자료를 펼쳐 소장자와 면담을 나누며 가계 및 주요 인물, 선산 위치, 자료의 소장 내력 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임명장(고신) 2점은 큰집 소장본으로 컬러로 복사하여 액자로 보관하고 있었다.

광주이씨 자료는 앞서 2005년에 문화재청에서 일반동산문화재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추진한 바 있었다. 이 때 광주이씨 자료는 故 이재호(소장자의 사촌 큰형님) 소장 자료에 포함되어 일괄 조사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사된 자료는 고문서 45종 45점, 전전류 14종 24책 등 총 59종 69점이다. 이후 이재호 소장자께서 작고하셨고 큰집 자

43) 자료를 계속 소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자료들을 잃어버릴까 불안하기도 하고 문중에서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증이 아닌 기탁으로 하고 싶어 박물관 등에 의뢰했는데 마침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생겨서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료는 그대로 큰 조카(이재호의 둘째 아들 이동욱)에게 가전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근호 소장자는 문안 및 족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동욱 소장자는 주로 시권 및 호구단자 등 낱장의 고문서 자료와 고서 일부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큰집 가전 자료 또한 함께 조사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광주 신창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욱 소장자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 당일 이근호 소장자와 함께 광주로 이동하였다. 오후 5시에 광주 신창동에 도착하여 이동욱 소장자를 만나 이근호 소장자와 함께 조사 경위를 설명하고 곧바로 자료를 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 목록과 비교해 본 결과, 고문서 자료는 모두 확인되었으나 고서 자료는 일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재호 소장자 사후 중간에 자료 관리 및 전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 추후 자료의 출처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임명장, 시권, 호구단자 등 총 37점에 해당하는 고문서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근호 소장자와 뜻을 같이한다고 하여 당일 낱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6>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 현지 조사



자료 소장자(이근호)

자료조사 및 검토

소장자 면담 및 자료 열람



자료 해체 및 열람

자료 유형 및 수량 파악

(2) 가계와 입향 배경

광주이씨는 현재 울정공파(李寬義, 1409~1491), 둔촌공파(李集, 1327~1387), 십운과공파(李自齡), 석탄공파(李養中, 1348~1424), 암탄공파(李養蒙, 1351~1422)의 5대 계파가 있다. 『병진보』(1856)에 의하면 울정공파, 둔촌공파, 석탄공파, 암탄공파의 4계 파는 그 선대로 올라가면 회안호장으로 강계된 李漢希의 직계후손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려 고종 때 廣陵三益인 李益庇, 李益俊, 李益康 3명은 이한희의 대수 미상 후손이며, 광주이씨의 계보상 실제 대수는 광능삼익으로부터 비롯되고 광능삼익 이후의 대수부터가 광주이씨의 계보상의 실제 대수이다.⁴⁴⁾

석탄공파와 암탄공파의 양중과 양몽 형제는 여말 고려 조정의 형조참의와 판도판서의 고위직에 올라 광주이씨의 중흥을 꾀하다가 이태조의 조선 건국으로 모든 관직을 버리고 두문불출하며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켜 3명의 두문동 72현을 배출한 대표적인 충절 가문이 되었으며, 李集의 둔촌공파는 조선 중기의 광주이씨 중흥의 주류를 이루면서 조선조 최고의 명문가로서 당대의 명성을 날렸다. 광주이씨는 조선조에 들어와서 문과 급제가 196명, 무과 급제가 274명, 정승 5명, 문형(대제학) 2명, 청백리 5명, 공신 11명

44) 광주이씨대종회(<http://www.gwanglee.kr/>) 참고.

등을 배출했다.⁴⁵⁾

광주이씨 영광 입향조 퇴암공 李天奇(1436~1516)는 한성판윤으로 1504년 9월 29일 연산군에 의해 관직을 삭탈 당하고 서울 사직동에서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그의 5대조는 고려조 때 통정대부 형조참의를 지낸 석탄공 이양중이며, 부친은 副正佐郎을 지낸 南坡 李師晟이다. 중종이 1506년과 1515년 복직을 권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영광읍 학정리 학실에서 여생을 보내며 후손들을 지도하였다.⁴⁶⁾

이천기의 아들 7세 李芳(1474~1514)은 문장이 뛰어나 16세 때 監試, 兩場, 東堂에서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였으나 會試에 나아가지 않았다. 모친이 병환으로 위태롭자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 피를 수혈하였고, 모친 사후 3년 동안 여묘 살이⁴⁷⁾를 하는 등 효행으로 천거되어 효릉참봉을 지냈다. 광산김씨 金遇夔의 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아들 李峻齡(1498~1556)을 두었다.

8세 이준령 또한 어려서부터 효행과 문장이 뛰어났다. 1534년(중종 29) 갑오 알성시 을과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흥문관 교리, 초계·마전 등 군수, 경상도어사, 삼도해운판관, 한성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금산김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李宏中(1537~1608), 李容中(1543~1597)을 두었다.

9세 이광중은 기대승의 문인으로 문장이 뛰어났고 1568년(선조 1) 무진 증광시에 생원 3등 60위로 합격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생 이용중과 함께 격문을 만들었고 전투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해서 전투 중인 금산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13세 李泰宇(1658~1730)는 1689년(숙종 15) 기사 증광시 생원 3등 64위로 입격하였다. 18세 李馥弼(1807~1880)은 1879년(고종 16) 기묘 식년시 진사 2등 20위로 입격하였고, 통정대부에 올랐다.

입향조 이후 후손들은 대대로 영광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며 임진왜란 및 영광 수성에도 참여하여 충절을 행하였고, 학식과 문장이 뛰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으로도 진출하였다. 현재 영광읍 학정리 학실 마을 입향 이후 후손들은 묘량면 운당리 매화 마을, 월암리 성도, 군서면 매산리 매산 마을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문중 재실인 退菴齋가 있으며 묘량면 운당리에 효열비가 있다.

45) 이상의 내용은 『영광군지』 4(성씨와 지명 그리고 인물),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02, 138~139쪽 ; 광주이씨대종회(<http://www.gwanglee.kr/>) 참고.

46) 『영광군지』 4(성씨와 지명 그리고 인물),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02, 142쪽.

47) 여묘살이 할 적에 새 두 마리가 묘소 앞 나뭇가지에 앉아 한결같이 공이 哭拜하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울다가 삼년 후에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廣州李氏石灘公巖灘公世譜』(壬午譜), 2002, 15쪽)

<표 10>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 가계48)

1세 李養中(1348~1424)	중시조 / 字: 士槩 / 號: 石灘 / 고려 문과, 형조참의 / 조선 태조의 혁명에 항의하여 신하로 나가지 않고 廣州에서 은거함, 두문 72현에 입록, 廣州 龜岩書院에 배향 / 配: 晉州姜氏 / 자녀: 2남 / 墓: 廣州郡 東部邑 德豐里
2세 李遇生(1382~1447)	司醞主簿 贈 左贊成 / 配: 慶州崔氏 / 자녀: 2남 / 墓: 廣州郡 草月面
3세 ②李錫哲	字: 吉甫 / 號: 月峰 / 참봉, 수원부사 / 配: 潘南朴氏 / 자녀: 2남 / 墓: 廣州 伐川 → 1983년 全南 靈光郡 靈光邑 鶴丁里 杜牧洞 光山先塋으로 이장
4세 李萌	字: 子彥 / 號: 圃叟 / 진사, 이조참의 / 配: 海州吳氏 / 자녀: 2남 / 墓: 廣州 伐川 → 1983년 全南 靈光郡 靈光邑 鶴丁里 杜牧洞 光山先塋으로 이장
5세 ②李師晟	字: 成之 / 號: 南坡 / 문과, 副正佐郎 / 配: 東萊鄭氏 / 자녀: 1남 / 墓: 廣州 伐川 → 1983년 全南 靈光郡 靈光邑 鶴丁里 杜牧洞 光山先塋으로 이장
6세 李天奇(?~1516)	字: 表爾 / 號: 退菴 / 세조 때 문과, 漢城判尹 / 연산군 때 (1504, 갑자) 영광으로 귀양을 감 / 配: 貞夫人 密陽朴氏 / 墓: 靈光 西部面 放光山 / 退菴公派祖, 영광 입향조
7세 李芳(1474~1514)	字: 華甫 / 號: 白溪 / 孝行 卓異 / 중종 때 孝陵參奉 / 配: 恭人 光山金氏 / 墓: 放光山 선영
8세 李峻齡(1498~1556)	字: 天老 / 號: 竹軒 / 1528년 司馬, 1534년 文科, 弘文校理, 郡守, 慶尙道御史, 三道海運判官, 漢城判官 등 / 配: 錦山金氏 / 墓: 放光山 선영, 墓誌 있음
9세 ②李容中(1543~1597)	字: 景洪 / 號: 菊圃 / 1570년 생원 / 임진왜란 때 鶴梅公과 함께 倡義 守城 / 配: 宜人 慶州金氏 / 墓: 放光山 先塋
10세 李侃(1570~1636)	字: 士行 / 通德郎 / 配: 晉(州)姜氏 / 墓: 靈光 黃良面 稷石洞
11세 李翰雲(1596~1625?)	字: 子昇 / 配: 南平潘氏 / 墓: 西部面 放光山
12세 李世燁(1622~1683)	字: 完實 / 配: 羅州羅氏 / 墓: 麻山面 雉山村
13세 李泰宇(1658~1730)	字: 享淑 / 號: 月菴 / 1719년 사마시 입격, 진사, 문집 있음 / 配: 大丘裴氏 / 자녀: 4남 4녀 / 墓: 靈光 六昌面 梧川村 后 鞍馬山
14세 ①李浹(1677~1698)	字: 德允 / 配: 寧越辛氏 / 墓: 六昌面 舊 鼠井洞
14세 ④李澤(1688~1768)	字: 德淵 / 號: 雪峯 / 1740년 생원 / 配: 淸道金氏 / 墓: 靈光 六昌面 梧村
15세 李珍樹(1732~1794)	生父: 李澤 / 字: 元伯 / 配: 陽城李氏 / 墓: 麻山面 雉山村
16세 ①李大榮(1754~1823)	字: 乃中 / 配: 錦安羅氏 / 자녀: 2남 1녀 / 墓: 雉山
17세 李垠(1777~?)	字: 乃有 / 配: 晉州姜氏, 金海金氏
18세 李鉉右(1799~?)	字: 仁瑞 / 配: 高興柳氏, 漢陽趙氏
16세 ②李重榮(1758~1782)	字: 華汝 / 號: 松와 / 學行 卓異 / 配: 密陽朴氏 / 墓: 鼠井洞

48) 『廣州李氏退菴公派世譜』(丁巳譜), 1977; 『廣州李氏石灘公巖灘公世譜』(壬午譜), 2002.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17세 李坤(1780~1853)	生父: 李大榮 / 字: 乃寬 / 配: 商山金氏 / 墓: 稷石洞
18세 李馥弼(1807~1880)	初諱: 鉉五 / 字: 光國 / 號: 石圃 / 己卯 登 成均進士, 通政大夫,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僉知中樞府事 兼五衛將 / 配: 淑夫人 長興高氏 / 墓: 馬村面 春洞村
19세 李圭淳(1826~1904)	字: 穉文 / 號: 石湖 / 贈通政大夫 / 配: 淑夫人 晉州姜氏 / 墓: 畝良面 馳馬山 / 생몰년을 간지로만 표기.
20세 李民述(1842~1935)	字: 天淑 / 號: 晚悟 / 贈通訓大夫 / 配: 淑人 安定羅氏 / 墓: 畝良面 오岩峙
21세 ②李炳浩(1868~?)	字: 道明 / 號: 南谷 / 繕工監 / 配: 淑人 全義李氏, 密陽朴氏 / 墓: 영광 石亭山
22세 ①李春喜(1893~1961)	字: 喜仲 / 號: 野隱 / 順陵參奉 / 配: 咸陽朴氏 / 墓: 광주 시 윤림동
23세 李鍾秀(1912~1993)	字: 鍾官 / 號: 穎川 / 발명왕 / 配: 錦城朴氏, 平澤林氏 / 墓: 雲林洞(광주-임오보)
24세 ③李平浩(1946~)	號: 耕民 / 配: 會津林氏
24세 ④李在浩(1947~)	號: 海廣 / 配: 全州李氏 -2005년 동산문화재 조사 당시 제보자
25세 ②李東民(1977~)	李平浩 2子 / 임오보(2002)에는 李東旭(1976년생)으로 기재되어 있음. / -제보자②(고문서 소장자)
22세 ②李景喜(1899~1972)	李炳浩 2子 / 字: 喜春 / 配: 信川康氏 / 墓: 梅花後麓
23세 李鍾臣(1922~1944)	配: 全州李氏 / 墓: 放光山
24세 李根浩(1944~)	配: 文化柳氏 -제보자①(고서 소장자)

(3)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내용

소장 자료는 총 60점으로 고문서 37점, 고서 23점이다. 이근호 소장 자료 23점,⁴⁹⁾ 이 동욱 소장 자료 37점을 한 소장처로 간주하여 정리하였다. 고문서의 경우 교령류 9점, 소차계장류 2점, 증빙류 26점이다. 고서의 경우 전기류 4책, 지리류 5책, 계보류 14책이다.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조사한 바 있으나 일부 자료가 전래 과정에서 유실되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표 11>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 소장 자료 현황

자료유형	자료명	종수	점수	비고
고문서	白牌	2	2	李泰宇, 李馥弼
	告身	5	5	李峻齡, 李馥弼, 李馥弼 妻 高氏
	追贈教旨	1	1	李民述
	官誥	1	1	李奎淳

49) 2018년 11월 13일 조사 당시에는 총 27점으로 파악하여 수집하였다. 이후 2018년 12월 12일 이근호 소장자의 요청에 따라 족보 자료 정사보(1977) 3책, 임오보(2002) 1책을 반환하였고, 영광임진수성록 1책을 추가로 수집하여 총 23점으로 정리하였다.

	소차계장류	所志	2	2	幼學鄭東維 等 29人, 幼學李宗杰 等 28人
	증빙류	戶口單子	1	1	李以坤
		準戶口	18	18	李大榮, 李坤, 李以坤, 李垠, 李敦弼, 李鉉弼, 李馥弼, 李鉉升, 李圭淳
		試券	7	7	李馨弼
고서	사부	傳記類	4	4	廣州李氏門案
		地理類	3	5	靈光鄉校重修實記, 全南靈光郡誌, 靈光壬辰守城錄
		系譜類	6	14	廣州李氏派譜, 廣州李氏派譜, 廣州李氏族譜, 廣州李氏世譜
합계			50	60	

교령류는 9종 9점으로 백패 2점, 고신 5점, 추증교지 1점, 관고 1점이다. 과거시험합격증은 13세 李泰宇(1658~1730)와 18세 李馥弼(1807~1880)의 생원시와 진사시 입격증이다. 이태우는 1689년(숙종 15) 기사 증광시 생원 3등 64위로 입격하였고, 이복필은 1879년(고종 16) 기묘 식년시 진사 2등 20위로 입격하였으며 통정대부에 올랐다. 이복필의 경우, 당시 진사시험답안지가 함께 남아 있다.

임명장은 이천기의 손자 8세 李峻齡(1498~1556)과 이복필의 고신 사례이다. 이준령을 1545년 朝奉大夫 行漢城府判官, 1549년 中直大夫 行麻田郡守로 임명하면서 발급해 준 임명장이다. 이복필의 경우, 1879년에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兼五衛將,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임명되었고, 종부직 규정에 따라 그의 처 長興高氏는 淑夫人에 임명되었다.

추증교지는 1889년에 李民述(1842~1935)을 嘉善大夫 行吏曹參判에 추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시명지보가 찍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민술은 이복필의 손자이다.

관고는 대한제국기에 발급한 임명장의 형식으로 1902년에 李奎淳(1826~1904)을 正三品 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해 준 사례이다. 좌방서에 따르면, 대항제폐하가 耆社에 들었을 때의 사서인 가운데 나이가 88세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자하라는 칙지에 의거한다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소차계장류는 2종 2점으로 모두 정려를 요청하는 사례이다. 병인년에 鄭東維 등 29인이 이태우의 넷째 아들 李澤(1688~1768)의 특이한 효행과 학문에 대해 정려해 주기를 영광군수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行誼가 매우 嘉歎할 만 하니 더 많은 實蹟을 찾아 轉報한다면 헤아리겠다.’고 처분을 내렸다. 을묘년에 李宗杰 등 28인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영광군 卞山에 사는 효자 李大榮(1754~1823)과 그의 제수 밀양박씨의 효행을 칭송하며 정려를 세우도록 청원하면서 올린 상서이다. 이에 대해 전라감사는 ‘뭍의 보고를 기다린 후에 헤아려 처리할 일이다.’라고 처결하였다. 이대영은 이태우의 증손이다.

증빙류는 26종 26점으로 호구단자 1점, 준호구 18점, 시권 7점이다. 16세 李大榮, 17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세 李坤(=李以坤), 17세 李垠, 18세 李敦弼, 李鉉弼, 李馥弼(=李鉉升), 19세 李圭淳 등이 올린 호구단자와 준호구 사례이다. 영광군 卞山面 新村里, 卞山面 東古介里, 畝長面 昌洞里, 馬村面 水砧里, 馬村面 春洞里 등이 거주지로 확인된다.

시권은 과거 시험을 볼 때 작성한 답안지로 7점 가운데 2점은 이복필(73세)이 1873년 정월 19일에 전라좌도 순창 감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례와 3월 초10일 회시에 응시하여 작성한 답안지이다. 이외 시권의 경우 앞뒤 부분이 결락된 상태로 답안지를 작성한 응시자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고서는 총 23책으로 사부에 전기류 4책, 지리류 5책, 계보류 14책이다. 전기류는 모두 「廣州李氏門案」으로 필사본이며 18~19세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사 이택의 서문, 불초손 이복필의 서문이 확인된다. 지리류에는 『靈光鄉校重修實記』 1책, 『全南靈光郡誌』 3책, 『靈光壬辰守城錄』 1책이 있다. 계보류에는 『廣州李氏派譜』 3책(목판본), 『廣州李氏派譜』 2책(목판본), 『廣州李氏派譜』 1책(목판본), 『廣州李氏族譜(1725)』 1책(복사본), 『廣州李氏族譜(1802)』 3책(복사본), 『廣州李氏世譜(1857)』 4책(복사본) 등이 있다.

(4) 영광 광주이씨 퇴암공(이천기)후손가 소장 고문헌 목록

① 고문서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	白牌	1	1689	肅宗	李泰宇	1689년에 李泰宇가 生員에 入格하고 받은 문서. *生員三等第六十四人 *籤紙: …(員)三等第六十四人	1	68.5	35.4
2	白牌	2	1879	高宗	李馥弼	1879년에 李馥弼이 進士에 入格하고 받은 문서. *進士二等第二十八人入格 *籤紙(背面): 幼學李馥弼進士二等第二十八人	1	83.5	45.3
3	告身	1	1545	仁宗	李峻齡	1545년에 李峻齡을 朝奉大夫 行漢城府判官에 임명하는 문서.	1	50.0	56.0
4	告身	2	1549	明宗	李峻齡	1549년에 李峻齡을 中直大夫 行麻田郡守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 己五別加	1	49.8	69.4
5	告身	3	1879	高宗	李馥弼	1879년에 李馥弼을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 兼 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 *右傍書: 加設	1	50.0	69.7
6	告身	4	1879	高宗	李馥弼	1879년에 李馥弼을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兼 五衛將에 임명하는 문서.	1	48.7	69.9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7	告身	5	1879	高宗	李馥弼 妻 高氏	1879년에 高氏를 淑夫人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 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李馥弼妻依法典從夫職	1	52.8	71.7
8	追贈教旨	1	1889	高宗	李民述	1889년에 李民述을 嘉善大夫 行吏曹參判에 추증하는 문서.	1	47.2	54.4
9	官誥	1	1902	高宗	李奎淳	1902년에 李奎淳을 正三品 通政大夫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 大皇帝陛下入耆社時士庶年八十八覃恩加資事奉勅	1	38.7	58.6
10	所志	1		鄭東維 等 29人	靈光郡 守	병인년에 鄭東維 등 29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상서. 정동유 등 29인은 영광군에 사는 成均進士 李澤이 대대로 충의와 절의가 있는 집안 출신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형제와의 우애가 깊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를 힘쓰는 인물이니 정려를 세우기를 청원하는 내용임. *판결(廿三日): 行誼가 매우 嘉歎할 만 하니 더 많은 實蹟을 찾아 轉報한다면 헤아리겠다고 명함.	1	97.8	62.3
11	所志	2		李宗杰 等 28人	全羅道 觀察使	을묘년에 李宗杰 등 28인이 全羅道觀察使에게 올린 상서. 이종걸 등 28인은 영광군 卞山에 사는 효자 李大瑩과 그 제수 朴氏의 효행을 칭송하며 정려를 세우도록 청원하는 내용임. *판결(十四日): 문의 보고를 기다린 후에 헤아려 처리하겠다고 명함.	1	94.3	57.7
12	戶口單子	1	1837	李以坤	靈光郡	1837년에 李以坤(58세)이 靈光郡에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靈光郡 卞山面 新村里 *가족사항: 아들1, 며느리1 *참고: 生父 李大榮, 妻 金氏 故	1	34.5	60.1
13	準戶口	1	1822	靈光郡	李大榮	1822년에 靈光郡에서 李大榮(6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卞山面 第 東古介里 第一統 第二戶 *가족사항: 아들1, 며느리1, 손자1, 손자며느리1	1	32.7	60.5
14	準戶口	2	1825	靈光郡	李坤	1825년에 靈光郡에서 李坤(46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卞山面 第八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1	32.4	60.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가족사항: 부인1, 아들1, 며느리1 *참고: 生父 李大榮			
15	準戶口	3	1828	靈光郡	李坤	1828년에 靈光郡에서 李坤(4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卍山面 第七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부인1, 아들1, 며느리1 *참고: 生父 李大榮	1	35.3	60.0
16	準戶口	4	1831	靈光郡	李以坤	1831년에 靈光郡에서 李以坤(52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卍山面 第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부인1, 아들1, 며느리1 *참고: 生父 李大榮, 李坤과 李以坤은 동일인물로 추정.	1	39.8	59.1
17	準戶口	5	1837	靈光郡	李以坤	1837년에 靈光郡에서 李以坤(58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卍山面 第四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1, 며느리1 *참고: 生父 李大榮	1	34.1	55.9
18	準戶口	6	1840	靈光郡	李以坤	1840년에 靈光郡에서 李以坤(61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卍山面 第四 新村里 第一統 第三戶 *가족사항: 아들2, 며느리2 *참고: 生父 李大榮	1	38.2	66.0
19	準戶口	7	1846	靈光郡	李以坤	1846년에 靈光郡에서 李以坤(67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卍山面 第十三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2, 며느리2, 손자2, 손자며느리1 *참고: 生父 李大榮	1	35.3	57.5
20	準戶口	8	1849	靈光郡	李以坤	1849년에 靈光郡에서 李以坤(70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麻山面 第十二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2, 손자2 *참고: 生父 李大榮	1	38.7	62.3
21	準戶口	9	1852	靈光郡	李坤	1852년에 靈光郡에서 李坤(73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麻山面 新村 第一統 第二戶	1	38.7	62.8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2	準戶口	10	1840	靈光郡	李垠	1840년에 靈光郡에서 李垠(6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卞山面 東古介里 第一統 第二戶 *가족사항: 부인1	1	34.6	58.8
23	準戶口	11	1834	靈光郡	李敦弼	1834년에 靈光郡에서 李敦弼(36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卞山面 第十 新村里 第一統 第二戶 *가족사항: 부인1	1	35.6	57.2
24	準戶口	12	1843	靈光郡	李鉉弼	1843년에 靈光郡에서 李鉉弼(27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卞山面 第九 新村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부인1	1	34.0	58.2
25	準戶口	13	1861	靈光郡	李馨弼	1861년에 靈光郡에서 李馨弼(55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畝長面 二十二 昌洞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3, 며느리1	1	42.5	55.2
26	準戶口	14	1864	靈光郡	李馨弼	1864년에 靈光郡에서 李馨弼(58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畝長面 第二十二 昌洞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3, 며느리3, 손자1, 손자며느리1	1	38.7	65.2
27	準戶口	15	1870	靈光郡	李鉉升	1870년에 靈光郡에서 李鉉升(71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畝長面 第十七 昌洞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2, 며느리2 *개명: 李馨弼→李鉉升	1	38.3	57.2
28	準戶口	16	1873	靈光郡	李鉉升	1873년에 靈光郡에서 李鉉升(7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馬村面 水砧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2, 며느리2 *개명: 李馨弼→李鉉升	1	34.0	58.5
29	準戶口	17	1879	靈光郡	李馥弼	1879년에 靈光郡에서 李馥弼(80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靈光郡 馬村面 春洞里 第一統 第一戶 *가족사항: 아들1	1	37.1	73.3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0	準戶口	18	1882	靈光郡	李圭淳	1882년에 靈光郡에서 李圭淳(57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가족사항: 아들1 *상태: 문서의 양끝부분이 잘려진 상태.	1	39.5	38.8
31	試券	1	1879	李馨弼		李馨弼이 73세에 작성한 試券. *己卯正月十九日左道淳昌監試入格 *詩題: 以三十年之通制國用賦<楷書> *科次: 次上 *字號: 十寒 *試官: 上試官李重七 副試官趙忠熙 光陽倅 參試官權應愚珍山倅 *封彌法, 割去法 *특징: 李馨弼의 4조와 생년간지 등을 미루어보면 이형필은 李馥弼.	1	71.3	141.2
32	試券	2	1879	李馥弼		李馥弼이 73세에 작성한 試券. *己卯三月初十日會試 *詩題: 文王作人之效如春風和氣賦<楷書> *科次: 次下 *字號: 七玄 *籤紙: 進士試二等第二十人 *封彌法, 割去法	1	76.8	164.5
33	試券	3				試券. *상태: 祕封없음. 상단부 내용이 누락되어 試券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 *參差人…	1	72.7	107.1
34	試券	4				試券. *科次: 次下 *封彌法, 割去法 *상태: 우측은 시권이 시작되는 부분이지만 심한 마멸로 판독하기가 어려운 상태. 祕封없음.	1	72.6	95.5
35	試券	5				試券. *상태: 祕封 없음. 상단부 내용이 누락되어 試券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움. *之道固…	1	72.2	106.4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6	試券	6				試券. *詩題: 禮義事君有犯 *科次: 更 *字號: 七水 *封彌法, 割去法 *상태: 祕封 없음	1	71.7	87.3
37	試券	7				試券. *詩題: 詩義于嗟乎騶虞 *字號: 二致 *等第: 二之十 *籤紙: 生員試二等第十九人 *封彌法, 割去法 *상태: 祕封 없음	1	70.5	93.2

② 고서

ID	四部 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	사부	廣州李氏門案	1	[編著者未詳]	筆寫本	[靈光]; [發行者未詳]; [1747]	不分卷1冊; 四周單邊, 34.5×25.3; 有界; 6行字數不 定; 註雙行; 43.5×30.6	廣州李氏門契案. *刊寫年 추정: 崇禎紀元後丁卯十一月初吉(표지), 서문 작성자 李澤 (1688~1768)은 1740년에 생원시 에 입격한 사람이 므로, 이 문안의 작성시기를 1747 년으로 추정. *내용: 序, --約 條, --명단. *面數: 13면	假綴
2	사부	[廣州李氏門案]	2	[編著者未詳]	筆寫本	[靈光]; [發行者未詳]; [1700년대 후반]	不分卷1冊; 8行字數不 定; 註雙行; 35.4×30.5	廣州李氏門契案. *표지누락. *서명: 내용에 의 함. *내용: 序, --約 條, --명단. *서문, 약조는 8 行, 명단은 10行으 로 구성. *書腦: 廿六丈 *面數: 11면	假綴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3	사부	廣州李氏門案	3	[編著者未詳]	筆寫本	[靈光]; [發行者未詳]; [1867序]	不分卷1冊; 四周單邊, 31.8×25.3; 有界; 8行字數不定; 註雙行; 41.5×29.4	廣州李氏門契案. *내용: 廣州李氏門案舊序, --序, --約條, --명단, --各行圖. *面數: 16면 *15면: 馨手書, 修案有司景淳, 禮淳, 義淳 *16면의 各行圖는 돌림자를 표기한 것.	假綴
4	사부	廣州李氏門案	4	[編著者未詳]	筆寫本	[靈光]; [發行者未詳]; 1882	不分卷1冊; 四周單邊, 22.2×33.9; 有界; 7行字數不定; 註雙行; 42.7×27.0	廣州李氏門契案. *내용: 廣州李氏門案舊序, --序, --約條, --명단, --各行圖. *面數: 20면 *서문 작성자의 이름이 馨馥에서 馥弼로 수정. 馨弼=馨馥=馥弼	假綴
5	사부	靈光鄉校重修實記	5	[編著者未詳]	石印本	[靈光]; [發行者未詳]; [1963跋]	不分卷1冊; 四周雙邊, 20.2×14.3; 有界; 12行28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26.2×18.6	靈光鄉校 重修에 대한 實記. *插圖: 校宮圖, 明倫堂圖, 大成殿正配從享位次圖, 釋奠正配位陳設圖, 釋奠從享位陳設圖 *내용: 正誤表. -- 聖廟丹青事實. -- 五聖事實略. -- 校宮位次. -- 通文. -- 誠助芳名錄. -- 韻. -- 收支現計表. *16, 17쪽은 제책 과정에서 누락되어 해당 위치에 끼워져 있음. *발문 뒤에 贊助員과 顧問 명단, 收支現計表 수록. *국한문 혼용.	線裝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6	사부	全南靈光郡誌	6	[編著者未詳]	石印本	靈光; 靈光鄉校; 1964	3卷3冊; 四周雙邊, 21.1×14.8; 有界; 12行字數不定; 註雙行; 花口;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26.8×18.9	1964년에 靈光鄉校에서 발행한 靈光郡誌. *插圖(卷首): 靈光郡關內圖, 靈光郡全圖 *내용: 券1, 建置沿革. --道路. --面里戶口人口. --堤堰. --橋梁. --官員. --山川. --風俗. --旌閭. --人物.券2, 壽職. --文行. --孝行. --烈行. --贈職. --賑恤. 券3, 記. --序. --上樑文. --行狀. --傳. --碑銘. --壇碑文.	線裝
7	사부	全南靈光郡誌	6-1						
8	사부	全南靈光郡誌	6-2						
9	사부	靈光壬辰守城錄	7	趙南植, 李大淵 編	復寫本	靈光; 築城倡義記念事業會, 靈光文化院; 1998	不分卷1冊; 26.0×19.1	임진왜란 때 靈光에서 향중사람들이 읍성을 지켜낸 기록을 담은 壬辰守城錄의 국역본. *내용: 간행사. --문화재자료지정서. --壬辰修城錄影印. --壬辰倭亂守城名帖敘序文國譯. --壬辰守城錄國譯. --守城法國譯 *靈光鄉土文化史料第18輯 *全羅南道文化財資料第201號 *국한문혼용. *복사본. *제보자의 15대조 李容中의 이름이 등재되어있음(26쪽).	洋裝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10	사부	廣州李氏派譜	8	[編著者未詳]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48(戊子)序]	2卷3冊; 四周雙邊, 20.7×13.7; 有界; 世別6段; 10行22字;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28.0×17.8	光山李氏派譜. *卷首題: 廣州李氏派譜 *서문 작성자인 李炳澤의 생년이 戊寅生이며, 해당 족보에 제보자까지 기재되어있어 발간 연대를 추측할 수 있음. *내용(卷首): 序. --凡例. --碑文. --文集序. --行狀. --褒獎. --跋. *시조(1세)부터 30세의 기록까지 있는데 石灘公派祖 李養中을 기준으로 작성함. *두번째 책의 卷首題는 '廣州李氏派譜卷之二'로 되어 있으나 版心題와 끝장에는 '卷之一'로 표기되어있음.	線裝
11	사부	廣州李氏派譜	8-1						
12	사부	廣州李氏派譜	8-2						
13	사부	廣州李氏派譜	9	[編著者未詳]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48(戊子)序]	2卷2冊; 四周雙邊, 20.8×13.7; 有界; 世別6段; 行字數不定;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28.3×17.6	光山李氏派譜. *卷首題: 廣州李氏派譜 *시조(1세)부터 30세의 기록까지 있는데 石灘公派祖 李養中을 기준으로 작성함. *系譜類1과 같은 족보이나 서문이 수록된 책은 누락.	線裝
14	사부	廣州李氏派譜	9-1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15	사부	廣州李氏派譜	10	[編著者未詳]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948(戊子)序]	1卷1冊; 四周雙邊, 20.7×13.7; 有界; 世別6段; 行字數不定; 上下向二葉 花紋魚尾; 28.2×17.7	光山李氏派譜. *卷首題: 廣州李氏派譜 *시조(1세)부터 30세의 기록까지 있는데 石灘公派祖李養中을 기준으로 작성함. *系譜類1과 같은 족보이나 시조부터 계보가 시작된 부분 1책만 남아있음. *卷首題는 '廣州李氏派譜卷之二'로 되어있으나 版心題와 끝장에는 '卷之一'로 표기되어있음.	線裝
16	사부	廣陵李氏族譜	11	[編著者未詳]	復寫本	冠洞; [刊寫者未詳]; 1725	不分卷1冊; 有界; 世別6段; 行字數不定; 29.4×20.8	光山李氏世譜. *내용: 序, --廣二分族譜說話記, --碑銘, --凡例, --系譜 *복사본	洋裝
17	사부	廣州李氏族譜	12	[編著者未詳]	復寫本	驪州; [刊寫者未詳]; 1802	3卷3冊; 有界; 世別6段; 11行23字; 29.1×20.2	廣州李氏 栗亭派, 石灘派, 判書派의 族譜. *내용: 序, --凡例, --廣二分族譜說話記, --碑文, --教書, --系譜, --跋, --姓族居住 *복사본	線裝
18	사부	廣州李氏族譜	12-1						
19	사부	廣州李氏族譜	12-2						
20	사부	廣州李氏世譜	13	[編著者未詳]	復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857	3卷4冊; 有界; 世別6段; 10行24字; 29.1×20.4	廣州李氏世譜 *내용: 序, --凡例, --廣二分族譜說話記, --碑文, --教書, --系譜 *복사본	線裝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21	사부	廣州李氏 世譜	13-1						
22	사부	廣州李氏 世譜	13-2						
23	사부	廣州李氏 世譜	13-3						

5) 영광 윤당리 제주양씨가

(1) 조사 및 수집 경위

2018년 9월에 이근호 소장자께서 목포대학교박물관 측에 기탁 의사를 밝혔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정영희 관장께서 본원으로 기탁을 유도하여 광주이씨 자료와 함께 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소장자 양국진께서 갑작스럽게 작고하여⁵⁰⁾ 만남을 기약하지 못하다가 이웃한 이근호 소장자께서 故 양국진 소장자의 아내인 김양자 씨와 연락이 닿아 곧바로 조사 일정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 12월 13일(금) 이근호 소장자 자택에 들러 함께 김양자 씨 댁을 방문하였는데 마침 큰 아드님도 함께 와 계셨다. 큰일을 치르고 난 직후라 경황이 없어 보였으나 조사를 하는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취지를 공감하고 자료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

광주이씨 자료와 마찬가지로 이 집안 자료 또한 2005년 일반동산문화재 자료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바가 있었다. 그 당시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수량은 고문서 98종 98점, 전적류 9종 12책 등 총 107종 110점이었다. 이를 근거로 다시 수량을 확인하고 자료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였다.

2005년 조사 이후 자료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영광군의 지원을 받아 각각의 자료마다 도난방지용 칩을 부착하고 자료 보관용 책장을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자료가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될 경우, 담당 기관 및 자료소장자에게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료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일부 임명장 자료는 액자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 총 107건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 후 영광군 윤상근 팀장님께 조사 결과를 알렸고 추후 기탁 절차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자료에 부착되어있는 도난방지용 칩은 별도로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상태를 유지하기로 하고 자료를 정리하기로 협의하였다.

50) 故 양국진 소장자께서 족보상의 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평소 열정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한다. 소장 자료의 내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계셨으나 더이상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광 운당리에 세거하고 있는 제주양씨는 본래 영광지역에 뿌리를 두고 세거한 제주 양씨⁵¹⁾와 구별된다. 즉, 묘량면 운당리에 제주양씨가는 원래 제주도에서 광주 양아리로 이거하여 살았다고 한다. 현재 광주 양아리에 제주양씨 집성촌이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나주 금산면으로 피난했고 이후 영광 묘량면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고 한다.

<그림 7>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현지 조사



자료 소장자 및 제보자 면담

자료 유형 및 수향 파악

자료조사 및 검토

51) 영광 지역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한 제주양씨는 직장공파(양덕예, 1597년 피난으로 입향)와 금성군파(양배익, 1382년 입향)가 대표적이다. 직장공파는 정유재란을 피하여 군남면 대덕리 삼각산 아래로 입향하였고 군남면 백양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금성군파는 당시 불안한 정세로 나주 다시면 복암리 시랑동에서 아들과 가족을 데리고 불갑면 남소지리(불갑저수지가)로 입향하였고, 백수읍 천정리 평기촌 등지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입향 이후 600여 년 뒤, 남소지리는 불갑저수지(1925년 공사착수, 1926년 11월 완공) 공사로 인하여 수몰되고 씨족들은 각지로 이주하게 되었다.(『영광군지』 4(성씨와 지명 그리고 인물),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02, 126~129쪽.)



자료 보관 장소 및 보관 상태 확인

(2) 가계와 입향 배경

<표 12>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가계도⁵²⁾

1세 梁保崇 (高麗 明宗朝生)	중시조
2세 梁峻(1206~1276)	高宗朝 檢校 禮賓卿僉議 侍中贊成事(71세졸) 配 昌原崔氏
3세 梁淳(1253~1315)	1271년(고려 원종12) 辛未 19세에 壯元, 直交翰署三使로 上國에 가서 左部尙書銀紫光祿大夫을 받음. 63세에 忠肅王에게 讚明이라는 이름을 받음. 贊成事. 配 彦陽金氏
4세 梁遵(1272~1342)	1303년(충렬왕29) 癸卯 文科, 直交翰署 叅文學事 左部承旨 부인 安東金氏
5세 梁碩材(1310~?)	충숙왕복위2년 계유 문과 급제, 直交翰署 殿直 司書門下侍郎 中顯大夫 配 平康蔡氏
6세 ①梁漢忠(?~?)	文科급제, 宗廟寺令宗簿正
7세 ①梁惶(?~?)	司醞院直長 / 墓 光州三味洞
8세 ①梁文聖(?~?)	文科, 嘉善大夫 晉州牧使 / 配 慶州李氏
9세 ①梁自洄(?~?)	文科, 察訪 / 配 桂城徐氏
10세 ②梁潤宗(?~?)	生員 / 配 光州李氏 / 墓 光州 柳等谷建芝山
11세 ②梁勻石(?~?)	守門將
12세 ①梁順戒(?~?)	
13세 ①梁必柱 (丁酉생~)	字 擎天 兵火로 丙譜가 소실되어 戊譜에 추가됨. 대손 梁宅湖가 家來가문의 내력과 戶口를 납부하여 派로 나와 수문장 후손임이 명백함을 확인함.
14세 ①梁景梅 (乙巳생~丙子卒)	字 燦余 / 武宣傳 甲子에 公州로 扈從 / 配 平山申氏

52) 『濟州梁氏大族譜卷之』1·4, (1862 序).

15세	①梁起運 (辛酉生~丁亥卒)	字 重昌 / 參奉 / 配 完山李氏
16세	①梁鳳遠 (戊辰生~癸亥卒)	字 啓華 / 宣敎郎 / 光州鶴村 / 配 密陽周氏
17세	①梁建廈 (乙丑生~癸丑卒)	字 汝舉 / 配 達城徐氏
18세	①梁德元 (丁亥生~庚寅卒)	字 君達 / 配 金海金氏
19세	①梁宅湖 (庚午生~)	字 伯賢 / 將仕郎 / 配 晉州姜氏
20세	①梁聖澈 (庚子生~)	字 罔之 / 配 金海金氏
자료 누락		
-제보자(김양자)		

(3) 소장 고문헌 자료의 현황과 내용

소장 자료는 총 110종 114점으로 고문서 76점, 고서 38점이다. 고문서의 경우 교령류 4종 4점, 소차계장류 2종 2점, 첩관통보류 1종 1점, 증빙류 23종 23점, 명문문기류, 6종 7점, 서간통고류 2종 2점, 치부기록류 30종 30점, 시문류 6종 6점이다. 고서의 경우 경부는 서류 2책, 시류 1책, 예류 1책, 효경류 1책, 소학류 9책이다. 사부는 편년류 1책, 전기류 2책, 계보류 4책이고 자부는 술수류 2책이다. 집부는 초사류 1책, 총집류 9책, 별집류 4책, 척독류 1책이다.

<표 13>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소장 자료 현황

자료유형	자료명	종수	점수	비고
교령류	告身	2	2	梁達聖, 梁孝甲
	官誥	2	2	梁成川
소차계장류	所志	1	1	梁濟義, 昌平縣監
	山圖	1	1	梁奎永, 辛錫鳳
첩관통보류	下帖	2	2	綾州牧使
증빙류	戶口單子	2	2	梁德元, 梁達湖
	準戶口	16	16	梁學漢, 梁宅興, 梁宅湖(=梁宅溟), 梁俊永, 梁錫中, 梁泰和, 梁成模 등
	完議	1	1	梁濟命 등 9인
	手票	2	2	鄭恭鉉, 梁氏
	先塋時享立規	1	1	梁德熙
	確認書	1	1	曹士旭, 梁文汝
	分財記	1	1	父, 子女
명문문기류	明文	5	6	梁辰會, 梁敬昊
	回文	1	1	梁錫孝 등 5人
서간통고류	通文	1	1	族譜 收單
	置簿	1	1	梁升千
치부기록류	族譜 序	1	1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世系記錄	8	8	梁俊永의 家系 등
		哀感錄	1	1	辛卯年 小祥
		擇記	6	6	
		四星錄	1	1	
		問卜錄	4	4	
		術數	5	5	
		作名錄	1	1	
		和劑	2	2	
	시문류	詩	1	1	
		序	1	1	
		遺事	1	1	
		文	1	1	
		科文	1	1	
		祝文	1	1	
고서	경부	書類	2	2	書傳, 書抄
		詩類	1	1	詩經
		禮類	1	1	[古禮改題主告辭]
		孝經類	1	1	孝經大義全
		小學類	9	9	御定奎章全韻, 註解千字文, 學語集, 推句, 推句五言, 明心寶鑑
	사부	編年類	1	1	古今歷代標題註譯十九史略通攷
		傳記類	2	2	名臣錄, 名賢錄
		系譜類	1	4	濟州梁氏大族譜
	자부	術數類	2	2	達鴻, 諸葛武侯巧連數
	집부	楚辭類	1	1	攻玉抄
		總集類	9	9	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 咸喜有良翰 등
		別集類	4	4	四世遺稿單, 杜詩 등
		尺牘類	1	1	簡牘會粹
	합계			110	114

교령류는 4종 4점으로 고신 2점, 관고 2점이다. 고신은 1723년(경종 3) 병조에서 前司果 梁達聖을 勵節校尉 守訓練院判官으로 임명, 1783년(정조7)에 이조에서 학생 梁孝甲을 將仕郎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례이다. 관고는 1902년 고종이 梁成川을 정3품 通政大夫 敦寧都正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사례이다. 좌방서에 따르면, 대항제폐하가 耆社에 들었을 때의 사서인 가운데 나이가 80세 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자하라는 칙지에 의거한다는 발급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종부직 규정에 따라 양성천의 처 전주이씨를 숙부인에 임명하면서 관고를 발급하였다.

소차계장류는 2종 2점으로 소지 1점과 산도 1점이다. 소지는 임신년에 임신년에 梁濟義가 창평현감에게 올린 사례로 故 梁學彦의 妻 李氏에 대한 정려 포장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산도는 묘지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사례이다.

첩관통보류는 2종 2점이다. 牧使가 순찰사의 감결에 따라 大祀, 中祀, 小祀에 대해 통보하는 내용이다.

증빙류는 23종 23점으로 호구단자 및 준호구 18점, 완의 1점, 수표 2점, 선영시향입규 1점 확인서 1점이다. 호적 자료는 梁德元, 梁達湖 등이 올린 호구단자와 광주목, 곡성현, 나주목 등에서 梁學漢, 梁宅興, 梁宅湖(=梁宅溟), 梁俊永, 梁錫中, 梁泰和, 梁成模 등에게 발급한 준호구 사례이다. 운당리 제주양씨가 광주 양아리에 거주하다가 해방 이후 영광 묘량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전 세거지와 관련된 광주목 발급 준호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완의는 병진년에 梁濟命 등 9인이 작성한 사례로 參奉公 梁子湖의 아들 형제의 효행을 알리는 일과 玄孫인 梁學彦의 후사를 정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다.

수표는 계해년 9월 초4일에 幼學 鄭恭鉉이 양씨의 분묘 앞 입구에 여러 종류의 돌(石)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또 1864년(고종 1) 2월 초6일에 幼學 鄭恭鉉이 牛里에 있는 산지의 암석 아래에 있는 분묘 바깥 입구 경계를 정하면서 작성해준 수표 사례가 함께 남아 있다.

선영시향입규는 1810년(순조 10) 梁德熙가 선산에 있는 松楸를 매매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쓰임을 기록한 자료이다. 총 7냥 가운데 2냥은 南平 一家 鳳凰山 先墓를 이장하는데 보태고, 5냥은 長孫 梁宅溟에게 빌린 대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확인서는 병진년에 11월 15일 曷士旭이 梁文汝에게 소나무 딸감 5속을 보내면서 작성해준 사례이다.

명문문기류는 6종 7점으로 분재기 1점, 명문 6점이다. 분재기는 1805년(순조 5)에 10월 15일에 財主인 父가 4남매 등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것이다. 祭位條, 長子, 次子, 長女, 次女, 同生, 長孫, 山直 순으로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명문은 토지를 비롯하여 임야, 柴草, 家畬, 草家, 行廊, 廁室, 나무 등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사례이다.

서간통고류는 2종 2점으로 회문 1점, 통문 1점이다. 회문은 기축년 정월 23일에 梁錫孝 등 5인이 족보를 수정하기 위해 각 종파의 有司로 하여금 收單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내용이다. 통문은 족보를 만드는 데 收單과 비용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한 초본이다.

치부기록류는 30종 30점으로 치부 1점, 족보 서문 1점, 세계기록 8점, 애감록 1점, 안장택일기 6점, 사성록 1점, 문복록 4점, 술수 5점, 작명록 1점, 화제 2점이다.

시문류 6종 6점으로 시 1점, 서문 1점, 유사 1점, 문 1점, 과문 1점, 축문 1점이다.

고서는 35종 38점으로 경부 14책, 사부 7책, 자부 2책, 집부 15책이다. 경부는 書傳, 書抄, 詩經, 孝經大義全, 御定奎章全韻, 註解千字文, 學語集, 推句, 推句五言, 明心寶鑑 등 경서류가 대부분이다. 사부는 古今歷代標題註譯十九史略通攷, 名臣錄, 名賢錄, 濟州 梁氏大族譜 등이 있고, 자부는 사주평을 기록한 達鴻, 諸葛武侯巧連數 일부를 필사해 놓은 것이 있다. 집부는 杜詩, 杜律詳, 說古文眞寶大全後集, 簡牘會粹 등이 있다.

(4) 영광 운당리 제주양씨가 소장 고문헌 목록

① 고문서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	告身	1	1723	兵曹	前司果 梁達聖	1723년에 梁達聖을 勵節校尉 守訓鍊院判官으로 임명하는 문서. *右傍書: 全羅兵營將官仕滿依事目陞上事受教	1	47.0	61.5
2	告身	2	1783	吏曹	學生梁 孝甲	1783년에 梁孝甲을 將仕郎으로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陽武原從功臣姜德輝婿 *형태사항: 액자	1	50.3	70.2
3	官誥	1	1902	高宗	梁成川	1902년에 梁成川을 三品 通政大夫 敦寧都正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 大皇帝陛下入耆社時士庶年八十人覃恩加資事奉勅 *형태사항: 액자	1	40.7	40.5
4	官誥	2	1902	高宗	全州李氏	1902년에 梁成川 妻 全州李氏를 淑夫人에 임명하는 문서. *左傍書: 通政大夫妻依法典從夫職	1	42.3	49.1
5	所志	1		梁濟義	昌平縣監	壬申년에 梁濟義가 昌平縣監에게 올린 所志. 故 梁學彦의 妻 李氏에 대한 旌褒의 恩典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 *판결: 營門甘結據修建旌閭之義即速知爲宜當事初九禮方	1	72.7	44.0
6	山圖	1			梁奎永 辛錫鳳	靈光 濟州梁氏家の 어느 산송에 대해 수령이 23일자로 辛哥가 패소하였다고 판결한 山圖와 題辭. *판결: 觀比山圖卽(是)一此郡城人二十餘累累之塚豈可禁葬辛哥置之落科事廿三	1	76.0	46.3
7	下帖	1		綾州牧使李		戊子년에 綾州牧使가 鄉社에 내린 下帖. *형태사항: 필사 / 문서좌측결락	1	37.2	43.3
8	下帖	2		牧使		牧使가 巡察使의 甘結에 의거 大祀, 中祀, 小祀에 대해 알린 下帖. *형태사항: 필사 / 문서좌측결락	1	22.0	42.0
9	戶口單子	1		梁德元	光州牧	乙酉년에 西面 大枝里 山村에 사는 幼學 梁德元(69세)이 그의 호구사항을 기록하여 光州牧에 제출한 戶口單子. *주소: 西面 大枝里 山村住 第二十統 第二戶 *梁德元은 梁進泰改名	1	32.3	60.0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0	戶口單 子	2		梁達湖	谷城縣	<p>己酉年에 木寺洞面 古竹리에 사는 將仕郎 梁達湖(61세)가 그의 호구사항을 기록하여 谷城縣에 제출한 戶口單子.</p> <p>*주소: 木寺洞面 古竹里 第統 第戶</p> <p>*1813년 양택명 준호구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인 듯함</p>	1	41.4	71.5
11	準戶口	1	1675	牧使	梁夢錫	<p>1675년에 光州牧에서 乙卯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前 參奉 梁夢錫(4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p> <p>*주소: 西面 不動坊里</p> <p>*형태사항: 문서 우측이 훼손됨</p> <p>*특징: 문서 말미에 ‘唱書員李忠善’ 기재되어있음</p>	1	51.8	52.4
12	準戶口	2	1783	光州牧	梁學漢	<p>1783년에 光州牧에서 癸卯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學漢(41세)에게 발급한 準戶口.</p> <p>*주소: 大枝面 山村住 第十九統 第三戶</p> <p>*특징: 梁翰立에서 梁學漢으로 개명함</p>	1	35.5	57.2
13	準戶口	3	1786	光州牧	梁宅興	<p>1786년에 光州牧에서 丙午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宅興(4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p> <p>*주소: 西面 大枝山村住 第二十統 第一戶</p> <p>*특징: 梁學漢에서 梁宅興로 개명함 / 문서 일부 소실됨</p>	1	37.0	37.5
14	準戶口	4	1789	光州牧	梁宅興	<p>1789년에 光州牧에서 己酉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宅興(47세)에게 발급한 準戶口.</p> <p>*주소: 西面 大枝里 山村住 第十七統 第二戶</p>	1	39.2	54.3
15	準戶口	5	1801	光州牧	梁宅湖	<p>1801년에 光州牧에서 辛酉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將仕郎 梁宅湖(5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p> <p>*주소: 西面 漆石里 山村住 第卅五統 第二戶</p>	1	37.2	63.8
16	準戶口	6	1804	光州牧	梁宅溟	<p>1804년에 光州牧에서 甲子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將仕郎 梁宅溟(62세)에게 발급한 準戶口.</p> <p>*주소: 西面 漆石里 山村住 第三十三統 第五戶</p> <p>*湖가 溟으로 수정</p>	1	36.5	59.5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17	準戶口	7	1807	光州牧	梁宅溟	1807년에 光州牧에서 丁卯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將仕郎 梁宅溟(65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大 枝山村里住 第十八統 第三戶 *梁宅湖에서 梁宅溟으로 改名	1	32.0	63.0
18	準戶口	8	1810	光州牧	梁宅溟	1810년에 光州牧에서 庚午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將仕郎 梁宅溟(68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大 枝山村里住 第統 第戶 *인장이 없음 / '準' 기재되어있음	1	38.0	66.0
19	準戶口	9	1813	光州牧	梁宅溟	1813년에 光州牧에서 癸酉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將仕郎梁宅溟(71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 大枝山村里 第十四統 第四 新一戶 *형태사항: 액자	1	29.0	62.8
20	準戶口	10	1816	光州牧	梁錫中	1816년에 光州牧에서 丙子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將仕郎梁宅溟의 故代子 幼學 梁錫中(3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 大枝山村里住 第十二統 第五戶 *梁宅溟故代子梁錫中	1	38.0	59.3
21	準戶口	11	1822	羅州牧	梁俊永	1822년에 羅州牧에서 壬午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俊永(45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烏山面 博山里 第一統 第三戶 *형태사항: 문서 왼쪽부분 소실(잘림) *양식중의 인적사항과 비슷함	1	34.0	28.0
22	準戶口	12	1831	光州牧	梁錫中	1831년에 光州牧에서 辛卯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錫中(52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 大枝山村里住 第十三統 第三戶	1	33.2	50.2
23	準戶口	13	1834	光州牧	梁泰和	1834년에 光州牧에서 甲午年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錫中の 故子 幼學 鰥夫 梁恭和(29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 大枝山村里住 第十二統 第三戶 *양식중故子	1	32.9	47.3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24	準戶口	14	1837	光州牧	梁成模	1837년에 光州牧에서 丁酉년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成模(32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 大枝山村里住 第十五統 第四戶 *幼學梁恭和改名成模	1	33.7	44.0
25	準戶口	15	1795	光州牧	梁宅溟	1795년에 光州牧에서 乙卯년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梁宅溟(47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西面 大枝里山村住 第二十統 第三戶 *앞, 뒷면에 필사	1	26.3	60.0
26	準戶口	16	1795	光州牧	金有聲	1795년에 光州牧에서 乙卯년에 작성한 호적대장을 근거로 幼學 金有聲(24세)에게 발급한 準戶口. *주소: 東面 上大谷新村住 第十三統 第五新戶 *戊午式改名一稿	1	33.7	63.0
27	完議	1		梁濟命 等 9人		甲戌년에 梁濟命 等 9인이 모여 합의한 完議. 參奉公 諱 子湖의 아들 형제의 효행을 알리는 것과 玄孫인 梁學彦이 후사가 없어 一門의 族派 중 그 후사를 잇는 것에 관해 의논하고 합의하는 내용	1	50.8	64.3
28	手票	1	[1863]	鄭恭鉉	梁氏	癸亥년에 幼學 鄭恭鉉이 梁氏 墳墓前 입구에 여러 종류의 石을 두지 않겠다며 작성한 手票.	1	27.5	14.5
29	手票	2	1864	鄭恭鉉		1864년에 幼學 鄭恭鉉이 분묘 바깥 입구 경계를 정한 手票. 牛里에 있는 山地의 巖石 아래에 있는 분묘 바깥입구 경계를 바깥 玉涑부터 置石아래 玉涑서쪽까지 한다는 내용 *연관문서: 수표(ID28)	1	28.7	29.5
30	先塋時 享立規	1	1810	梁德熙		1810년에 후손 梁德熙가 先山에 있는 松楸를 매매하고 받은 금액에 대한 쓰임을 기록한 문서. 梁德熙가 선산에 있는 松楸를 매매하고 받은 금액을 南平一家 鳳凰山 先墓를 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長孫 梁宅溟에게 取利했음을 기록함 *형태사항: 필사 *선산: 光州大枝月星山	1	37.5	36.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매매대금: 총7량 / 2량:鳳凰山先墓 移窆之助給, 5량:長孫宅溟處蹲坐存 本取利			
31	確認書	1		曹士旭	梁文汝	丙辰年에 曹士旭이 梁文汝에게 소나 무땀감 5묵음을 보내면서 발행한 確 認書.	1	10.7	4.7
32	分財記	1	1805	父	子女	1805년에 財主人 아버지가 4남매와 同生, 長孫, 山直에게 재산을 나눠 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분배내용: -祭位條: 曾祖父母祭位: 9斗落41負 7束 / 祖父母祭位 17斗落47負1束 / 31斗落1結16負5束 / 生前 7斗落 32卜 -長子 20斗落64負1束 / 次子 21 斗落90負 / 長女 20斗落55負8束 / 次女 19斗落77負3束 / 同生 5斗落 22負3束 / 長孫 3斗落13負 / 山直 1斗落只3負3束	1	55.5	22.4
33	明文	1	1824	辛錫圭	梁辰會	1824년에 山主 幼學 辛錫圭가 광산 에 있는 임야를 梁辰會에게 13량을 받고 放賣하면서 작성한 明文.	1	33.4	43.5
34	明文	2	1897	李泰蕭		1897년에 幼學 李泰蕭이 畝長 上石 村 뒤 猪巷二嶺에 있는 山場의 柴草 1,500묵음을 300량에 放賣하면서 작성한 明文. *證參: 幼梁敬昊 *매매사유: 要用所致 *추가: 此亦中舊文記一張付於都文故 不得出給事 *산경계: 南西李泰蕭山東李治弘山北 李德川山	1	35.0	37.0
35	明文	2=1	1897	李泰蕭		1897년에 幼學 李泰蕭이 畝長 上石 村 뒤 猪巷二嶺에 있는 山場의 柴草 1,500묵음을 300량에 放賣하면서 작성한 明文. *證參: 幼梁敬昊 *매매사유: 要用所致 *추가: 此亦中舊文記一張付於都文故 不得出給事 *산경계: 南西李泰蕭山東李治弘山北 李德川山 *ID34의 복본	1	27.3	34.2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36	明文	3	1897	李泰蕭		1897년에 幼學 李泰蕭이 畝長 上石里 草家와 行廊, 廁室, 나무 등을 350량에 放賣하면서 작성한 明文. *證參: 幼梁敬昊 *매매사유: 要用所致 *草家肆間, 行廊貳間, 廁室壹間, 桑木參拾株, 栗木貳拾株, 松樹貳拾株, 梯木肆株, 梨木貳株, 垆田貳斗落所耕貳負八束	1	44.3	36.8
37	明文	4	1897	李泰蕭		1897년에 幼學 李泰蕭이 畝長 上石里 草家와 田畚, 나무 등을 350량에 放賣하면서 작성한 明文. *證參: 幼梁敬昊 *매매사유: 要用所致 *草家四間, 後洞畚二夜味, 桑木數拾株, 梯木四株, 垆田二斗落, 所耕貳負捌束	1	32.0	36.0
38	明文	5	1898	梁聖允		1899년에 幼學 梁聖允이 馬村 尋牛坪 墨字畚 2斗落 9夜味를 400兩에 放賣하면서 작성한 明文. *證參: 幼丁成玉 *매매사유: 要用所致 *馬村尋牛坪墨字畚貳斗落九夜味(所耕肆負玖束)	1	35.0	36.2
39	回文	1		梁錫孝 梁錫佑 綾州 梁必壽 寶城 梁必浩 順天 梁必弘 等		己丑년에 梁錫孝 等 5人是 梁氏譜를 수정하기 위해 각 宗派의 有司로 하여금 收單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回文. *추가: 此亦中麟此設施故事機急迫不可暫時緩歇項者輪通想必登 照而何其遷延至此○佇之不己如是傳急卽卽飛照然後不日 惠然以完大事之地○○○	1	37.2	43.3
40	通文	1		子玉		族譜를 만드는데 收單과 司族費를 알리는 通文의 草本. *형태사항: 필사	1	26.2	16.1
41	置簿	1		梁升千		乙未년에 生員 梁升千이 수확한 양을 기록한 문서 을미년 10월 28일에 生員 梁升千이 보리, 콩 등을 수확한 양을 기록한 문서.	1	13.3	19.7
42	族譜 序	1				제주양씨 족보 序文을 기록한 草本. *형태사항: 假綴 / 필사	1	25.2	20.7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43	世系記 錄	1				제주양씨 유래와 계보를 필사한 문서. 제주양씨 탄생부터 梁一默代까지의 내용을 필사함 *崇禎紀元後三壬戌十月日外裔嘉善 大夫平安觀察使韓山李泰永謹序	1	24.2	109.0
44	世系記 錄	2				濟州梁氏家 家系를 작성한 문서. 濟州梁氏家 11代부터 21代까지 家 系를 작성함 *형태사항: 필사 *11대 句白, 12대 順戒, 13대 必柱, 14대 景梅, 15대 起運, 16대 鳳遠, 17대 履夏, 建夏, 18대 德允, 德元, 德一, 德謙, 19대 宅仁, 宅湖, 宅昊, 宅洙, 宅淵, 宅孝, 宅悌, 20대 聖煥, 聖澈, 聖聃, 聖烈, 聖孫, 聖福, 聖 海, 聖誼, 21대 大根, 大位, 大祿 *배면: 17대 旭夏, 18대 德昇, 德 熙, 19대 宅有, 宅安, 宅淵, 宅瀛, 宅源	1	36.2	26.0
45	世系記 錄	3				梁必柱와 그 자손들을 기록한 문서. *형태사항: 필사 / 배면 있음	1	9.0	91.9
46	世系記 錄	4				梁俊永의 家系 내용을 기록한 문서. 梁俊永과 부인 天安金氏, 아들 내외 와 딸 2명, 손자 1명과 손녀 1명에 대해 기록함 *형태사항: 필사 *아들 梁致模, 며느리 昌寧成氏, 손 자 梁長壽	1	23.0	18.2
47	世系記 錄	5				梁仁沃에 대한 家系 내용을 기록한 문서. *형태사항: 필사 *양인옥: 純忠佐命開國功臣資大夫漢 山君諡忠靖公 配: 청주경씨 / 父石政丞清原君良靖 公補	1	20.5	25.4
48	世系記 錄	6				安定羅氏의 世系를 기록한 문서. 父世淳, 祖贈戶曹參判欽, 曾祖承旨堦 (長吟亭 羅湜 后) *형태사항: 필사	1	18.0	7.0
49	世系記 錄	7				辛卯年 小祥 때에 조문한 사람과 주 소를 기록한 문서. *형태사항: 필사	1	20.6	38.0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50	世系記 錄	8				坤化命이 戊寅生인 亡人の 葬事擇 日記. 亡人の 四柱, 葬地の 方位, 장례일 시, 유족의 생년 등을 기록함 *형태사향: 필사 *亡人: 坤仙命戊寅木 *祭主: 子戊戌戌婦己亥 *安葬: 同治八年己巳參月拾玖日	1	31.4	16.7
51	哀感錄	1				坤化命이 辛酉生인 亡人の 葬事擇 日記. 亡人の 四柱, 葬地の 方位, 장례일 시, 유족의 생년 등을 기록함 *형태사향: 필사 *亡人: 坤仙命辛酉木 *祭主: 子庚寅, 次子癸巳 *安葬: 四月初十日己巳	1	20.7	26.2
52	擇記	1				擇日에 대해 설명한 문서 *형태사향: 필사/날장	1	27.0	62.3
53	擇記	2				擇日에 대해 설명한 문서 *형태사향: 필사/날장	1	28.0	35.0
54	擇記	3				節氣와 擇日에 대해 설명한 문서 *형태사향: 필사/날장	1	21.1	20.4
55	擇記	4				四柱를 기록한 四星錄. *형태사향: 필사	1	16.7	35.2
56	擇記	5				占을 보고 나온 결과를 기록한 問卜 錄. 辛亥, 庚子 등 *형태사향: 필사	1	16.7	35.2
57	擇記	6				占을 보고 나온 결과를 기록한 問卜 錄. 庚寅, 戊寅, 癸未 등 *형태사향: 필사	1	16.7	35.2
58	四星錄	1				癸丑 十二月 二十二日에 태어난 사 람의 占을 보고 나온 결과를 기록한 問卜錄. *형태사향: 필사	1	24.4	36.0
59	問卜錄	1				占을 보고 나온 결과를 기록한 問卜 錄.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 亥, 庚子, 辛丑,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 戌, 辛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등 *형태사향: 필사	1	22.0	14.0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60	問卜錄	2				占보는 법을 필사한 문서. 年月日明八字知法과 四柱合, 先天數, 後天數, 銅仙經 등을 필사함. *형태사항: 가철 / 필사	1	10.0	16.6
61	問卜錄	3				묘자리에 대해 설명한 문서. *형태사항: 필사 / 낱장	1	15.8	44.5
62	問卜錄	4				묘자리에 대해 설명한 문서. *형태사항: 필사 / 낱장	1	24.6	###
63	術數	1				先山 묘자리를 그린 문서. *형태사항: 필사	1	20.0	18.8
64	術數	2				釋天, 富吉法, 先天數, 後天數 등을 필사한 문서. *형태사항: 가철 / 필사 *성책에 필사함	1	16.7	35.2
65	術數	3				乙亥六月二十六일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작성한 作名錄. 四柱를 보고 占을 친 결과가 기록됨 *형태사항: 필사	1	16.7	35.2
66	術數	4				滌髓飲에 대한 한약 재료를 적은 和劑. 富歸(참당귀), 川芎(약재이름), 赤芍藥, 生芩(생지황) 등 재료를 기재함 *형태사항: 필사	1	24.5	13.0
67	術數	5				大頭瘟에 대한 처방을 적은 和劑. *大頭瘟은 두통과 열이 심하고 얼굴과 귀의 앞뒤가 부어오르며, 때로는 목구멍 속이 붓고 벌겍게 되는 병 *형태사항: 필사	1	28.3	13.0
68	作名錄	1				學川의 詩에 次韻하여 지은 詩. *형태사항: 필사	1	21.3	25.8
69	和劑	1				學圃先生文集에 있는 序文. *형태사항: 필사	1	12.5	34.3
70	和劑	2				太乙保神經. *앞은굿 法師가 굿을하기 전에 굿당에 모여든 잡귀 잡신으로부터 자신과 祈主 등을 보호하고, 굿을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 도교의 天帝인 太乙에게 올리는 經文. *형태사항: 필사	1	18.2	17.2
71	詩	1				科文. 前漢, 後漢의 역대 왕을 기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해를 기재함 *형태사항: 필사	1	24.3	21.0
72	序	1				祝願하는 문서. *형태사항: 필사 / 문서 일부 결락	1	33.5	41.0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문서명	문서 번호	발급 시기	발급	수취	내용	점수	세로	가로
73	文	1				太乙保神經 얏은긋 法師가 긋을 하기 전에 긋당 에 모여든 잡귀 잡신으로부터 자신 과 祈主 등을 보호하고, 긋을 온전 히 치르기 위하여, 도교의 天帝인 太乙에게 올리는 經文. *형태사항:필사	1	23.3	35.5
74	科文	1				科文 前漢, 後漢의 역대 왕을 기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해를 기재한 문서. *형태사항:필사	1	20.2	89.0
75	祝文	1				祝願하는 문서 *형태사항: 필사 / 문서 일부 결락	1	21.2	6.0

② 고서

ID	四部 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	經部	書傳	1	[編著者 未詳]	木版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丙申	1卷1冊;	*書傳卷之一 虞 書 堯典 舜典 *丙申臘月初四日 *插圖:書傳大全 圖(29張) *6침안	線裝
2	經部	書抄	2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帖(28折58面); 10.8×143.5 ; 10.7×4.9	서경을 필사한 절첩. *형태사항: 절첩 / 필사	折帖
3	經部	詩經	3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丙子	2卷1冊; 10行20字; 註雙行; 23.8×15.3	*詩經一卷上下 *표지: 丙子十二 月	線裝
4	經部	[古禮改 題主告辭]	4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23.1×19.4	葬禮 절차에 대 해 기록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첫문장 서명으로 기재함 *4침안	線裝
5	經部	孝經大義 全	5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19.5×17.6	朱子가 改編한 《孝經》에 주 석을 단 책으로, 공자가 증자에 대하여 효도를 논한 經典.	線裝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6	經部	御定奎章全韻	6	[編著者未詳]	木版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2卷1冊; 四周雙邊, 15.8×10.7;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上下向黑魚尾, 上下向2葉花紋魚尾; 21.2×14.2	漢詩를 짓는데 필요한 韻書. *한자를 四聲에 따라 소리의 높낮음으로 구별하였으며, 한글로 음을 달아놓음 *內閣原本局溪藏板 *추가: 丁酉二月日買得 / 奎章全韻買錢兩六錢	線裝
7	經部	註解千字文	7	[編著者未詳]	木版本	[全羅監營開板, 藏板記]; [刊寫者未詳]; [1752, 藏板記]	不分卷1冊; 四周雙邊, 29.3×20.5; 有界; 3行4字; 註雙行; 上下向2葉花紋魚尾; 41.0× 25.0	註解千字文. *표지결락 *崇禎百二十五年壬申冬註解子龜谿精舍全羅監營開板	線裝
8	經部	學語集	8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梁龍安]; 辛未	不分卷1冊; 22.4×20.0	한문의 초학자를 위해 엮은 한문의 입문서. *辛未白踵肇加麻衣 *뒷표지표기: 學語集梁龍安	線裝
9	經部	學語	9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19.6×18.2	한문의 초학자를 위해 엮은 한문의 입문서.	線裝
10	經部	推句	10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丙戌	不分卷1冊; 16.0×19.8	초학자를 위하여 五言으로 된 좋은 對句들만을 발췌하여 필사한 책. *歲丙戌鳴蝸月(5월) / 梁文琬 *뒷표지추가: 德成於內功立於外	線裝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1	經部	推句	11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乙未	不分卷1冊; 17.2×18.0	초학자를 위하여 五言으로 된 좋 은 對句들만을 발췌하여 필사한 책. *乙未十月廿四 日騰 *뒷표지추기: 梁 國珍	線裝
12	經部	推句五言	12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18.5×24.5	초학자를 위하여 五言으로 된 좋 은 對句들만을 발췌하여 필사한 책. *辛未五月天中 節(단오)	線裝
13	經部	[雲騰致 雨]	13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16.1×17.7	한문 초학자를 위한 교과서 겸 습자교본인 천자 문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결락 으로 첫문장 서 명 기재함 *훼손 심함	線裝
14	經部	明心寶鑑	14	[編著者 未詳]	木版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四周單遺, 22.6×16.1; 13行28字; 上下向黑魚 尾; 26.2×19.8	明心寶鑑 *권말: 懸吐明心 寶鑑終 *국한문 혼용 *소장자: 朴來陽 庚午生	線裝
15	史部	古今歷代 標題註譯 十九史略 通攷	1	[編著者 未詳]	木版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1卷1冊; 上下雙邊 左右單邊, 23.6×17.1;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2葉 花紋魚尾下 上 向混葉花紋 魚尾; 32.5×21.4	*古今歷代標題 註譯十九史略通 攷卷之四 *東晉宋齊梁陳 隋	線裝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16	史部	名臣錄	2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戊子	不分卷1冊; 15.8×19.2	*표지: 歲在己丑 戊子■…■ *宋名臣錄 *4침안	線裝
17	史部	名賢錄	3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戊子	不分卷1冊; 17.5×20.7	*표지: 歲在己丑 戊子■…■ *내지: 戊子三月 始/再戊子四月 七日看宋名賢錄 抄坤/自王大寶 至蔡沈凡一百人	線裝
18	史部	濟州梁氏 大族譜	4	[編著者 未詳]	木版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1862 序]	4冊4卷; 四周單邊; 有界 ;世別7段; 12行28字; 註雙行; 上下白魚尾 ; 38.4×23.2	*插圖: 濟州圖	線裝
19	史部	濟州梁氏 大族譜	4-1	[編著者 未詳]	木版本			*插圖: 濟州圖	線裝
20	史部	濟州梁氏 大族譜	4-2	[編著者 未詳]	木版本			*插圖: 濟州圖	線裝
21	史部	濟州梁氏 大族譜	4-3	[編著者 未詳]	木版本			*插圖: 濟州圖	線裝
22	子部	達鴻	1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22.5×20.6	갑자 신년에 본 四柱評을 기록 한 책. *甲子十一月十 五日 *甲子元日上吉 *뒷표지추기: 姜 四柱評	線裝
23	子部	[諸葛武 侯巧連數]	2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刊寫年未 詳]	不分卷1冊; 17.5×18.0	諸葛武侯巧連數 일부를 필사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첫문장 서명 기재함	線裝
24	集部	攻玉抄	1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 詳]; [刊寫者未 詳]; 丁卯	不分卷1冊; 26.0×15.5	屈原의 離騷經 과 九歌를 필사 한 책. *丁卯三月十五 *4침안	線裝

영광지역 조사·수집 고문서의 현황과 특성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형태
25	集部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	2	[編著者未詳]	木版本		2卷1冊; 四周單遺, 20.0×15.0; 有界; 10行17字; 註雙行; 上下向2葉 花紋魚尾, 上下向黑魚 尾; 28.5×18.3	*詳說古文眞寶 大全 後集 卷之 一, 二 *낙질/목록앞부 분결락, 卷之六부 터卷之十까지있 음 *4침안	線裝
26	集部	[咸喜有良翰]	3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4.0×14.1	과거 시험 관련 글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첫문장 서명 기재함	線裝
27	集部	[鮮衣]	4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3.6×11.2	과거 시험 관련 글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 서 명이 없어 첫 두 글자 기재함	線裝
28	集部	[結纓]	5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0.8×19.5	*과거 시험 관련 글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첫 두 글 자 서명 기재함	線裝
29	集部	[橫來]	6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1.0×16.3	과거 시험 관련 글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첫 두 글 자 서명 기재함	線裝
30	集部	[迺見盎賦]	7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17.0×20.2	迺見盎 賦 등 과거 시험 관련 글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첫 두 글 자 서명 기재함	線裝
31	集部	[陳孺子]	8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3.0×21.5	五言排律詩를 필사한 책. *書名: 첫장 문 장을 서명 기재 함 *8침안	線裝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ID	四部分類	書名	자료 번호	編著者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주기사항	자료 형태
32	集部	[臨高臺]	9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3.0×21.2	王勃의 臨高臺 등 唐詩를 필사 한 책 *書名: 첫장 시 제목을 서명 기 재함	線裝
33	集部	[秦不生 一焉]	10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18.5×22.2	과거 시험 관련 글을 필사한 책. *書名: 표지 결 락으로 두 번째 장 첫문장을 서 명 기재함	線裝
34	集部	四世遺稿 單	11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1.2×18.7	學圃 梁彭孫, 松 川 梁應鼎의 文 集을 필사한 책. *癸亥八月二十 三日 *6침안	線裝
35	集部	杜詩	12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3.1×14.5	당나라 杜甫의 七言詩를 필사 한 책. *辛亥三月十四日	線裝
36	集部	杜律	13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17.3×19.5	중국 당나라 시 인 杜甫의 七言 律詩를 필사한 책.	線裝
37	集部	[送張舍 人之江東]	14	[編著者 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24.8×15.0	중국 당나라 시 인 李白의 '送張 舍人之江東' 등 의 詩를 필사한 책. *書名: 첫장 시 제목을 서명 기 재함	線裝
38	集部	簡牘會粹	15	[編著者 未詳]	木版本	[筆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冊; 四周單遺, 19.0×14.1; 有界; 13行23字; 註雙行; 上下向2葉 花紋魚尾; 26.9×18.7	간찰에 쓰이는 용어를 모은 책. *일부花口있음	線裝

3. 맺음말 : 기록유산의 발굴·보존과 지역사 연구의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재까지도 많은 기록유산 자료들이 꾸준히 발굴되고 관계 기관 등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하고 있다. 주로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국사편찬위원회, 박물관, 도서관 등 전문기관 및 연구 단체 등이 국내·외 기록유산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 또한 후발주자로서 앞으로 호남지역에 산재한 기록유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록유산의 발굴과 보존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료 수집과 보존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집적된 자료를 공유하여 지역사 연구의 촉진과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자 한다.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Ⅰ 주제발표 2 Ⅰ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행정과 업무

노 인 환(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

노인환(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영광군수의 임명과 포폄
3. 영광군수와 지방 관원의 문서 행정
 - 1) 영광군수와 전라도관찰사의 문서 행정
 - 2) 영광군수와 지방 수령의 문서 행정
 - 3) 영광군수와 소속 관원의 문서 행정
4. 영광군수의 민원 처리
 - 1)立案과 立旨의 신청과 증빙
 - 2) 효행의 포상과 煙戶雜役의 면제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영광군은 전라도 서남쪽에 위치한 고을로 북쪽으로는 茂長縣·高敞縣, 동쪽으로는 長城府, 남쪽으로는 咸平縣이 있으며, 서쪽으로 황해를 끼고 있다. 조선 초기부터 국왕이 임명한 지방 수령이 영광군에 부임하여 영광 지역을 다스렸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지방 수령이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문서 행정은 지방 수령의 임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영광군수도 마찬가지로 영광군에 부임하여 임기를 마치거나 다른 관직으로 임명되어 영광군을 떠날 때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그림 1> 『東輿圖』의 靈光郡과 인근 고을¹⁾

본 발표문은 영광군수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문서를 통해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영광군수의 임명 과정과 고신·관고 등의 임명문서를 살펴보고, 부임한 후에 근무 평가인褒貶을 통해 영광군수가 받은 성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영광군수와 지방 관원 사이의 문서 행정은 전라도관찰사, 전라도의 지방 수령, 영광군의 소속 관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백성들이 영광군수에게 민원을 요청할 때 올린 문서를 통해 영광군수의 민원 처리와 문서 행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문서 행정이라는 보편적인 측면과 영광군수 관련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 지역적인 특수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영광군수의 임명과 포폄

조선 초기에 영광군은 국왕이 임명한 知靈光郡事가 부임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1월에 지방 수령의 관직 제도를 정비하여 知郡事에서 郡守로 개칭한 후에 영광군수가 부임하였다.²⁾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 체제에서는 영광군에 종4품의 군수를 임명하였다.³⁾ 이후 세 차례 영광군의 읍호가 영광현으로 강등되어 1532년(중종 27)~1543년(중종 38)에 영광현령이 부임하였고, 1631년(인조 9)~1639년(인조 17)과

1) 『東輿圖』 (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2) 『세조실록』 권38, 세조 12년(1466) 1월 15일(무오) : 知郡事爲郡守.

3)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全羅道 : 郡守十二員〔從四品.〕, 寶城·益山·古阜·靈巖·靈光·珍島·樂安·淳昌·錦山·珍山·金堤·礪山.

1755년(영조 31)~1764년(영조 40)에 각각 영광현감이 부임하였다. 영광현으로 읍호가 강등되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영광군으로 陞號되어 다시 영광군수가 부임하였다.⁴⁾

<표 1> 조선시대 영광 지역 수령의 직제 변화

번호	시기	관직명	기간
1	1392년(태조 1)~1466년(세조 12)	知靈光郡事	75년
2	1466년(세조 12)~1532년(종종 27)	靈光郡守	67년
3	1532년(종종 27)~1543년(중종 38)	靈光縣令	12년
4	1543년(중종 38)~1631년(인조 9)	靈光郡守	89년
5	1631년(인조 9)~1639년(인조 17)	靈光縣監	9년
6	1639년(인조 17)~1755년(영조 31)	靈光郡守	117년
7	1755년(영조 31)~1764년(영조 40)	靈光縣監	10년
8	1764년(영조 40)~1910년(융희 4)	靈光郡守	147년

영광군수의 임명 과정은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임명과 마찬가지로 이조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적은 望單子를 올린 후에 국왕의 낙점을 받아 임명되었다. 새로 임명된 영광군수에게 국왕의 어보인 施命之寶가 安寶된 告身이 발급되었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內閣之印이 踏印된 官誥가 발급되었다. 영광군수는 고신 및 관고를 받은 후에 국왕에게 入侍하여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謝恩을 거행하였고, 영광군으로 부임하기 전에 下直을 거행하고 부임하였다.

영광군수의 하직은 국왕에게 입시하는 경우와 입시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국왕에게 입시하는 경우는 국왕의 앞에서 宣諭와 別諭를 듣고, 守令七事를 암송하였다.⁵⁾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영광군수는 국왕이 거처한 궁궐에 승정원의 승지 및 다른 下直守令과 함께 입시하였다. 국왕이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면 영광군수는 국왕 앞에 나아가서 본인의 관직과 성명을 말하였다. 이어서 국왕은 승지에게 수령의 선유와 별유를 명하면, 승지는 수령의 선유와 별유를 읽어주었다. 수령의 선유는 수령의 직임에 대한 당부하는 내용이고, 별유는 농사에 대해 각별하게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선유와 별유를 들은 영광군수는 수령칠사를 암송하였는데, 만약 수령칠사를 외우지 못한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추고를 청하였다.⁶⁾ 영광군수가 국왕에게 입시하지 않고 하직하는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선유를 듣고 수령칠사를 암송하였다. 그러나 영광군수가 이전에 의정부의 당

4) 『大典會通』 「刑典」 推斷:《續》… ○ 綱常罪人, (弑父·母·夫, 奴弑主, 官奴弑官長者.) 結案正法後, 妻·子·女 爲奴, 破家瀆澤, 降其邑號, 罷其守令. (從時居邑 ○ 縣令以上降縣監, 縣監勿革, 而序諸縣之末, 限十年 復舊.)

5) 守令七事는 지방 수령이 부임하여 다스릴 때에 힘써야 할 7개의 항목으로 農桑盛, 人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猾息을 말한다.

6) 『銀臺條例』 「工巧」 宣諭 : 聽諭後, 守令講七事, 邊將講六事, 不通者請推. (堂下請罪.)

상관이나 승정원의 승지를 역임한 경우에는 선유와 수령칠사는 제외하였다.⁷⁾

영광군수 임명과 부임의 일정은 1837년(헌종 3) 6월부터 1838년(헌종 4) 11월까지 영광군수를 역임한 洪在喆의 『科宦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 1837년 6월 25일에 이조판서 金在昌은 영광군수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대한 政事를 거행하였다.⁹⁾ 당시 영광군수의 三望은 홍재철이 首望이고 黃浩民가 副望이며 李鐸遠이 末望으로 후보자에 올랐는데, 홍재철은 헌종의 낙점을 받아 영광군수에 임명되었고 아울러 羅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를 겸직하였다.¹⁰⁾ 6월 27일에 영광군수 홍재철은 수령과 변장과 처음 벼슬에 오른 사람들과 함께 창덕궁 熙政堂에 입시하여 헌종에게 사은숙배를 거행하였다.¹¹⁾ 이어서 7월 4일에 홍재철은 하직숙배를 하고 9일에 한양을 출발하였으며, 14일에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에 도착하여 전라도관찰사 李憲球에게 延命하였다.¹²⁾ 최종적으로 7월 18일에 홍재철은 부임지인 영광군에 도착하였는데,¹³⁾ 홍재철이 영광군수에 임명되어 부임지에 도착하기까지 약 23일이 소요되었다.

영광군수의 임명 문서는 1738년(영조 14) 영광군수 李宇夏 고신과 1895년(고종 32) 영광군수 金用濟 관고가 현전하고 있다. 1738년 5월 12일에 영조는 이우하를 영광군수에 임명하여 고신을 내려주었다.¹⁴⁾ 그러나 당시 이우하는 일사병에 걸리고 또 말에서 떨어져 骨節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우하는 吏曹에 문서를 올려 病狀이 빨리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속히 入啓하여 處置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조에서는 영조에게 이우하의 병상을 아뢰고 영광군수의 罷黜을 요청하였고 영조는 윤허하였다.¹⁵⁾ 이후하는

7) 『銀臺條例』 「工巧」 宣諭：監司·兵水使·守令·邊將，下直日，皆聽諭於本院，而〔入侍時，稟旨楹外舉行。〕違者，道·帥臣請推，守令以下請罪。〔曾經政府堂上及承旨人，勿聽，而入侍時，依例爲之。〕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監·兵·水使，及守令·邊將，下直日，聽宣諭。〔曾經政府堂上·承旨則否。〕

8) 『科宦錄』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洪在喆(1799~?)의 관직 생활을 필사한 책으로 서지사항은 不分卷 7冊：半郭 19.7×15.0cm，無界，10行 20字 註雙行；31.8×21.3cm이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893)에 소장되어 있다.

9) 『승정원일기』 2343책，헌종 3년(1837) 6월 25일(신미)：有政。吏批，… 洪在喆爲靈光郡守。

10) 『科宦錄』 丁酉(1837，헌종 3)：六月二十五日。靈光郡守首擬，〔吏曹判書金在昌行政。○副望黃浩民，末望李鐸遠。〕蒙點。〔例兼羅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

11) 『科宦錄』 丁酉(1837，헌종 3)：六月… 二十七日。入來，兼謝恩肅拜。○參守令·邊將·初仕人，入侍于熙政堂。

『승정원일기』 2343책，헌종 3년(1837) 6월 27일(계유)：丁酉六月二十七日辰時，上御熙政堂。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靈光郡守洪在喆，… 上曰，守令·初仕人進前。念淳等以次進前，奏職姓名訖。

12) 延命은 『牧民心書』에서 관찰사가 도내를 순찰할 때에 지방 수령이 해당 고을에서 教書를 공손히 받들고 瞻賀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나，홍재철의 경우에는 영광군으로 가기 전에 전라감영에 들러 전라도관찰사와 교서에 예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牧民心書』 권3：延命者，守土之臣，坐於本邑，而宣化之臣，巡到本邑，則守土之臣，於牌殿之庭，祇承教書，遂行瞻賀之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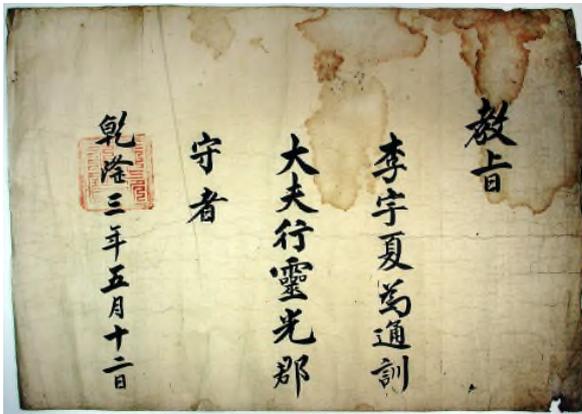
13) 『科宦錄』 丁酉(1837，헌종 3)：七月初四日。下直肅拜。〔初九日發行。〕十四日。延命。〔監司李憲球。〕十八日。到任所。

14) 『승정원일기』 871책，영조 14년(1738) 5월 12일(계해)：以李宇夏爲靈光郡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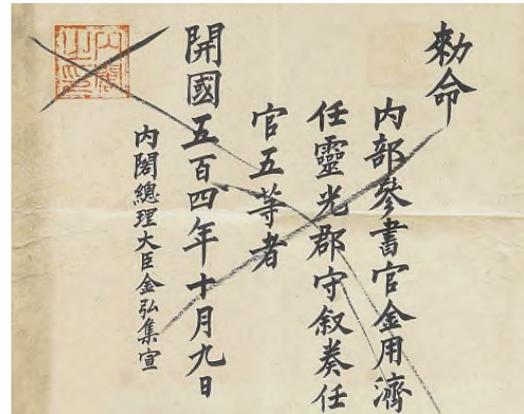
15) 『승정원일기』 872책，영조 14년(1738) 5월 25일(병자)：又啓曰，新除授靈光郡守李宇夏呈狀內，重得喝病，昨又墜馬，骨節交違，方此落席刺痛，精神迷亂，不分人鬼。以此病狀，決無旬月差復之望，斯速入啓

영광군수에 임명되어 고신은 받았지만 끝내 영광군에 부임하지 못하였다.

김용제는 1895년(고종 32) 10월 9일에 內部參書官에서 영광군수로 임명되어 官誥를 받고, 11월 9일에 영광군에 부임하였다.¹⁶⁾ 당시 영광군수 김용제는 奏任官 5等이므로 주임관 임명장의 서식에 따라 관고에 內閣之印을 踏印하고 內閣總理大臣 金弘集이 ‘宣授’하였다.¹⁷⁾ 김용제는 1897년(고종 34) 5월 7일에 陰竹郡守로 임명될 때까지 영광군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¹⁸⁾ 영광군수 재직 중에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추후에 去思碑가 세워졌다.¹⁹⁾



<그림 2> 1738년(영조 14)
靈光郡守 李宇夏 告身²⁰⁾



<그림 3> 1895년(고종 32)
靈光郡守 金用濟 官誥²¹⁾

영광군수는 영광군에 부임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에 매년 6월과 12월에 업무 수행에 대한 근무 평가인 褒貶을 받았다. 포폄에서 ‘褒’는 잘한 것을 추천한다는 뜻이고, ‘貶’은 멀리 내친다는 뜻으로 관원의 근무 평가를 통해 우수하면 승진시키고 불량하면 파직시키는 제도이다.²²⁾ 영광군수의 포폄은 상급 관원이 전라도관찰사가 거행하였는데, 전라도 관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영광군수를 포함한 전라도 守令·邊將의 포폄

處置云. 病狀如是危劇, 不可等待其差歇, 靈光郡守李宇夏, 罷黜, 何如. 傳曰, 允.

16) 『승정원일기』 3064책, 고종 32년(1895) 10월 9일(병자) : 內部, 任靈光郡守金用濟.

17)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121쪽.

18) 『승정원일기』 3083책, 고종 34년(1897) 5월 7일(을미) : 任陰竹郡守金用濟

19) 『靈光邑誌』(奎10789) 邑宰先生 : 金用濟, 蔭, 通訓, 乙未十一月九日赴, 丁酉五月陰竹郡守移拜, 立去思碑.

20) 한국학자료센터 - 강원권역센터(<http://cksm.kangwon.ac.kr/>)

21) 서울대학교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500쪽, 36.0×45.0cm, 번호 : 80920.

서울대학교도서관의 『古文書』 1에서는 문서 원문의 끝부분에 “*勅命之寶 없음(폐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奏任官 임명장의 서식에 勅命之寶가 없고 內閣之印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양식의 문서로 볼 수 있다.

22) 『經國大典註解』 後集 吏典 褒貶 : 推美曰褒, 遠謫曰貶.

조광현, 「朝鮮後期 외관의 褒貶制度和 褒貶文書 연구」, 『고문서연구』 49, 한국고문서학회, 2016, 71쪽.

을 절도사와 상의한 후에 국왕에게 포폄계본을 올려 보고하였다. 다만 영광군수가 부임한지 50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포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²³⁾

현전하는 포폄 관련 문서와 기록을 통해 영광군수를 지낸 관원의 포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홍재철은 재임 기간 동안 2번의 포폄을 받았는데, 1837년(헌종 3) 12월 15일에 秋冬等褒貶은 전라도관찰사 李憲球에게 ‘품은 생각을 가볍게 시행하였고 다스림이 마침내 베풀어졌다(薄施所抱 治有畢張)’라는 褒貶題目과 함께 上의 等第를 받았다.²⁴⁾ 1838년(헌종 4) 6월 15일에 春夏等褒貶은 전라도관찰사 이헌구에게 ‘온갖 법도를 잘 다스리고 거행하여 여러 사람의 입에 칭송하는 소리를 올렸다(百度修舉 萬口騰頌)’라는 포폄제목과 함께 또한 上의 等第를 받았다.²⁵⁾ 영광군수 閔泳壽는 1893년(고종 30) 2월 24일에 경주부윤에서 영광군수로 임명되어 4월 26일에 영광군에 부임하였다.²⁶⁾ 민영수는 부임한지 50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93년 6월에 春夏等褒貶은 ‘日淺’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12월 秋冬等褒貶은 ‘넉넉하지 못한 흉년에 큰 고을에서 진심으로 백성을 구제하였다(儉歲鉅局 實心濟民)’라는 포폄제목과 함께 上의 等第를 받았다.

<그림 4> 全羅道觀察使 癸巳春夏等·秋冬等褒貶題目²⁷⁾



癸巳(1893)秋冬等褒貶題目

癸巳(1893)春夏等褒貶題目

23) 『經國大典』 「吏典」 褒貶 : 京官, 則其司堂上官·提調及屬曹堂上官, 外官, 則觀察使, 每六月十五日·十二月十五日, 等第啓聞.

『大典會通』 「吏典」 褒貶 : 《屬》… 守令褒貶時, 觀察使與節度使相議, 竝考軍政勤慢. (觀察使·守令, 竝到任滿五十日, 始行褒貶, 京畿, 則三十日)

24) 『科宦錄』 丁酉(1837, 헌종 3) : 十二月十五日. 秋冬等褒貶, 居上. [監司李憲球修啓. ○題目, 薄施所抱, 治有畢張.]

25) 『科宦錄』 戊戌(1838, 헌종 4) : 六月十五日. 春夏等褒貶, 居上. [監司李憲球修啓. ○題目, 百度修舉, 萬口騰頌.]

26) 『승정원일기』 3031책, 고종 30년(1893) 2월 24일(정축) : 傳于金德洙曰, 靈光郡守之代, 慶州府尹閔泳壽擬入. … 有政. 吏批, … 閔泳壽爲靈光郡守.

27)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8 - 居昌 恩津林氏·居昌慎氏篇-, 2005, 820~824쪽.

<표 2> 靈光郡守 褒貶題目

번호	포편시기	靈光郡守	褒貶題目	출처
1	1837년(헌종 2) 6월	洪說謨	文士爲政 燦有條理 上	『고문서집성』 5, 褒貶題目3
2	1837년(헌종 3) 12월	李憲球	薄施所抱 治有畢張 上	『科宦錄』
3	1838년(헌종 4) 6월	李憲球	百度修舉 萬口騰頌 上	『科宦錄』
4	1847년(헌종 13) 6월	李明迪	民喜減柴 士訟勤課 上	『고문서집성』 5, 褒貶題目1
5	1847년(헌종 13) 12월	李明迪	淸簡自持 慈惠爲治 上	『고문서집성』 5, 褒貶題目2
6	1891년(고종 28) 12월	閔致憲	政最恤隱 惠澤鑄結 上	『고문서집성』 3, 褒貶題目2
7	1892년(고종 29) 12월	閔致憲	官民相孚 惟恐或失 上	『고문서집성』 78, 褒貶題目1
8	1893년(고종 30) 6월	閔泳壽	日淺	『고문서집성』 78, 褒貶題目1
9	1893년(고종 30) 12월	閔泳壽	儉歲鉅局 實心濟民 上	『고문서집성』 78, 褒貶題目1
10	1894년(고종 31) 6월	尹秉綬	來何暮也 民堵如故 上	『고문서집성』 78, 褒貶題目1
11	1894년(고종 31) 12월	尹秉綬	老實其人 慈惠之政 上	『고문서집성』 3, 褒貶題目1

영광군수의 임명과 부임 과정은 지방 수령이 임명되어 국왕에게 하직하는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영광군수의 고신과 관고는 지방 수령이 임명될 때 받은 임명문서이다. 그러나 영광군수의 포편제목을 통해서는 실제로 영광군수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상급 관원인 전라도관찰사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영광군수와 지방 관원의 문서 행정

1) 영광군수와 전라도관찰사의 문서 행정

영광군수는 전라도에 소속된 종4품의 지방 수령이기 때문에 啓本과 狀啓 등으로 국왕과 중앙 아문에 직접 上達할 수 없었다.²⁸⁾ 영광군수는 영광군을 다스리면서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할 사안이 발생하면 전라도관찰사에게 牒呈을 올려 상달하였다. 전라도관찰사는 영광군수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에 關을 통해 전달하였다.²⁹⁾ 먼저 영광군수가 전라도관찰사에게 보낸 첩정은 영광군수의 해유문서에 수록된 解由牒呈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은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경우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장했던 물품을 후임 수령에게 인수인계한 후에 解由文書(또는 解由狀)를 발급받았다.³⁰⁾ 인수인계

28)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各司有緊事，則提調直啓，大事啓本，小事啓目，外則無啓目。)直行移。(相考事外皆啓)其餘衙門，並報屬曹。

29)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凡中外文字，同等以下用關，以上用牒呈，七品以下用帖。

30) 『經國大典』 『吏典』 解由： 凡除職者，考解由。

유의 성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후임 영광군수 윤정렬에게 關을 보냈다. 민치재가 보낸 關은 현전하지 않지만 윤정렬이 전라도관찰사 朴崙壽에게 올린 첩정에 수록되었다. 이어서 1813년 5월에 윤정렬은 전라도관찰사에게 첩정을 올려 전임 영광군수 민치재의 해유 결과를 보고하였다.(<그림 5> ①번 문서) 윤정렬이 올린 첩정의 내용은 민치재가 보낸 關을 인용하였고, 민치재의 근무 일수와 관장했던 물품을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첩정의 후록에는 민치재의 근무 일수(實仕壹百拾捌日)와 該管物件을 모두 기재하였다.

윤정렬의 첩정을 접수한 전라도관찰사 박윤수는 5월 14일에 윤정렬의 첩정을 점련한 關을 호조에 보내서 전임 영광군수 민치재의 해유를 相考할 것을 전달하였다.(<그림 5> ②번 문서) 1813년 11월에 호조는 이조에 관을 보내서 背書한 關과 점련된 첩정을 통해 전임 영광군수 민치재의 해유가 문제없이 완료된 것을 전달하였다.(<그림 5> ③번 문서) 그러나 민치재 해유문서에는 이조에서 해유의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전임 수령에게 알려주는 ‘照訖’이 누락되었다. 이것은 당시 민치재가 1813년에 체직되고 해유가 끝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해유의 결과를 통보하는 이조의 照訖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전라도관찰사가 영광군수에게 보낸 關은 충절과 효행이 뛰어난 가문에 旌門을 수립하는 사안에 대해 전라도관찰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효도하거나 우애한 사람과 절개와 의리를 지킨 사람은 매년 말에 예조에서 국왕에게 아뢴 후에 장려하고 권장하였다. 예를 들어 효자, 조부모를 잘 모시는 손자, 절개 있는 부인,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의 자손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사람에게 조정에서는 관직이나 賞을 주고 뛰어난 사람은 旌門을 세워주거나 煙戶雜役 등을 면제하는 復戶를 주었다.³⁴⁾ 旌閭하거나 복호하는 과정은 효행이나 烈行으로 합당한 사람을 지방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이 가운데 관찰사가 뽑아서 보고하였다. 예조는 式年마다 연초에 당상관 3명이 모여 심사한 후에 의정부에 보낸 후에 국왕에게 아뢰었다. 旌閭·贈職·復戶 등이 결정되면 승정원에서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베낀 후에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였다.³⁵⁾

정려가 결정된 후에 예조는 당사자에게 旌閭立案을 발급해 주었으며, 해당 도의 관찰사에게 旌門 건립에 대한 내용을 關을 통해 전달하였다. 관찰사는 지방 수령에게 예조에서 보낸 關의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1894년(고종 31) 3월 11일에 전라

34) 『大典會通』 「禮典」 獎勸 : 《原》孝友·節義者.(如孝子·順孫·節婦·爲國亡身者子孫·睦族·救患之類.) 每歲抄, 本曹錄啓獎勸.(賞職或賞物, 尤異者, 旌門·復戶, 其妻守信者, 亦復戶.)

35) 『大典會通』 「禮典」 獎勸 : 《增》(凡係旌閭·贈職·給復等事, 自政院奉承傳, 臚布中·外. 凡係旌閭·贈職·給復等事, 自政院奉承傳, 臚布中·外. ○ 孝烈合旌·復者, 諸道抄啓, 每式年歲首, 本曹三堂上齊會詳審, 移送政府後, 別單啓稟.)

도관찰사 金文鉉이 영광군수 閔泳壽에게 보낸 關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1894년(고종 31) 全羅道觀察使가 靈光郡守에게 보낸 關³⁶⁾

行觀察使·兼都巡察使·親軍武南營外使가 상고하는 일입니다. 지금 도착한 예조의 關에 “이번에 啓下하신 지난번 도내 유학 李寅會 등의 上言으로 인하여 이조가 覆啓한 것에 근거하여 영광에 사는 동몽교관에 추증된 朴由精의 충절 및 그 아들인 이조참의에 추증된 孝亨의 효행이 뛰어나서 모두 旌閭의 은전을 시행할 일로 本曹에서 覆啓하여 允허를 받았습니다. 旌門을 수립할 때, 재목과 장인을 규례에 따라 官에서 거행하는 뜻으로 해당 郡에 잘 알게 하여 시행하며, 수립 후의 形止를 점련하여 行移하고 憑考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라는 關이 있었습니다. 關의 내용을 받들어 살펴서 정문을 수립할 때에 재목과 장인을 규례에 따라 官에서 거행하고 수립한 후 형지를 점련하여 행이하고 양쪽에 보고하며 전하여 행이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마땅히 關을 보내니 청컨대 조험하여 시행하고 모름지기 關이 이르게 할 것입니다.

右 關

靈光郡守

광서 20년 3월 11일.

[關] 都巡使[着押]

1893년(고종 30) 12월에 예조에서는 朴由精의 충절과 그의 아들인 朴孝亨의 효행에 대해 旌閭의 은전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啓目を 올렸고 고종은 允허하였다. 이로 인해 12월에 예조는 박유정의 자손에게 旌門을 수립할 때에 재목과 장인을 규례에 따라 官에서 거행하고 자손에게 여러 가지 雜役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旌閭立案을 내려주었다. 또한 예조는 전라도관찰사에 정문 수립에 대한 내용을 해당 군에 전달하라는 내용으로 關을 보냈다. 1894년 3월에 전라도관찰사는 영광군수에게 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예조에서 보낸 關을 수록하였으며 정문을 수립한 후에 상황을 점련하여 보고하라는

36)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것이였다. 영광군수는 關을 받은 후에 박유정 가문에 정문을 수립할 때에 재목과 장인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정문을 수립한 후에는 전라도관찰사에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광군수의 첩정은 전임 수령의 해유에 대해 중앙 아문에 보고하기 위해 전라도관찰사에게 보낸 것이다. 이 외에도 官印의 개조를 요청하거나 이양선의 침입을 보고할 때에도 전라도관찰사에게 첩정을 보내서 보고하였다. 전라도관찰사의 關은 정문의 수립에 대해 중앙 아문에서 지시하는 사안을 영광군수에게 전달한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 제시한 사례는 중앙 아문과 관련 있는 업무이지만, 중앙 아문과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해서도 영광군수와 전라도관찰사 사이에 첩정과 關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영광군수와 지방 수령의 문서 행정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인근 고을인 茂長縣·高敞縣·長城府·咸平縣 등에 업무와 관련해서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이 영광군수와 지방 수령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는 1800년(정조 24) 무장현감이 영광군수에게 보낸 牒呈과 1841년(헌종 7) 영광군수가 무장현감에게 보낸 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茂長縣監이 捉送하는 일입니다. 지금 영광군의 移文이 도착하였습니다. 弊縣 富興에 金邦成이 병으로 잡아서 보낼 방법이 없어서 그 아들 大佑를 起送하니 상고하여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첩정을 행하니 옆드려 청컨대 조험하여 시행하고 모름지기 첩정을 이르게 할 것입니다.

右 牒呈

靈光郡

가경 5년 윤4월 23일. 行縣監 李[着名][着押]

捉送

行靈光郡守가 回移하는 일입니다. 지금 무장현의 移文이 도착하였다. 弊郡의 백성 辛楸은 嶺外 外東面 五十里에 사는데, 잡아오지 못하였으므로 辛恒慄만 먼저 잡아서 보내니 상고하면 매우 다행입니다. 마땅히 관을 보내니 청컨대 조험하여 시행하고 모름지기 關을 이르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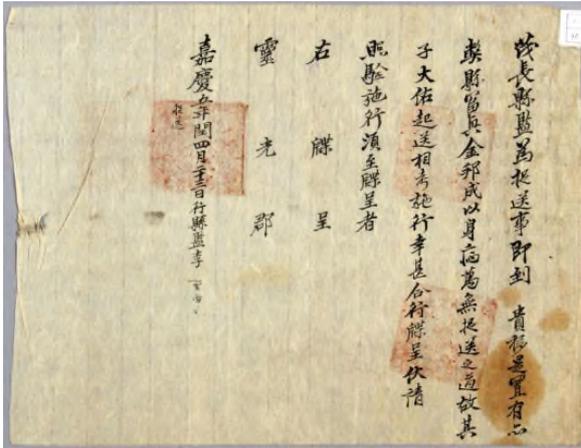
右 關

茂長縣

도광 27년 5월 초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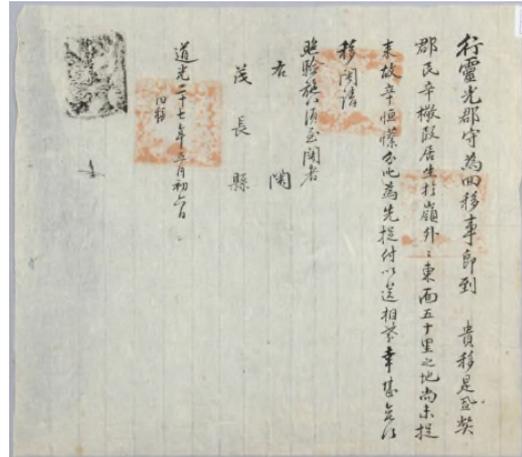
回移

[關] 行郡守[着押]



<그림 7> 1800년(정조 24)

茂長縣監이 靈光郡守에게 보낸 牒呈³⁷⁾



<그림 8> 1841년(헌종 7)

靈光郡守가 茂長縣監에게 보낸 關³⁸⁾

1800년(정조 24) 윤4월에 무장현감 李儒修가 영광군수 吳泰賢에게 보낸 첩정은 金邦成이 병에 걸려 잡아서 보낼 방법이 없으므로 그 대신에 그의 아들인 金大佑를 대신 起送한다는 내용이었다. 1841년(헌종 7)에 5월에 영광군수 趙在慶이 무장현감 俞鎮五에게 보낸 첩정은 辛徹을 잡아오지 못하였으므로 辛恒慄만 잡아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영광군수는 종4품아문이고 무장현감은 종6품아문이기 때문에 법전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수는 關을 보냈고, 무장현감은 첩정을 보냈다. 關과 첩정의 문서 양식에 따라 영광군수와 무장현감이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다르게 기재되었다. 무장현감의 첩정은 ‘行縣監 李[着名][着押]’으로 연월일의 끝부분에 관직과 姓을 쓰고 착명과 착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영광군수의 關은 ‘行郡守[着押]’으로 關 도장 아래에 관직을 쓰고 착압으로만 서명하였다. 關과 첩정이라는 서로 다른 문서 행정과 서명 방식의 차이를 통해 지방 수령 사이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군수와 무장현감은 품계가 서로 달랐지만 두 문서에 기재된 표현에서 지방 수령 사이에 존중과 겸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關과 첩정에서 지방 수령이 보낸 문서가 도착했다는 내용을 ‘卽到貴移’라고 하였고, 특히 ‘貴移’ 앞에 隔字를 하여 지방 수령 사이에 서로를 존중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고을에 대해 표현할 때에도 ‘弊郡’과 ‘弊縣’으로 기재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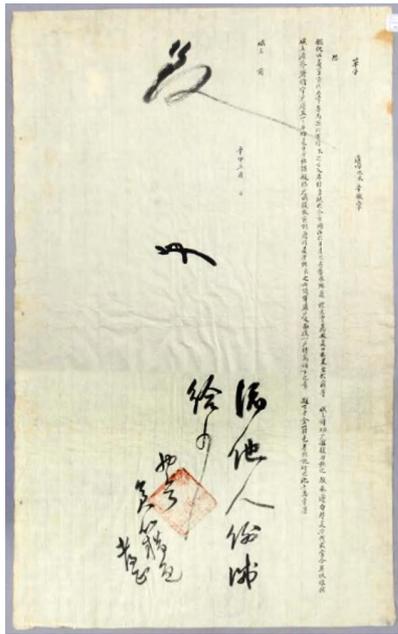
영광군수의 關과 무장현감의 첩정은 모두 상대방의 고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捉送, 즉 잡아서 보내달라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수령 사이에 捉送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협조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3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27 -靈光 寧越辛氏篇(1)-, 1996, 240쪽.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1996, 295쪽.

3) 영광군수와 소속 관원의 문서 행정

영광군수는 영광군에 소속 관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에 下帖을 전달하였다. 下帖는 지방 수령이 부임지의 향교·서원이나 소속 관원에게 지시하거나 행정 명령을 내릴 때에 발급하는 문서이다.³⁹⁾ 먼저 영광군수가 소속 관원에게 보낸 下帖는 1891년(고종 28)에 영광군수 閔致憲이 道內面 都正에게 보낸 下帖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림 9> 1891년(고종 28)
辛徽常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單子⁴⁰⁾



<그림 10> 1891년(고종 28)
靈光郡守가 道內面 都正에게 발급한 下帖⁴¹⁾

行郡守가 下帖하는 일이다. 本面 辛徽常의 돌아가신 아버지 孝行이 매우 가상하므로 還戶 1戶와 還結 2結을 官에서 덜어주고 面의 雜役을 일체로 頃給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히 잘 살펴서 시행하고 모름지기 帖을 이르게 할 것이다.

右下

道內面 都正

신묘 3월 14일.

下帖

[帖] 行郡守[着押]

39)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06쪽.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1996, 295쪽.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의 책, 1996, 406쪽.

1891년 3월에 辛徽常은 영광군수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효행이 뛰어나서 전임 영광군수 시절에 煙戶雜役을 시행하지 말고 영구히 준행하라는 題辭를 받았으니 전례에 따라 준행하고, 軍還戶와 面役 1戶를 특별히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單子를 올렸다. 이에 대하여 3월 2일에 영광군수는 다른 사람의 예에 따라 덜어주라(依他人例成給事)는 제사를 倉籍色과 都正에게 내렸다. 또한 3월 14일에 영광군수는 도내면 도정에게 下帖를 내렸는데, 그 내용은 還戶 1戶와 還結 2結을 官에서 덜어주고 面의 雜役을 모두 면제한다는 것이었다. 즉 영광군수는 단자의 제사를 통해 내린 지시를 下帖를 통해 구체적으로 도내면 도정에게 지시하여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이어서 영광군에 소속된 관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영광군수에게 보고할 사안이 발생하면 文報와 書目을 올려 보고하였다. 文報는 牒呈과 비슷한 양식으로 품계가 없는 風憲·面任·洞任 등이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며, 書目은 문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지방 수령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영광군 소속 관원이 영광군수에게 보고하는 문보와 서목은 1791년(정조 15) 道內面 풍헌이 영광군수 鄭致淳에게 올린 문보와 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1791년(정조 15) 道內面 風憲이 靈光郡守에게 올린 文報와 書目⁴²⁾

1791년 1월 12일에 도내면 풍헌은 辛兌成과 金東才 사이에 발생한 산송에 대하여 영광군수에게 문보와 서목을 올려 보고하였다. 1790년(정조 14) 12월에 김동재가 신태성 조부의 분묘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자신의 숙모를 투장하자 신태성은 1791년 1월에 영광군수에게 所志를 올려 김동재를 처벌하고 偷塚을 파낼 것을 요청하였다. 1월 11일에 영광군수는 소지의 題辭에서 풍헌에게 圖形을 그려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風憲圖形以報)⁴³⁾ 이에 대하여 1월 12일에 도내면 풍헌은 아래와 같은 문보를 올려 영광군수에

4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6, 413~414쪽.

4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6, 412쪽.

게 보고하였다.

<文報>

道內面 風憲이 文報하는 일입니다. 本面에 辛兌成이 올린 소장에 의거하여 金東才가 그의 후사가 없는 숙모를 偷埋한 땅을 摘奸하기 위하여 급히 가니 동 김동재가 스스로 그 죄를 알고 그 空亡日을 택하여 다음 달 초8일에 移葬하겠다는 뜻으로 手記를 작성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이미 私和한 후에 다시 尺量하면 비단 官庭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일이 없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手記와 兩隻의 말을 상고하여 받은 후에 摘奸하여 圖形하지 않고 이러한 연유를 文報하는 일입니다. 마땅히 삼가 청하니 조힘하여 시행하고 모름지기 文報를 이르게 합니다.

右 文報

城主前

신해 정월 12일. 風憲 辛[착명]

(題辭) 만약 이 날이 지나면 엄히 가두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 잡아 올 것. 刑. 13일.

도내면 풍헌이 문보를 통해 보고한 내용은 偷埋한 땅을 摘奸하기 위하여 급히 가보니 김동재가 다음 달 초8일에 移葬하겠다는 手記를 작성하여 신태성에게 주고 사적으로 화해하였으므로 적간하여 圖形을 그리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였다. 아울러 풍헌이 함께 올린 서목은 문보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였다. 풍헌의 문보와 서목에 대하여 영광군수는 김동재가 약속한 날짜인 다음 달 초8일을 넘기면 엄히 가두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 잡아오라는 내용으로 題辭를 내려주고 영광군수의 관인을 답인하였다.

영광군수와 소속 관원의 문서 행정은 단자와 소지 등을 통해 올린 백성들이 요청한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소지와 단자의 題辭를 영광군수는 下帖를 통해 소속 관원에게 지시하였고, 題辭를 통해 지시한 사안을 소속 관원은 문보를 통해 영광군수에게 보고하였다.

4. 영광군수의 민원 처리

조선시대 영광군의 백성들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에 所志·上書·稟目·單子 등의 문서를 영광군수에게 올렸고, 영광군수는 題辭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였다. 지방 수령에게 올린 所志類 문서 중에는 山訟으로 올린 문서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 산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산송 이외에 立案과 立詣의 신청과 증빙, 효행의 포상과 煙戶雜役의 면제에 대하여 영광군수는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立案과 立旨의 신청과 증빙

조선시대 立案과 立旨는 官에서 발급했던 증명서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증하기 위해 官에서 발급했던 문서이다.⁴⁴⁾ 입안과 입지를 통해 官에 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입안과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를 官에 제출하였다. 조선시대 영광군에서도 官의 증빙을 받기 위해 영광군수에게 입안과 입지를 신청하는 소지를 올렸고, 영광군수는 소지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입안과 입지를 발급해 주었다. 이와 관련해서 1713년(숙종 39) 5월에 幼學 羅德重이 올린 입안신청소지와 영광군에서 발급한 입안을 확인할 수 있다.

郡에 사는 幼學 羅德重.

삼가 아뢰는 바는 郡에 사는 張景杓에게 奴 貴山 1口를 買得한 것이 확실하므로 規례에 의거하여 斜給하는 내용으로 명령하시도록 分부를 내리실 일입니다.

성주 처분.

계사 5월 일.

(題辭) 規례에 의거하여 斜給할 일이다. 25일. 刑.

官[着押]

강희 52년(1713, 숙종 39) 5월 25일 靈光郡 立案.

이 입안은 斜給하는 일이다. 점련된 所志 및 筆執의 招辭가 있었으므로 본 賤籍을 推納하여 相考하는데, 강희 52년 2월 12일에 筆執인 家翁의 同姓 오촌조가 張天維가 着名하고, 財主인 어머니 曹氏가 着手掌을 하여 큰아들 張景杓에게 許與한 文記의 내용에 ‘집안의 운수가 불행하여 지난 기축년에 참혹하게 家翁의 상을 당하였는데 허다한 묵은 빚을 다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家翁이 스스로 사들인 奴 海生이 良妻와 함께 낳은 1소생 奴 貴山 1口를 後所生과 함께 다른 곳에 방매하는 것을 허여하여 빚을 갚고자 헤아렸다.’라고 하는 白文 1장이었다. 上項의 奴 海生이 良妻와 함께 낳은 1소생 奴 貴山, 癸酉生 1口를 後所生과 함께 가격 錢文 30냥으로 수에 따라 받고 영영 방매하므로 狀者 羅德重에게 법에 의거하여 斜給하며 이 노비의 이름이 붙은 곳에 背爻한 후 뒤에 상고하기 위해 葉作을 점련하여 돌려주고 마땅히 立案을 행한다.

行郡守[着押]

44)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2쪽.

<그림 12> 1713년(숙종 39) 靈光郡 立案⁴⁵⁾



靈光郡 立案 筆執 招辭 奴主 招辭 奴婢賣買明文 立案申請所志

1713년 5월 25일에 영광군에 사는 유학 나덕중은 영광군에 사는 張景杓에게 錢文 30兩을 주고 奴 貴山을 買得하였다. 같은 날 25일에 나덕중은 노 귀산을 매득할 때 받은 노비매매명문과 함께 영광군수에게 입안신청소지를 올려 입안을 요청하였고, 영광군수 金始煥은 규례에 의거하여 斜給하라고 題辭를 내려 주었다. 이어서 奴主 장경표는 나덕중에게 노 귀산의 방매를 진술하였고, 장경표의 동생 張景栻은 노 귀산의 매매에서 필집으로 참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장경표와 장경식이 진술한 내용을 招辭로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영광군에서는 나덕중이 노 귀산의 매득을 증빙하는 입안을 발급하였다. 또한 나덕중의 입안신청소지와 奴主·筆執의 招辭와 영광군 입안에 모두 영광군수가 着押하였고, 5점의 문서를 점련한 후에 靈光郡印을 踏印하여 나덕중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빙하였다.

이후 입안의 복잡한 발급 절차를 대체하면서 官에서 동일하게 증빙하기 위하여 입안 대신에 입지를 발급하였다. 입지는 立旨申請所志를 관에 올리면, 관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소지의 題辭에 立旨가 成給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에 官印을 답인하고 신청자에게 돌려주었다.⁴⁶⁾ 이렇게 입지를 통해 영광군수의 증빙을 받기 위하여 영광군수에게 올린 입지신청소지는 1832년(순조 32) 辛恒慄과 1843년(헌종 9) 辛奴 貴南의 입지신청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

道內 化民 辛恒慄.

이렇게 삼가 사정을 말하는 일은 저에게 대대로 전해온 戶婢인 中尙의 1소생 花蟾 29세, 2소생 過中 17세, 花蟾의 1소생 占德 6세, 2소생 3세奴가 있었다가 지난 3월 21일 밤에 모두 도주하였으니 즉시 推尋할 뜻으로 立旨를 발급해 주셔서 뒷날에 憑考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명령해 주실 일입니다.

성주 처분.

45) 국사편찬위원회 D09120280_01~04, 원소장처 : 전북 고창 전주이씨 장천군파 所藏

46) 최연숙, 앞의 논문, 2005, 259~260쪽.

임진 5월 일.

(題辭) 立旨를 발급해 줄 일이다. 초1일.

行官[着押]



<그림 13> 1832년(순조 32)
辛恒懌 所志⁴⁷⁾



<그림 14> 1843년(헌종 9)
辛奴 貴南 所志⁴⁸⁾

1832년(순조 32) 5월에 신항업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는 도망간 노비를 증빙하기 위해 입지를 신청한 내용이었다. 신항업은 대대로 전해온 노비 4구가 지난 3월 21일 밤에 모두 도주하여 推尋하는데, 나중에 증빙하여 상고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항업의 소지에 대하여 영광군수 韓義運은 입지를 성급해 준다는 題辭를 내려 소지의 내용을 증빙해 주었다.

도내면 입석리에 사는 辛奴 貴南.

이렇게 삼가 사정을 말하는 일은 저의 댁에서 50兩 가격의 말과 50兩 가격의 소를 그저께 대낮에 도적에게 잃어버렸는데, 뒷날에 推尋할 뜻으로 털의 색깔을 후록하여 우려 하소연 하니 입지를 성급하도록 명령해 주실 일입니다.

성주 처분.

계묘 윤7월 일.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6, 69쪽.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1996, 120쪽.

암소는 그 털이 적색이고 황색인 듯하며, 그 뿔이 아래로 내려져 굽은 듯하고 한 뿔은 核耳가 없는 듯하다.

말은 그 털이 붉고 또 검으며, 그 이마에 흰 점이 있다.

(題辭) 발급해 줄 일이다. 26일.

[着押]

1843년(헌종 9) 윤7월에 辛奴 貴南이 영광군에게 올린 소지는 잃어버린 소와 말을 증빙하기 위해 입지를 신청한 내용이었다. 신항업의 노비인 奴 貴南은 주인택에서 50兩 가격의 말과 소를 대낮에 도적에게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推尋할 때에 증빙하기 위하여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소지에 소와 말의 색깔, 소에 달린 뿔의 특징, 말의 이마에 있는 흰 점을 후록하여 잃어버린 소와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후록은 잃어버린 소와 말을 찾은 후에 자신의 소유물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辛奴 貴南의 소지에 대하여 영광군수 洪永圭는 입지를 성급해 준다는 題辭를 내려 소지의 내용을 증빙해 주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입안과 입지를 통해 영광군의 백성들은 노비 매매, 도망 노비의 추심, 잃어버린 소와 말에 대하여 관의 증빙을 받기 위해 소지를 올려 민원을 신청하였다. 영광군수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당시 제도에 따라 입안과 입지를 발급해 주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이 관의 증빙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지방 수령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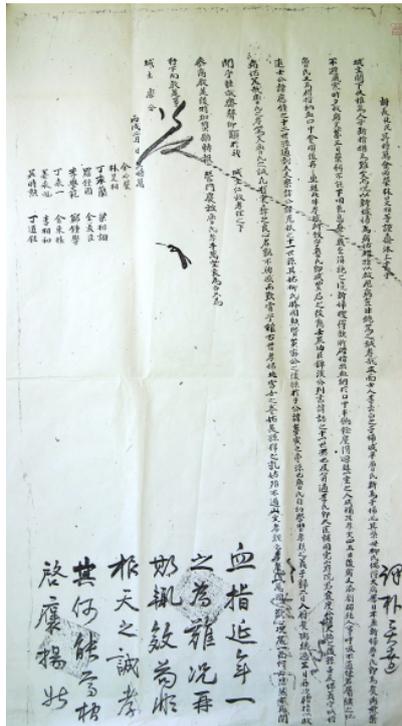
2) 효행의 포상과 煙戶雜役의 면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효행한 사람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旌門을 세워주거나 煙戶雜役 등을 면제하는 復戶를 주었다. 정려와 복호를 받기 위하여 백성들은 지방 수령에게 所志·上書·稟目 등을 올려 포상을 요청하였다. 영광군의 백성도 효행에 대한 포상을 영광군수에게 요청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畝長面에 사는 咸平魯氏의 효행에 대해 포상을 요청한 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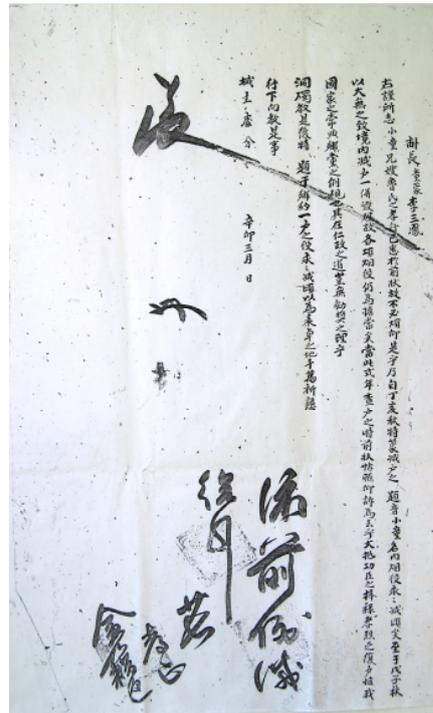
<표 3> 咸平魯氏 孝行 관련 所志類 문서49)

번호	발급시기	발급자	수취자	내용	題辭
1	1886년 (고종 23) 2월	吳時萬· 金必榮 등 15명	靈光郡守 金明鎭	咸平魯氏의 효행에 대한 獎勵를 營門에 보고할 것 을 요청하는 上書	손가락에 피를 내어 연명시키는 것은 매우 정성스러운 효성이다. 褒揚을 보고하고 아뢰는 것은 式 年을 기다릴 것(15일)
2	1886년 (고종 23) 2월	吳時永· 高時赫 등 13명	靈光郡守 金明鎭	咸平魯氏의 효행에 대한 獎勵를 營門에 보고할 것 을 요청하는 稟目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지극한 행 실로 매우 가상히 여기나 포상을 보고하는 절차는 우선 式 年을 기다릴 것(22일)
3	1886년 (고종 23) 2월	吳時永· 姜文會 등 19명	全羅道觀 察使 尹榮信	咸平魯氏의 효행을 특별히 살펴서 포상을 아뢰는 것을 요청하는 上書	매우 뛰어난 행실은 가상하나 褒 賞의 은전은 더욱 公議를 기다릴 것(26일)
4	1886년 (고종 23) 3월	吳時永· 姜文會 등 19명	禮曹	咸平魯氏의 효행을 특별히 살펴서 포상을 아뢰는 것을 요청하는 上書	매우 뛰어난 행실은 가상하나 褒 賞을 아뢰는 것은 갑자기 의논하 기 어려우니 더욱 公議가 드러나 길 기다릴 것(11일)
5	1887년 (고종 24) 9월	畝長 化民 李道成	靈光郡守 李鎬喆	式年이 되었으므로 咸平 魯氏 효행의 포상을 아뢰 고 煙戶雜役을 감해줄 것 을 요청하는 所志	효성이 매우 지극하더라고 포상을 보고하는 것은 증거가 중요하니 더욱 公議를 기다리고 戶를 감하 는 것은 年例에 따라 시행할 것 (21일)
6	1891년 (고종 28) 3월	畝長 化民 李三鳳	靈光郡守 閔致憲	형수 咸平魯氏의 효행으로 減頃된 煙役이 흉년으로 다시 부과되었으므로 一戶 의 역을 減頃해줄 것을 요 청하는 所志	전례에 따라 감해 줄 것(27일)
7	1892년 (고종 29) 4월	畝長面 童蒙 李三鳳	靈光郡守 閔致憲	형수 咸平魯氏의 효행으로 一戶의 역을 減頃해줄 것 을 요청하는 所志	전례에 따라 頃給해 줄 것(초1일)

49)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그림 15> 1886년(고종 23)
吳時萬·金必榮 等 上書



<그림 16> 1892년(고종 29)
畝長面 童蒙 李三鳳 所志

소지·상서·품목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함평노씨는 묘장면에 사는李云白의 아들 李聖老에게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고 3일 만에 시어머니 高興柳氏가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侍湯하였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함평노씨는 손가락을 찌고 피를 내어서 시어머니의 입에 흘려 넣자 회생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위급해 지자 함평노씨는 손가락에서 피를 내서 입에 넣어 시어머니가 다시 회생하였다.

1886년(고종 23) 2월에 묘장면에 사는 吳時萬·金必榮 등 15명은 영광군수에게 함평노씨의 효행에 대한 獎勵를 營門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上書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영광군수 金明鎭은 血指로 延年하는 것은 한 번도 어려운데 하물며 두 번이나 번번이 효과를 봤으니 진실로 하늘에 뿌리를 둔 孝誠이라고 칭찬하면서도 褒揚을 보고하고 아뢰는 것은 우선 式年을 기다리라는 題辭를 내렸다.⁵⁰⁾ 또한 鄉中의 進士 吳時永, 幼學 高時赫 등 13명의 선비들도 함평노씨의 효행에 대한 獎勵를 영광군수에게 요청하는 품목을 올렸으나 영광군수는 함평노씨의 효행을 칭찬하였지만 포상을 보고하는 절차는 式年을 기다리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어서 영광의 진사 吳時永, 생원 姜文會와 나주·무안·함평·광주·장성·무장·고창의 진

50) (題辭) 血指延年, 一之爲難, 況再斯輒效, 苟非根天之誠孝, 其何能焉. 報啓褒揚, 姑俟式年向事.

사와 유학 등 19명은 전라감사와 예조에 함평노씨의 효행을 특별히 살펴서 포상을 아뢰는 것을 요청하는 上書를 올렸다. 전라감사와 예조에서도 함평노씨의 효행을 가상하게 칭찬하면서도 公議를 기다리라는 題辭를 내렸다. 결국 1887년(고종 24)에 영광군수는 함평노씨의 효행에 대하여 煙戶雜役을 덜어주는 題辭를 내려 李聖老의 집안에 煙役이 면제되었다.

이후 李聖老의 집안에 煙役이 다시 부과되자 이성로의 동생 李三鳳은 1891년(고종 28) 3월에 영광군수에게 다음과 같은 소지를 올렸다.

畝長 童蒙 李三鳳

이렇게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小童의 형수 魯氏의 효행을 이미 전에 訴狀에서 다하였으므로 번다하게 우리를 필요가 없지만, 정해년(1887) 가을에 특별히 減戶의 題音을 입어서 小童의 이름 안에 煙役을 영구히 減頃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자년(1888) 가을에 이르러 크게 흉년이 들어 境內의 減戶가 한 번에 모두 毀破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煙役을 그대로 담당하였습니다. 이번 式年에 戶를 조사할 때를 당하여 전에 訴狀 稟陳하여 우러러 하소연하니 대저 공신의 捧祿과 孝烈의 復戶는 오직 우리 국가의 常典이며 鄉黨의 例規입니다. 그 仁政의 도리에 있어서 어찌 勸獎하는 이치가 없겠습니까? 통촉하신 후에 특별히 鄉約에 題音을 내리셔서 一戶의 役을 영구히 減頃하여 뛰어난을 드러내는 바탕으로 삼으시길 매우 바라오니 분부해 주십시오.

城主 處分. 신묘 3월 일.

(題辭) 전례에 따라 감해줄 일이다. 27일. 都正. 倉籍色.

行官[着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묘장면에 사는 이삼봉은 형수 함평노씨의 효행으로 정해년(1887) 가을에 減戶의 題音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 흉년으로 인해 減戶가 모두 毀破되었기 때문에 다시 煙役이 부과되었다. 이번 式年에 戶를 조사할 때에 이전의 訴狀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一戶의 役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수 閔致憲은 전례에 따라 煙役을 감해주라는 題辭를 都正과 倉籍色에게 내렸다. 다음 해인 1892년(고종 29) 4월에도 이삼봉은 영광군수에게 소지를 올려 함부로 침해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전례에 따라 一戶의 役을 減頃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영광군수는 전례에 따라 탈급하라는 제사를 내렸다.

함평노씨 효행의 사례를 통해 소지·상서·품목 등을 올려 지방 수령에게 효행에 대한 포상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관찰사와 예조에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효행에 대한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방 수령이 煙戶雜役을 면제해 주었고 흉년으로 煙役이 부과된 후에는 다시 煙役의 면제를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영광군수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문서를 통해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를 일부 확인하였다. 조선시대 영광은 지방 제도의 변화, 읍호의 강등과 陞號를 통해 영광군 또는 영광현이 되었으며, 이 가운데 영광군수로 부임하는 기간이 가장 길었다. 영광군수의 임명 과정은 이조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올리면 국왕이 낙점을 하여 임명되었고, 임명 후에 사은과 하직을 거행하였다. 『科宦錄』을 통해 영광군수 洪在喆의 부임 일정을 살펴보았으나, 추후에 승정원일기 임명 날짜와 영광읍지의 부임 기록을 비교하여 영광군수가 부임하는 기간을 보완하고자 한다.

영광군수와 지방 관원의 문서 행정은 『경국대전』 用文字式의 조항을 준용하여 이루어졌다. 영광군수는 전라도관찰사에게 첩정으로 보고하였고, 전라도관찰사는 영광군수에게 關으로 지시하였다. 영광군수와 지방 수령 사이에도 關과 첩정으로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주고받았다. 영광군수와 소속 관원 사이에는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下帖와 문보를 주고받았다. 영광군수와 지방 관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는 현전하는 문서가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추후에 『各司臚錄』 등과 같이 원문서가 등록된 자료를 통해 영광군수와 지방 관원 사이의 문서 행정을 보완하고자 한다.

영광군수의 민원 처리는 영광군 백성들이 영광군수에게 올린 소지를 통해 입안과 입지를 통한 관의 증빙, 효행의 포상과 연호잡역의 면제에 대한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다. 所志·上書·稟目·單子 등 소지류 문서가 다수 현전하기 때문에 산송 이외에 영광군수가 민원을 처리한 사례를 보완하고자 한다.

본 발표문은 영광군수 관련 문서를 통해 조선시대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를 살펴보았지만, 영광군수의 일기 자료와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광군수를 역임한 관원이 쓴 일기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추후에 영광군수의 일기가 발견된다면 일기를 통해 영광군수의 문서 행정과 업무를 더욱 자세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law>)
『經國大典註解』(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law>)
『科宦錄』(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893)
『大典會通』(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law>)
『東輿圖』(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aks.ac.kr>)
『牧民心書』(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靈光邑誌』(서울대학교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
『承政院日記』(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朝鮮王朝實錄』(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센터(<http://cksm.kangwon.ac.kr>)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http://203.254.129.108/emuseum/service/>)
-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2008.
서울대학교 규장각, 『六典條例』 上·下, 1999.
서울대학교 규장각, 『兩銓便攷·銀臺條例』, 2000.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1 -國王文書·王室文書-, 1986.
서울대학교 도서관, 『古文書』 6 -官府文書-, 1989.
송철호, 「조선시대 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조광현, 「朝鮮後期 외관의 褒貶制度和 褒貶文書 연구」, 『고문서연구』 49, 한국고문서학회, 2016.
조미은, 「조선후기 수령의 해유문서 형식과 해유절차 연구」, 『고문서연구』 52, 2018.
최연숙,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3 -海南尹氏篇-, 19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5 -義城金氏篇 1-, 198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27 -靈光 寧越辛氏篇(I)-, 1996.
한국학중앙연구원, 『古文書集成』 78 -居昌 恩津林氏·居昌慎氏篇-, 2005.

Ⅱ 주제발표 3 Ⅱ

영광 영월신씨 소장

기해·경자년 『痘兒』·『未痘兒』 성책 분석

김 영 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영광 영월신씨 소장

己亥·庚子년 『痘兒』·『未痘兒』 정책 분석

김영철(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자료소개
3. 자료의 분석
 - 1) 각 면의 『痘兒』·『未痘兒』 정책 분석
 - 2) 도내면 『結幕』 정책 분석
4. 결론

1. 서론

오늘날과 같이 의학수준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의 전염병 유행사례를 보면 총 329회로 100년 평균 63.39회일 정도로 전염병 유행이 잦았다.¹⁾ 특히 1876년 개항 이후에는 도시의 성장과 인구의 밀집, 환경의 악화 등 여러 요인 등에 말미암아 전염병이 더욱 유행하면서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이렇듯 전염병이 한 차례 유행한다 치면 적게는 몇 천 명, 많게는 몇 십 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어떤 해에는 전체 인구의 약 5% 이상이 죽어 나가기도 했다. 전염병 피해는 전란의 피해보다도 더 컸으며, 그것은 곧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²⁾

조선시대에 유행한 전염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을 꼽는다면 단연 천연두가 으뜸

1)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6쪽.

2) 신동원, 『한국 근대 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23쪽.

이었다. 천연두는 다른 질병과는 달리 개인의 위생과 영양 상태와는 무관하게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질병이었다(百世瘡).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린 아기가 걸리기 쉬웠기 때문에 치사율이 매우 높았다. 또 병의 진행과정에서 경련과 구토, 설사와 근육통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까딱 잘못하면 실명하거나 얼굴에 심한 곰보자국이 남아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었.

『실록』의 기사를 보면, 왕실에서도 여러 명이 천연두로 죽은 사실이 확인된다. 태종의 넷째 아들 誠寧大君이 14세에 천연두를 앓다가 죽었고,³⁾ 성녕대군의 형인 세종도 다섯째 아들 廣平大君과 일곱째 아들 平原大君을 천연두로 한 달 보름 사이에 연이어 잃었으며,⁴⁾ 선조는 1603년 겨울에 아들, 딸, 손자를 불과 한 달 사이에 모두 잃고 말았다.⁵⁾ 현종 때에는 장녀 명선공주가 이 병을 앓다가 열흘 만에 죽었다.⁶⁾ 왕실의 사정도 이러하였을진대 지방의 형편은 더욱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천연두는 여느 전염병과 다르게 조선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 예방과 치료를 위해 여러 의서들을 편찬하였다. 세조 때 任元準이 『瘡疹集』을 간행하였고, 중종 때에는 金安國이 『諺解瘡疹方』을 지어 경상도 지역에 배포하였다. 1608년 선조 때에는 許浚이 한글로 쓴 『諺解痘瘡集要』 2권을 내놓았으며, 1660년에는 朴震禧가 자신의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痘瘡經驗方』을 짓는 등 조선시대에 보급된 두창 전문의서만도 최소 33종이나 되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의서들은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모든 알프며 가라우며 허는 병이다 심화로 그러하니 이는 태중에 독한 기운으로 말미암은 것” 혹은 “태아기에 모체로부터 전달된 더러운 액이 출생 후 제거되지 않아서”⁸⁾와 같이 胎毒에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다.⁹⁾ 이 때문에 천연두가 유행할 때마다 나라에서는 민심을 달래고자 祭官을 파견하여 別屬祭를 행하고, 민간에서는 마을 어귀에 장승을 세우고 굿을 하는 등 종교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다 1876년 개항이 단행되면서 조선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부국강병의 과제가 더욱 부각되자 조선의 집권층은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서양의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¹⁰⁾ 1880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영선사, 수신사, 신

3) 『세종실록』 권106, 세종 26년 12월 임자.

4)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 정월 경인.

5) 『선조실록』 권168, 선조 36년 11월 계해, 을축; 권169, 선조 36년 12월 기축.

6)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7월 경인; 8월 기해.

7)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10쪽 <표 II-2> 참조.

8) 김두하, 「두창장승 고 - 이조시대의 두창대책과 장승」, 민속학회, 『한국민속학』14, 1981, 66쪽 재인용.

9)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천연두의 발생 원인을 기존의 ‘태독’에서 ‘대기의 오염’ 내지는 ‘內然, 外邪의 오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12쪽.

10)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23-24쪽.

사유람단 등을 파견하여 전염병 관리를 위한 근대위생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학습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우두법과 환경위생 사업이 조선 정부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두법은 접종액을 만들고 시술 방법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사업 실시가 비교적 쉽고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1879년에는 지식영이 우두법을 일본으로부터 학습하여 조선에 보급하였다.¹¹⁾ 그러나 당시 서양 문물에 대한 반감과 천주교의 탄압 등의 시대적 분위기로 인해서 곧바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885년 지식영이 충청도 공주 지역에 우두교수관으로 차임되면서 지방에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후 1894년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종두규칙」, 「종두의양성소규칙」등 전염병 예방 및 종두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¹²⁾가 마련되면서 정부 주도의 우두 사업이 정비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계속되어 천연두 예방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기존에 개항 이후의 천연두와 관련한 연구는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졌다. 먼저 보건의료학 측면에서 미키 사카에는 개항 전후부터 일제 강점 이전 시기까지의 보건 의료와 의학의 내용을 총망라하여 매우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당시 조선의 서양의학과 보건의료, 예컨대 우두사업과 환경위생 등을 포함하여, 조선인이 아니라 주로 외국인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인에 의하여, 특히 통감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

미키 사카에에 이어 김두종은 조선시대 간행된 다양한 두창전문 의서와 개항 이후에 반포된 법령자료를 검토하여 조선의 우두법 도입과 시행 과정을 고찰하는 한편, 미키 사카에의 주장을 반박하며 개항 이후 일본인들의 의료 활동은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건강을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⁴⁾

신동원은 오늘날 보건의료의 초기적 형태가 개항 이후 일제 강점 이전 시기에 형성되었고, 그것은 인구의 양·질적 관리 문제(전염병 관리)의 대두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되었으며, 나아가 서양의학의 수용과정은 조선정부의 자주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밝혔다.¹⁵⁾

11) 우리나라 최초로 우두법을 소개한 사람은 지식영이 아니라 李在夏였다. 이재하는 자신이 지은 『濟嬰新編』서문에서 “지난 을해년(1875년)에 나는 패관(溟館: 평양)에 놀러갔을 때 계득하(桂得河)를 사귀었다. … 영국 양의(제너)의 인애스럽고 덕이 넘치는 우두법을 들었다. … 후에 지식영이 일본인에게서, 최창진이 중국인에게서 이 법을 배웠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재하(李在夏), 『제영신편』, <한국의약대계>51, 여강출판사, 739쪽.

12) 1985년 5월 12일 부터 1899년 9월 13일까지 반포된 두창 및 전염병 관련 법규는 김형석, 「韓末 韓國인에 의한 西洋醫學 受容」, 15쪽 <표 2> 참조.

13) 미키 사카에(三木榮),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 오오사카, 1962.

14) 김두종, 『한국의학사(전)』, 탐구당, 1966.

15)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보다 구체적인 연구로 이꽃메는 기왕의 김두중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의 우두법 도입과 시행 과정을 실제 역사과정에서 추적하여 당시 두창의 유행 정도와 피해, 사회의 두창 대응, 우두법을 둘러싼 제반 논의 등을 체계적으로 살폈다.¹⁶⁾

민속학 측면에서 김두하는 조선시대의 두창 유행 정도를 살피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약상의 논의와 더불어 부락 공동수호와 장승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두창 유행에 있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얼마나 허약하였는지, 또 두창이 성행할 때 민중의 대응이 어떠한지를 밝혔다.¹⁷⁾

본고에서는 奎羅道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에 세거한 寧月辛氏 가문에 소장 고문서 가운데 각각 기해년과 경자에 작성된 『痘兒』, 『未痘兒』, 『結幕』 성책 등 천연두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고문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 영광군이 27개 면 2도서로 이루어진데 반해 현재는 단 7개 면의 자료만이 현존하고 이 또한 성격이 다른 3종류의 불완전한 형태로 잔존한다. 더욱이 자료의 소장처인 영월신씨 가문에서는 여느 관련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영광군에서 행해진 우두행정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성책이 작성된 배경을 알아보고, 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내용상에서 나타난 용어의 의미 등을 구명하는데 연구를 국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서울(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두사업이 실제 지방의 군·현 단위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 고문서학에서는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의료와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연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2. 자료소개

본고의 살펴볼 자료는 전라도 영광군 도내면 입석리에 세거한 영월신씨 가문에 소장된 고문서로써, 앞서 1996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문서집성』 27, 28집으로 영인·간행할 당시에 누락되어 이전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문서의 형태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분명 관에서 참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집안에 소장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해당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목록화하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지도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6)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3.

17) 김두하, 「두창장승 고 - 이조시대의 두창대책과 장승」, 민속학회, 『한국민속학』14, 1981.

<표 1> 자료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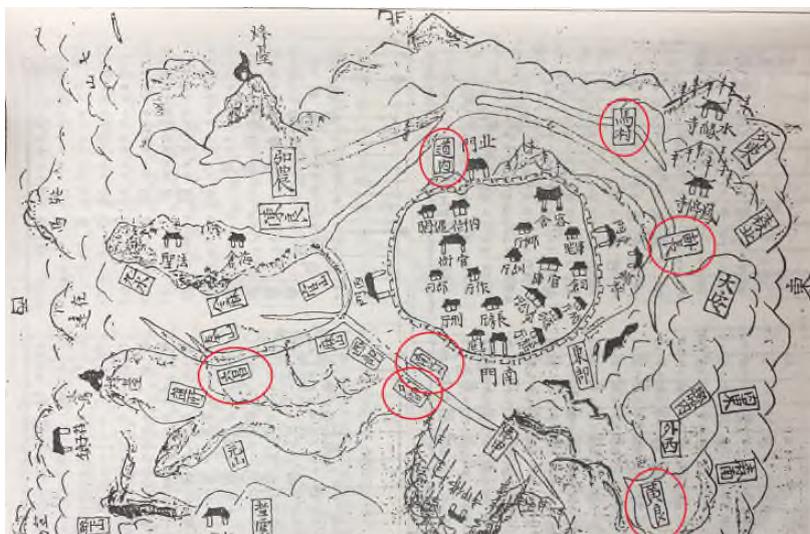
지 명	문서명	내 용	작성연월	면수	수량 (책/건)	
靈 光 郡	道內面	痘兒成冊	10개 洞里的 두아를 조사한 기록	己亥11月	7	1 /
	"	結幕成冊	23개 洞里的 결막설치 현황	庚子9月	7	1 /
	馬村面	痘兒成冊	17개 洞里的 두아를 조사한 기록	己亥12月	11	1 /
	六昌面	未痘兒成冊	23개 洞里的 미두아를 조사한 기록	己亥12月	11	1 /
	畝長面	未痘兒成冊	15개 洞里的 미두아를 조사한 기록	己亥12月	9	1 /
	黃良面	未痘兒成冊	22개 洞里的 미두아를 조사한 기록	己亥12月	9	1 /
	南竹面	未痘兒成冊	21개 洞里的 미두아를 조사한 기록	己亥12月	11	1 /
	外間面	未痘兒成冊	8개 洞里的 미두아를 조사한 기록	庚子1月	7	1 /
其他	和劑	痘瘡의 처방전	미상	各1	/ 2	

위의 <표 1>과 같이 해당 자료는 기해년 11월부터 이듬해인 경자년 9월까지 작성된 문서로써, 영광군 7개면 각 동리의 두아와 미두아의 수효 및 결막의 설치 현황을 기록한 것이다. 총 성책문서 8冊 가운데 도내면과 마촌면은 두아성책으로 작성되었고, 육장면, 묘장면, 황량면, 남죽면, 외간면 등 5개 면은 미두아성책의 형태로 작성되었다. 특히 도내면의 경우는 유일하게 결막 성책 1件이 존재한다. 그 밖에 처방전이라고 여겨지는 낱장문서 2건이 남아 있다.

각 성책의 표지에는 서명, 작성일자과 함께 영광군의 관인과 장방형의 면임의 도장이 찍혀 있고, 문서의 말미에는 社首가 착압하는 등의 동일한 형태가 나타난다. 내용 기술 방식에서도 동리별로 구분하여 기재요소를 적고 끝부분에 결과 값을 제시하는 형태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도를 통해 각 면의 위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자료에 나타난 영광군 7개 면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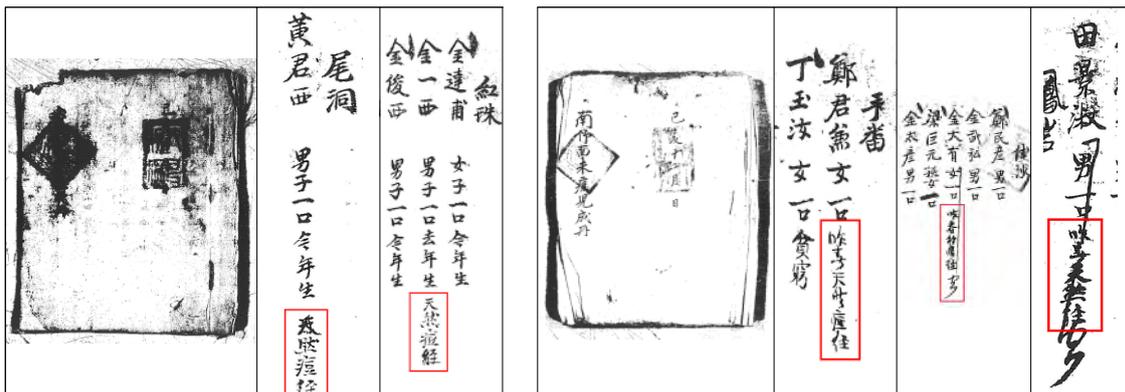
湖南邑誌中 靈光郡·邑誌(1895년)

<그림 1>에서처럼 영광군 관아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묘장면, 서쪽에는 육창면이 자리하고, 남쪽에는 남죽면과 외간면, 그리고 황량면이, 북쪽에는 도내면과 마촌면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각 면의 위치가 비교적 영광군 전역에 고르고 분포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당시에는 영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亡失 혹은 여타의 이유로 7개 면의 자료만이 불안정한 형태로 전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자료이다.

다음 자료의 분석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성책의 표지에 각각 기해년과 경자년으로 표기된 작성연대를 특정하는 일이 그 것이다. 문서의 내용은 당시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서의 작성연대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성책에 보이는 ‘천연두’¹⁹⁾라는 용어의 쓰임에 주목하였다.

<그림 2> ‘천연두’의 용어가 쓰인 사례



육창면의 『미두아』성책 中

남죽면의 『미두아』성책 中

각 면의 성책에서 ‘천연두’라는 용어가 쓰인 사례를 살펴 본 결과 육창면과 남죽면의 『미두아』성책에서 각각 2회, 3회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천연두’라고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기록은 1884년 「한성순보」에 처음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는 ‘천연두’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²⁰⁾ ‘천연두’란 글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두

18) 결론적인 얘기지만 1897년『영광읍지』 <坊里>조에는 관아를 기준으로 동쪽에는 묘장면(15里)과 마촌면(15里)이, 남쪽에는 남죽면(10里), 황량면(25里), 외간면(15里), 육창면(40里)이 자리하고, 북쪽에는 도내면(20里)이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광향토문화원, 『영광읍지』, 1991, 18-19쪽.

19) 조선시대에는 ‘천연두’란 용어를 대신하여 ‘痘瘡’이란 용어가 흔히 사용되었다. 그 외 痘疹, 痘疫, 痘疾, 豌豆瘡, 斑疹, 瘡疹, 痲疹, 癩瘡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痘神이 환자의 몸에 강림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여겨서 두신을 최고로 공경한다는 뜻에서 왕실 인물의 존칭인 ‘마마’ 혹은 ‘손님’, ‘호구별성’ 이라고도 하였다. 정연식, 『조선시대의 천연두와 민간의료』, 인문논총14, 2005, 98-103쪽.

20) 김호, 「조선시대 ‘두진’ 연구 - 마과회통을 중심으로」 『한국문학』17, 1996, 173쪽.

창을 말하는데, 이는 약한 균을 인체에 직접 투입하여 면역을 갖게 하는 人痘, 암소에 균을 투입하여 약화된 균을 인체에 주사하는 牛痘에 대비된 개념으로 인두·우두 따위의 종두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명칭이라는 것이다.²¹⁾

우리나라에 인두접종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1835년(헌종 1) 茶山 丁若鏞이 중국의 痘書 『鄭氏種痘方』과 『醫宗金監』을 참고하여 『種痘心法要旨』를 편찬하면서이고, 영국의 제너가 개발한 우두법 역시 1879년(고종 16)에 池錫永이 일본을 통해 조선에 보급하면서 부터이다.²²⁾ 따라서 본 문서의 작성시기는 1835년 이후 기해년과 경자년인 1899. 1900년이 되겠다.²³⁾

3. 자료의 분석

1) 각 면의 『痘兒』·『未痘兒』 성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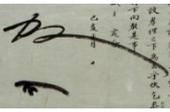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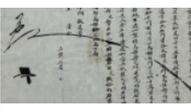
앞서서 살펴볼 『두아』·『미두아』 성책은²⁴⁾ 1899년 11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약 3개월의 기간에 작성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광군 7개 면의 두아와 미두아의 수효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서 먼저 ‘두아’와 ‘미두아’라는 용어의 의미는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未痘兒’는 말 그대로 ‘아직 두창을 앓지 않은 아이’를 말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痘兒’는 ‘두창에 걸린 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오인할 수 있는데 실은 ‘種痘한 아이, 곧 1차 우두접종을 마친 아이’라는 의미이다.²⁵⁾

즉, 『두아』·『미두아』성책은 두창의 예방이란 차원에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환자를

21) 위의 논문, 174-175쪽.

22) 김두중, 「우리나라의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 『서울대논문집 : 인문사회과학』4, 1956.

23) 1835년 이후 첫번째 기해년과 경자년은 1839.1840년이다. 이에 각 성책 말미에 날인된 영광군수의 서압과 영월신씨가에서 그 해 관에 올린 문서에 나타난 영광군수의 서압을 비교한 결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기해년 『道內面痘兒成冊』의 영광군수의 서압	◎ 1838년 道內面 陶洞里 公員 手本	◎ 1839년 化民 辛宏珪 소지	◎ 1840년 유학 화민 辛恒慄 호 구단자	◎ 1841년 摘奸 色吏 張孝翼 松 根摘奸記	◎ 1842년 囚獄罪 人 辛齡奎 소지

24) 이후로는 성책의 서명을 따라서 ‘천연두’란 용어를 대신하여 조선시대 흔히 사용되었던 ‘두창’이란 용어를 사용하겠다.

25) ‘종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조선시대에는 ‘時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두아』성책에는 『미두아』성책에서 보이지 않는 ‘不善’이란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우두접종 이후 진단결과를 기록한 것이다.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사전에 파악하고, 종두(우두접종)의 용이성을 위해 작성된 문서인 것이다. 개항 이후 정부가 추진한 우두행정 속에서 각 성책이 작성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① 작성배경

개항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구료제도가 존재하고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으나 개항 이전의 보건 의료는 인구 관리에 무려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그 대책이 종두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염병의 예방이 아니라 사후 관리에 국한되었고, 종두법조차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1876년 개항이 단행되면서 조선이 세계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부국강병의 과제가 더욱 부각되자 조선의 집권층은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서양의료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영선사, 수신사, 신사 유람단 등을 파견하여 전염병 관리를 위한 근대위생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학습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우두법과 환경위생 사업이 조선 정부의 큰 관심을 끌었다.

조선에 우두법이 수용되는 경로는 다양했다. 지식영이 일본 군의를 통해 우두법을 습득했다면, 이재하, 최창진은 중국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우두법을 도입하였다. 지식영이 다른 수용자들과 달랐던 점은 수신사에 참여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용된 우두법은 1880년대 지방기구의 노력을 통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1882년 전라도 어사 朴泳敎의 주도로 전주에 우두국이 설치되자 지식영은 그곳에서 전라도 인원의 자제를 모아 우두법을 교수하였다.²⁶⁾ 1883년에는 충청도 어사 李容鎬에 의해 공주에 설치된 우두국에서 경상도 출신의 의원이 우두법을 교수하였다.²⁷⁾

우두법은 18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고 시술되기 시작했다. 중앙의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각 도의 우두교수관(牛痘本局), 각 군읍(牛痘分局)의 우두의사로 이어지는 행정조직이 형성되면서 우두법 시행이 체계화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충청도 공주 지역이 1차 실시 지역이 되어 『우두절목』²⁸⁾이 내려졌다.

『우두절목』은 1885년 이후 조선 정부가 실시한 우두 사업체계의 전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卒業狀」, 「本官差帖」, 「巡營下各邑牛痘醫士節目」, 「巡營下各邑節目」, 「各邑下各面完文」, 「各邑牛痘醫士姓名及稅則」 등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순영하각읍우두의사절목』의 내용을 보면 생후 70일이 지난 어린 아이는 반드시 우두의사에게 접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명시²⁹⁾하는 한편, 해당 존동임은 『미두아』성책을 작성하여 우두의사의 종두행정을

26) 기창덕, 「지석영 선생의 생애」, 『송촌 지석영』아카데미아, 1994, 30-31쪽, 재인용.

27) 신동원, 「한국 우두법의 정치학」, 『한국과학사학회지』22권 2호, 2000, 154쪽.

28) 『우두절목』, 규장각 도서번호 21389, 1885.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³⁰⁾

정부차원의 우두사업은 1890년이 되어서는 그 범위가 전국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³¹⁾ 그러나 서양문물에 대한 반감, 무당 등 기존에 두창을 관리하던 세력의 반발, 우두의사의 황포, 수혜자 부담의 재원 조달 방법 등으로 인해 우두법이 전국화된 1890년 바로 그해, 우두의사의 자격증이 회수되고 우두국이 철폐되었다.³²⁾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우두법 시술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이루어졌다. 먼저 6월 28일 의정부관제 개혁을 통해 내부에 의료 분야를 관할하는 위생국을 설치하여 전염병 예방사무와 함께 의약, 우두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³³⁾ 또 같은 해 7월 경무청관제를 개정하면서 전염병 예방, 소독, 종두 등 위생과 관련된 일체 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³⁴⁾ 그리고 이듬해 10월과 11월에는 우두법의 시행을 법제화한 「종두규칙」³⁵⁾과 「종두의양소규정」³⁶⁾ 반포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종두규칙」의 내용을 보면 접종 대상자의 폭을 넓혀 생후 70일부터 만 1년 내의 소아와 성년 남녀라도 두창을 앓지 않았거나 종두를 받지 않은 자를 의무적으로 종두하도록 규정하였다(1조). 또 종두한 이후에는 8일 이내에 반드시 종두의에게 검진을 받아 두(痘)의 상태에 따라 종두증서를 수령하고 이를 증빙문서로 소지하게 하였으며(4조), 관청에서는 종두명부를 작성하여 종두의가 他日에 재접종 혹은 3차 접종을 시행할 적에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하였다(6조).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② 미두영아의 조사와 예방접종

1895년 정부는 우두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목표로 「종두규칙」을 비롯한 각종 법규가 마련하였으나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와 종두를 시술할 사람이 부족하여 전국적인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가 1897년 종두의양성소를 졸업한 종두의사 28명이 확보되자, 내부에서는 1895년에 반포한 종두규칙에 의거한 종두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1898년

29) “嬰兒生後 自七十日以上者 皆可種牛痘是去乙 如或未信而遷延是加可 自今一年後 嬰兒之過初度者 以時痘及絮鼻種痘而有致瘍者 該父兄段 摘發報官 收贖二十七兩錢是矣” 『우두절목』, <巡營下各邑牛痘醫士節目>

30) “本邑牛痘醫士所到處 該洞尊洞任 一一錄給未痘嬰兒是遣” 『우두절목』, <巡營下各邑牛痘醫士節目>

31) 공주지역에 연이어 1886년 1월에는 평안도, 2월에는 경기 감영, 1888년 5월에는 강원도, 7월에는 전라도, 11월에는 수원에 우두국이 설립되었고, 1889년 2월에는 경상도, 8월에는 황해도, 12월에는 4府인 광주, 강화, 개성, 수원, 등과 함께 제주도, 함경도에도 우두국이 신설되었다. 신동원, 『한국근대보건 의료사』, 1997, 106쪽.

32) 신동원, 위의 책 108-116쪽.

33) 「의정부관제」(칙령 제 53호), 『한국근대법령자료집』1권, 239-240쪽.

34) 「경무청관제 직장」, 『의안』, 『한국근대법령자료집』1권, 38-41쪽.

35) 「종두규칙」(내부령 제8호), 『한국근대법령자료집』2권, 593-595쪽.

36) 「종두의양소규정」(칙령 제180호), 『한국근대법령자료집』2권, 608-610쪽.

4월 19일 세부 지침을 담은 「종두소세칙」을 반포하고 이에 입각해서 한성을 대상으로 종두사업을 펼치게 되었다. 내부 본부에 우두종계소를 두어 의사 2명으로 하여금 접종액을 만들게 하였고, 서울 전 지역을 5서로 나누어 각 곳에 종두소 1곳씩을 두어 종두의사 1인으로 하여금 우두를 시술하도록 하였다.³⁷⁾ 서울 지역의 우두접종은 국가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무료 접종이었다.³⁸⁾

지방의 종두사업은 한성보다 2년 늦은 1899년부터 시작되었다. 1899년 4월 종두의 양성소를 졸업한 53명의 우두의사들은 여태까지 각 지방에 종두소가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종두소 설치를 요구하며 지방에 내려가 종두사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자 같은 해 6월 27일 내부령 제17호로 「각지방종두세칙」을 제정하고, 7월 2일에는 종두사무위원을 13도에 각 2명씩, 도합 26명을 발령하였다.³⁹⁾ 이 「각지방종두세칙」으로 지방에서도 우두접종이 실시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영광군에서도 우두정책의 일환으로 각 면의 우두 접종 대상자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5개 면의 자료만이 남아 있다. 5개 면의 조사 현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5개 면의 미두아 현황

		동리수	남	여	계(명)
靈 光 郡	외간면	8	9	5	14
	남죽면	21	19	27	46
	황량면	22	9	17 ³⁴⁰⁾	29
	묘장면	15	35	25	60
	육창면	23	27	18	45

표에서처럼 미두아 수가 가장 많은 면은 60명의 묘장면이고, 가장 적은 면은 14명의 외간면이다. 동리별 평균 두아 수를 보아도 묘장면이 4명으로 가장 많고, 황량면이 1.3명으로 가장 적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남죽면의 경우 미두아 수를 파악하면서 ‘貧寒’이라 하여 가정 형편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성은 1898년 「종두소세칙」을 반포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하는 전면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지방에서는 여전히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이중적인 우두행정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37) 관보 1898, 4, 21.

38) <데국신문>, 1898. 10. 7.

39) <관보>, 1899. 7. 4.

40) 성책에는 남녀 합이 3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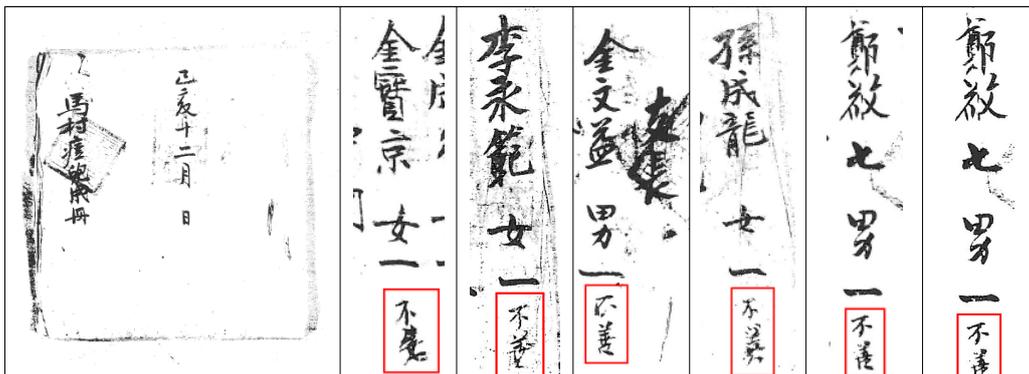
<표 3> 2개 면의 우두접종 현황

		동리수	남	여	계(명)
靈 光 郡	도내면	10	13	9	22
	마촌면	17	17	19	36 ⁴¹⁾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도내면은 10개 마을에 남아 13명, 여아 9명이 우두접종을 하여 한 마을에 평균 2.2명이 우두접종을 하였고, 마촌면은 17개 마을에 남아 17명, 여아 19명으로 한 마을에 평균 1.9명이 우두접종을 하였다. 즉 두 마을 모두 대략 한 마을에 평균 2명 정도가 우두접종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 마촌면의 『두아』성책에는 도내면의 『두아』성책에는 보이지 않는 追記 기록이 확인된다. 그것은 바로 ‘不善’이란 용어이다.

<그림 3> 마촌면 『두아』성책에 나타난 ‘불선’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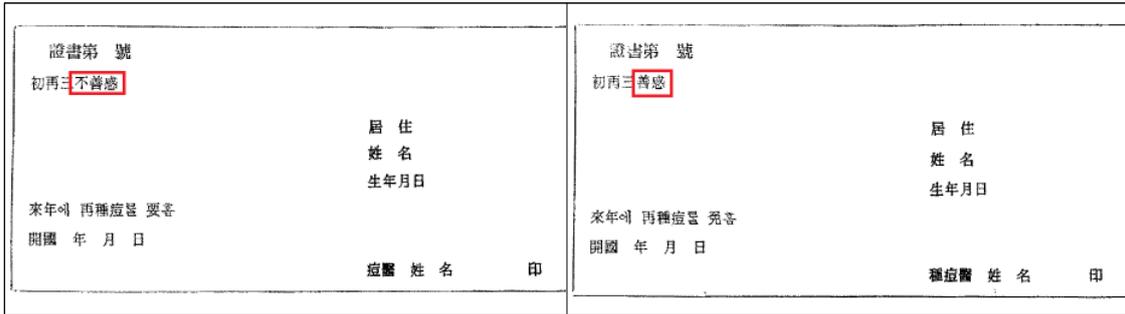


마촌면 두아 성책에 ‘불선’이란 용어가 쓰인 사례는 총 6차례 등장한다. 新大리에 사는 金寶京의 여아 1명, 中南리에 사는 李永範의 여아 1명, 支長리에 사는 金文益의 남아 1명, 堂리에 사는 孫成龍의 여아 1명, 群洞에 사는 吳士兼의 여아와 鄭敬七의 남아 각각 1명으로 남아 3명, 여아가 3명으로 나타난다.

‘불선’이란 용어는 1895년 10월에 반포된 「종두규칙」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종두규칙」에는 우두 접종 대상자를 생후 70일 이상 만 1년 이내의 小兒와 성년남녀라도 종두하지 않은 사람에게 종두하도록 하였다(1조). 그리고 종두한 이후에는 8일 이내에 종두의로부터 검진을 받도록 하였는데(4조), 이 때 종두의는 두(痘)의 感不感 검사하여 종두 경과를 정해진 양식(종두증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10조)

41) 성책에는 3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6명이다.

<그림 4> 종두증서



그런데, 만일 <그림 4>의 왼쪽과 같이 종두 경과가 좋지 않다(不善感)는 종두의의 판정이 있게 되면, 해당자는 1년 안에 재접종을 받아야 했고, 그런 다음에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했다(3조). 즉 ‘불선’은 ‘불선감’과 동일어로 종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접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2) 도내면의 『결막』 성책 분석

다음으로 검토할 자료는 앞서 살펴본 각 면의 『두아』·『미두아』 성책이 작성되고 약 10여 개월이 지난 시점인 1900년(광무 5) 9월일에 작성된 도내면의 『결막』 성책이다. 결막이란 환자를 모아 치료하기 위해 설치된 간이 구료소로 흔히 병막(病幕) 혹은 피병원(避病院)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성책이 작성된 1900년대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종두사업(우두법)이 정착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시기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한성의 경우에 국한되는 얘기이고 지방에서는 여전히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는 끊이지 않았다. 본 자료를 통해 두창이 유행하였을 당시 영광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대응하였는지 그 일면을 살펴보자.

① 작성배경

1900년대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반포된 종두법에 관한 각종 법규, 예컨대 「종두규칙」, 「종두의양소규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우두사업이 지방에까지 확대되면서 상당한 실효를 거둔 시기이다. 1903년 지석영은 이 해를 두고 “종두법이 들어온 후 25년 만에 기십만 명이 실효를 보았다”라고 하였고, 한국의 보건사업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던 일제조차도 종두법에 한해서는 자신들이 통치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종두사무를 담당하던 한성 5署 종두소의 기록을 보면 1899년 한 해 동안 東署에서 1,224명, 西署에서 1,150명, 南署에서 1,254명, 北署에서 457명, 中

뿔에서 604명이 접종하여 총 4,725에 이르렀다.⁴²⁾ 이듬해 1900년에도 1년 동안 전국적으로 우두 접종을 받은 사람이 46,027명으로 집계되어⁴³⁾ 종두를 접종한 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듯 꾸준한 종두접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창으로 인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았다. 1910년도 일제 통감부가 조사한 전염병 통계를 보면 당시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호열자: 콜레라, 적리, 장질부사, 두창, 성홍열, 지프테리아 등) 환자 3,945명 가운데 두창 환자의 수가 2,425명으로 전체 61.6%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전체 1,058의 사망자 중에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454명이나 되어 거의 절반에 상응하는 43%를 기록하였다.⁴⁴⁾

정부의 대대적인 종두사업에도 불구하고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았던 이유는 일차적으로 서양 문물에 대한 강한 반감과 서학을 탄압하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전통적인 질병관이 뿌리 깊게 자리하여 종두 자체를 혐오·기피함으로써 생긴 결과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두법이 지니는 한계와 접종에 드는 비용 문제, 종두의사의 무능, 부정과 횡포에 기인한 바가 컸다.

우두법은 암소에서 채취한 약한 균을 인체에 주사함으로써 기존의 인두법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두창을 예방할 수 있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하지만 반면에 우두를 접종한 이후 생길 수 있는 발열, 경기, 변민, 호흡곤란과 같은 여러 잡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고, 이미 두창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고자 함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종두사업은 국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임에도 우두 재정에 있어서는 ‘수혜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접종비를 수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낼까 걱정하여 겁을 먹고”⁴⁵⁾ 종두를 시키지 않았고, 혹은 가난하여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885년 정부가 통상아문을 중심으로 각 도에 우두국을 설치하면서 전국적인 우두사업을 도모할 당시 처음으로 충청감영에 내린 『우두절목』을 보면 협호와 노비, 환과고독의 자녀는 무료로 접종토록 하였지만 그 외 사람들은 1인당 5兩의 접종비를 받도록 규정했는데,⁴⁶⁾ 1899년에 반포된 『각지방 종두세칙』⁴⁷⁾에는 접종비를 상향하여 1회 30錢으로 명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1차 접종 이후에도 충분한 면역력을 얻지 못해 병의 재발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추

42) <황성신문>, 1900. 1. 17일 기사.

43)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217쪽.

44) 이꽃메, 「한국의 우두법 도입과 실시에 관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8쪽.

45) <데국신문>, 1899. 10. 30일 기사.

46) “一. 藥金段 挾戶奴名及鰥寡之子女 并不要分文是遺 其餘以五兩爲例是矣…” 『우두절목』, <巡營下各邑牛痘醫士節目>, (청구기호 奎21389).

47) 『한말근대법령집자료』권2, 1971, 512-513쪽.

가적인 2차·3차의 접종이 필요했고,⁴⁸⁾ 따라서 접종비만 최소 60전 내지 90전이 들었다.⁴⁹⁾

1900년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白米 1升가 16전, 쇠고기 1斤이 20-25전, 성인 이발료가 30전, 인력차로 10리를 가는 요금이 50전, 인부의 하루 임금이 80전, 굴이 한 상자에 80전이었으므로,⁵⁰⁾ 접종비는 결코 짠 것이 아니어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우두법 시행의 큰 장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두를 담당하는 우두의사의 횡포와 전행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제시되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우두절목』에서 진두(眞痘)인 경우에만 돈을 받도록 하였으며, 무료로 접종받도록 되어 있는 협호·노비·과부·홀아비 등의 자녀에게는 약값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규정된 접종비 5냥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같은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약을 놓는 시늉만 하고서 약값만 챙기기도 하였다.

이렇듯 두창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나라에서는 소독법 주지시키는 한편, 병막을 지어 환자를 격리하고자 하였다.

② 결막의 설치와 구료활동

두창은 공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pox virus)가 피부와 점막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질환⁵¹⁾으로 전염속도가 매우 빨랐다. 이 때문에 한 명의 환자라도 발생하면 삽시간에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염을 피하기 위해 잠시 감염지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즉, 피방의 방법이 다른 무엇보다 위험성을 낮출 수 있었지만, 두창이란 병의 특성상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피신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⁵²⁾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의 발생과 함께 전염의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1900을 전후하여 영광지역에서 두창이 유행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보다 앞서 1879년(고종 16) 3월 ‘병자·정축년(1876·1877)의 흉년과 전염병이 지나간 이후로 백성들이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온갖 질병이 퍼져 장차 읍과 백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게 될 것이다. … 군수가 몸소 살펴 본 것으로 불쌍하고 가엽기가 끝이 없다’⁵³⁾는 기록과 같은 해 6월 ‘병자·정축년의 흉년과 전염병으로 인구는 줄고

48) “痘瘡은 種痘와 갖치 萬全預防法이 有하니 其 患害未然에 防制함을 得홀지나 再三反覆지 아니하면 其效가 無홀지라” 「두창예방규칙」(내부령 제24호), 『한말근대자료법령집』2권, 563-564쪽.

49) 당시 함경북도 종두사무위원이었던 조정국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2,000명의 1차 접종자 가운데 약 100여 명만이 재접종하였다고 한다. <황성신문>, 1903. 1. 19일 기사.

50) 손정목, 『한국 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1982, 392쪽.

51) 이규식, 「종두법의 발달사 고찰」, 1985, 73쪽.

52) 1834년부터 1950년 사이 5대에 걸쳐 쓴 대하일기인 박정로 씨 잡안의 『淸上月』에는 1837년 유행병 때문에 피난 가는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2005, 24쪽.

53) 『각사등록』, 영광향토문화연구회, 1993, 163쪽; 192쪽.

땅은 묵어서'라는 기사를 통해 개항 전후 영광에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를 통하여 두창이 '조선 초기 12~13년 혹은 22~23년 주기로 한 번씩 유행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보다 잦아져 5~6년마다 한 번씩 유행했다'⁵⁴⁾는 미키 사카에의 연구나 본 성책이 작성된 목적을 상기하였을 때 당시 영광도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창이 유행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영광지역에서 두창이 성행하자 새로운 방역책으로 격리법을 시행하여 병막(病幕)을 짓고 환자와의 접근을 막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도내면의 『결막』 성책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동리별 결막 설치 현황

동리명	도내면														
	外五	內五	水南	壯洞	外新	古城	松亭	月谷	桂洞	栢子	雙桂	臥津	板下	走鹿	平田
결막수(間)	1		1		1		1		1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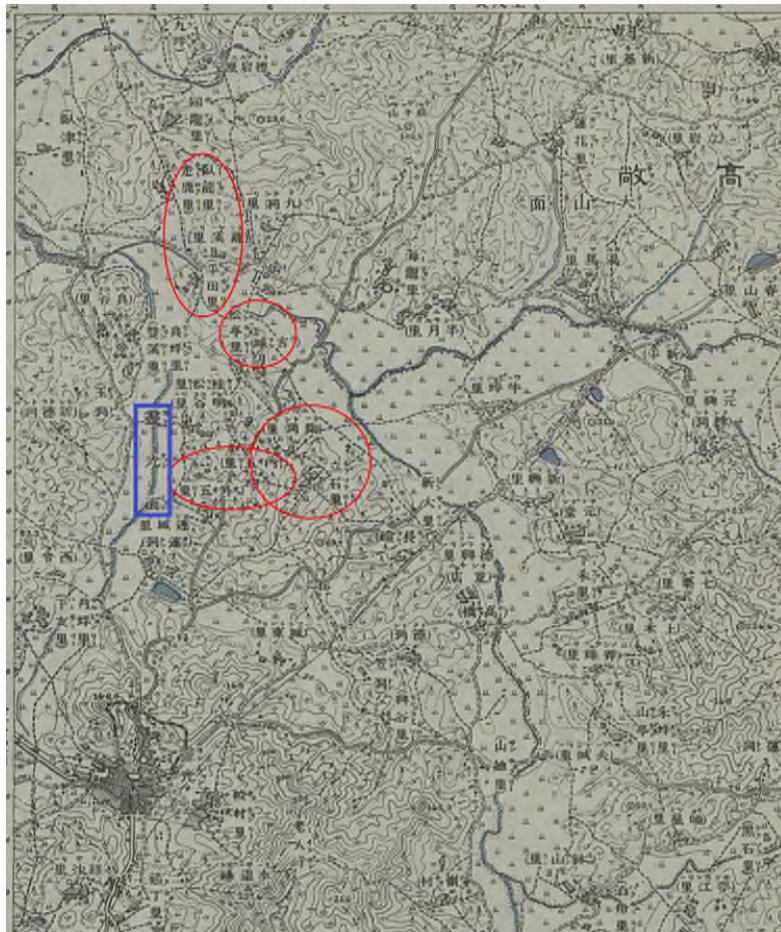
동리명	도내면								계
	希景	龍溪	牛坪	■■ 55)	立石	道內	新大	閑沙	23
결막수(間)	1		1		1		1		11

위의 표에서 보면 도내면은 23개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대개 2개 마을 단위로 한 칸의 결막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수남리와 장동리, 외신리는 3개 마을을 묶어 1칸의 결막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환자수가 적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결막은 어떠한 기준으로 설치된 것일까? 도내면의 동리명이 확인되는 지도를 통해 살펴보자.

54) 삼목영, 『조선의학사급족병사』, 大阪: 부사정파인쇄주식회사, 1963, 39-40쪽.

55) 자료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남아 있는 탓에 이미지가 흐려 판독이 되지 않는다.

<그림 5> 결막의 설치가 확인되는 동리의 위치⁵⁶⁾



1918년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에서 발행한 「조선오만분의일지도」에서 확인되는 도내 면의 동리명은 외오, 내오, 고성, 송정, 쌍계, 와진, 주록, 평전, 입석, 도내, 신대 등 모두 12곳이다.⁵⁷⁾ 이 중 동리명이 확인되면서 결막이 설치된 동리만을 보면 (내오·외오), (고성·송정), (주록·평전), (입석·도동) 8곳으로 지도를 통해 서로 인접한 마을임을 알 수 있다.⁵⁸⁾ 즉, 동리간의 거리와 환자수를 고려하여 2-3개 마을을 한데 묶어 1칸의 결막을 설치하고 환자를 격리·치료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결막은 두창과 같은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전파를 막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구료함에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듯하다. 예컨대 1895년 전국에 콜레라가 유행하자 조선 정부는 콜라라 환자를 위한 피병원을 설치했는데, 그 시설이 실로 보잘 것이 없었다.

56) 조선오만분일지형도(19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도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57) 1906년과 1910년 2차례의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으로 군·현 단위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58) 결막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체로 인가로부터 50보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방(입원실) 사이에는 벽도 없었고, 방 바닥에 임시로 거친 판자를 깔아 놓아 침상으로 썼다. 장마가 시작되어 실온이 떨어지는데도 환자를 따뜻하게 해줄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의사와 간호사의 정성스러운 구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환자는 죽어버렸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피병원은 “오직 집 없는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기에 동의했을 뿐”인 유명무실한 곳이었다.⁵⁹⁾

인용문의 피병원은 조선정부가 서울에 최초로 세운 피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대신한 거친 판자가 전부이고, 난방도 전혀 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사의 정성스러운 구호에도 대다수 환자가 사망하였고, 이 때문에 오직 집 없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하였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였는데, 다음의 1896년 5월 28일자 독립신문의 기사의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준다.

“악박골 밧헤 농부가 보니 엇던 교군군이 병든 사름을 교군에 태어가지고 와서 병막을 허술 하게 짓고 그 안에 안치고 가더니 이돌 이십 삼일 쉼다리 교번쇼 순검이 순행 하다가 그 병막 안을 보니 웬 사름이 죽었는데”⁶⁰⁾

기사를 보면, 어느 날 어떤 교군군이 병든 이를 태워와서 허름하게 병막을 짓고 그 안에 환자를 두고 갔다가 순행하는 순검이 죽을 사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결막에서는 환자에 대한 보호나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全羅道 靈光郡 道內面 立石里에 세거한 寧月辛氏 가문에 소장 고문서 가운데 각각 기해년과 경자에 작성된 『痘兒』·『未痘兒』·『結幕』성책 등 천연두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고 이를 고문서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를 시도한 글이다.

2장에서는 ‘천연두’라는 용어의 쓰임을 통해 각각 기해년과 경자년으로 기재된 성책의 작성년대를 1899과 1900년으로 확인하였다.

3장에서 『두아』·『미두아』 성책과 『결막』 성책을 구분하여 두창의 예방과 두창환자의 구료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았다.

59)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34쪽 재인용.

60) <독립신문>, 1896. 5. 28일 기사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Ⅱ 주제발표 4 Ⅱ

광복 이후 영광지역

정치 주역들의 활동과 갈등

정택근(영광문화원)

광복 이후 영광지역 정치주역들의 활동과 갈등

정택근(영광문화원 지역문화연구소)

<목 차>

1. 건국준비위원회 영광지부의 설립과 조직
2. 새로운 정치지형 '영광군 인민위원회'
3. 영광민립중학교 설립
 - 1) 민립중학교 설립의 근대사적 배경
 - 2) 민립남녀고등중학교 설립
4. 영광군 인민위원회 해체
5. 미군정기의 정치·사회적 혼란
 - 1) 1948년 전후 상황
6. 단독선거와 반민특위 그리고 좌익세력의 준동
 - 1) 관계의 상실

* 일러두기

- 「광복 이후 영광지역 정치주역들의 활동과 갈등」에서는 해방 공간에서 미증유의 혼란을 경험하였던 영광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본 글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원고의 저작자에 있으며, 이 글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인용이나 발췌는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본문에 제시된 성명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실명을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증언구술자 일부는 가명이나 ○○를 사용하고 공개동의서를 받아 서술하였다.
- 구술에 대한 표기로 OH_○○○생애사_2008.08_○○아파트○○○호_○○○_03_01은, 구술자료_주제_수집날짜_면담장소_구술자_매체별 번호 및 파일이름_구술 차수이다. 간혹 면담장소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1. 건국준비위원회 영광지부의 설립과 조직



<그림 1> 농업은행

수 있는 인사들이어야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은 일제하에서 민족·사회운동을 하던 지역인사들에게 주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정치, 행정, 치안 등 권력의 공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영광군의 지도층 인사들은 8월 16일 천주교 등지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8월 17일 오전 11시, 영광금융조합 2층 회의실에서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¹⁾ 영광지부 결성식을 가졌다. 해방이라는 상황 하에서는 건준이라는 과도적 조직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를 담당할 인사들은 많은 군민들의 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인사들이어야 했다.

건준 영광지부 결성식에서는 조주현(이하 조운)을 중심으로 정인영鄭仁暎²⁾의 아들들인 정진삼, 정태송, 정영삼, 그리고 허용, 정욱 외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방 이후의 지역사정 및 다른 지역의 움직임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건국준비를 위해 매진하기로 하고 해방정국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치안확보와 적산관리 등을 위해 건준 지부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조운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에 조희충曹熙忠이 추대되었고, 부위원장에 조용남, 총무부장에 조운, 조직부장에 정태송, 청년부장은 정영삼, 문교부장에 이을호, 치안대장에 정진삼, 재무·회계는 허용, 적산관리부장에 정욱 등이 선임되었다. 일제하에서 사회운동·청년운동·노농운동·항일운동 그리고 특히 민족교육을 주도하면서 민예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지역인사들 중에는 소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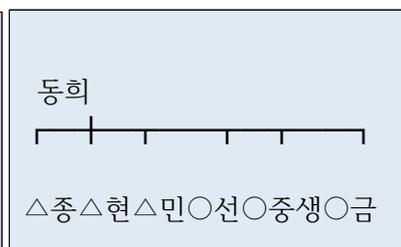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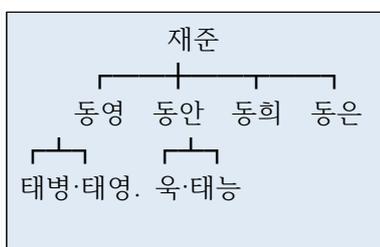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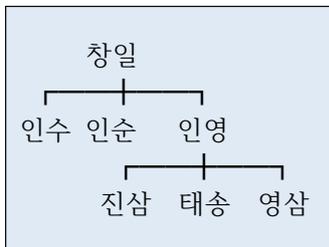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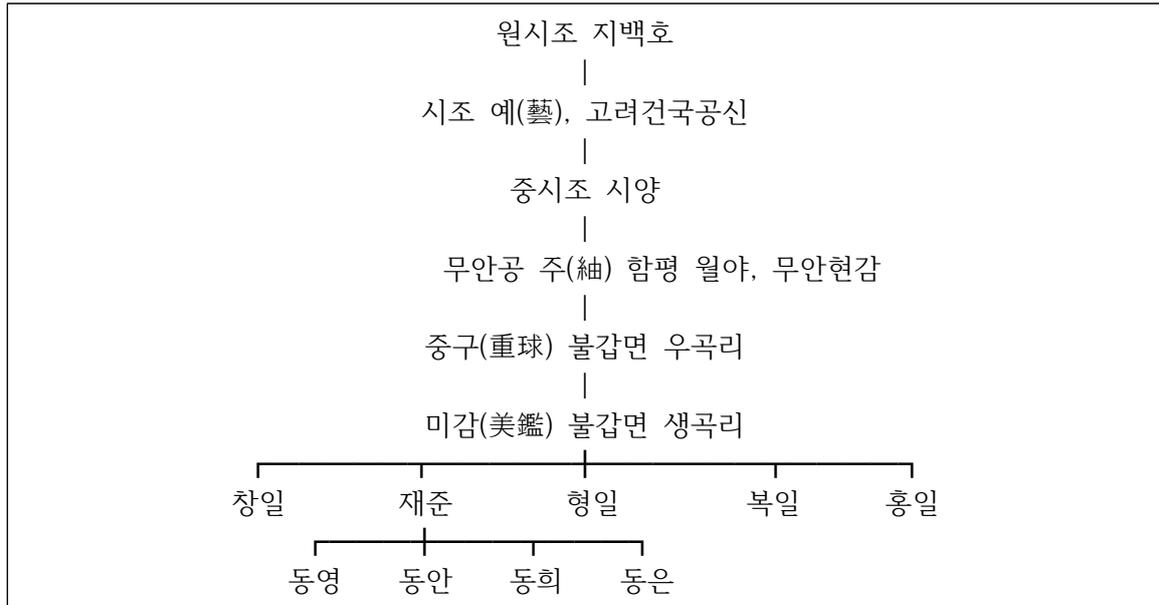
1) 1945년 8월 17일 건준이 결성되었고 1945년 10월 중순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1946년 초반까지 사실상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였다. 안종철,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한울아카데미, 1991, 107~109, 149쪽.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고려국민동맹, 인민동지회, 일도회 등을 흡수하여 1945년 11월 12일 조선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인민당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협정안에 대하여 조선공산당과 함께 찬성을 표방하였으나 좌·우파의 공격으로 정당 활동을 활발히 못하였고 1947년 5월 24일 근로인민당으로 개편하였으나 당수인 여운형의 사망으로 1947년 7월 당 조직이 와해되었다.

2) 정인영(1889.01.24~1940.06.20)은 1889년 1월 24일에 정창일鄭彰一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정재일鄭在一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형은 정인수鄭仁洙이고, 누이는 인순이며, 본관은 진주로 영광의 토호土豪 집안 출신이다. 본적은 영광면(읍) 도동리 206번지이다. 아들은 진삼軫三·태송泰松·영삼이며, 진삼은 조희충曹熙忠의 사위이다. 1909년 영광공립보통학교의 전신인 사립광흥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3월 14일 영광읍 시장에서 3·1운동을 주도하여 2년간 옥고를 치렀다(무안공파 파보 및 정종의 구술, 2007). 1910년 일제강점 후 독립 쟁취의 기회만을 모색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다. 1918~1922년 영광청년회 초대 회장 1923년 영광청년회 이사, 1924년 영광노동우애회 회장, 1925년 영광자유노동조합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1937년 체육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일본의 대학이나 서울 등지에서 유학했던 사람들 또는 조선공산당조직 등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 대부분 일제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나름대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영광지역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군민들의 지지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고 한다.

<그림 2> 정인영의 가계도



△ : 남자. ○ : 여자. ▲ : 본인. = : 혼인관계. — : 혈연관계. 형제의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원장에 선임된 조희충은 1888년 영광면 출신으로 당시 62세였다. 정인영과는 사돈 관계, 즉 치안대장을 맡은 정진삼의 장인이며 나락 3백석 정도를 올리는 소지주였다. 그는 광흥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신간회 영광지회 발기준비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3·1운동, 청년회, 중학기성회, 추인회, 재만동포옹호동맹, 수업료징수개선 요구운동 등 일제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인사록』에 의하면 미군정기인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 8일까지 영광군수로 재임하였다.

부위원장을 맡은 조용남(일명 : 조룡)은 1901년생으로 영광면 출신이다. 1923년 영광 청년회 이사, 1925년 청년회 집무위원, 여성연맹 고문, 1927년 조선공산당(이하 조공)³⁾

3) 1925년 창립 이래 1945년 9월12일 박헌영을 중심으로 재결성되어 국내의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활동하



<그림 3> 조용남

전남도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공청) 영광조직책임자, 토우회 집행위원, 영광청년동맹 집행위원장, 영광제만동포우호동맹 집행위원, 영광노농대회 집행위원장, 1928년 신간회 영광지회 발기준비위원, 제4차 조공 전남도당 책임비서를 맡았다. 그는 일제하 영광지역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한 인물이었다. 영광의 일부 사회운동가들이 조공 전남도당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3·4차 조공 때의 일이었다. 1·2차 조공 당시에는 주로 전남 동부의 화요회 계열 인사들이 참여하였으나 이들은 대부분 검거되었다. 따라서 3·4차 조공의 전남 조직은 주로 전남 서남부의 서울청년회계열의 인물들에 의해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전남 조공에 참여한 서울청년회계 인물들은 서울청년회 신파로 분류된다. 1927

년 2월 강석봉, 유혁, 김재명 등이 조공 전남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1928년 1월까지 각 지역별로 당과 공산청년회의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영광에서는 조용남이 당과 공청의 책임자로, 김은환이 당 조직원으로 그리고 남궁현이 공청의 조직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용남은 김재명의 권유(1927년 봄으로 추정)로, 김은환은 1927년 6월 강석봉의 권유로, 남궁현은 1927년 9월 조용남의 권유를 받고 입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조용남은 조선일보 영광지국 기자, 김은환은 조선일보지국장, 남궁현은 중외일보 법성포지국 기자였다. 조용남은 제4차 조공 때에는 전남도당의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는 1931년 공청사건으로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광복 후 영광과 광주를 왕래하며 도인민위원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전라남도연맹 대표,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 전남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과 산업부장, 1946년 3월 민전 전남지부 무임소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1946년 고문으로 인한 지병으로 사망하였다.⁴⁾

총무부장을 맡은 조운(본명 : 조주현, 1900.06.26~?)은 영광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본관은 창녕이며 호는 기정畸丁·정주랑靜洲郎이다. 조주현이라는 본명보다는 조운으로 더 알려져 있다. 조운은 1900년 6월 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36번지에서 관리官吏 조희섭曹喜燮의 서자庶子로 출생⁵⁾하였다. 1918년 김공주金公珠와 결혼하여 두

다가 1946년 9월 미군정청의 체포령에 의하여 지하로 숨어들어 총파업과 폭동을 주도하였지만, 1947년 당원 2,076명이 검거됨으로써 약화되었다. 조공은 11월 23일 인민당과 신민당을 흡수하여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개편되었고, 좌경사회단체들의 배후에서 정치·노동·농민·문화·청년운동 등을 선동하다가 1949년 10월 정부로부터 정당등록취소처분을 받아 비합법화 되었다.

4) 경성복심법원, 昭和 6년 刑控第21호 판결문(1931년 2월 12일);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5) 그의 어머니는 관기(官妓)출신이며, 7남매의 외아들로(정규팔, 한춘섭) 또는 3남 5녀 중 3남으로(박주관, 대한일보 편집국장) 기록되어 있다. 정규팔, 「조운과 시조생활」, 『鄉脈』, 제3호, 영광향토문화연구

딸을 낳은 뒤 1924년 이혼하였고 1929년 노함풍과 재혼해 아들 흥재·청재·명재 셋을 두었다. 그의 누이 조영정曹英貞은 '영광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된 위계후의 부인이며, 누이 조금주曹金珠는 영광의 3·1운동에 참여한 후 일제의 검거령을 피해 은신해 있다가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가담했던 문인이며 민족운동가인 죽창竹窓 김형모의 부인이다.⁶⁾ 그리고 영광의 첫 만세운동을 추진하여 점화시켰던 조병현曹炳鉉(이명異名은 병현炳鉉·제현濟鉉)과 조철현曹喆鉉은 이복형이고,⁷⁾ 영광소작인회와 신용조합을 창립하여 운영하였던 농민운동가 조희석은 그의 숙부이다.⁸⁾



<그림 4> 조운

그는 1900년 영광면 도동리에서 태어나 영광보통학교, 목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지역의 민족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3·1독립운동과 항일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1922년 사립 영광학원 국어교사(조선문단에 '초승달이 재를 넘을 때' 등 3편의 자유시 발표, 춘원 이광수와 교류), 1925년 청년회 집행위원, 1927년 한글회 창립멤버, 토우회 집행위원, 추인회, 갑술구락부(항일민족자각운동의 일환으로 결성), 청년동맹 집행위원, 재만동포옹호동맹 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1935년 영광체육단에 참여하였다가 1937년 구속되어 1938년에 징역 10월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⁹⁾ 그는 1947년 서울로

회, 1989 ; 한춘섭, 「영광이 낳은 시조문학 대가의 조운시조론」, 『옥당문화』, 제4호, 영광문화원, 1989

6) 조운은 처남 김형모가 폐결핵을 앓자 김형모의 여동생 김가진金佳辰과 함께 해주요양원에 입원시킨 채 귀향한 아픔을 시 '병우病友'로 표현하였다.

7)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조병현』 권13, 1966, 574쪽 · 「공훈전자자료관 포상자공적소서(조병현)」; 『이좌근 판결문』, 고등법원, 1920년 2월 7일 ; 박찬승, 「일제하 영광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권3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376쪽 ; 정규팔은 손위로 두 이복형이 있는 것으로, 한춘섭은 이복형을 문현, 부현으로 기술하였다. 정규팔, 앞의 책, 138쪽 · 한춘섭, 『옥당문화』, 제5호, 영광문화원, 1991, 49쪽.

8) 박찬승, 「일제하 영광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권3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385쪽 .

9) 영광체육단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제하 1934년 4월 영광에서 사회운동을 하던 인물들이 체력 향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영광체육단을 창단하였다. 단장에는 위계후(魏啓厚), 부단장은 조규원(曹圭源), 총무는 조운(曹雲), 재무는 서순채(徐淳彩)가 맡았다. 이 조직은 1935년 영광·장성·고창·정읍 4개 군과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고, 1937년에는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한 남승룡(南昇龍) 선수를 초청하여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조직의 활동을 감시하던 경찰은 1937년 9월 16일 '동방약소민족옹호', '대한독립만세'라는 벽보를 자신들이 만들어 영광면 사거리에 붙여놓고 범인들을 색출한다는 구실로 영광의 지도층 인사 231명을 검거하고 그중 24명의 인사가 구속되었으나 조운을 포함한 4인만이 실형을 받고 복역하였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영광 공산당사건 조주현 등 23명 송국>이라는 제목 하에 "작년 8월 경 전남 영광군내 모종의 비밀결사사건을 탐지한 경찰은 극비리에 활동을 개시하여 모모 청년을 대량적으로 검거한 이래 9개월 동안 엄중한 취조를 하여 오던 바 지난달 5일 목포지청검사국 宥井사상검사가 영광서에 출장 취조로 일단락을 마친 전기사건은 지난 5일 공범 131명 중 주범 조주현(39세) 외 23명만 1건 서류와 함께 목포지청 검사분국으로 송치되야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는바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내란죄, 폭력행위 등 취체에 관한 법률위반, 보안법위반, 육군형법위반 등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하며……위계후를 지도자로 하여 동지를 규합하는 동시에 주의선전에 암약하던 사건으로서 9개월 동안 취조서류만 1만6천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서류는 석유계로 6개나 되는 근래에 보기 드문 대사상사건이

이주하여 같은 해 『조운시조집』을 간행했고 동국대학에서 시조론, 시조사 등을 강의하다가 1948년 가족과 함께 황해도 해주로 월북하였다.

조직부장을 맡은 정태송은 1909년생으로 영광면 출신이다. 정인영의 둘째아들이며 정진삼의 동생이다. 양정고보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청년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영광에 돌아와 수리조합 서기를 맡기도 하였고 백수면에 있던 아베농장 사무관리 책임자이기도 하였다. 1935년 소인극회素人劇會¹⁰⁾에 참여했으며 건준 해체 이후 부인과 함께 월북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빨치산활동을 배후에서 지도하다가 월북하였다고 한다.



<그림 5> 정욱

치안대장을 맡은 정진삼은 1905년생으로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한 후 세무서, 면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35년 영광체육단에 참여하였다가 옥고(1937)를 치렀다. 정진삼은 일제 때의 친일경찰을 해체하지 않고 흡수하여 치안대를 조직하였고, 건준은 일제 때 사법주임을 한 박동복朴東福을 부서장으로 임명하여 정진삼과 함께 활동하도록 하였다.¹¹⁾ 이들은 경찰서를 접수하고 영광치안유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인민위 해체 이후 지하활동을 하다가 빨치산 토벌작전 때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또는 월북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하여 세인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가 이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심에 회부될지 여하는 오는 16일까지 결정을 보리라고 하며 피의자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조주현.위계후.이을호.정진삼.정욱.정동석.조규○.남궁현.신명철.김용태.나연문.홍○○.김대○.임○○.조순영.은○옥.임동환.조남규.한○○.조동현.정○병.정판삼.나○○.김철주.” 『동아일보』, 1938년 5월 8일.

영광체육단 사건에 관하여 『영광군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 약전(藥專)을 졸업하고 돌아온 이을호(李乙浩)가 닐슨북이라는 덴마크의 도수체조(徒手體操)를 배워가지고 이것을 보급한다는 것이 일경(日警)을 속이는 구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위계후, 조규원, 조운, 서순채, 정진삼, 박운근, 조장현, 김맹규, 정욱, 이을호, 허감 등은 1934년 4월 영광향교에 모여 영광체육단을 결성하였다. 그들은 진명사(珍明社) 마당에 거의 매일 모여 회동하였다. 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장성, 고창, 정읍 등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1차대회를 영광에서 가졌다. 그 후 남승룡 선수를 초대하여 수천의 군중을 모이게 하였고, 영광체육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군민이 단합되는 것을 본 일본경찰은 경계할 대상으로 지목, 1937년 9월 16일 흥계를 시도하였는데 약소민족옹호,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전단을 영광읍 사거리 전주에 은밀히 붙이고 다음날 아침 일경들은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의 범행으로 몰아 미리 작성된 명부에 따라 3백여 명을 체포, 구금하여 익년(翌年) 4월까지 7개월간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으로 사건을 날조, 45 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4명은 실형을 받고 41명은 1939년 3월 8일 예심에서 면소되어 석방되었으나 무고한 사람들을 18개월 동안 구금, 고문하였다. 『영광군지』, 2002년, 316~317쪽.

10) 정태송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민족사상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재향지식인들과 유학생들이 창립한 무대극인 소인극회의 임원을 역임하였다.

11) 미군정기 영광경찰서의 기록에 의하면 1945년 10월 7일 전남에 미군이 진주한 후 군정경찰로 새롭게 발족하였고, 동년 11월 초대 경찰서장으로 정진삼 경감이 부임하였으며, 보안대 접수 신규 경찰관들을 각 면에 배치하여 치안을 수습하였다. 1946년 4월 15일 경찰기구개혁 제8관구경찰청 제1구경찰서로 개칭되었고, 1949년 3월 7일 제1구라는 명칭이 행정구역 명칭인 영광경찰서로 개칭되었다.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직원록』, 국사편찬위원회, 1945.

적산관리부장을 맡은 정옥은 1909년 백학리 47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929년 광주공립농업학교 독서회사건으로 구속되어 3년 6월의 중형을 받고 1년 복역하던 중 출감하여 1935년 소인극회 회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영광체육단에 참여하였다가 1937년 목포형무소에 재수감되어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조선독립운동 비밀결사인 성진회, 독서회 등에서 민족해방과 식민지노예교육반대를 주장하며 동맹시위를 단행하는 등 각종 항일운동의 전위에서 있었다. 1990년 12월 26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문교부장을 맡은 이을호는 1910년 영광읍 백학리에 태어나 영광학원에서 공부하고 중앙고보를 졸업하였다. 이후 1934년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읍 남천리에서 호연당 약방을 경영하였으며, 1935년 영광체육단 사건으로 1937년 옥고를 치렀다. 그는 해방 후 영광민립고등중학교(이하 민립중)를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농지를 기부했고 1945년 민립남자고등중학교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광주로 이거한 이을호는 1948년 광주의학전문학교부속병원 약국장을 거쳐 1955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취임하였다. 그는 전남대학교에 호남문화연구소를 세워 호남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는 호남학의 선구자로 호남의 역사와 문화



<그림 6> 玄庵 이을호

의 정체성에 대해, 백제의 후예로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녀왔으며 판소리의 특색을 근거로 충청과 전라도를 아우른다고 규정하였고 호남예술은 담백하고 서민적 생명이 약동하여 예술로 승화된 것으로, 호남의병의 정신은 의義로 규정하였다. 호남문화연구소장, 광주시교육위원, 전라남도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1967년 『다산경학사상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국사상의 새로운 철학을 정립하는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부장을 맡은 정영삼(1915년생)은 일제하에서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광복 당시 영광군청 국민총력계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구술증언에 의하면 1948년 이후 영광, 염산, 백수, 불갑면 등지에서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1951년 백수면 대절산 갯봉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한다.¹²⁾

건준은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수립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조직체로서 전민족적 통일체임을 표방하였다. 건준 영광지부의 조직구성은 당시 도 건준에서 보내온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당시 전남지부의 조직구성을 보면, 위원장 최흥종, 부위원장 김시중.강

12) OH_정총생애사_2008_청우아파트207_03_01-05

해석, 총무부장 국기열, 치안부장 이덕우, 재무부장 고광표, 선전부장 최인식, 학무부장 신순언, 산업부장 한길상, 조직부장 김범수 등을 비롯한 58명의 건준위원이 선출되었다. 이들의 직업은 목사·지주·기자·의사·변호사 등으로 지방의 명망가들이었다. 이후 건준 내부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갈등을 빚어 결국 진보진영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건준은 좌익적 성격이 강한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9월 3일 도민대회에서 위원장 박준규, 부위원장 강석봉·국기열·김철, 조직부장 김종선, 산업부장 한길상, 총무부장 장영규, 후생부장 노종갑, 지방부장 조병철, 학무부장 강해석, 치안부장 이덕우, 무임소위원 이익우 등으로 새롭게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이처럼 전남 건준은 명망가 중심에서 실무 활동가 중심으로 개편되었다.¹³⁾

도 건준에서는 건준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할 인물로 첫째 일제 때 면장경력자, 둘째 도평의원 경력자, 셋째 경찰 관련자 등을 명시했다. 이 시기에 그러한 기준이 존재했는지는 다소 의심스럽지만 영광의 건준 참여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최초의 모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해방된 상황에서 영광군민의 단합을 위하여 악질적인 친일인사가 아니면 참여시키자는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애초의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 결과 해방 전에 군청에서 근무했던 자와 경찰 관련자들이 일부 포함되었다.¹⁴⁾ 영광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친일파나 떠나지 못한 일본인들에 대한 보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영광면 백학리 ○○윤¹⁵⁾의 집에 청년들이 물려가 불을 지르려고 하자 조운이 맨발로 달려와 만류하고 보호했다고 한다. 그는 1932년 일제하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후 초대 도의원에 선출되었으며 학교 평의원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조운은 당시에 실질적인 영광지역의 지도자였는데 매일 아침마다 위원들을 각 면으로 보낼 때 꼭 훈수를 하여 일본사람들을 고이 보내자고 지시했으며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계몽하였다고 한다.¹⁶⁾ 그로 인해 친일파와 일본인들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조운에 대한 다른 평가와 그에 대한 반감 또한 적지 않다. 그가 '일제 때 부터

13)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11』, 전라남도, 1994, 105~108쪽 ; 김석학·임종명, 『광복 30년 (1)』, 전남일보사, 1975, 39쪽; 전남일보 광주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1)』, 실천문화사, 1991, 40쪽.

14) 안종철,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건준 및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1991, 107쪽·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0, 49쪽.

15) 1897년 영광면 백학리 133에서 출생하여 1918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고보사범과를 나와 영광공립보통학교 훈도를 역임한 후 1926년 사직하고, 1929년 4월 영광인쇄소와 1930년 ○○양조장을 운영하였다. 조씨의 영법전기회사(靈法電氣會社)의 취체역(取締役)에 임명되었으며 1932년 광주면자주식회사(누룩 제조판매) 취체역, 1936년 영광금융조합 감사, 1939년 4월 12일 영광금융조합 조합장에 취임(~1942년 5월 7일까지)하였다. 창씨를 백곡동윤(栢谷東允)으로 하였다가 1940년 송영동윤(松永東允)으로 변경하기도 했으며, 변영희의 조직 등에 앞장서기도 했다. 1940. 07. 06. 광주지방법원등기, 조선총독부관보 제 4062호, 1940. 08. 05. 게재에서 인용.

16) OH_정총생애사_2008_청우아파트207_03_01-05 ; OH_조남식생애사_2007_영광문화원_03_01-01.

사회주의사상에 심취했고 건준위원 대다수가 사회주의자였으며, 그 중에서도 조운은 핵심 공산주의자였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영광청년들이 좌익화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좌익조직을 만들어 건준에서 배제된 지역인 사들에게 다른 압력을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영광건준은 일본인이 남기고 간 가옥·농장·양조장 등의 적산을 관리·배분하였으며¹⁷⁾ 일제하의 한국인 순사를 해체시키지 않고 흡수하여 치안을 유지하면서 각 면별 건준위 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영광민립중학설립 등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다음의 <표 1>은 건준에서 관리한 적산 중에서 일제 때 영광군의 유력한 일본인 대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표 1> 영광군내 유력한 일본인 대지주 일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소, 『農地改革時 被分配地主 및 日帝下 大地主名簿』, 1985.

氏名	所有面積(町)	創立年月	事務所所在地	調査時點
阿部市郎兵衛	2100.0	1911. 4	영광군 백수면	1922
川崎武之助	750.0	1916. 3	영광군 백수면	1922
梅田熊太郎	186.2	1919. 9	영광군 영광면	1932
富田弘道	38.6	1922. 4	영광군 영광면	1932
津村農場	362.0	1929. 5	영광군 염산면	1932
藤村五郎	168.0	1910. 5	영광군 법성면	1932
臼井太郎	35.6	1915. 3	영광군 법성면	1932
吉村綱英	709.1	1922. 9	영광군 염산면	1932
阿比留銈作	821.7	1910. 1	영광군 백수면	1932
阿藤平太郎	926.0	1928. 1	영광군 백수면	1932
吉川秀	93.9	1918.	영광군 법성면	1932

<표 1>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¹⁸⁾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왕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영광에 소작제농장小作制農場을 창업하고 상당수는 수리사업에 뛰어든 동태적 지주라 할 만한 인물들이다. 이 가운데 아베[阿部市郎兵衛], 가와사키[川崎武之助], 아비루[阿比留銈作] 등은 500정보 이상의 거대지주로 영광수리조합의 핵심 창설멤버들이었다.¹⁹⁾ 이외에도 일본인 소유의 많은 가옥과 상가, 여관, 정미소, 음식점, 병의원, 창고 등이 영광면, 법성면, 염산면, 백수면 등지에 분산되어 있었다.

다음의 <표 2>에서 영광 거주 일본인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은 영

17)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기획위원회, 1권, 1991, 137쪽.

18)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1910~1918년에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지가를 확정하고 지적도 및 지형도를 작성한 사업이다.

19) 정승진, 『한국근세지역사: 전라남도 영광군일대의 사례』, 경인문화사, 2003.

광면과 법성면에 540여 명이 거주하였으며 이는 영광 거주 일본인의 ⅔에 해당하였다.²⁰⁾

<표 2> 영광거주 인구와 호수. 자료 : 『전남사정지』, 932쪽.

연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중국인)		합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25년	15,265	79,667	302	794	43	895	15,610	81,502
	97.8%	97.7%	1.9%	1.2%	0.3%	1.1%	100.0%	100.0%
1927년	15,093	79,928	237	873	20	94	15,350	80,265
	98.3%	98.8%	1.5%	1.1%	0.0%	0.1%	100.0%	100.0%

영광건준은 치안과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각 면지역 건준조직의 구성과 일본인들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 교육기관의 정비와 신설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들은 도 인민위원회에서 배부한 대마지 등을 귀환동포에게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했으며 3.7제 소작제를 지킬 것을 지시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렇듯 당시에는 영광 건준위의 출범의 행정업무나 경찰기능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였다.

2. 새로운 정치지형 ‘영광군 인민위원회’

중앙의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9월 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내외 좌익세력을 총망라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주석 이승만(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음), 부주석 여운형(건준위원장), 국무총리 허헌(건준부위원장) 등으로 조선인민공화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전역에 150여 개가 조직된 건준의 지부를 인민위원회(이하 인민위)로 개편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9월 14일에는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이 재결성되고 11월 12일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인민당이 결성되었다. 그리고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조병옥 등은 별도로 정당결성을 준비하여 9월 16일 한국민주당²¹⁾을 결성하였다.

중앙의 건준이 미군진주에 대비하여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하자 지방의 건준도 인민위로 개편되었는데, 전남에서도 김종선·유혁·이익우 등이 중심이 되어 9월 20일 개편대회를 열었다. 그 조직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박준규, 부위원장 강석봉·국기열·김철, 서기국장 이익우, 조직부장 김종선, 산업부장 한길상, 후생부장 노종갑, 지방부장 조병철, 학무부장 김범수, 치안부장 이덕우 등이었는데 ‘온건보수세력이 대부분 빠진 좌익활동가들의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²²⁾

20) 『전남사정지』, 1930, 932쪽 ; 박찬승, 「일제하 영광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2002, 349쪽.

21)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한국민주당,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김구 중심의 한독당이 대표적이었다.

제작하여 공장 앞에서 나누어주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1919년 8월 7일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²⁴⁾

영광인민위는 각 면단위에 위원들을 보내 각 면별 상황을 살피기도 하였고 군정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영광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주축을 이룬 청년층 가운데에는 1905년 이후 출생한 30세 전후의 영광면과 군서·군남면, 법성면, 백수면 출신이 많았다. 영광의 각종 사회단체는 대부분 영광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광면 출신의 청년들이 각 단체를 주도하였는데 이들 가운데는 창녕조씨, 진주정씨, 김해김씨 등이 많았다. 이 가문의 출신자들은 한말~1910년대의 신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과 1920년대 이후의 민족·청년·사회·노농운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²⁵⁾ 이 같은 경향은 193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신진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이들 집안에서 계속 배출되었다. 물론 이들 집안의 자제들이 모두 민족운동 대열에 선 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일부는 면장, 면협의회원, 도평의회의원 등을 거치면서 친일의 길을 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3. 영광민립중학교 설립

1) 민립중학교 설립의 근대사적 배경

영광에 1896년 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다²⁶⁾는 사실은 설립관련 기록이나 여타 사실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나 이후에 영광에 설립된 학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관보 제4706호²⁷⁾에 의하면 이종각²⁸⁾이 교원으로 임명되었고 학교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향교나 관아의 한 건물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관내에는 기존의 서당(66곳)이 존립하고 있는 가운데²⁹⁾ 1906년 법성사립보통학교³⁰⁾와 1908년 사립광흥학교私立光興學校가 문을 열었다. 사립광흥학교는 지역 인사들이 노인당, 관서당, 향교서당 등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향교의 명륜당에 학교를 세운 것이었다. 광흥학교 입학생은 50여 명이었으며 당시 학제는 1년 속성과정으로 3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나중에 영광지역의 정치·교육·사회운동의

24) 「김은환 등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 08. 07.

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결과보고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49쪽.

26) 구한국 관보 제434호, 건양 원년 9월 21자, 학부령 제5호.

27) 정부총무국관보과, 1896. 11. 09.

28) 李鍾珪, 판임관6등급,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2년 졸업생이며, 판임관은 각부 대신이 임명한 직급이었음.

29) 『전남사정지』(1930)에 의하면 서당은 군내에 66곳, 직원 68명, 학생 수 7백 7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30) 『조선신사보감』, 1914, 명치 39년 편.



<그림 7> 광흥학교 제1회 졸업식(1909). 사진출처, 정택근

주역이 되었다.

졸업생으로는 조희충, 조병모, 조용현, 정인영, 정동희, 김은환, 정동립, 정관철, 이인, 박동규, 김철,³¹⁾ 김창섭, 이태영³²⁾ 외 22명이었다. 1920년대 후반에 들어 대부분 광흥학교 출신인 이들은 영광청년동맹, 자유노동조합, 토우회, 추인회,³³⁾ 항일민족자각운동을 위한 독서회인 갑술구락부 등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08년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통해 정부심사를 거쳐야만 사학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안에 묶어 두려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도 사립광흥학교는 살아남았으나 2년 뒤인 1910년 공립화되어 영광공립보통학교로 바뀌면서 일제의 교육체제 속으로 흡수되었다. 일제는 법성포에 세워졌던 학교 역시 공립화하여 제도적 틀 속에 가두었다. 이후 영광에 세워진 학교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표 3-1> 영광군의 일본인학교

학 교 명	설립 년도	직원수	학생수	학급수	경상비	학교장
영광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1	3	90	3	5,280圓	菅原明
법성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1912	2	58	2	3,545圓	羽柴亥之助

『전남사정지 下』, 「靈光郡の部」, 1930.

31) 독립운동가. 대구복심법원판결문, 1934. 12. 27.

32) 『대한매일신보』, 1910. 05. 27.

33) 추인회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지하운동으로 바뀌게 되자 민족사상의 고취와 한글보급을 주력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다.

<표 3-2> 영광군의 조선인학교

학 교 명	설립년도	직원 수	학생 수	학급 수	경상비	학교장
영광공립보통학교	1911	13	675	12	14,509圓	大谷猪助
법성포공립보통학교	1920	6	354	6	6,580 圓	林正憲
군남공립보통학교	1921	4	211	4	4,647圓	內海伊勢治
대마공립보통학교	1922	3	124	3	3,464圓	稻數茂
백수공립보통학교	1923	4	191	4	4,336圓	谷善雄
홍농공립보통학교	1927	2	81	2	3,056圓	武富勇
염산공립보통학교	1926	2	132	2	2,804圓	陶山龜三郎
영광공립농업보습학교	1927	2	97		4,396圓	大谷猪助

회유와 억압에 의한 식민지교육의 공립학교 확대로 광흥학교 재학생 120명과 신입생 140명을 수용하여 출발한 영광공립보통학교의 훈도와 학생들은 3·1운동 당시 2차례의 독립만세시위를 벌여 훈도와 생도 10여명이 구속되었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 영광에서 3·1운동의 조직·규모·횟수를 보면,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10회에 걸쳐 연인원 8,200여명이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 6명, 부상자 50명, 피검자 29명, 일본헌병 출동 11회라는 기록을 남겼다.

당시 일본은 한국인을 식민지인으로 동화하기 위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인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초대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무단적 통제 강화정책'³⁴⁾은 교육계에도 그대로 나타나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학교는 공립화 또는 폐교하도록 조치하였다. 1918년 2월에는 「서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서당교육에 대해서도 탄압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민족교육열은 날로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농운동과 청년운동, 민족교육운동은 계속 되었다.

1919년 3·1운동 등의 식민지배에 대한 항거를 목격한 일본은 제2차 「조선교육령」³⁵⁾을 공포하여 동화주의 교육을 본격화하였다. 학제를 개편하여 일본인학교와 교육연한을 동일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며, 일본어교육 등을 강화하였다. 일본의 황국신민화 교육과 군사교육, 청년훈련소, 농업보습학교, 중견인물양성소 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921년에는 정인수를 중심으로 조희충, 노창섭, 박정환 등이 영광유치원을 설립하여 지역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서 1922년 2월에는 위계후와 영광청년회 임원 10여명이 중심이 되어 향교의 명륜당, 즉 광흥학교 자리에 4년제 보통반 남녀 각 60명과 속성과 30명을 수용하여 국어, 국사, 산술, 한문 등을 가르쳤다. 당시 초대 교장은 조병모, 2대

34) 김익환, 「1910년 전후 山縣·伊藤系의 對韓政策 기조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35~36쪽.

35)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장은 위계후, 교사는 조운(국어, 국사, 문예), 김형모(산술), 조용현(한문), 박화성(여자 반 담당)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중학교³⁶⁾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2년 10월 영광청년회의 유희중, 조희충, 정인영, 위계후, 조규원, 이인, 김은환, 정태희, 조운, 조용남, 서순채, 김형모, 조영달 등이 영광중학교 기성회를 창립하고, 주축이 되어 위원장에 조희경, 부 위원장에 정동명, 위원으로 조희양, 박정환, 허진관, 김종관 등 100여인을 추대하여 중학교 설립에 착수하였다.

많은 군민들은 각자 재산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하고 각계 인사들의 후원으로 우수한 교사들을 초빙하여 영광중학교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³⁷⁾ 1923년 12월 9일 기성회임원의 개편을 단행하여 위원장 조희경, 총무 조설현, 정태희, 박정환, 이사 정동윤, 지용희, 노정섭, 허진경, 서의려, 이용호, 김종우, 이문봉, 박인환, 배승순, 감사 조병모, 정인수, 조희석을 선임하였다. 그러나 예정대로 1923년 12월 9일 개교를 위한 군민대회를 개최하였으나 핵심인사는 불참하였고, 기존 임원들도 사퇴하였다. 결국 1925년 3월 기성회가 해체되어 학생모집만 한 상태로 중학교는 문을 닫았다.³⁸⁾ 증언에 의하면 학교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또한 1922년 2월에 개정된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인 「조선교육령」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영광중학은 4년의 진통 끝에 폐교를 하게 된다.

1926년 영광중학교 기성회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해체되자 박정환은 군서면 월곡리에 교실 4칸과 부속건물 2동을 지어 정명학교正明學校를 세우고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감한 박태엽을 교장으로 초빙했다. 이 학교는 당시 군서면 일대의 불우하고 가난한 농민들의 자제들을 위해 개교한 보통학교 과정이었는데 개교 직후부터 일제의 온갖 탄압으로 3년만인 1929년 10월에 폐교되고 말았다.

1927년 허진경許珍卿에 의해 실업보습학교實業補習學校가 개교하였고 흥농면 상하리 명신학교(1926) 등은 운영난에 봉착해 문을 닫고 말았다.³⁹⁾ 이렇듯 영광군민들은 지역에 민족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공립보통학교와 기독교계 보통학교가 운영되는 가운데 조운을 중심으로 한글회를 조직·운영하면서 노동야학과 부녀야학을 통해 한글을 보급하였다. 총독부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이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한글연구, 보급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로는 정진삼, 최진옥, 편진옥, 조용, 조운, 조장현, 노함풍, 노운창, 박연근, 박장제, 조교선, 조상하, 김형모,

36) 당시에는 고등보통학교, 5년제.

37) 『동아일보』, 1923년 2월 10일.

38) 『동아일보』, 1923년 3월 11일, 20일, 12월 8일, 13일, 1925년 2월 15일, 4월 15일, 1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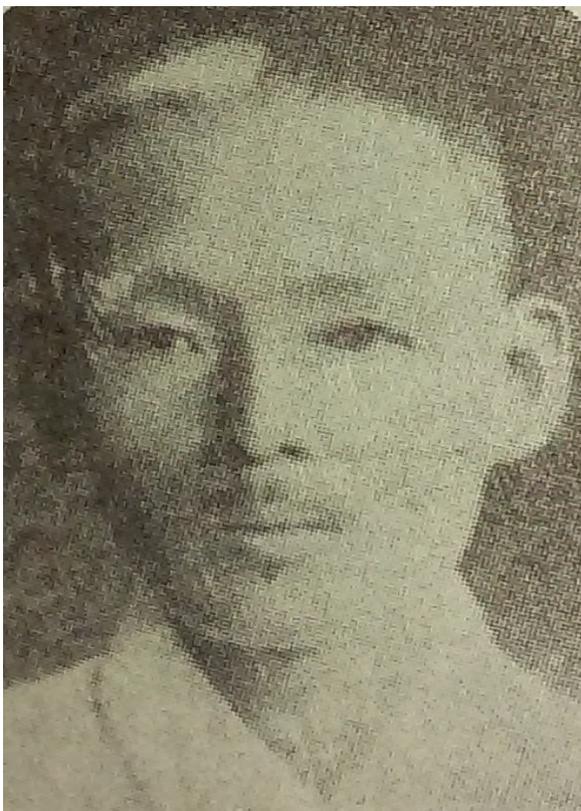
39) 『동아일보』, 1926년 1월 3일, 1월 18일, 10월 12일, 10월 30일, 1927년 6월 20일.

정태연, 박계순, 김복기 등을 들 수 있다.

2) 민립남녀고등중학교 설립



<그림 8> 영광민립고등중학교·
영광민립여자고등중학교 정문, 1945.
사진출처, 정택근



<그림 9> 정인수

1945년 9월 1일 조운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주연학회 회원들은 민립고등중학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먼저 학교설립을 위한 기금모금에 나섰는데 이을호가 자기의 농지 450두락⁴⁰과 벼 1천석을 기부했다. 이튿날부터 학생모집 등 구체적인 설립작업이 시작되어 불과 한 달여 만인 10월 15일 마침내 영광면 무령리 365번지 영광심상소학교 건물(현 영광교육청)에 민립남녀고등중학교가 개교되었다. 남자고등중학교는 2학급에 100명, 여자고등중학교는 1학급으로 50명(이후 증원)이었다. 이로써 좌절된 바 있던 영광군민들의 중학교 설립이라는 숙원사업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영광민립고등중학설립위원회는 1945년 9월 1일 영광출신으로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졸업자들을 규합하여 민립고등중학설립기구인 정주연학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조운이 구성회장이 되어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고 9월 5일 회장에 정인수를 추대하였다. 정인수는 광흥학교 출신으로 3·1운동, 영광체육단사건, 영광유치원, 영광중학교(1922) 등에 관여하였고 이어서 영광민립고등중학교(이하 민립중학) 설립추진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민립남자고등중학교 교장에 이을호, 민립고등여자중학교 교장에 조의현, 양교 교감에는 정종

40) 450두락은 9만 평에 해당하고 논 1두락은 벼 3~4석에 거래되었다.

이 취임하였다. 교사진으로는 문효종(수학), 조영규(일명: 조양, 지리), 조영은, 조운현(음악), 조규조(동양사), 조규원(서예), 조응환, 정근모(국어) 등이 자진해서 참여하였다. 교사진 구성은 다음과 같다.⁴¹⁾

<표 4> 교사들의 신상

성명	직책	출신지	담당 과목	학력	광복 이후 활동
이을호	남중 교장	영광면		경성약학전문학교	전남대 철학과 교수
조의현	여중 교장	영광면	영어	릿쿄·도시사대학	전업작가
정종	남·여교감	영광면		일본 동양대학 문학부 철학과	전남대·동국대 교수
조응환	교사	영광면	음악	보성전문대	정치활동 및 사업
문효종	교사	영광면	수학		
조운현	교사	영광면	성악	동경대예술과 2년	
조영규 (조양)	교사	영광면	지리	일본법정대학 전문부 지리학	익산남성고 교사.
조영은	교사	영광면	국어	법정대학 교사부 영문과, 문학과	문학가동맹, 월북.
정근모	교사	불갑면	국어	혜화전문학교	전남교육위원
조규조	교사	영광면	동양사	일본 입명관대학	
조규원	교사	영광면	서예	한학자	가족과 함께 월북
김수옥	교사	불갑면	역사	중앙고보	
한 일	교사	북한	영어		
유기호	교사	불갑면	미술		
신옥수	교사	서울		서울사대	
김호경	교사	서울	가정	서울사대	
김인군	교사	북한	체육		
김수자	교사	서울		서울사대	
이경애	교사	서울		서울사대	

정근모는 1917년 불갑면 녹산리 출신으로 정종의 요청에 의해 민립중학에서 국어과목을 맡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전남 교육위원을 하였으며 2001년 고향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조영규는 민립중학 지리교사를 하다가 익산 남성고등학교 교사로 옮겼다.

조영은은 1920년 영광면 도동리 281번지에서 태어나 영광보통학교(1933)와 목포상업학교(1938)를 졸업한 후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미카사[三笠] 서방에서 일하면서 법정대학 교사부 영문과를 졸업(1942)하고 다시 같은 대학 일본문학과를 이수하였다. 광복 후 민립중학에서 1년간 국어를 가르쳤으며 조운과 함께 '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였다.

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민립남녀고등중학교는 6·25전쟁 때 화재로 소실되어 관련문서나 자료가 전혀 없는 관계로 학생부, 제적부,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관계자의 증언에 의존해야만 했다.

1949년 월북과 관련하여 체포, 구금되어 생사가 불명하였으나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현(1907~1985)은 서울 중앙고보를 거쳐 일본 릿쿄대학 영문학과와 도시사대학[東志社大學] 경제학과에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만에 영광에 돌아와 영광민립여자중학교 교장직을 맡아 지역문화와 교육에 관심을 쏟았다. 이상과 같이 민립중학 교사들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다.

이듬해 민립남자고등중학은 여자고등중학교와 분리하여 영광면 단주리에 있던 우메다 梅田농장⁴²⁾을 교사로 개조하여 이전했다. 민립중학은 1948년까지 찬탁과 반탁의 갈등과 심한 좌우의 충돌 속에서 운영되다가 교장 이을호가 사직했다. 1948년 4월 교장과 교감이 교체되고 2대 교장으로 정태일 鄭泰逸(1909~?)이 부임하였다.

4. 영광군 인민위원회 해체

영광인민위는 1946년 초 해산되었다. 1945년 10월 말경에 전남지역에 진주한 미군정은 이미 인민위원회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미군정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전남의 모든 시·군·면에서 행정을 장악하고 있던 인민위를 무력화하고 그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인민위는 각 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명령만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간단한 세력이 아니었다. 11월 15일 가장 먼저 해산명령을 행한 곳은 목포 인민위였는데, 11월 16일 인민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20여 명을 연행하였다.⁴³⁾ 이러한 사정은 1945년 10월 21일 광주에 진주하여 영광을 담당하였던 미제6사단 20보병연대 제53중대(오키나와에서 이동된 부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에 진주한 초기에는 미군정도 인민위가 각 지역의 실세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도인민위 간부들도 처음에는 미군정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결국 미군정은 인민위의 해체를 지시하였고 이 명령이 전남의 전 지역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자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6년 2월 전남 경찰은 목포와 나주 등 전남 각 지역의 인민위와 치안대를 습격하여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고 인민위 위원들을 일부 구속하였다.

영광 역시 1946년 2월 19일 오전 11시경 崔永實을 대장으로 한 전남도경 경관 30여 명과 헌병 10여 명이 트럭 3대로 영광경찰서에 도착하여 인민위 치안대장 정진삼을 ‘불법 공공건물점유 및 유용’과 ‘불법테러’, ‘불법적산관리’ 혐의로 구금하고, 그 휘하의 경찰을 모두 파면조치 하는 등 영광경찰서를 접수하였다. 같은 날 백수면의 인민위 산하 영광보안서 백수분주소장도 파면(1946.02.19.)하고 ⁴⁴⁾ 건준에서 추대하여 군수로 활동하던

42) 일본인 우메다의 농장.

43) G-2 Periodic, 1945년 11월 18일 자 보고.

인민위원장 조희충을 면직하였다.⁴⁵⁾

미군정은 인민위 조직부장 정태송도 체포하여 묘량면 묘량지서에 구속 수감하였는데, 그를 따르던 청년들이 묘량지서를 습격하여 정태송을 탈출시켰다. 그 후 그의 행적은 묘연했으나 부인과 함께 월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민위와 치안대가 해체되자 조운 역시 서울로 올라갔으며 이후 월북하였다. 그 측근 인사들도 영광을 떠나거나 은둔하고 일부는 좌익 또는 빨치산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편 학련(전국 학생 총연맹全國學生總聯盟)영광지부에서는 박동을을 중심으로 반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이들은 각 면을 순회하면서 반탁의 정당성과 영광의 공산 주의자, 진보주의자들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때 크고 작은 마찰들이 일어났다.⁴⁶⁾

5. 미군정기의 정치·사회적 혼란

광복 이후 영광에는 ‘식민사관’ 극복과 내재적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려내야 하며 정치사회적 안정 등의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러나 영광사회는 요동하는 한국정치 정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미군정은 인민위의 대체세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각계의 인사들을 지사의 고문으로 임명하여 고문회를 구성하였다. 고문회의 직접적인 기능 중 하나는 지방의 민의를 파악하여 민주적인 대의정부의 수립에 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내의 각급기관에 충원될 인사를 추천하는 일이었다. 대다수가 보수적 인사로 구성된 10여명의 지사 고문회는 미군정 도고문회의 자문을 얻어 도지사 이하 군수급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였는데, 미군정은 1946년 3월 9일 김영하(당시 44세)⁴⁷⁾를 군수로 임명하여 영광군의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별다른 저항 없이 군청은 재조직되었고 영광군 경찰도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여 인민위는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한 조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인민위가 완전히 와해된 것은 아니었고 미군정과의 정면대립을 피하면서 전국의 동향을 살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민위의 지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광에서는 한민당과 조선민족청년단(대한청년단),⁴⁸⁾ 서북청년단, 학련 등의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로써 영광지역에도 이

44) 光州地方法院檢察局, 『不起訴事件記錄』, 1946, 8쪽.

45) 전남일보 광주·전남 현대사기획위원회, 1991, 139쪽. 『해방일보』, 1946. 4. 1.

46) OH_6·25전쟁과 민간인 학살_20180923_군남면_정선광_03_02 ; OH_민립중학사_20150923_영광문화원_조남식_03_03

47) 金永夏, 장성인, 도 사무관, 영광군수 재임기간 1946년 3월 9일~1946년 10월 30일. 『대한민국인사록』, 국사편찬위원회.

48) 이범석이 1946년 10월 민족정신의 전통을 계승할 청년운동의 모체로서 결성한 단체이다. 이승만(李承晩)이 집권한 뒤 실시한 청년단체 통합에 따라 대한청년단(大韓青年團)으로 통합되었다. 대한청년단은

념을 달리하는 양대 세력이 형성되었다.

학련 전국위원장은 국회의원도 했던 이철승이고, 영광총책 그러니까 영광군위원장에 박동을, 부위원장에 김순섭이가 맡았고 동원부와 훈련부가 있었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수가 삼십 여명 되었지요. 우리는 반탁을 했고, 계몽활동을 했는데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거여, 왜 신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과 조만식, 여운형 등은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찬탁하는 사람들과 별일은 없었어. 영광에 찬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가족들도 많았고, 나는 학련운동을 하였으니까 우익이지요. 그 때 영광이 모스크바였어요. 메쟁이가⁴⁹⁾ 가고 나서 빨갱이와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우린 당연히 반탁을 했지요.⁵⁰⁾

그 때가 1946년 영광보통학교입구에서 건준위원들과 같이 삼일운동 기념하는 날이지요. 내 생애 처음으로 정치적 의사표명으로 ‘찬탁’연설을 한 뒤로 학련 등에 가입된 청년들의 ‘반탁’의 외침을 보고 아! 정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운형이 이끈 건국준비위원회 산하 조직이 영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세력이 조직되었어요.⁵¹⁾

일제하에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광복이 되자 건준을 중심으로 민립중학을 세우고 교육과 행정·적산·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민족운동에 참여하여 항일운동 등을 했다는 지역적 정통성을 내세워 영광지역의 정치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미군정의 우익세력 양성과 좌익세력 탄압 아래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영광의 지역정치에서 밀려났고 그 정통성은 부인되었다. 이어 그들은 찬탁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반탁을 주장하는 세력과 한층 더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영광군의 인민위는 미군정의 해산명령이 있는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의 찬탁, 반탁의 문제는 좌우대립을 급격히 심화시켰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익세력이 점차 지역정치의 헤게모니를 잡아나가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조○○, ○동○, ○○진, 심○○, 김○○ 등이었다.⁵²⁾ 그리고 독촉 영광지부가 ○○현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규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의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1946년 봄부터 미군정은 1945년 10월초에 조직된 한민당 영광군당을 중심으로 족청, 농민회와 학련 등을 통해 지역 권력을 장악했다. 해방공간에서 우익단체는 지역정치세

200만 단원을 확보한 전국적 조직체를 갖춘 우익청년단체로 이승만이 직접 총재직을 맡았고 이승만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49) 메쟁이는 우메다(梅田)를 이르는 말로, 일본인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됨.

50) OH_민립중학사_20180601_영광문화원_조남식_03_03

51) OH_정종생애사_200705_청우아파트_03_03. 8·15해방 1주년 기념식도 조운 등의 주최로 거행되었다고 한다.

52)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1973년, 791쪽.

력 중에서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핵심단체로 기능하였고 공산주의자 척결과 반공국가설립이라는 명분하에 좌익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민위에서 활동한 사람들, 좌익화된 청년들, 민립중학의 일부교사와 학생들은 한민당의 등장으로 지역에서 축출되었고 그 중 일부는 한민당.족청 등과 연대하게 되었다.

<표 5> 당시의 양분된 연대세력

노농연합회.청년동맹. 건준.인민위. 민립중(일부). 사회주의자. 빨치산.조공.	≡좌익 우익≡	학련.족청.농민회. 독립축성국민회.서북청년단. 민립중(일부).소방대. 한민당.친일세력. 미군정.경찰.반공친미세력.
---	------------	---

한민당, 족청, 학련 등으로 구성된 우익조직은 사회불안요소 제거를 위해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을 앞세웠다. 이에 대해서는 주관적이지만 다음의 구술증언에서 이들의 활동이 나타난다.

서북청년단을 뒷받침한 것이 족청이여. 그 뒤엔 한민당이 있제. 테러분자들이었어. 밤에 침투해서 죽일 듯이 협박 공갈 다하고, 몽둥이로 치고, 별벌 떼제. 한민당의 과오가 엄청나게 커요. 민족분열 소위 영광의 참상, 그 원인이 한민당이지. 왜정 때 경찰들 전부를 다 흡수해가지고 뭐 서북청년단을 불러들이고 학련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제. 그들의 행포를 막을 자가 없었네. -중략- 애들이 좌익으로 몬거지. 왜 한민당이 친일 세력을 끌어안았느냐. 왜정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돈이 많았거든. 옛그저께 일본 밑에서 아부하던 자. 경찰해 먹고, 공무원하고 한 자들이 매국하던 자들이 한민당하고 밀착되어, 그 반대 세력을 좌익으로 몰았어. 내가 서중 3학년 때, 본의 아니게 나도 끌려가서 서북청년단에 잠깐 있었어. 서북청년단이 뭐냐면, 김일성 치하에서, 이남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한민당에서 포섭을 했어.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배정해 그놈들을, 옛날 같으면 4.19 군인들이 총에다 칼 꽃아가지고 협박하대끼 꼭 그런 존재여. 아몰튼 이들이 양심적 민족주의자나 그런 측들을 테러를 해. 밤에, 시킨 대로, 막 때려 붓고 몽둥이로 치고, 그래서 이 ○○씨가 떠난 거여⁵³⁾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영광지역의 지배구도는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하였고 우익 세력들과 인민위, 찬탁교사와 학생들 간에 갈등이 깊어져 갔다. 미군정은 반미적성향의 인사와 친미적 성향의 인사로 구분하여 전자는 좌익으로, 후자는 민주적이며 애국적이

53) OH_민립중학사_20170501_서○자택_서○_03_02

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제도화하였다.

1) 1948년 전후 상황

1948년도에 발생한 '2·7구국투쟁'은 좌익세력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방침에 반대하여 1948년 2월 7일을 기점으로 전개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을 가리킨다.

1948년의 2·7구국투쟁과 그 후에 전개된 5·10선거 반대투쟁은 남로당의 전술로 볼 때는 합법과 비합법의 혼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과 비폭력의 혼합투쟁이었다. 즉 이때부터 본격적인 좌익 무장 세력인 야산대가 조직되었던 것이다. 야산대는 좌익 중에서 군 경험이 있는 자나 1946년 10월 대구봉기 이후 수배령에 쫓기고 있던 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개 군에 50~100여명 정도였다. 이 시기 남로당의 주된 목표는 통일정부로서의 인민공화국 창건이었지만 2·7투쟁을 계기로 야산대가 조직되면서 무장투쟁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⁵⁴⁾

영광의 야산대는 인민위 해체 당시의 몇 명의 인사와 그들을 따르던 청년들 그리고 추수봉기 이후 수배된 자들과 남로당에 자진가입한 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된 이른바 '구 빨치산'으로 불갑산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유격투쟁전술 등 무장투쟁이 좌익세력의 중심적인 주요전술이 된 것은 1948년 10월의 '여순사건'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유격전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남로당의 정치투쟁이 무장투쟁전술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 좌익무장세력은 1949년 7월부터 좀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개편을 시도하는데 그것이 인민유격대였다. 인민유격대는 3개 병단으로 편성되었는데 제1병단은 오대산지구, 제2병단은 지리산지구, 제3병단으로 태백산지구였다. 이들에 대한 지휘는 북에 있던 조선공산당 부위원장 박헌영 등이 담당했다.

제2병단의 조직체계를 보면 총사령부(사령관 : 이현상) 밑에 4개 연대(지리산의 제6연대, 백운산의 제7연대, 조계산의 제8연대, 덕유산의 제9연대)가 있고, 각 연대는 몇 개 군을 무대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에서 영광지역은 어떤 연대에 소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당시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도당에 이르는 조직체계가 인민유격대 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영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빨치산들은 인민유격대에 소속된 부대가 아니라 군 조직의 지휘를 받는 부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4) 10월 항쟁에 참여했던 좌익세력은 주로 산악지대로 들어가 생활했는데, 이들을 산사람이라고 칭했다. 이것이 빨치산의 시초라고 한다. 남로당의 무장투쟁전술은 1948년 2·7구국투쟁과 5·10선거 반대투쟁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특히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은 남로당의 전술을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1948년 2·7투쟁을 계기로 야산대가 조직되면서 무장투쟁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야산대는 2·7투쟁 이후 3·1절 기념투쟁, 5·10선거반대투쟁, 8·28지하서명 투표투쟁, 인공기 게양투쟁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5·10선거반대투쟁 때는 선거반대 선전운동과 별도로 각 지방당에서는 백골대, 유격대, 인민청년군 등의 소규모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 언론기관, 우익인사, 선거위원 등이었다.

이 인민유격대 조직들은 1948년 말부터 1950년 초에 걸쳐 진행된 군·관·민 합동토벌 작전에 의해 조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와해되었다. 많은 유격대원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으며 살아남은 대원들도 유격활동보다는 생존을 도모하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시기의 토벌작전과 그에 대한 빨치산들의 저항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좌우대립의 와중에서, 밤에는 좌측으로 낮에는 우측으로 오가면서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은 엄청난 재산피해와 신체적 위해를 당했다.⁵⁵⁾ 영광의 외곽지역은 치안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사실상 치안력의 공백상태였다.

영광지역에서 좌우간의 무장투쟁이 본격화된 것은 여순사건 이후 14연대 중 한 일부가 불갑산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30~40여명의 무장병력과 죽창이나 몽둥이 등으로 무장한 일부 좌익세력이 구 빨치산들과 합세하면서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는 영광과 함평 경계에 있는 불갑산(모악산)과 군남면 군유산, 백수면 구수산, 대마면의 태청산 등이었는데 이들의 출현과 이들을 토벌하려는 군경 및 우익세력의 등장으로 이 근처의 불갑면, 묘량면, 대마면, 군남면, 염산면, 백수면 등의 지역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군서면 출신의 박석준(이하 박막동)을 대장으로 하는 좌익유격대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영광농업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좌익활동을 하였고 1947~48년 무렵부터 무장조직을 이끌기 시작하였으며 불갑산과 구수산, 군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경찰들을 습격하였다. 당시 이들을 돕는 영광경찰서 프락치가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들에게 실탄과 총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가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습격사건 중 하나는 1948년 4월 빨치산 50여명을 이끌고 염산면 상계리 돌팍재에서 이곳을 지나던 경찰관들이 탄 트럭을 습격하여 경찰과 군청직원 13명을 사살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 8월 9일 영광에서 광주로 가는 밀재에서 영광농민회장의 동생이 탄 트럭을 습격하여 트럭에 실린 쌀을 모두 가져간 사건 등이었다.

박막동 부대에 대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박막동부대의 구성원이 1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광복30년』의 내용은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에 활동했던 전남지역의 빨치산들은 1949년 겨울을 지나면서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당시 전남지역의 빨치산들은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거의 궤멸상태였다.

55) 김남식,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 13호, 2003을 근간으로,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보고서: 영광군』, 2009년 2월, 에서 정리한 것을 재정리하였다.

1949년 11월 9일 유치지구에서 전남 인민유격대 총사령관 최현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고 그 세력이 쫓기는 상태였다. 불갑산 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역시 1949년 겨울에 태청산에서 거의 전멸했으며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박막동부대 역시 소규모 전투부대였는데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규모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대는 군경에게 위협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규모는 작았지만 숨어 있다가 나타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전투부대였으며 몇 명의 경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게릴라부대였다. 이후 6·25전쟁 동안 이 부대에는 각지에 흩어져있던 빨치산과 지방좌익들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는 가늠할 수 없지만 많은 구성원으로 위세가 대단했다.

당시 경찰은 군과는 달리 비교적 단일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찰은 반공우익청년단체와 친일경찰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친일경찰은 일제 때 중앙집권화되었고 주요인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반공적이었다. 그리고 월남자출신은 북한에서 피해를 당한 경험 때문에 반공·반북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⁵⁶⁾ 이외 지역출신 경찰들도 다수 있었다. 그런데 영광경찰 내부에는 전 영광경찰서장이었던 정진삼을 따르는 좌익성향의 경찰프락치가 있었다고 전한다.⁵⁷⁾

6. 단독선거와 반민특위 그리고 좌익세력의 준동

1948년 특히 좌익들은 미군정하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5·10제한의회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5월 10일 총선거 때까지 계속되었다. 남로당의 지도하에 파업, 동맹휴학, 시위, 경찰서·관공서 습격 등이 벌어졌다.

영광에서도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영광민립고등학교 학생들도 단선반대 동맹을 하고 학생의 절반이 결석하여 임시휴교를 했다.⁵⁸⁾ 그러나 출마자가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기가 뜨겁지 않아서 선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전국적인 총선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5·10선거는 유권자의 약 75%에 해당하는 7,487,600명이 참여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영광지역의 제헌국회의원 당선자는 조영규였다. 그는 전남지역에서 광주의 정광호, 영암의 김준연과 함께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그는 중국북경대학 재학 중에 항일운동에 가담했다고 한다. 귀국해서는 미군정청 의사시험에 합격한 후 영광에서 개업했으며,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선출

56) 임대식, 『친일·친미 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5, 36, 37쪽.

57) 조남식·서○정선관의 증언(2008).

58) 「전남 13개교가 단선반대 공동맹휴 단행」, 『서울신문』, 1948. 5. 18.

하는 간접선거에서 영광대표로 뽑혀 정계에 진출했다. 이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관여하였고 민족청년단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출마 당시 이를 발판으로 다져놓은 기반이 그의 당선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가 추천서명을 받으려 흥농·법성면 등지를 다닐 때 좌익들이 방해하기도 했지만 대지주집안 출신인데다 민족청년단장을 지냈기에 다른 출마자들이 없었으며 같은 문중의 인사도 출마를 포기했다고 한다.⁵⁹⁾

6·25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영광지역은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인 16:1의 경합을 벌여 정헌조가 당선되었다. 정헌조는 광주농잠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한청년단 방위부장을 맡기도 했다.⁶⁰⁾

한편 1948년 9월 29일 반민법 제2장 9조를 근거로 친일행위자를 조사·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 전남위원장에 최종섭이 임명되었으며 전남특위에서는 20명을 구속송치하고 18명을 불구속으로 취조했는데 이들 중 일본 경찰 출신이 20명이었다.⁶¹⁾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와 친일세력의 방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1949년 8월 22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폐지되었고 친일세력척결은 성공하지 못했다. 영광에서도 친일문제는 미제로 남게 되었다. 미군정기 동안 남한지역은 안정을 찾지 못했고 좌익세력은 지리산 등지에 은신하며 빨치산 유격 활동을 계속했다.

<표 7> 1948년 ~ 1949년 사이의 영광 관련 신문기사 목록

1948.05.18	전남 13개교가 단선반대 공동맹휴 단행. 『서울신문』
1948.06.27	靈光(영광)에 또 騷擾(소요). 民團長 등을 살상. 『조선일보』
1948.07.11	영광 등지의 폭도와 교전 상황. 『호남신문』
1948.07.15	향토방위의 호국군 편성. 『호남신문』
1948.07.21	영광지역에 폭도 출현. 『호남신문』
1948.07.30	군경 마찰은 이적행위. 『호남신문』
1948.08.09	영광호국군 입대식. 『호남신문』
1948.08.20	지서장 징계, 면민 앞에서 파면, 체포. 『호남신문』
1948.10.11	박종황 산업과장, 한청을 적극 원조. 『호남신문』
1948.11.11	영광서 사찰계 잔도소탕에 활약-만행 남로 학생과책 체포. 『호남신문』
1948.11.23	반공표어 침부 주간에 와룡학생과책 등 자수. 『호남신문』
1949.06.19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전라남도 조사부, 일제 고등계형사 吳榮繕 검거. 『호남신문』

59) 김석학·임종명, 『광복 30년(1)』, 323쪽; 『광주전남현대사(2)』, 전남일보 광주현대사 기획위원회, 35-36쪽.

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61)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13, 120쪽.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1949.07.07	금상봉 전라남도경찰국장, 의용단통합문제와 인사이동 등에 대해 기자회견. 『동광신문』
1949.07.07	남조선로동당 군사·정치책 등 간부 검거를 발표. 『호남신문』
1949.08.06	전라남도 각지에 무장폭도 출몰. 『조선중앙일보』
1949.08.18	전남 각지에 반도 출몰. 『조선일보』

영광에서는 군경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 시기에 불갑산 빨치산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동원된 병력은 광주에 주둔 중인 20연대로, 이 연대는 1946년 2월 광산군에서 창설된 4연대가 여순사건 진압 중인 1948년 11월 20일을 기하여 20연대로 개칭하고 제6여단에 배속되었는데 20연대의 주요임무는 공비토벌작전이었다(보병 제11사단, 1986: 13-14). 1948년부터 6.25 직전까지의 전투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1949~1950년 6.25전쟁 발발 전까지 영광지역 전투상황

전투시기	전 투 장 소
1949.01.21	백수면 구수산
1949.01.27	불갑면 불갑산
1949.02.28	염산면 상계리
1949.03.07	불갑면 불갑산, 대마면 태청산, 염산면 돌팍재, 불갑면 금계리
1949.04.04	백수면 구수산
1949.04.07	염산면 돌팍재
1949.04.12	영광면 와룡리, 묘량면 연암리, 대마면 고성산, 불갑면 불갑산, 백수면 구수산, 염산면 돌팍재
1949.04.27	군남면 포천리, 대마면 원흥리
1949.06.14	백수면 구수산
1949.07.05	법성면 대덕리
1949.08.09	불갑면 불갑사
1949.08.19	불갑면 안맹리
1949.09.04	백수면 구수리
1949.09.05	백수면 구수산
1949.09.15	군남면 용암리
1949.09.28	백수면 입석리
1949.10.19	묘량면 영양리
1949.11.16	백수면 구수산
1949.12.05	백수면 대신리
1950.05.13	염산면
1950.06.02	염산면 돌팍재

자료 : 영광경찰서 1997

이러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빨치산이 양민이나 관리를 습격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1949년 7월 법성면에서는 무장폭도들이 나타나 양민을 살해하고 도주했으며, 8월 영광면 와룡리에서는 경찰이 귀가 도중 습격을 받아 피살되었다. 또 법성면 삼당리에 무장반도 약 20명이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다.⁶²⁾ 영광은 남로당 전남도당 내에서도 나주·보성·영암·장성·함평과 더불어 남로당 세력이 컸다고 한다.⁶³⁾

위와 같이 빨치산의 테러활동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지역주민들은 밤에는 좌익세력에 동조 아닌 동조를 해야 했고 낮에는 경찰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1) 관계의 상실

광복이 되었지만 지역민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틀은 없어보였다. 대립의 정치문화와 좌·우사상이 일상을 지배해 버린 당시, 지역이라는 생활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실천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하였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선택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갖추고 있는 것도, 일사불란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좌·우익사이의 '자연스런 관계의 상실'로서 투쟁적 조건임을 암시한다. 좌·우익들은 자가지역의 경계선을 넘어 일상적인 경험의 장들을 넓혀가고 있었으며 주민들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없는 비역사적 장소mon-place에 살게 되었다. 당시 한국사회가 처했던 상황이 그랬다.

1947년 7~8월 미소공동위원회의 최종 결렬을 계기로 좌익뿌리 뽑기가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정부수립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저항세력의 제거를 의미했다. 즉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에 따른 단일정부수립은 좌우연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제거할 필요가 없었지만, 단독정부수립이 확실해지자 좌익과 공존할 이유가 없었다. 타협의 가능성은 소멸되었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익청년단체는 물론 온건 중도파에게도 영향을 미쳐 8월 11일부터 좌익에 대한 대규모의 체포가 잇따랐다. 1947년 7월 19일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그의 죽음은 좌우 어느 쪽에 의해서였든지 간에 지난 2년간의 정치투쟁의 역전과 갈등, 그리고 한 전환점을 의미했다.

62) 『동광신문』, 1949. 07. 07. 『조선일보』, 1949. 08. 18. 『조선중앙일보』, 1949. 08. 06.

63) 『호남신문』, 1949. 07. 07.

참고문헌

- 光州地方法院檢察局, 『不起訴事件記錄』, 1946
- 경성복심법원, 『昭和 6년 刑控第21호 판결문』, 1931
-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인명사전』, 창작과 비평사, 1996.
- 김남식,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 김석학·임종명, 『광복 30년(1)』, 전남일보사, 1975
- 김익환, 「1910년 전후 山縣·伊藤系の 對韓政策 기조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 「김은환 등 판결문」, 대구복심법원, 1919
- 『동광신문』 ; 『대한매일신보』 ; 『동아일보』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호남신문』
- 부르스 커밍스·존 할리데이(Bruce Cumings and Jon Halliday),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1990
- 박찬승, 「일제하 영광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2002,
-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1973
- 안종철,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건준 및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1991 ;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조직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논문, 1990,
- 『영광군지』, 2002
-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 13호, 2003
- 임대식, 『친일·친미 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사, 1995
- 『전남사정지』, 1930
- 전남일보 광주·전남 현대사기획위원회, 1991, 139쪽. 『해방일보』, 1946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13
- 정승진, 『한국근세지역사: 전라남도 영광군일대의 사례』, 경인문화사, 2003
- 정택근, 『해방 전후 전라남도 영광군의 지역정치 구조와 민간인 학살』,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10 ; 『영광군지』 제1권, 「광복이후의 영광과 6·25전쟁」, 영광군지편찬위원회, 2013 ; 『근현대 영광의 인물』, 영광문화원, 2016 ; 『6.25전쟁 이후 좌·우익으로 형성된 지역에서의 생활과 활동』, 국사편찬위원회, 2017
- 『조선신사보감』, 191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 최정기,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최종보고서: 영광군』, 2009

구술

OH_6.25전쟁과 민간인 학살_20180923_군남면_정선광_03_02

OH_민립중학사_20170501_서○자택_서○_03_02

OH_민립중학사_20150923_영광문화원_조남식_03_03

OH_정종생애사_2008_청우아파트207_03_01-05

2019 공동학술대회
기록유산과 지역사를 통해 본
영광지역의 사회와 문화

<비매품>

발행일 : 2019년 11월 20일

발행처 :  **한글**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9625 Fax. 062-941-6705

<https://www.hiks.or.kr/>

※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19호남한국학 진흥지원 사업(기초자료 조사수집)”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